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232-01

#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Reorganizing the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 동 필 (선임연구위원)  
연구 원: 김 경 덕 (연구 위 원)  
연구 원: 송 미 령 (연구 위 원)  
연구 원: 김 용 렬 (부연구위원)  
연구 원: 김 광 선 (전문연구원)  
연구 원: 최 경 은 (연구 원)  
연구 원: 박 동 진 (한국농촌공사)  
연구 원: 오 준 근 (경희대학교)

## 요 약

---

###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어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 연구 내용 및 방법

- 농어촌산업의 구조와 실태,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농어촌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지역특화산업 육성사례(충북 증평군 인삼산업, 전북 고창군 복분자산업, 경북 상주시 꽃감산업), 농어촌산업 활성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
- 선행연구, 2차 자료 분석,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 경희대학교 및 한국농촌공사와 협동연구 추진, 그리고 다른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들과 연계 추진하였음

### ■ 주요결과

#### □ 농어촌산업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내생적 산업발전과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어촌산업의 개념 채택
  - 농어촌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산업의 범위

- 농특산물의 가공 및 관련 서비스업
- 자연경관, 생태자원, 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등 서비스업
- 기타 유형자원(유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기타 무형자원(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지역의 실태

- 농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양질의 인력 부족, 도농 간 발전격차와 소득격차 심화

□ 농어촌산업의 실태

-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 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취업구조, 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낮은 창업율, 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취업기회 부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는 대부분 도농통합시 지역에 집중됨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공간적 격차 발생

□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효과

- 고용증대에는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주민소득 증대 역시 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 생활환경 개선은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으나, 향토산업 및 신활력사업 등 산업육성정책에 의해 비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 및 산업화
  -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 농상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전략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전제조건
    -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체계의 수용, 정책 방향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향
  - 농어촌 지역특화산업의 필요성
    - 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 연관효과 증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지역특화 산업분야 선정의 강점
- 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구상(예시)
-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창업보육 지원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증평 인삼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상주 꽃감산업)의 시사점
- 지역 유형별 상이한 산업구조를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필요
  - 생산체계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중요
  - 농산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육성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 중앙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위주
  - 지자체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 지자체 주도의 공모제는 가능하며, 자체적인 계획 수립 가능
  - 평가는 성과중심의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간의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소통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농어촌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 지역의 현황과 여건분석
  - 7대 농어촌산업 발전 전략(예시) 활용
  - 농어촌산업 육성 추진 체계 구축: 추진조직, 추진 역량 강화 방안
  -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 성과지표: 사업비 집행실적, 인구, 고용, 사업체수, 매출액, 수출액, 방문객, 가동율, 교육횟수
  
- 시·군 추진주체
  - 전담조직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시·군 간 연계를 위해 연계발전 추진단을 구성. 자문체계는 정책목표달성형 자문조직, 연계발전 추구형 자문조직, 특성화발전추구형 자문조직으로 다층적으로 구성
  
-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칭)지역특화산업육성법」 도입

## ABSTRACT

**Reorganizing the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the rural industrial policy and introduce the new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Its contents consist of 1) defining the definition of rural industry and scope of rural industrial policy, 2) finding the state and problems of rural industrial policy, 3) suggesting the strategies to vitalize rural industry, and 4) developing the guideline and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The results are that first, the definition of rural industry is food,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andling, treating, processing or packaging primary products, tradition and culture, and landscape in the locality, etc. Second, the problems of rural areas are decreasing rural population, lack of young labors, and increasing gap of income an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On this situation, the new rural industrial policy is needed. Strategies are 1) to promote local-specialized industry through select and focus, 2) to find and industrialize local assets differently, 3) to exploit local resources for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4) to improve local investment conditions and attract and localize more businesses, 5) to make local industrial networks through industrial clusters, and 6) to introduce block grant system and partnership between agriculture and other industries. On new industrial policy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s on consultation and evaluation. The local governments make their own development plans of rural industries, and develop the endogenous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based on local assets because it is an important alternative to promote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rural areas. The policies to promote it in rural areas have been considered as a powerful instrument for a long time.

Researchers: Dong-phil Lee, Kyeong-duk Kim, Mi-ryung Song,  
Yong-lyoul Kim, Kwang-sun Kim, and Kyung-eun Choi  
Research period: 2008. 5 - 2008. 12  
E-mail address: ldphil@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 1
- 2. 주요 연구 내용 ..... 4
- 3. 연구범위 및 방법 ..... 6

### 제2장 농어촌지역 산업구조의 실태와 문제

- 1.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범위 ..... 9
- 2. 농어촌지역과 농어촌산업의 실태 ..... 14
- 3. 농어촌산업 육성의 필요성 ..... 37

### 제3장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 실태와 발전방향

- 1.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성과 ..... 41
-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문제 ..... 85
- 3.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방향 ..... 92

### 제4장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전략

- 1. 정책 환경 변화와 기초생활권 개발 구상 ..... 109
- 2.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전제조건 ..... 120
- 3. 농어촌 지역특화산업의 필요성 ..... 122
- 4.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구상(예시) ..... 126

### 제5장 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 1. 농어촌산업 사례분석 개요 ..... 154
- 2. 중소도시 연계형 군지역의 농어촌산업: 증평군 인삼산업 ..... 157



3. 군지역의 선택과 집중전략: 고창 복분자 산업 .....	175
4. 도농복합시 지역의 농어촌산업: 상주 곳감산업 .....	196
5.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의 시사점 .....	210

## 제6장 농어촌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법

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	214
2.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241
부록1: 지역특화산업 선정 매뉴얼(예시) .....	260
부록2: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매뉴얼(예시) .....	272
부록3: 농어촌산업 지원정책사업 인벤토리 .....	297
부록4: 농어촌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표 .....	319
참고문헌 .....	324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국가별 농어촌지역의 인구 비중 .....	15
표 2- 2. 도·농 간 지역발전 실태 비교 .....	18
표 2- 3. 한국과 영국 농어촌의 산업구조: 종사자 비중 .....	21
표 2- 4. 4개 도의 군지역 지역내총생산 규모 변화추세 .....	22
표 2- 5. 4개 도의 지역별 GRDP 농림어업의 비중 변화추세 .....	22
표 2- 6. 사례지역 공무원들이 느끼는 농어촌산업의 문제점 .....	23
표 2- 7. 산업 및 지역별 고용구조 .....	25
표 2- 8. 전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현황 .....	27
표 2- 9. 일자리의 분포 현황과 비중 변화 간 교차분석 .....	30
표 2-10. 자원유형별 - 산업화 유형별 향토산업 .....	33
표 2-11. 농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	35
표 2-12. 공업단지 종류별 개발실태와 농공단지 비중 .....	36
표 2-13.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	40

### 제3장

표 3- 1. 시기별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 .....	43
표 3- 2.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실태: 2006년 말 기준 .....	45
표 3-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추진 실태: 2007년 말 기준 .....	46
표 3- 4.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현황: 2007년 말 기준 .....	47
표 3- 5.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	48
표 3- 6. 주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 .....	51
표 3- 7. 신활력지역 선정 현황 .....	60
표 3- 8. 신활력사업 유형별 분류(1기 기준) .....	61

표 3- 9. 신활력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	61
표 3-10. 향토산업의 유형별 사례 .....	64
표 3-11.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현황 .....	66
표 3-12.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	67
표 3-13.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	68
표 3-14. 소관 부처별 농어촌산업 지원 사업명 .....	72
표 3-15.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및 수립 범위 .....	74
표 3-16. 신활력지역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 사례 .....	78
표 3-17. 신활력지역의 지적재산권 확보 실태 .....	79
표 3-18. 지역별 향토산업 실태 .....	80
표 3-19. 농어촌산업정책의 주요 내용별 평가 .....	83
표 3-20. 농어촌산업정책의 주요 지원수단별 평가 .....	84
표 3-2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전략별 사업 분류 .....	86
표 3-22.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간 사업내용 비교 .....	87
표 3-23. 증평균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기업의 지역 후방연계 .....	89
표 3-24. 향토자원의 유형 .....	98
표 3-25. 농어촌지역 일자리 증감에 대한 산업부문별 영향 .....	100

#### 제4장

표 4- 1. 지역개발방식의 비교 .....	112
표 4- 2.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 포괄보조 사업 ..	116
표 4- 3.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 .....	117
표 4- 4.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	117
표 4- 5.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할일 .....	121
표 4- 6.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급한 과제 .....	127

#### 제5장

표 5- 1. 증평균 산업구조 .....	160
------------------------	-----

표 5- 2. 증평군 농업종사자 수 .....	160
표 5- 3. 증평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예산과 부서 간 협력 실태	162
표 5- 4. 증평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사업 추진체계 .....	163
표 5- 5. 증평군의 인삼재배 현황: 2006년 .....	164
표 5- 6. 증평군 인삼가공업체 및 종업원 현황 .....	164
표 5- 7. 증평군의 인삼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	169
표 5- 8. 증평군 유형별 기업의 지역 파급효과 .....	173
표 5- 9. 고창군의 인구 및 가구 .....	176
표 5-10. 고창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변화 추이 .....	177
표 5-11. 고창군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세 .....	178
표 5-12. 고창군의 세세분류별 산업 비중 .....	179
표 5-13. 고창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예산과 부서간 협력 실태 ..	181
표 5-14. 고창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사업 추진체계 .....	183
표 5-15. 고창군 농가 및 농가인구 .....	184
표 5-16. 복분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	185
표 5-17. 고창군 복분자 산업현황(2007년 기준) .....	185
표 5-18. 고창 복분자산업에 투입된 정부사업과 추진체계 .....	193
표 5-19. 상주시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	197
표 5-20. 상주시 산업구조 .....	200
표 5-21. 상주시 농업종사자 수 .....	200
표 5-22. 상주시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	202
표 5-23. 상주 곱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	206

## 제6장

표 6- 1.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방향 .....	217
표 6- 2.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	222
표 6- 3. 계획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	229
표 6- 4. 발전전략별 주요 내용(안) .....	231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 1.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연구의 구성 .....	7
------------------------------------	---

### 제2장

그림 2- 1. 농어촌산업의 범위 .....	14
그림 2- 2. 시·군별 인구 증감 추세 .....	16
그림 2- 3. 대학교육 이상 학력소유자의 농어촌지역 분포비율 .....	17
그림 2- 4. 도·농 간 소득격차 변화 추이: 1995~2006 .....	19
그림 2- 5. 고용으로 본 농어촌의 산업구조 .....	20
그림 2- 6. 우리나라 농가의 계절별 노동 투하량 .....	24
그림 2- 7.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분포 및 일자리 증감율 .....	29
그림 2- 8. 산업부문별 특화도의 지역 분포 .....	31
그림 2- 9. 향토자원의 지역별 분포 .....	33
그림 2-10.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 구성 .....	37

### 제3장

그림 3- 1. 산업의 가치사슬 일반모형 .....	52
그림 3- 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ASP 모델 .....	58
그림 3- 3. 향토산업의 개념 구성 .....	63
그림 3- 4. 농촌활력증진계획의 기본 개념 .....	75
그림 3- 5.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88
그림 3- 6. 농어촌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	94

**제4장**

그림 4- 1. 사업추진 체계 개편구상(안) ..... 112  
 그림 4- 2. 지역자원의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승화를 위한 절차 ..... 120

**제5장**

그림 5- 1. 증평군의 지리적 위치 ..... 158  
 그림 5- 2. 증평군 인삼산업의 구조 ..... 165  
 그림 5- 3. 증평 인삼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 166  
 그림 5- 4.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구조 ..... 187  
 그림 5- 5. 고창 복분자 산업클러스터의 구조 ..... 188  
 그림 5- 6. 고창군 복분자산업관련 중앙정부사업 활용 흐름도 ..... 190  
 그림 5- 7. 고창군 지역특산업지원팀 업무 구성도 ..... 191  
 그림 5- 8. 상주 꽃감산업의 구조 ..... 203  
 그림 5- 9. 상주 꽃감 산업클러스터의 구조 ..... 204  
 그림 5-10. 상주 꽃감산업 육성 추진 체계 ..... 207

**제6장**

그림 6- 1. 지역개발계정사업의 추진 프로세스 ..... 215  
 그림 6-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프로세스 ..... 220  
 그림 6- 3.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체계 ..... 232  
 그림 6- 4. 산업 관련 법률 체계도 ..... 250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

#### 1.1. 연구의 필요성

##### □ 농어촌산업 개발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

- 최근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 과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별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기초생활권정책으로 통합·조정되고 있음
- 권역별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들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군으로 통합되고, 개별사업별로 지원되던 사업비도 통합되는 정책군에 따라 포괄보조형태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한 시점임

□ 과거 산업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산업 불균형 해소책 필요

-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전략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간적 표출이 성장거점전략(growth pole strategy)임
- 우리의 공업화는 대도시 위주의 경공업과 일부 거점지역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동남해안 벨트에 집중되었음
- 이와 같은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주었지만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크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방지책 필요

-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인 이상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78%임
-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수준의 95% 이상이었으나 1995년 이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2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한 농가소득은 약 73%이였음

□ 농어촌지역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심화 방지 필요

-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의 물결은 농가인구의 대량 이동을 발생시키면서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와 가구원수의 감소, 영농 승계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농가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음. 그 결과 농어촌의 인



구 과소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

- 행정구역상 읍·면부를 합한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5%에 머물렀음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소득기반의 붕괴, 열악한 교육·의료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전형적 농어촌지역인 면(面)부의 인구비중은 1990년 17.3%에서 2005년 10.2%로 크게 감소하였음
- 농가인구의 경우 역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0.8%에서 2005년 7.1%로 급격히 감소하여 농가인구 수가 지난 10년간 29.3% 감소하였음
- 기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 재편을 통한 농어촌산업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도모 필요
  -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은 농외소득 창출이라는 목표에 국한되어 시행됨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였고, 여러 관련 사업들이 종합적인 전략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따라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추진체계가 요구됨
  - 최근 농어촌산업정책은 농촌활력증진계획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초기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부처별 관련 정책들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다양한 농어촌산업정책들이 지역경제 발전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1.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 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어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1)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정책의 범위,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들의 추진 실태와 문제, (3)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4)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5)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2. 주요 연구 내용

-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의의
  - 농어촌산업의 개념
  - 농어촌산업의 범위
  - 농어촌산업의 의의

- 농어촌산업의 구조와 실태 및 문제
  - 농어촌산업 구조의 실태
  - 농어촌산업 구조의 문제점
  
-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 농어촌산업 관련 주요 정책추진 현황
  - 농어촌산업 지원정책의 문제
  - 농어촌산업정책의 발전 방향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 정책환경변화와 기초생활권 개발 구상
  - 농어촌산업 육성 전략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 충북 증평군 인삼산업
  - 전북 고창군 복분자산업
  - 경북 상주시 곱감산업
  
-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
  - 농어촌산업 육성 사업체계의 개편 방향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 3. 연구범위 및 방법

#### 3.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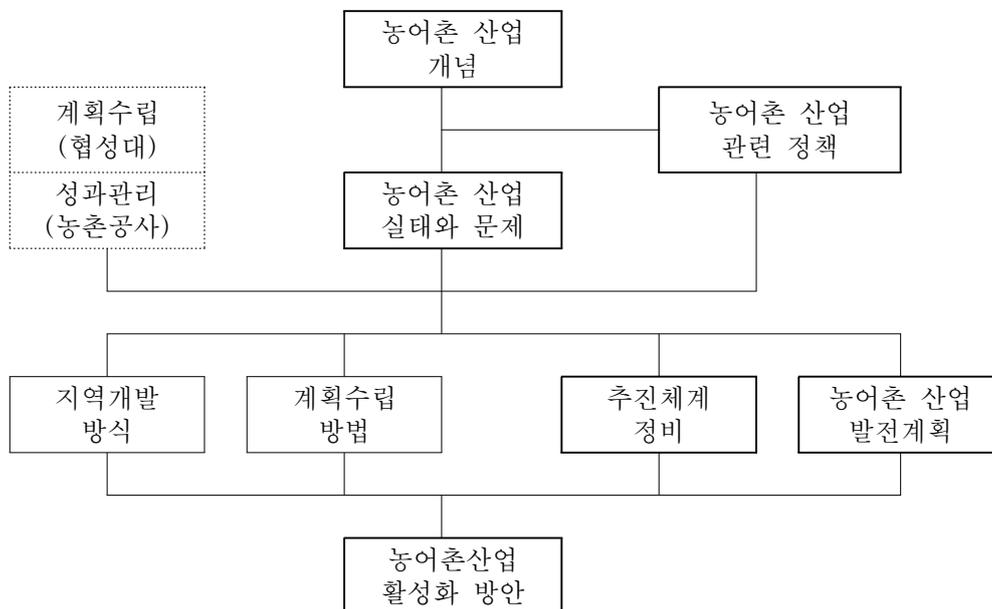
- 이 연구는 농어촌산업 개념에 의해 설정된 농어촌(읍·면 단위) 지역의 농림수산물, 부존자원, 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대상으로 함
-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 지역 농식품산업(1+2+3차, 1+2차, 1+3차, 2+3차 산업 등 애그리비지니스), 농촌관광, 향토산업, 농촌공업 등 농어촌지역의 산업활동 중 비농업 활동
  -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은 입지정책, 농어촌 및 지방산업 육성정책(조세 및 금융지원, 유통지원, 연구개발, 규제완화 등), 인력양성 및 수급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정책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둠

#### 3.2. 연구방법

- 선행연구
  - 농어촌산업의 개념
  -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
- 2차 자료 분석
  - 농어촌산업의 실태와 문제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이용
- 설문조사
  - 사례연구 대상지인 상주시, 고창군, 증평군에 속한 군청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119명 대상
- 사례연구
  - 상주시, 고창군, 증평군 대상으로
    - ① 농어촌산업 추진 실태 파악
    - ②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 ③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적용 가능성 조사

그림 1-1.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연구의 구성



- 전체 연구과제 중 (1) 「지역특화산업육성법제정(안)」 검토(경희대 오준근 교수), (2) 사례지역 농어촌산업발전 계획수립 및 매뉴얼 작성(한국농촌공사

박동진 박사)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 이 밖에 지역개발계획제도정비(협성대 이병기 교수팀) 및 S/W 중심 농촌 산업정책의 성과관리방안 연구(한국농촌공사 이석주 박사팀) 등 관련 연구들이 함께 추진됨

## 제 2 장

### 농어촌지역 산업구조의 실태와 문제

#### 1.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범위

##### 1.1.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범위

###### □ 기존 연구의 농어촌산업 개념

- 농어촌산업(rural industries)은 1차 산업 이외에 농어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공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로 정의될 수 있으나, 정책적 필요성의 증대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되어 왔음
  - 이들 다양한 농어촌산업의 개념은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부문들, 주로 농산업 및 가공부문과 연관 서비스업에 한정되고 있음
  - 농업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후방으로 연계된 농업 투입재 산업과 농업경영지원산업, 그리고 전방으로 연계된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농업생산물

유통업 및 무역업을 포함(김민철, 2004)

- 농업원료(agricultural raw materials), 임산원료(forestry raw materials), 또는 지역농업시장(local agricultural markets)과 근접 입지할 때 이점을 갖게 되는 산업들로 정의(Robock, 1952)
  - 농업(agriculture), 상업적 어업(commercial fishing), 임업 및 벌목(forestry and logging), 농업에 대한 서비스(services to agriculture) 등 크게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는 산업(Queensland Government, 2005; 2008)
- 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모든 2·3차 산업을 포함
- 농어촌지역에 위치하는 일체의 제조업을 포함하는 개념(최양부·김형모, 1980)
  - 지역의 부존자원인 관광개발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는 일체의 활동(유승우·민상기, 1997; 박시현 외, 2002) 또는 농촌관광사업(김정호 등, 2001; 최수명, 2003)을 포괄

#### □ 협의 및 광의의 농어촌산업 개념의 문제

- 협의의 농어촌산업 개념의 문제
- 협의의 농어촌산업은 실제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산업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농어촌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가 매우 제한적임
  -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도농통합시와 군) 제조업 부문 일자리에서 농림수산물가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불과하며, 전체 3차 산업 중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 음식 및 숙박업,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 등 농어촌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의 비중 또한 13.2%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어업 중심의 생산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



성 증가 또한 제조업과 비교시 크게 낮음

- 협회의 농어촌산업을 주로 구성하는 향토산업, 지연산업 등은 일반적으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고, 농어촌지역에서의 자본, 인력, 기술, 기업가 등의 부족으로 산업규모가 발달하는 데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 광의의 농어촌산업 개념의 문제
  - 제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유치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환경의 변화 시 급속한 일자리 감소라는 위협이 상존하는 구조적 취약점 존재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317개 농공단지 4,516개 공장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총 116,191명으로 이중 현지 시·군민의 고용비율이 62.5%에 그치고 있음<sup>1</sup>

## 1.2. 본 연구의 농어촌산업 개념과 범위

### □ 내생적 발전과 농어촌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 포괄

- 협회의 농어촌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내생적 산업발전 도모
  - 협회의 농어촌산업은 향토산업, 지연산업 등과 같이 지역 고유의 자원을 산업화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지역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지님
  - 따라서 해당 농어촌지역 기반 산업으로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

<sup>1</sup>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장이 입주하지 않은 공단, 그리고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단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농공단지는 359개임

고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장점을 지님

- MacKinsey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중 70% 이상이 외부 기업의 유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내생적으로 성장해온 기존 사업들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MacKinsey & Company, 1994)

○ 광의의 농어촌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어가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 제조업이 농어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01년 기준 일반 제조업이 농어촌지역 주민소득의 1/4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ERS, 2008)
  - 농어촌은 임금과 토지비용 등의 일부 입지요소들에 있어 도시에 비해 기업들에 좋은 조건을 제공
- 우리 농어촌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의 32.1%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 (2005년 기준)
- 광의의 농어촌산업 개념에는 농어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 또한 포함
- 농어촌 관광과 관련된 활동들도 농어촌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관광활동과 관련이 깊은 관광·숙박시설운영업과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지난 10년 간 고용이 농어촌지역(도농통합시와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내생적 산업발전과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어촌산업의 개념 채택

- 농어촌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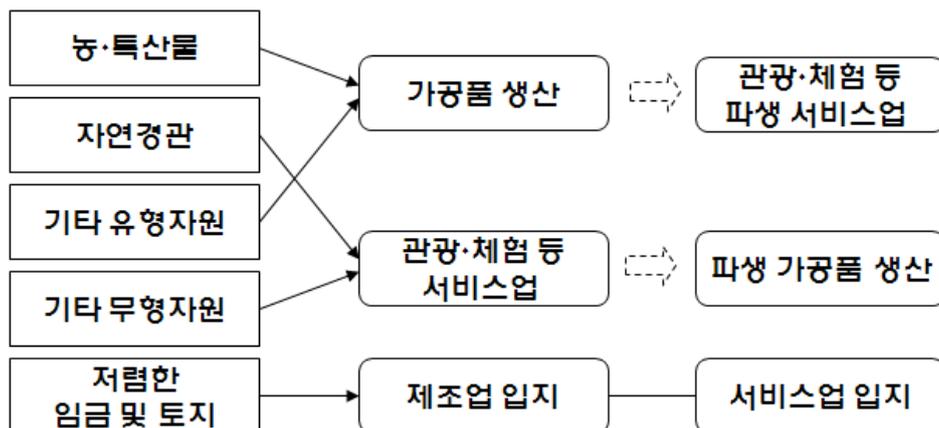
#### □ 농어촌산업의 범위

- 농특산물의 가공 및 관련 서비스업
  -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과 해당 농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 관광, 체험 활동 등
  - 1·2차 산업의 융합, 1·3차 산업의 융합, 또는 1·2·3차 산업의 융합
  - 구례 산수유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순창 장류산업 등
- 자연경관, 생태자원, 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등 서비스업
  - 영월 레포츠(레프팅)산업, 평창군 그린 투어리즘, 함평 나비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포츠 등
  - 기타 공원, 휴양림 등
- 기타 유형자원(유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농특산물은 아니지만 진흙이나 황토와 같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2차 또는 3차 산업으로 발전
  - 보령 머드산업, 보은 황토산업 등
- 기타 무형자원(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지역의 오랜 전통 문화나 전래 기술, 농어촌의 문화적 특성 등의 산업화
  -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으로 발전
  - 안동 간고등어산업, 남원 목공예산업 등
-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촌성(rurality)과 지역성(locality)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토지비용, 고용의 유연성 등과 같은 입지조건으로 인해 농

## 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산업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농어촌산업에는 <그림 2-1>과 같이 농어촌지역의 농특산물과 자연경관, 기타 유·무형의 자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과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품 생산과 같은 2차 산업, 관광·체험 등의 3차 산업, 그리고 이들이 융합된 형태의 산업과 지역 내로 유치된 외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

그림 2-1. 농어촌산업의 범위



## 2. 농어촌지역과 농어촌산업의 실태

### 2.1. 농어촌지역의 실태

#### □ 농어촌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

- 농어촌지역 인구(읍·면 인구)의 전국 인구 대비 비중은 2005년 18.5%임  
- 1990년 25.6%이던 것이 1995년에는 21.5%, 2000년에는 20.3%, 그리고

2005년에는 18.5%까지 감소함

- 특히 면부의 인구 비중은 1990년 17.3%에서 2005년 10.7%까지 감소
  - 1990~2005년 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은 0.6%인데 비해 도시지역(동부)은 1.2%, 농어촌지역(읍·면부)은 -1.6%를 나타냄
  - 농어촌지역 중 읍부 인구는 동기간 연평균 0.6%의 증가 추세를 보였던 반면, 면부 인구는 연평균 -2.9%의 감소추세를 보임
- 우리 농어촌지역의 인구분포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음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농어촌지역 인구 비중이 20~30%대에 이르고 있음
  - 우리 농어촌지역은 인구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아일랜드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OECD, 2007)

표 2-1. 국가별 농어촌지역의 인구 비중

단위: %

구 분	한국 (‘05)	프랑스(‘99)		영국 (‘04)	미국(‘00)			일본 (‘95)
		도시체 기준 농촌	도시권 구분 기준 농촌		비도시 지역 농촌	비밀집도시 지역 농촌	비대도시권 카운티 농촌	
농촌인구 비중	18.5	24.5	23.3	19.3	21.0	31.8	17.4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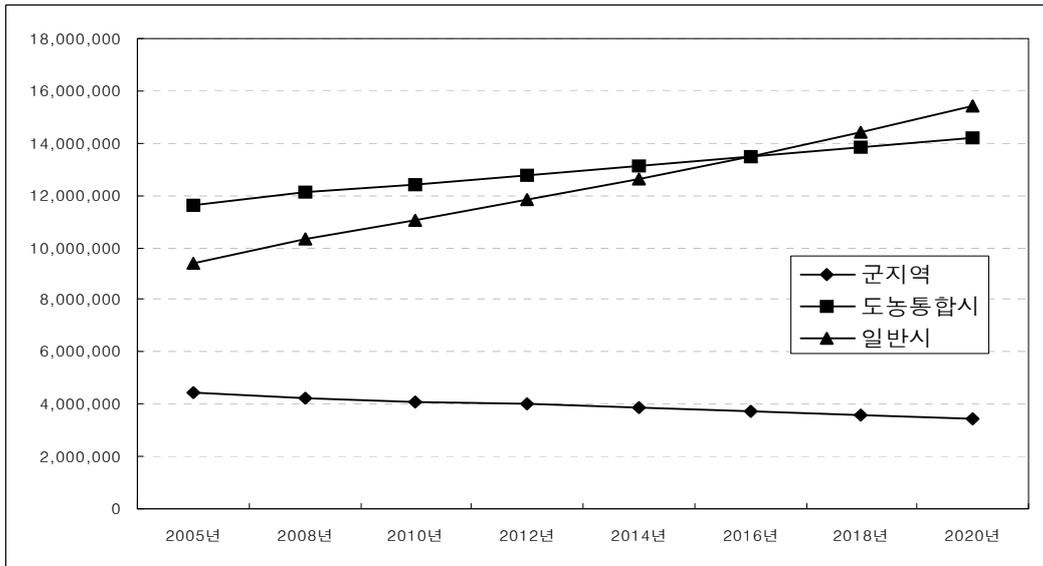
주: 개별 국가의 지역구분 기준에 따라 측정된 수치임

자료: 농업총조사(2005), 황수철(2005), 박경 외(2008),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2007), 미국 농림부의 Economic Research Service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등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 경 농어촌지역 인구 비중은 약 1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5년(18.5%) 대비 3.5%의 인구 감소분은 거의 대부분 농가인구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인구증감 추세를 각각 외삽(外插)하였을 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평균하여 2020년의 인구를 추정한 결과임

그림 2-2. 시·군별 인구 증감 추세

단위: 명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일반시(25개)의 경우 2020년의 인구가 2005년 대비 64.3% 증가하고, 도농통합시는 동 기간 2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군지역은 동 기간 -22.4%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 ○ 농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 2000년 140개 농어촌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평균 12.7%였지만 2005년에는 1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초과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의 대부분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005년 29.3%에 이르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감소 지속

-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40개 농어촌 시·군 평균이 61.8%였지만 2005년에는 58.2%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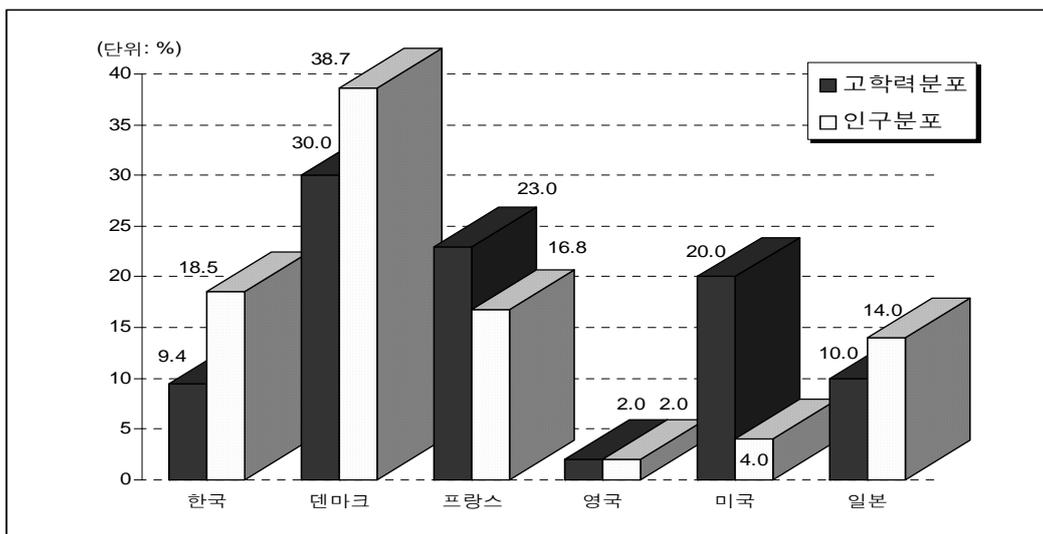
□ 양질의 인력 부족

○ 농어촌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쓸 만한 고급인력이 부족한 것이 농어촌지역임

- 3개 사례지역(증평·고창·상주)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어촌산업의 문제점으로 ‘양질의 노동력 부족’(18.5%)이 ‘농어업 관련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59.7%)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음

그림 2-3. 대학교육 이상 학력소유자의 농어촌지역 분포비율

단위: %



주: 한국의 경우 읍·면·동 기반의 6세 이상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기준 결과이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TL-3 또는 NUTS-3 수준의 PR지역 기반의 2001년도 기준임

자료: OECD(2005; 2007), EU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07)

- 우리 농어촌의 경우 고학력자 분포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우리의 경우 9.4%임. 이는 영국(2.0%)보다 높고 일본(10.0%)과는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영국의 농어촌 인구비중이 2.0%이고 일본은 14.0%임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의 인구비중에 비해 고학력자의 농어촌지역 분포 비중은 우리 농어촌이 매우 낮은 편임

□ 도농 간 발전격차와 소득격차

- 교육, 생활환경, 의료, 문화, 주거 등 주요 지역발전지표에 있어 도·농 간 격차가 매우 큼

표 2-2. 도·농 간 지역발전 실태 비교

단위: 명, 개, %

구 분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군		도농통합시		대도시		일반시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교육	교원 1인 당 학생 수	39.7	17.4	53.6	14.0	25.3	21.6	26.2	22.2
	시설학원 1개 당 강사 수	1.5	1.8	2.6	2.4	2.4	2.7	2.4	2.6
	km <sup>2</sup> 당 유치원 수	0.038	0.036	0.089	0.095	0.584	0.527	0.632	0.633
	km <sup>2</sup> 당 초중고등학교 수	0.055	0.054	0.101	0.113	0.638	0.692	0.541	0.629
생활환경	상수도 보급율	46.8	55.0	69.8	78.0	96.3	97.9	96.3	98.1
	하수도 보급율	14.9	36.6	48.4	68.3	80.4	89.5	85.8	93.7
	주민 1천명 당 오염물질배출시설수	4.1	4.7	4.4	5.2	0.6	1.0	1.7	1.4
의료	의료인 1인 당 주민 수	437.0	360.5	255.7	187.1	175.6	133.6	230.1	166.5
	km <sup>2</sup> 당 의료기관 수	0.064	0.077	0.268	0.367	4.585	5.709	3.034	4.227
문화	주민 1천명 당 여가시설 수	0.11	0.14	0.05	0.06	0.05	0.05	0.05	0.09
주거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35.9	38.3	22.0	23.3	14.5	18.0	11.2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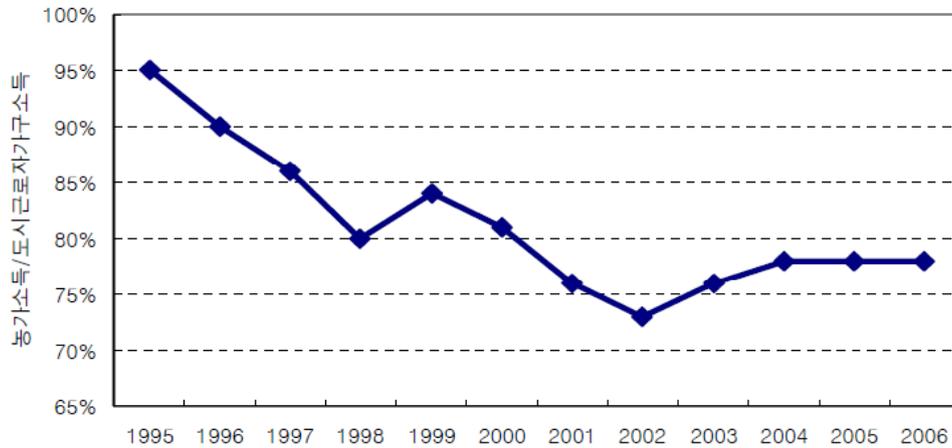


- 생활 및 주거환경, 의료·문화 등의 복지환경은 농어촌지역에서도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도·농 간의 큰 격차가 여전히 존재
- 교육환경의 경우에는 도농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발전 격차는 도·농 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내에서 군과 도농통합시 간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78% 수준임
- 1990년대 중반에는 동 비율이 95% 수준 이상이었던지만 1995년 이후 도·농 간 평균소득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에는 동 비율이 73%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소폭 증가

그림 2-4. 도·농 간 소득격차 변화 추이: 1995~2006



자료: 농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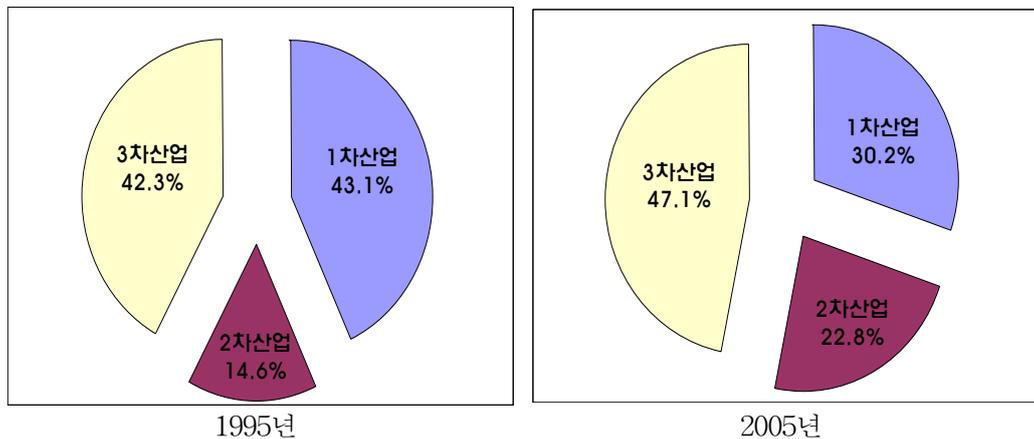
## 2.2. 농어촌지역의 산업구조와 실태

### □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

#### ○ 농어촌지역의 높은 농림어업 부문 비중

- 농림어업은 농어촌 전체 고용의 30.2%에 해당하는 205만개의 일자리 창출(2005년 기준)
- 이는 10년 전 43.1%인 229만명에 비해 감소한 것이지만 농림어업이 농어촌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 반면 2차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22.8%, 3차 산업은 47.1%로 나타남<sup>2</sup>
-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비교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

그림 2-5. 고용으로 본 농어촌의 산업구조



<sup>2</sup> 건설업은 경우에 따라 2차 산업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음

- 영국 농어촌의 경우 1차 산업의 고용비중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반면 2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13.6~15.7%를 나타내고 있고, 3차 산업 고용비중은 83.8~86.1%에 달해 농어촌지역도 이미 도시 못지않게 고도의 서비스경제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음(<표 2-3> 참조)<sup>3</sup>

표 2-3. 한국과 영국 농어촌의 산업구조: 종사자 비중

단위: %

구 분	산업별 종사자 비중(한국 '05, 영국 '04)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서비스업)		
한국	30.2			22.8			47.1		
영국	R-80	R-50	SR	R-80	R-50	SR	R-80	R-50	SR
	0.8	0.5	0.3	15.1	15.7	13.6	84.1	83.8	86.1

주: 1) 우리 농어촌 통계는 '사업체기초통계'에 집계되는 중분류 상의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부문 고용자와 '농업총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15세 이상 농업인구 중 연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들만을 집계하여 재구성하였음

2) 영국의 경우 Rural-80(R-80)/Rural-50(R-50)/Significant Rural(SR)의 농어촌 구분 순서대로 기재함(각 지역의 구분기준은 각주 참조)

자료: 농림부(2007a),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2006) 참조

#### ○ 농림어업의 낮은 생산성

- 농림어업부문은 타 산업부문에 비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지역내총생산

<sup>3</sup> 영국은 2005년 Defra에 의해 새로운 지역(Local Authority)구분을 도입했으며 이에 의해 농촌은 가장 좁은 정의로 Rural-80 지역에서부터 Rural-50 지역, 그리고 가장 광의의 농촌 정의인 Significant Rural 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가구 정도를 포함하는 매우 작은 지리적 단위로 농촌-도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세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Unitary Authority/Local Authority District(UA/LAD) 수준의 데이터를 간추려 활용하며, 이때 농촌은 Rural-80, Rural-50, Significant Rural(SR)로, 도시는 Other Urban, Large Urban, Major Urban으로 구분. 이 중 Rural-80은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 주거지나 마켓타운(market town)에 거주하는 지역(district), Rural-50은 인구의 50~80%가 농촌 주거지나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Significant Rural은 인구의 26% 이하, 또는 주민의 37,000명 이상이 농촌 주거지나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음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4개 도의 지역내총생산에서 각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4개도 평균, 일반시 평균, 도농통합시 평균, 군 지역 평균 모두에서 감소하였음
- 농림어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일반시 지역의 1/6 수준(약 17% 수준)에 머물고 있음(4개 도 기준)
  - 이마저 1998년 일반시 지역의 1/5 수준에서 더욱 축소된 규모임(<표 2-4> 참조)
- 농림어업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001~2003년 사이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연평균 1.7% 증가에 그쳤음(오영석·이진면, 2007)
  - 동 기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연평균 3.7%에 이름

표 2-4. 4개 도의 군지역 지역내총생산 규모 변화추세

단위: 백만원

구분	1998년	2000년	2005년
군지역	474,769	542,473	737,235
일반시 대비	19.5% 수준	17.5% 수준	17.1% 수준
일반시	2,436,439	3,102,619	4,320,246

주: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 자료임

표 2-5. 4개 도의 지역별 GRDP 농림어업의 비중 변화추세

단위: %

구분	1998	2000	2005	
일반시	0.7	0.7	0.6	
농어촌 지역	도농통합시	5.6	5.4	3.9
	군	20.5	18.2	14.3
4개 도	5.8	5.3	3.9	

주: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 자료임

-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농어촌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 증평군, 고창군, 상주시 3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농어촌산업의 문제점으로 ‘농어업 관련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음(59.7%)
  - 농어촌산업의 문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은 항목은 ‘양질의 노동력 부족’(18.5%)으로, 3개 사례지역 중 특히 고창군(30.0%)이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2-6. 사례지역 공무원들이 느끼는 농어촌산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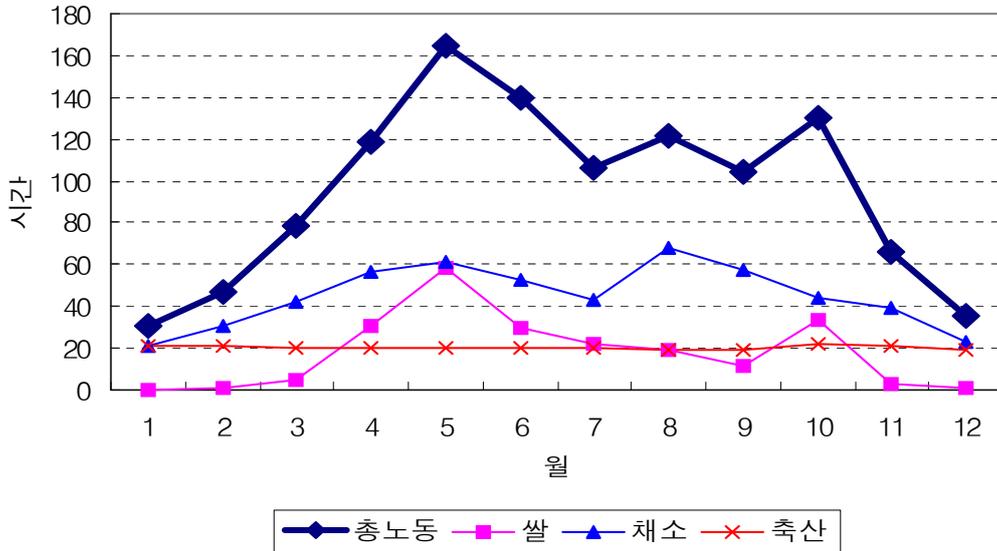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증평군	고창군	상주시	사례지역
<b>양질의 노동력 부족</b>	9 (16.4)	<b>6</b> <b>(30.0)</b>	7 (15.9)	<b>22</b> <b>(18.5)</b>
시장과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의 불리	7 (12.7)	2 (10.0)	1 (2.3)	10 (8.4)
교통, 통신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9 (16.4)	0 (0.0)	5 (11.4)	14 (11.8)
<b>농어업 관련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b>	<b>29</b> <b>(52.7)</b>	<b>12</b> <b>(60.0)</b>	<b>30</b> <b>(68.2)</b>	<b>71</b> <b>(59.7)</b>
기타	1 (1.8)	0 (0.0)	1 (2.3)	2 (1.7)
계	55 (100.0)	20 (100.0)	44 (100.0)	119 (100.0)

## □ 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취업구조

- 농어촌지역 고용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림어업은 노동의 특성상 계절적 유희노동력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취업구조를 지님
- 이러한 농림어업의 특성은 농가의 낮은 소득을 초래함은 물론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그림 2-6. 우리나라 농가의 계절별 노동 투하량



#### □ 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낮은 창업율

- 군지역의 경우 지난 10년 간(1995~2005) 사업체 증가율이 연평균 0.4%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창업활동이 극히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도농통합시는 연평균 3.1%, 일반시는 3.3% 증가하였음
  - 군 지역에서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전 산업 고용의 25.9%)은 사업체 수가 지난 10년 간 고작 1.4%(연평균 0.1%) 증가하였으며, 도소매 유통(전 산업 고용의 12.8%)의 경우 지난 10년 간 사업체 수가 오히려 18.5% 감소하였음. 단, 숙박 및 음식점업(전 산업 고용의 13.5%)의 사업체 수는 동 기간 동안 21.6%가 증가하였음
- 도농통합시는 신규 기업의 창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음
  - 반면 도농통합시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제조업 사업체 수가 42.5%,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36.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도소매 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10년 간 0.6% 감소)

표 2-7. 산업 및 지역별 고용구조

단위: 명, %

구 분	농어촌지역 (140개 시·군)		군지역 (88개 군)		도농통합시 (52개 통합시)		도시지역 (25개 일반시)	
	2005년	95-05 (%)	2005년	95-05 (%)	2005년	95-05 (%)	2005년	95-05 (%)
	농림어업	2,045,814 (30.2)	-10.6	1,141,240 (47.6)	-14.6	904,574 (20.6)	-4.9	93,496 (3.5)
·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12,366 (0.2)	64.2	7,968 (0.3)	95.7	4,398 (0.1)	27.0	3,038 (0.1)	102.0
광업	14,840 (0.2)	-24.4	7,574 (0.3)	-32.7	7,266 (0.2)	-13.3	2,935 (0.1)	66.5
제조업	1,530,537 (22.6)	102.0	329,020 (13.7)	43.7	1,201,517 (27.4)	127.2	563,014 (21.1)	53.0
○음식료품제조업	176,353 (2.6)	43.1	71,348 (3.0)	22.4	105,005 (2.4)	61.7	38,376 (1.4)	79.4
· 농림수산물가공	142,539 (2.1)	30.5	59,672 (2.5)	12.1	82,867 (1.9)	47.9	23,287 (0.9)	33.8
도소매업	614,392 (9.1)	9.6	163,323 (6.8)	-6.7	451,069 (10.3)	17.1	411,678 (15.5)	30.6
· 가공및비가공농축산물유통	40,991 (0.6)	68.6	9,953 (0.4)	72.0	31,038 (0.7)	67.5	29,252 (1.1)	103.0
숙박및음식점업	558,586 (8.2)	40.1	172,258 (7.2)	26.8	386,328 (8.8)	47.0	304,573 (11.4)	54.9
· 관광관련(음식·숙박)	373,738 (5.5)	49.0	125,875 (5.2)	37.1	247,863 (5.7)	55.9	186,262 (7.0)	67.5
운수업	215,510 (3.2)	58.1	49,608 (2.1)	7.9	165,902 (3.8)	83.6	140,870 (5.3)	117.2
· 여행및관련서비스업	6,753 (0.1)	-9.4	1,921 (0.1)	-25.9	4,832 (0.1)	-0.6	6,945 (0.3)	61.9
사업서비스업	136,333 (2.0)	147.4	22,105 (0.9)	68.6	114,228 (2.6)	172.0	148,153 (5.6)	267.9
· 연구개발기반분야	31,654 (0.5)	177.7	5,691 (0.2)	54.4	25,963 (0.6)	236.6	35,041 (1.3)	467.8
·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15,265 (0.2)	30.1	3,623 (0.2)	4.3	11,642 (0.3)	41.0	11,418 (0.4)	39.1
그 외 3차산업	1,668,998 (24.6)	52.0	514,304 (21.4)	28.5	1,154,694 (26.3)	65.4	997,616 (37.5)	86.8
합 계	6,785,010 (100.0)	56.0	2,399,432 (100.0)	23.6	4,385,578 (100.0)	72.5	2,662,335 (100.0)	68.8

주: 1) 농림어업 종사자는 농업총조사에 집계되는 15세 이상, 3개월 이상 농업종사자와 사업체기초통계에 집계되는 임업 및 어업 종사자를 합산

2)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조경수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3)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4)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중분류 상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낙농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음료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곡물 가공 제조업', '사료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5)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식품 도매업'을 의미

6) 관광(음식·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음식점'을 의미

7)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의미

8)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 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9)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

10)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11) 이상의 분류 기준은 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 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취업기회 부족

- 농어촌지역 중 도농통합시와 군지역 간의 일자리 분포 격차 심화
  - 1995~2005년의 10년 간 도농통합시 지역에서 발생한 2·3차 산업부문의 순고용증가량은 약 147만명으로 군 지역(약 25만명)보다 5.9배 정도 더 많음. 즉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2·3차 산업부문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도농통합시 지역에서 발생
  - 반면 군지역은 광업, 제조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서비스업, 그 외 3차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고용증가율이 도농통합시에 뒤지고 있음
  
- 농림어업 및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농어촌지역에서보다는 도시지역(일반시)에서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농림어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동 10년의 기간 동안 -14.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도농통합시 지역의 농림어업 종사자가 같은 기간 동안 -4.9%의 감소세를 보이고 일반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11.6%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관련 서비스업, 농림수산물가공,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 부문 역시 농어촌지역에서 보다는 도시지역(일반시)에서 증가율이 높았음
  
- 일자리는 있으나 실제 농어촌 주민들의 취업기회는 부족
  - 농어촌지역의 고용이 2·3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연간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실제로 증가된 일자리는 많지 않음
  - 실제 농업종사자 수의 감소를 고려하면 군 지역의 경우 지난 10년(1995~2005) 동안 군 당 평균 377개(연평균 37.7)의 일자리만을 창출한 것임



- 또한 고용 증가분이, 일자리가 창출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
  - 예를 들어 농촌지역 제조업 고용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 내 종사자 중 해당 군 지역 및 도농통합시에 거주하는 자의 비율이 각각 54.3%와 68.0%로, 일반시(8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일수록 일자리 증가와 주민의 취업기회 증가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취업기회 간 불일치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증평군의 관내 기업들 중 농공단지 입주업체 3개,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2개를 조사한 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전체 고용자의 평균 41.7%,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44.8%만이 증평군 주민들이었음
  - 나머지 종사자들은 청주시와 같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타 지역 주민들임
  -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해도 실제 지역 주민들의 취업기회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촌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음

표 2-8. 전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현지농가		현지주민	외지인	총고용
	현지농가	현지비농가			
군지역	8,329 (15.3)	21,291 (39.1)	29,620 (54.3)	24,895 (45.7)	54,515 (100.0)
도농통합시	6,653 (11.8)	31,751 (56.2)	38,404 (68.0)	18,066 (32.0)	56,470 (100.0)
일반시	70 (1.3)	4,551 (87.4)	4,621 (88.8)	585 (11.2)	5,206 (100.0)
전국	15,052 (13.0)	57,593 (49.6)	72,645 (62.5)	43,546 (37.5)	116,191 (100.0)

주: 일반시의 농공단지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구지역 농공단지 포함

-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촌을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주민들의 29.6%는 이촌 이유를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송미령 외, 2007)

#### □ 일자리 창출의 공간적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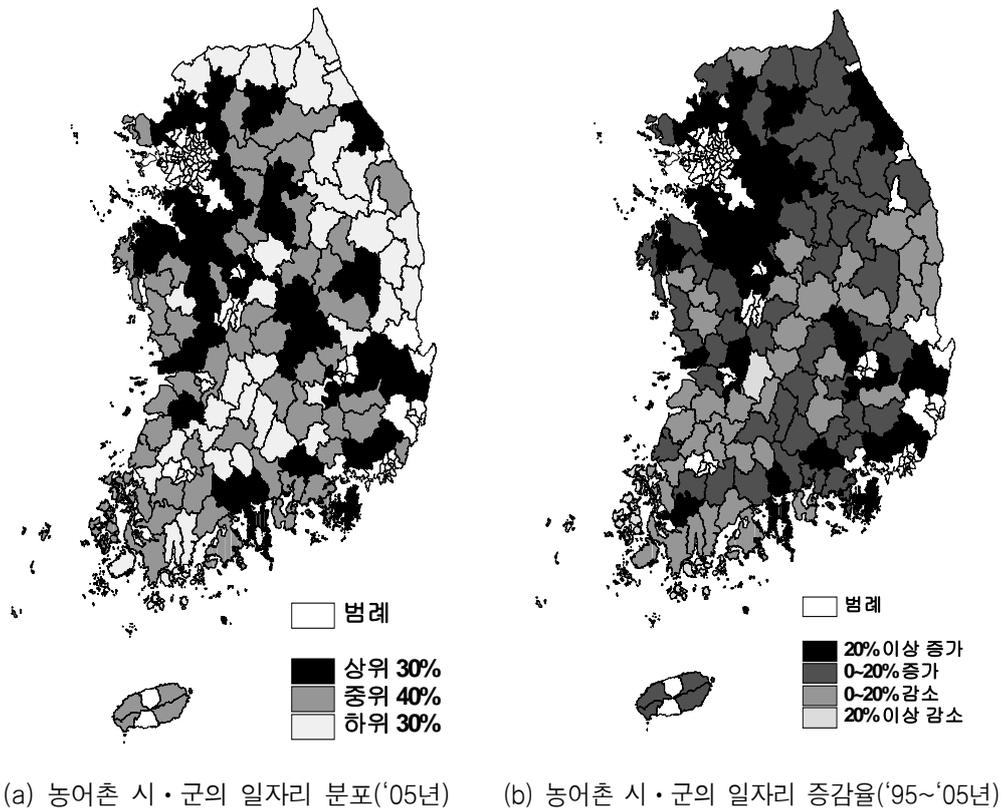
-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는 대부분 도농통합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그림 2-7>의 (a) 참조)
  - 2005년 기준으로 140개 농어촌 시·군을 일자리 분포 규모에 따라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한 결과 상위 30%에 속하는 41개 시·군 중 군은 3개 지역(7.3%)만이 포함되고 있는 반면<sup>4</sup>, 하위 30%에 속하는 41개 시·군 중에는 군 지역이 무려 40개 지역(97.6%)이나 포함되고 있음<sup>5</sup>
  - 농어촌지역의 시·군을 대도시, 지방거점도시, 중소도시 등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분할 경우 일자리 분포 규모 상 상위 30%에 속하는 41개 지역 중 도시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원격지에 해당하는 ‘자체생활권’ 지역은 5개 지역만이 포함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분포가 도시와의 연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sup>6</sup>

4 청원군, 달성군, 당진군의 3개 군이 이에 해당

5 실제 분석은 자료의 미비로 용인시, 마산시, 울주군 3개 지역을 제외한 137개 농촌 시·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6 송미령 외(2007)는 통근·통학권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 단위 지역을 대도시연계권, 지방거점도시,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이중 ‘대도시연계권’은 중심도시 인구 규모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통근·통학 연계권역임. ‘지방거점도시 연계권’은 중심도시 인구 2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미만인 곳은 ‘중소도시 연계권’으로 구분함.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자체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음

그림 2-7.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분포 및 일자리 증감율



- 기존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 일자리 증가도 높게 나타나 일자리 분포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음(표 <2-9> 참조)
  - 일자리 분포에 따라 농어촌 시·군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한 후 이를 최근 10년 간(1995~2005년) 각 시·군의 일자리 증감율과 교차분석한 결과 상위 30% 지역은 10년 간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하위 30% 지역은 반대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일자리의 분포 현황과 비중 변화 간 교차분석

단위: 명, %

구 분		20% 이상 증가	0~20% 증가	0~20% 감소	20% 이상 감소	계
일자리 분포 상위 30% 지역	빈도	29	10	2	0	41
	비중	70.7	24.4	4.9	0.0	100.0
일자리 분포 중위 40% 지역	빈도	9	20	25	1	55
	비중	16.4	36.4	45.5	1.8	100.0
일자리 분포 하위 30% 지역	빈도	2	10	27	2	41
	비중	4.9	24.4	65.9	4.9	100.0
농어촌지역	빈도	40	40	54	3	137
	비중	29.2	29.2	39.4	2.2	100.0

주: 1) 일자리 분포 통계는 2005년 기준이며, 비중 변화는 1995~2005년의 10년 기준임

2)  $\chi^2=59.722$ ,  $p=0.000$

○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부문의 차이 존재(<그림 2-8> 참조)<sup>7</sup>

- 산업을 크게 1·2·3차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 지역별로 특화된 부문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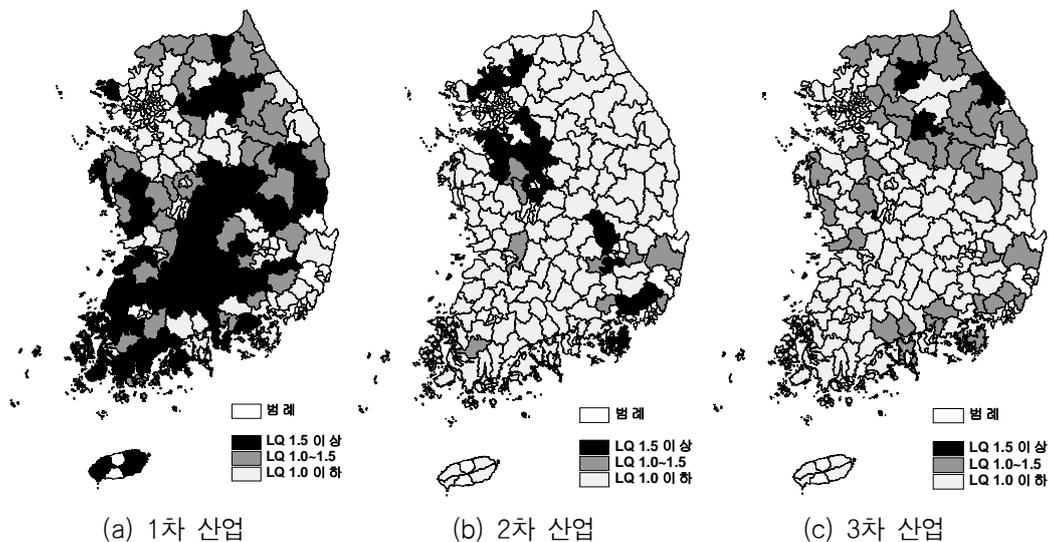
<sup>7</sup> 입지계수(LQ) 분석은 특정 지역의 상대적인 산업 특화도를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어 온 기법으로, 만약 A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가 1.0 이상이면 i산업은 A지역에 특화된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산업의 특화도를 입지계수 1.2 이상 또는 1.5 이상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140개 농어촌 시·군 중 자료가 부족한 3개 시·군을 제외한 137개 시·군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1·2·3차 산업의 특화도를 분석함. 산업특화의 기준은 입지계수 1.5 이상으로 설정함

$$\text{입지계수}(LQ) = \frac{\frac{A\text{시·군의 } i\text{산업 종사자수}}{A\text{시·군의 전산업 종사자수}}}{\frac{\text{농어촌지역의 } i\text{산업 종사자수}}{\text{농어촌지역의 전산업 종사자수}}}$$

<sup>8</sup> 1차 산업은 농림어업 모두를 포함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 상 농업부문만 포함하였음

- 2차 산업(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청주 및 대전 주변의 일부 충청도 지역, 구미·칠곡·달성 등 대구광역시 인근지역,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부산광역시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
- 3차 산업에 특화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춘천·강릉·원주와 같이 산업발달이 미약한 강원권의 중심 소비도시들이 이에 포함되고 있음
- 나머지 농어촌 시·군은 농업부문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 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농어촌의 대부분이 여전히 농업부문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

그림 2-8. 산업부문별 특화도의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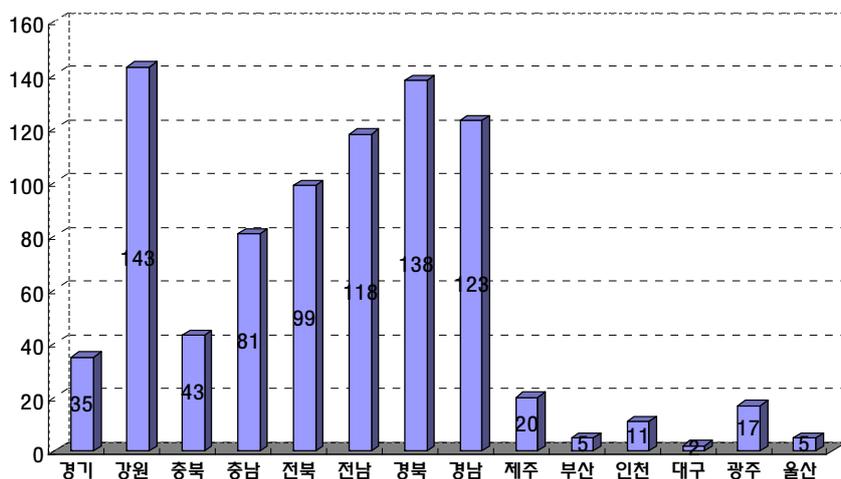


### 2.3. 농어촌산업의 실태

- 농어촌산업은 앞서 제시했던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직접적인 농림어업 활동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의 모든 산업을 의미

- 따라서 앞의 <표 2-7>의 산업부문들 중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이 이에 포함될 것임
  - 광의의 개념에 따른 농어촌산업 총 종사자는 2005년 기준 4,739,196명으로 나타남. 이중 군지역은 1,258,192명, 도농통합시는 3,481,004명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산업의 범위를 협의의 농어촌산업과 광의의 농어촌산업 사이에서 주로 최근 정책적 대상이 되는 산업활동으로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
- 즉 농림수산물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복합화된 산업활동(향토산업), 농어촌지역의 자연·생태자원이나 문화·전통·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부문, 그리고 외부에서 유치된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농어촌산업을 분석하고 있음
- 이들 농어촌산업의 현황은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농림수산물부의 핵심적인 농어촌산업 육성시책과 일부 타부처 시책들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인 향토산업, 농어촌 체험관광, 그리고 농공단지 입지기업이 이에 해당함
  - 그러나 향토산업에는 농어촌 체험관광 부문도 상당 부분 포함되므로 농어촌산업의 현황 분석에는 중복 파악의 문제를 피하기 어려움
- 향토산업의 실태
- 향토산업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약 840개 품목의 향토자원이 분포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 이 중 강원도에 17.0%, 경상북도에 16.4%, 경상남도에 14.6%, 전라남도에 14.0%가 분포하고 있음(농림정책리모델링 위원회, 2007)

그림 2-9. 향토자원의 지역별 분포



- 농림수산물부의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인 162개 향토산업 주요 품목을 향토자원의 유형과 산업화 유형으로 구분하면 <표 2-10>와 같음

- 산업화의 대상인 향토자원을 농림수산물, 문화·전통·역사자원, 자연·생태환경자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함
- 향토자원의 산업화 유형은 1·2·3차 산업 간 복합화 하는 것이 추세이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1·2·3차 산업으로 구분함

표 2-10. 자원유형별 - 산업화 유형별 향토산업

단위: 개, (%)

자원유형 \ 산업화 유형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총 합계
농림수산물	49(30.2)	64(39.5)	15(9.3)	128(79.0)
문화·전통·역사	0(0.0)	4(2.5)	16(9.9)	20(12.3)
자연·생태환경	1(0.6)	3(1.9)	10(6.2)	14(8.6)
총 합계	50(30.9)	71(43.8)	41(25.3)	162(100.0)

주: 신활력 1기의 70개 사업과 2기의 신규 신규 13개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2007년 지원 대상 19개 사업, 2008년 대상 30개 사업, 2009년 30개 등 사업 총 16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그 결과 농림수산물 2차 산업화 하는 가공부문(39.5%)이 향토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의 1차 산업화(명품화·브랜드화 등), 문화·전통·역사자원의 3차 산업화(관광·서비스산업화)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향토산업의 경제적 기여는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2004)에 의하면 434개 품목의 향토자원이 산업화되었음
  - 이로 인해 약 1,600개의 사업체가 창출되었으며, 44,000명 이상이 고용되고, 연간 40,56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이는 광의의 개념에 따른 농어촌 산업 종사자 수(4,739,196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 농어촌 관광 부문의 실태

- 농어촌의 소득원 다각화를 위해 도농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0년대 들어 농어촌 마을 단위의 체험관광이 증대하여 왔음
  - 이에 따라 농촌을 찾는 방문객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표 2-11>과 같이 대표적인 마을 단위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농식품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어촌체험마을(농식품부), 팜스테이(농협) 등 4개 유형 마을의 방문객 수 증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이들 4개 유형 마을의 방문객 수는 2002~2008년 사이 약 13배 증가했으며(연평균 216.2% 증가), 동 기간 1개 마을 당 방문객 수도 평균 7,896명에서 15,66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연평균 16.4% 증가)
  - 특히 어촌에 대한 체험관광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촌 관광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표 2-11. 농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단위: 명, (개)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	157,500 (18)	295,400 (44)	626,500 (76)	1,037,700 (123)	2,359,000 (364)
농촌전통테마마을	12,581 (9)	55,780 (27)	133,091 (45)	259,796 (66)	1,270,000 (170)
어촌체험마을	414,000 (17)	2,528,000 (28)	5,030,000 (40)	5,445,000 (58)	6,105,000 (95)
팜스테이마을	250,000 (62)	360,067 (124)	620,000 (152)	938,743 (199)	1,918,000 (279)
4개 사업 전체	834,081 (106)	3,239,247 (223)	6,409,591 (313)	7,681,239 (446)	11,652,000 (908)

주: 1) 팜스테이 마을은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과 같은 정부 지원 관광마을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2) ( ) 안은 농촌관광마을로 지정된 누적마을수임

3) 각 부처 또는 담당기관에서 집계한 자료로서 공식 통계자료는 아님

- 우리나라 전체 농어촌 관광객 수에 대한 집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 경 3천 1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박시현 외, 2003)

- 이 경우 농어촌 관광은 ‘회사일, 집안일, 친구간의 일 등이 아닌 휴가나 여가로 농촌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농촌지역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대중관광을 제외한 비교적 협의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4개 유형의 농어촌체험마을 관광이 전체 농어촌관광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 영국(잉글랜드)의 경우 농어촌 관광객 수가 2004년 7억 7천만 명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농어촌 관광 시장은 여전히 미발달된 상태임 (Research International Ltd., 2006)
- 그러나 이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농어촌 관광이 향후 우리나라 농어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실태

-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큼
  - 2007년 말 기준으로 농공단지를 통해 농어촌지역에 4,516개 기업(가동업체)이 유치되어 116,1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중 현지 시·군 주민에게 돌아간 비중이 62.5%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2005년도에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면, 농어촌산업 성장에 대한 농공단지의 기여가 충분한 것은 아님

표 2-12. 공업단지 종류별 개발실태와 농공단지 비중

단위: 개, 천㎡, 명, 억원,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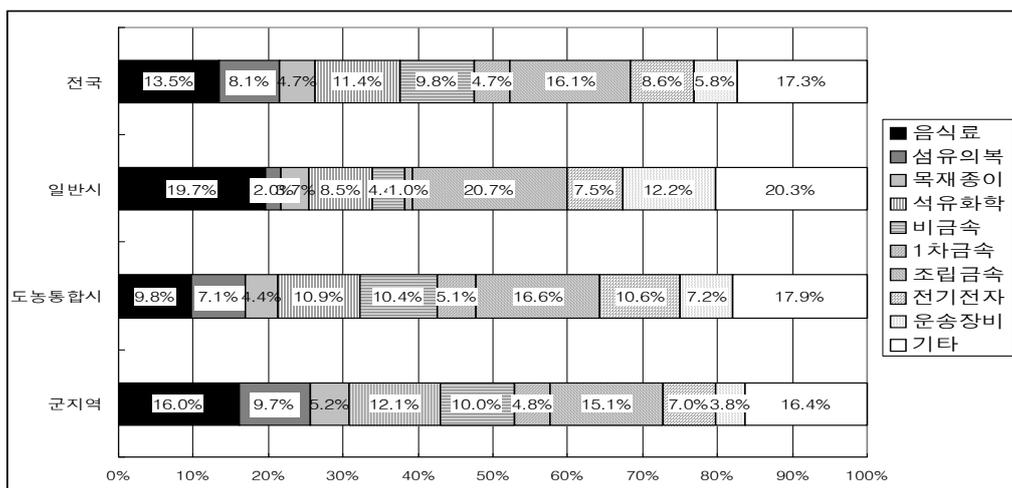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면적	입주계약업체	가동업체	생산액	수출액
국가단지	31	481,239	200,063	30,377	25,992	3,710,163	183,431
일반단지	257	299,217	115,694	15,679	13,511	1,664,927	83,268
도시첨단	3	290	56	61	57	414	-
농공단지	359	51,885	41,478	5,231	4,516	288,449	6,749
합 계	650	832,531	366,962	51,348	43,966	5,663.953	273,44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08)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 구성비는 조립금속업이 16.1%로 가장 높으며, 음식료품 제조업(13.5%), 석유화학제품 제조업(11.4%), 비금속 제조업(9.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그러나 농공단지의 입지별로 업종 구성비가 상이하
  - 군지역 농공단지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업, 조립금속업,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제조업 등의 순서대로 업종 구성 비율을 보임

- 도농통합시 농공단지 조성은 조립금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비금속업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일반시 농공단지의 경우는 조립금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업종 구성 순위를 보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 구성만으로 보아서는 이들 기업이 해당 농어촌 시·군 지역에서 전후방 연계에 의한 파급효과를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sup>9</sup>

그림 2-10.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 구성



### 3. 농어촌산업 육성의 필요성

-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는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이자 인구 유지 및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기도 하며,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산업의 육성이 필요

<sup>9</sup>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박시현 외(2006)를 참조할 것

-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의 농어촌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3.5% 낮은 1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현 수준(18.5%)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농업생산 외 부문에서 약 5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조건임
  -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연평균 45,000개, 농어촌지역 시·군마다 매년 300여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농어업 분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3차 부문의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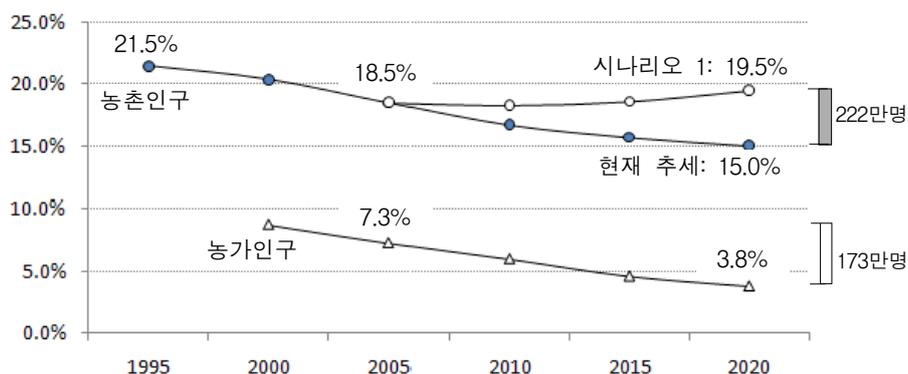
#### <농어촌지역 2020년 인구 및 필요 일자리 추정>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 경 농어촌지역 인구 비율은 약 15.0%까지 감소할 것임. 2005년 대비 3.5%의 인구 감소분은 거의 대부분 농어가인구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여기에 몇 가지 가정을 덧붙여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농어촌인구를 전망해보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10여 년 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추가로 유발해야 하는 일자리 수를 추정해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 농어촌 정주수요 조사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알아보는 등 10년 내 농촌 이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들이 모두 실제로 이주할 경우, 농촌인구 비율은 19.5% 유지
  - 시나리오 2: 농촌 이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 중 일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2005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18.5%의 농촌인구 비율을 유지
  - 시나리오 3: 농가인구 감소는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로부터의 추가적인 이주가 없어 현재의 농촌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촌인구 비율은 15.0% 유지
- 가장 비관적인 농촌인구 전망(시나리오 3)을 정책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될 기본(baseline)으로 가정한다면, 가장 낙관적인 인구 전망(시나리오1)이 실현되려면 향후 12년 동안 농업생산 외 부문에서 약 9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조건이 됨
  - 전국 농촌지역에서 연 평균 7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필요
  - 농촌 시·군마다 매년 550개의 새로운 일자리 필요

\*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농림어업 생산 외 부문의 순고용증가량이 약 171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10년 동안 농촌지역 농업 외 부문 연평균 고용 증가량의 44%에 해당되는 추가 일자리가 필요함

- 농촌 인구 비율이 현재 수준(2005년, 18.5%)에서 유지된다는 전망(시나리오 2)이 실현되려면, 향후 12년 동안 농업생산 외 부문에서 약 53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조건임
  - 전국 농촌지역에서 연평균 45,000개, 농촌지역 시·군마다 매년 3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 최근 10년 동안 농촌지역 농업 외 부문의 연평균 고용 증가량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일자리가 필요함
  - 물론 이 일자리를 모두 정부의 농어촌산업정책으로 유발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일부 일자리를 정부의 정책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

총인구 대비 비율



\* 자료: 김정섭,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 생산성이 낮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산업 육성이 필요
  - 2·3차 산업부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농가에는 부업의 기회를, 농어촌지역 비농업인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농어촌산업의 육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일자리가 제공되면 특히 젊은 인력들의 이촌 방지 및 신규 인구의 유입으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3개 사례지역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원 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
  - 일자리 창출 및 소득원 개발이 전체 응답의 63.9%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체생활권 군 지역인 고창군에서 해당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85.0%)
  - 반면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가까운 중평의 경우 인근 도시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응답한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3.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단위: 명, %

구 분	일자리창출 및 소득원 개발	교육환경 개선	보건·의료·복지 환경 개선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계
중평군	27(49.1)	16(29.1)	6(10.9)	6(10.9)	55(100.0)
고창군	17(85.0)	2(10.0)	1(5.0)	0(0.0)	20(100.0)
상주시	32(72.7)	3(6.8)	3(6.8)	6(13.6)	44(100.0)
전체	76(63.9)	21(17.6)	10(8.4)	12(10.1)	119(100.0)

## 제 3 장

###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 실태와 발전방향

#### 1.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성과

##### 1.1.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성과

###### □ 시기별 주요 정책의 변천

-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인구정착, 산업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추진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도시화 및 공업화의 추진으로 대도시 편향적인 경제사회개발을 초래하였음
  -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문제 및 농어촌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어촌인구를 현지에 정착시키고 산업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농어촌산업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음(이동필, 1986)

- 2000년대 이전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은 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었음
  - 영세한 영농규모를 가진 우리나라 농업여건 속에서 농외소득은 특히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증대의 어려움과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소득만을 통한 농가경제의 안정화가 어려워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농외소득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겸업소득과 사업 이외 소득으로 구성. 이중 겸업소득은 농가구원이 농업경영 이외의 자영(自營)에 의해 벌어들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수입에서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며, 사업 이외 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벌어들인 임금소득(노임, 급료), 임대료, 배당이자, 폐품판매수입 등에서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
  - 특히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농가경제의 현금수입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지역 과밀을 방지하는 지역균형개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음(이동필, 2003)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개발사업, 새마을공장 건설사업과 농공단지 개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을 들 수 있음
  - 이들 정책은 농어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빈곤탈피를 도모하고 산업활동의 진작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67년 농어촌지역의 부업단지 조성으로부터 시작된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의 시기별 추진 현황은 <표 3-1>과 같음
  - 이들 정책의 추진 결과 전국에 농어촌특산단지 602개('06년), 전통식품공장 813개('07년), 산지가공공장 299개('07년), 관광농원 390개('07년), 농공단지 359개(5,231회사: '07년), 녹색농촌체험마을 364개('08년) 등이 개발·조성되었음



표 3-1. 시기별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

시 기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의 내용
제1기 (1967~72)	·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농산자재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농가부업단지육성사업 추진
제2기 (1973~82)	·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공단조성(1970)과 함께 중소기업을 읍·면 단위 농어촌지역에 분산 입지시킨 새마을공장건설사업 추진
제3기 (1983~89)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관광농원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개발 시도
제4기 (1990~01)	·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기존의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농업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농외소득에 대한 관심 저하
제5기 (2002~현재)	· 농어촌의 과소화와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라는 문제가 노정되는 가운데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관심증대로 농어촌관광사업 활성화 · 농어촌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 1·2·3차 산업 융·복합, 향토산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료: 이동필 외(2007) 수정

####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 주요 내용

##### ○ 농한기를 이용한 농어촌특산단지(부업단지) 육성사업

- 농어촌특산단지(부업단지)는 1968년 그동안 고공품, 완초공예 등 농가의 가내부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부업단지 형태로 집단화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 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 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 자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73~77년 기간 중에는 이를 ‘농한기 생산화사업’으로 토끼 기르기, 약초재배 등 농축산물 생산단지를 포함하여 운영
- 1978년부터는 고공품(가마니, 새끼 꼬기) 등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축산물생산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업단지 육성사업은 농가의 가내공업 중심으로 전환

- 1983~89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 부업제품을 특산물 중심으로 바꾸면서 1991년에는 ‘부업단지’의 명칭을 ‘농어촌특산단지’로 전환
  - 1990년대에는 농업경쟁력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특산단지개발 등 농외소득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됨
  -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02개소의 농어촌특산단지가 조성된 가운데 3,857호의 농가가 특산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1,918억원의 자금(국고)이 지원되어 왔음
    - 자료의 한계 상 2005년도까지 농어촌특산단지의 업종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600개소 중 60%에 이르는 357개소가 민속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3.2%가 섬유직물을, 11.3%가 농산자재를 생산하고 있음(농림수산식품부, 2008)
    - 농어촌특산단지가 민속공예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1991년 농어촌부업단지가 농어촌특산단지로 전환하고 1993년부터는 음·식료품을 생산하는 단지를 모두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임(이동필 외, 2004: 34).
-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1993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은 농산물 가공공장 경영자에게 국내산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해 원료 농산물의 대량구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는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일반산지가공사업의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됨
  - 전통식품개발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원 개발, 성·출하기 원료농산물의 구매·가공처리로 가격안정 도모, 그리고 고유한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식문화의

서구화 억제를 목적으로 추진. 2007년 말까지 113,625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1968~93년에 지원한 특산단지 중 사업을 전환한 식품업체 241개소를 포함하여 총 815개의 전통식품사업체를 육성

- 일반산지가공사업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에 의한 가격 안정, 가공공장 취업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007년 말까지 183,078백만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총 299개의 산지 농산물가공업체를 지원

표 3-2.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실태: 2006년 말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계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계	600 (100.0)	357 (59.5)	68 (11.3)	47 (7.8)	79 (13.2)	49 (8.2)
대 구	1	1	-	-	-	-
인 천	2	2	-	-	-	-
광 주	2	2	-	-	-	-
울 산	1	1	-	-	-	-
경 기	3	3	-	-	-	-
강 원	30	20	1	2	1	6
충 북	49	35	5	-	2	7
충 남	103	34	18	14	30	7
전 북	143	98	11	11	10	13
전 남	124	77	14	6	21	6
경 북	62	32	13	8	5	4
경 남	72	46	5	6	10	5
제 주	8	6	1	-	-	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표 3-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추진 실태: 2007년 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계	1,114	296,703	813	113,625	299	183,078
부 산			-	-	-	-
대 구	5	1,429	3	541	2	888
인 천	3	293	1	140	2	293
광 주	1	351	-	-	1	351
울 산	1	168	1	168	-	-
경 기	77	24,274	47	9,061	30	15,213
강 원	107	23,257	86	10,423	21	12,834
충 북	111	30,656	83	12,875	28	17,781
충 남	136	29,222	115	16,848	21	12,374
전 북	147	36,386	110	13,157	37	23,229
전 남	152	46,254	104	15,425	48	30,829
경 북	167	54,032	110	13,543	57	40,489
경 남	178	40,079	136	17,578	42	22,501
제 주	29	10,162	19	3,866	10	6,296

주: 전통식품 개발사업에는 68~93년에 지원한 특산단지(식품) 241개소가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과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활용한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

-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은 1983년부터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이 사업은 1970년대 말부터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업소득 한계론이 대두되고, 부업단지와 새마을공장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농외소득 개발사업의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서비스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표 3-4.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현황: 2007년 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녹색농촌체험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계	274	14	390	14,804
인천	-	-	-	757
광주	-	-	-	1
대전	1	-	-	-
대구	-	-	-	1
울산	1	-	-	121
경기	29	-	16	1,334
강원	44	3	66	4,478
충북	18	-	29	729
충남	45	3	67	1,229
전북	41	-	32	540
전남	23	1	60	1,822
경북	33	4	42	1,178
경남	30	2	66	1,746
제주	9	1	12	868

주: 휴양단지는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1984년부터 시작한 관광농원조성사업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989년부터 시작된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1991년에 착수한 민박마을조성사업, 그리고 2002년부터 시작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의 세부사업 포함
  - 2007년 말 현재 추진실태를 보면 관광농원 390개소, 농어촌 민박 14,804개소, 농어촌휴양단지 14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274개소를 개발하였음
-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개발
-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인데 그동안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한

농어촌공업 개발방식을 지양하는 반면 저렴한 공업용지를 마련하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한 그동안의 농어촌공업 개발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 농공단지의 개발은 1983년에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과 1984년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둠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그 후 「농어촌정비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적 근거가 전환되었음
-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농촌에 잉여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1990년까지는 개발수요가 매년 40~50개에 육박할 정도로 성황리에 추진되었음
- 2007년 말까지 국비 691,828백만 원, 지방비 637,414백만 원 등 약 1조 3,292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에 359개의 농공단지, 55,844천㎡를 개발. 이중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이 1개 이상인 농공단지는 모두 319개 단지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농공단지에서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4,516개이며,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116,191명임

표 3-5.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천명

구 분	분양률	가동률	입주예약	고용
2000	95.9	87.1	4,184	104
2001	96.7	88.6	4,279	105
2002	97.4	92.1	4,380	109
2003	97.6	91.6	4,525	113
2004	98.2	90.2	4,686	112
2005	98.0	90.6	4,842	115
2006	97.8	93.1	5,001	116
2007	96.8	93.7	5,231	116

자료: 농림수산물부(2008)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1990년대까지 농어촌산업 정책은 주로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의 잠재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촌주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대에 초점을 두었음
  - 1960년대와 70년대는 농촌의 잠재실업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업을 장려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소득원 다양화에 초점을 둠
  - 1990년대에는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 및 지가 상승으로 입지 매력이크게 줄어들면서 외부 기업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개발보다는 농어촌관광의 활성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농어촌산업 정책이 전환되어 왔음
- 농외소득 증대에 초점을 둔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이 그간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증진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비록 영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수많은 특산단지과 농산물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부업 및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특히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제조업 일자리 중 7.3%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음
  -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은 그간 농어촌산업을 공업유치의 측면에서 바라보던 시각을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는 인식 증대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농어촌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음
- 그러나 농외소득 중심의 농어촌산업정책은 <표 3-6>과 같은 개별 사업의 문제 외에도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우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

과가 없었는데, 이는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구원들의 농외활동 참여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농어촌지역의 환경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결국 사업장의 저조한 가동률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예산의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어촌특산단지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이 특히 그러한데, 조성한 사업장 대비 실제 가동율이 각각 39.3%와 57.9%에 불과함

- 농공단지의 경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지만 현지주민 채용률이 62.5%, 현지 농가구원의 채용률은 13.0%에 그쳐 농외소득 증대나 농어촌주민들을 위한 농외소득원(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임

-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지역의 부존자원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역경제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지가인상과 같은 내부여건의 변화와 대도시 및 수도권 의 규제완화나 중국 등 후발국들의 공장입지 개선과 같은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농어촌지역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음
- 농공단지개발은 농림수산식품부 외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들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부족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 미흡이라는 추진체계 상의 문제도 지적되어 왔음(이동필 외, 2007)

-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을 촉진하였지만 여전히 성공모델이라 할 만한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라 그간 많은 비판이 있어 왔음

- 성공사례가 극히 적은 만큼 투입된 지원금에 대응해 내세울 만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농가 및 농어촌마을 그리고 농어촌 지자체의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



표 3-6. 주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

사업명	주요 사업 성과	사업의 문제점
농공단지 개발사업 ('07년)	- 359개 농공단지지정, 324개 조성완료 - 분양률(96.8%), 가동률(93.7%) - 4,516개 공장 가동중, 총 고용은 116,191명 (현지주민 72,645명, 현지농가구원 15,052명) - 누적실적 기준 28조 8,449억원 생산, 67.5억 불 수출	- 지역부존자원과 연계성 미흡 - 농림부 외 3개 부처의 분산 추진에 따른 효율적 지원 미흡 - 지정 및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미흡
농어촌 특산단지 ('06년)	- 2006년까지 총 1,918억원을 지원하여 1,532개소 조성, 이중 602개소 운영 중	-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존재하나 체계적인 개발 미흡 - 기업규모의 영세성, 판로미흡, 선도 인력 부족으로 발전 한계
농산물가공산업육성 ('07년)	- 2007년까지 2,967억원을 지원하여 1,114개소 조성, 645개소 운영 중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07년)	- 녹색농촌체험마을 274개소 - 휴양단지 14개소 - 관광농원 390개소 - 농어촌민박 14,804개소	- 도시민을 유치,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 및 다양한 체험, 휴게 공간 등 농촌 인프라 미흡 - 서비스 수준이 낮고 리더의 부족 - 홍보 및 마케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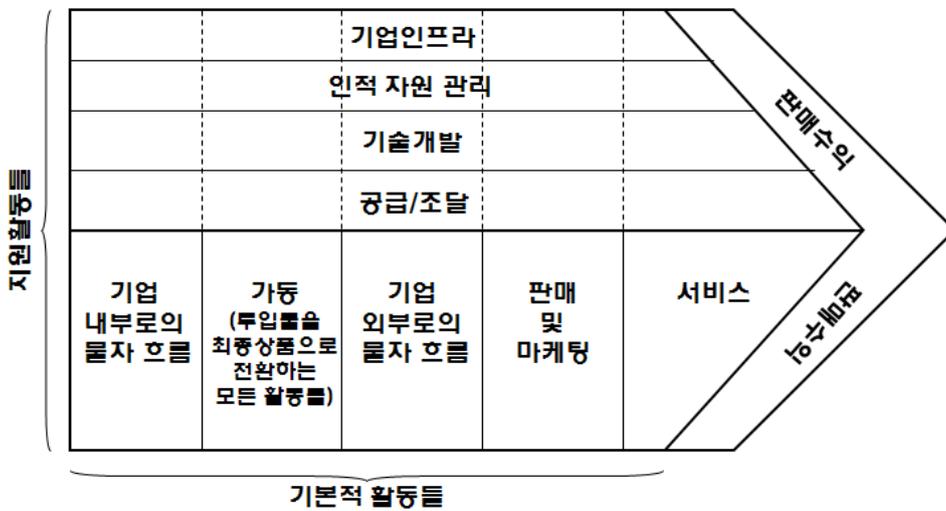
· 또한 낮은 서비스 품질, 조금 잘 된다는 곳의 프로그램 베끼기(cloning), 차별적인 콘텐츠의 개발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농외소득 중심의 농어촌산업정책이 지니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농어촌지역의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체계의 구축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임
  - 산업이란 가치의 생산-부가-실현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활동들과 이들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구성되는 체계(system)라 할 수 있음(<그림 3-1> 참조)
  - 이는 특정 산업부문이 어떤 지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관계에 의한 연계(linkage)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협력관계(network)가 지역 내 영역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
  - 그러나 기존의 농외소득 중심의 농어촌산업정책은 농어촌산업의 체계구

축보다는 농외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단편적인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되어 왔음

- 이러한 비판 및 반성과 관련하여 보다 최근에는 농어촌지역의 내생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마련과,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외의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 형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진행되어 왔음
- 최근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기반을 둔 정책은 주로 신활력 사업이나 향토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절에서는 보다 최근의 농어촌산업정책으로 이들 사업을 검토하고자 함

그림 3-1. 산업의 가치사슬 일반모형



자료: Porter(1990)

## 1.2.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 육성 정책

### 1.2.1. 농어촌산업 활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

- 지역의 부존자원인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키는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추구
  - 그간 농어촌산업은 농외소득 증대나 외부 기업의 농어촌지역 유치라는 단편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내생적 발전과 지속가능성, 지역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였음
  - 이에 비해 최근에는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차별적이고 내생적인 산업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 향토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는 지역성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는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산업화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1·2·3차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둘러싼 1·2·3차 산업 간 융·복합화는 향후에도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및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 지역의 내생적이고 차별적인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에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목표에 맞게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추세임
  - 본 연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군특회계 사업의 정책균화 및 포괄보조 계획이 이러한 제도적 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임
- 산업인프라 및 물리적 시설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성격

### 의 사업 강조

-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부업단지 및 농산물 가공단지를 구축하는 등 기존의 농어촌산업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조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최근에는 산업활동의 주체들 간 연계 및 네트워킹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체계의 구축과 생산체계의 국지적 집적 및 클러스터를 강조하는 농어촌지역 산업체계 구축 지향
  - 연계 및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은 지식의 창출과 학습, 지속적 혁신이 중요해지는 오늘날 경제환경 내지 산업체계의 체질변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임(Lundvall, 1996)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음(Berberman & Feser, 1999; Braczyk · Cooke · Heidernreich, 1998; Cooke, 2002; Porter, 1998)

## 1.2.2. 지역산업의 내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사업

### □ 신활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불균형 발전전략에 의해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낙후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발전기회를 부여하여 균형발전 필요
  -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공업화의 추진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불균형발전전략의 한계 상 개발에서 소외되는 낙후지역을 발생시킴
  - 낙후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유출되고 그 결과 지역의 활력이 감소하는 과정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음
  -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에 정책지원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고 최소한의 발전기회를 부여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중

## 대하여 옴

-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반성
  - 1990년대 말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는 하드웨어 투입 위주의 정책을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부여함
  - 동아시아의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론은 정부 주도의 생산요소 투입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국부를 급격히 성장시켰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금융위기는 생산요소 투입형 발전전략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등의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도록 함
  
-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한계 극복 필요
  - 기존의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 없이 여러 지역에 나눠 먹기식으로 소규모 분산투자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감소하였음
  - 더군다나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 부족 또는 배제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에 있어 지역이나 주민 수요의 반영 부족 및 사업의 효과성 감소
  -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상향식 계획수립 및 추진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사업추진 필요
  
- 신활력사업의 추진 목적
  -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신활력사업은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신활력사업의 목적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하는

것임(농림부, 2007b)

□ 신활력사업의 사업성격상 특성<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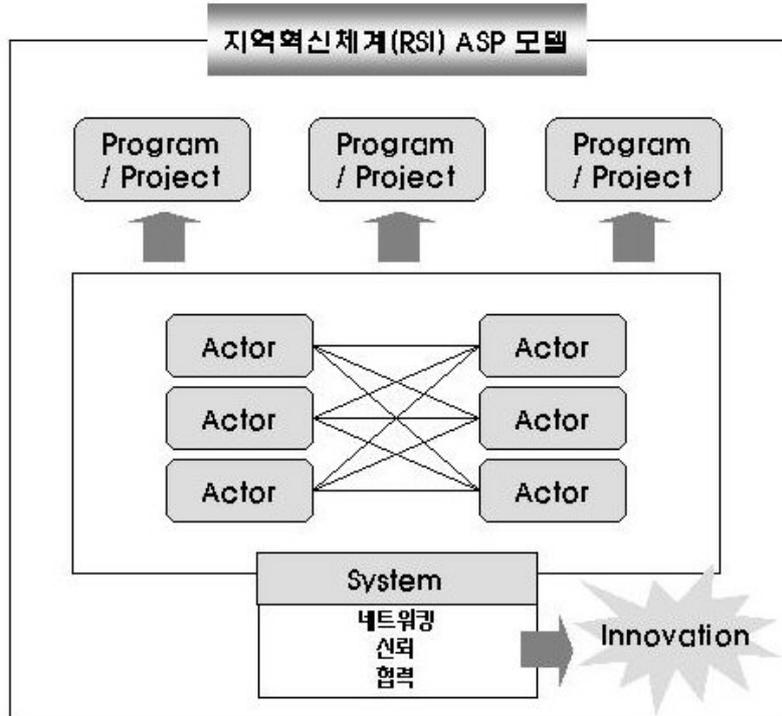
- 관주도의 생활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 시행
  - 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상호작용하여 인재육성과 참여활동, 교육, 연구개발, 지역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추진 기반 위에서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소득 창출사업 수행
  -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달리 도로, 주민생활환경개선, 대형시설물 등 하드웨어사업은 사업내용에서 제외
  - 단,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 시제품개발을 위한 시설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 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 지방의 수요에 의한 지역선정이 아닌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지표에 의해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낙후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 인구, 산업경제, 재정 측면의 3개 분야의 지표를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한 후 하위 30% 지역에 포함되는 70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신활력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하위 10%까지의 23개 시·군을 A그룹으로 분류하여 30억원 지원
    - 하위 11~20%까지의 B그룹 포함 24개 시·군에는 25억원 지원
    - 하위 21~30%에 포함되는 C그룹의 23개 시·군에는 20억원 지원

<sup>10</sup> 신활력사업의 사업성격상 특성과 추진방법상 특성은 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 신활력사업 2기부터는 성과가 미흡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차순위 낙 후지역 13개 시·군을 신규 대상지역으로 선정함
- 분권·상향식 사업선정으로 지역의 자율권 최대한 존중
  - 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특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부가가치와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사업 추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활력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고 사업실적 평가
- 농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부가된 1·2·3차 산업의 융합화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
  - 단순한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동시에 이를 관광 등 서비스업으로 발전시켜 소득기반 확대
  - 교육참여, 연구개발, 마케팅, 선도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프로그램 성격의 사업내용 포함
- 신활력사업의 추진방법상 특성
  - 지역혁신주체(actor)들이 상호작용과 신뢰 및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system) 지역발전의 선도사업(program 또는 project)을 수행하는 ASP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 A(actor/innovator)는 지역혁신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기업가,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연구원 등을 의미
    - S(system)은 구성원 간에 네트워크와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되는 시스템을 의미

- P(program/project)는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선도사업을 의미
-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추진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공동추진단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신활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한편, 공동기획 조정을 통한 사업 간 연계방안 등도 심의
  - 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그림 3-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ASP 모델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 지역차원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체의 종합적인 기획 역할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 학계, 관련 전문가, 지역혁신포럼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도록 권고
- 지역혁신자문관(FD: family doctor)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 각 시·군에서 지역혁신자문관을 1인씩 선정하여 사업관련 계획의 수립, 집행, RIS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해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지역혁신자문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
- 이밖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지자체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
  - 집행과정에서 하드웨어 위주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

#### □ 신활력사업의 추진현황

-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 현황
  - 1기 신활력사업 기간 동안에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도에 따라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2기 신활력사업 기간에는 1기 사업 추진 결과 성과가 부진한 13개 시·군을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대신 차순위의 13개 낙후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

표 3-7. 신활력지역 선정 현황

시·도	1기 신활력지역	2기 신활력지역
인천광역시	<u>용진군</u> , 강화군	강화군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u>정선군</u> , 양양군, <u>고성군</u> , <u>홍천군</u> ,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양양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u>삼척시</u>
경기도	-	<u>연천군</u>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u>제천시</u> , <u>옥천군</u> , 단양군,
충청남도	청양군, <u>금산군</u> , 부여군	청양군, <u>공주시</u> , 부여군, <u>서천군</u> , <u>홍성군</u> , <u>예산군</u>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u>무주군</u> ,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u>정읍시</u>
전라남도	곡성군, 신안군, <u>구례군</u> ,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u>완도군</u> , 담양군, <u>해남군</u> ,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곡성군, 신안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담양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u>영광군</u>
경상북도	<u>군위군</u> , <u>청송군</u> ,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u>예천군</u> ,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군, 문경시, 고령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u>안동시</u> , <u>영천시</u>
경상남도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u>고성군</u>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u>합안군</u>

주: 1기 신활력지역 중 굵은 글씨에 밑줄로 표시한 지역은 2기 신활력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곳이며, 2기 신활력지역 중 동일 방법으로 표시한 지역은 새롭게 추가된 지역임

#### ○ 신활력사업의 추진 내용

- 1기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신활력사업은 향토자원(농·특산물) 개발, 지역문화관광 개발,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7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SOC, 생활·환경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전통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업내용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도사업을 발굴하

여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중 신활력사업을 통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전통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이 정주환경개선에 대한 기초수요 충족인 반면, 소프트 지역개발사업인 신활력사업은 소득 및 고용창출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도상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선기·김현호, 2006)
- 그러나 교육 및 인재육성과 같이 사업 내용 상 소득 및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음(<표 3-8> 참조)

표 3-8. 신활력사업 유형별 분류(1기 기준)

유 형	건수(70건)	대 표 사 업(예시)
향토자원(농·특산물) 개발	35	· 발효천국 순창조성(순창군) · 청도반시 산업화(청도군)
지역문화관광개발	12	·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영월군)
지역이미지 마케팅	7	· 생태건강산촌 지역마케팅(진안군) · Happy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교육·인재육성	5	·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 국제화교육(거창군)
생명·건강산업육성	6	·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산업(금산군)
해양·수산자원개발	5	· 해양 생물산업 경쟁력 강화(완도군) ·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 브랜드화(울릉군)

주: 1기 신활력사업 추진 내용에 한함

자료: 이동필 외(2007), 김선기·김현호(2006)

표 3-9. 신활력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이후
합 계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보 조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 신활력지역 지원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 보조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자료: 농림부(2007b)

○ 신활력사업 재정지원 현황

- 지원자금에 대한 사용용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농산물, 특산물, 향토 자원(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SOC 투자, 부지매입비, 시설물 운영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형태는 100% 국고보조이며 시·군별로 낙후도에 따라 매년 19~29 억원 지원

### 1.2.3. 향토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 향토산업의 개념 및 특성과 의의

○ 향토산업의 개념

- 향토산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원천식, 2005)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에 내재된 유·무형의 지역자원 내지 전통자원을 의미(엄대호 외, 2004)
- 향토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된 지역연구산업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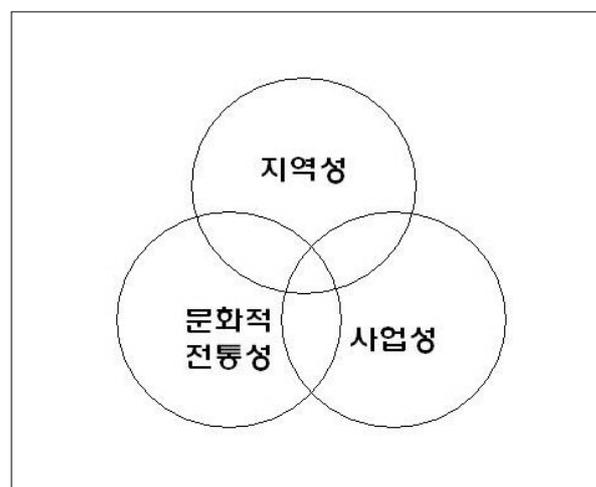
○ 향토산업의 특성

- 향토산업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한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향토자원이 가진 지역적 범위(지역성)과 문화적 전통성에 기초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향토산업 ‘지역성’과 ‘문화적 전통성’, 그리고 ‘사업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음

○ 향토산업의 의의

- 향토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집적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전통·자원·문화·기술·인재를 이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이동필, 2008)
  - 특히 입지가 불리한 낙후지역으로서는 장소이동이 어렵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고유한 향토자원을 수단으로 이를 상품화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
- 향토산업은 1·2·3차 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산업부문 간 융합화에 의해 새로운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음

그림 3-3. 향토산업의 개념 구성



자료: 이동필 외(2007)

○ 향토산업의 유형

- 향토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즉 향토산업은 투입단계별로는 자원·생산과정·산출물에 따라 분류되

며, 산업유형별로는 1차·2차·3차 산업으로 나누어지며, 활용자원 유형에 따라서는 전통지식복원활용형·부존자원활용형·전통산업발전형으로, 그리고 사업추진 주체별로는 사업가 주도형·지역민 주도형·지자체 주도형으로 구분 가능(<표 3-10> 참조)

- 이동필 외(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는 향토산업의 수는 약 2,390여 종에 이르며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 992종, 가공품이 683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밖에 농림수산물과 가공품을 결합한 것이 487종, 관광이 148종, 농림수산물과 관광을 결합한 것이 36종, 가공품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이 13종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0. 향토산업의 유형별 사례

구분	분류	대표사례
투입 단계별	자원(유·무형)	흑유도자기, 강화순무, 보성녹차 등
	생산과정	옷칠도장 피혁 등
	산출물	김치쥬스, 김치축제 등
산업 유형별	1차산업	괴산고추, 무안양파, 장흥표고버섯, 영주풍기인삼 등
	2차산업	남원목공예, 순창고추장, 함양옷 등
	3차산업	영월레프팅 산업, 마산 아구찜, 무주생태관광 등
활용자원 유형별	전통지식 복원	안동 간고등어 등
	부존자원 활용	보령 머드, 보은 황토 등
	전통산업 발전형	한산모시, 담양죽세공품 등
사업추진 주체별	사업가 주도형	홍쌍리 청매실, 장생 도라지 등
	지역민 주도형	보성 녹차산업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담양죽세공품, 한산모시, 고창북분자 등

자료: 이동필 외(2007)

####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관련 사업

##### ○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을 근거로 추진
- 2007년 시범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선정하고, 2008년 사업대상으로 30개를 선정함. 2008년부터는 사업비 10억 원(국고 5억 원)에서 30억 원(국고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2009년 사업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제출된 120개의 자원조사서를 평가하여 30개 사업 선정(<표 3-11> 참조)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2008년까지는 사업기간 1~3년을 기준으로 사업 당 10억 원 수준(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해당 지원금은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을 대상으로 포괄지원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
- 2009년부터는 현행 3년간 총사업비 10억 원(국고 5억 원)인 지원한도를 30억 원(국고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전통적인 농업 자원이외에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비농업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임<sup>11</sup>
  - 이를 통해 향토자원의 산업화 효과가 해당 시·군의 연관산업까지 파급되어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도록 유도
- 2007년 시범사업으로 19개 지역에 대해 추진된 동 사업은 2008년부터 지원 대상 사업을 30개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음
  - 2009년부터는 지원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재정투입 규모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sup>11</sup> 농림부 보도자료, “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2007. 12. 28. 참조

표 3-11.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현황

2007년 지원 대상	2008년 지원 대상	2009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민속 떡 산업육성(광주광역시)</li> <li>· 유기농 장류 산업육성(경기 양평)</li> <li>· 선인장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경기 고양)</li> <li>· 봉평 메밀 관광상품화(강원 평창)</li> <li>· 신선편이 인삼개발(충북 음성)</li> <li>· 쌀과 작두콩을 이용한 향토 제품 개발(충북 진천)</li> <li>· 구기자 산업육성(충남 청양)</li> <li>· 초락도리 약쑥개발(충남 당진)</li> <li>· 봉동 생강 명품화(전북 완주)</li> <li>· 대마를 이용한 산업화(전남 보성)</li> <li>· 호박이용 상품화(전남 장흥)</li> <li>· 구기자를 이용한 전통 식품 개발(전남 진도)</li> <li>· 포도 웰빙산업 육성(경북 영천)</li> <li>· 참외씨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경북 성주)</li> <li>· 죽염 웰빙산업육성(경남 함양)</li> <li>· 딸기를 이용한 쥬스 개발(경남 합천)</li> <li>· 동백씨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경남 통영)</li> <li>· 녹차 관광조성(북제주)</li> <li>· 천연염색 명품화(남제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인증 검정쌀을 주원료로 한 상화 버섯균사체 발효기술을 이용 최고급 레드와인 개발사업(부산 기장)</li> <li>· 연(蓮) 상품화 육성 사업(인천 강화)</li> <li>· 더덕 육성 사업(강원 횡성)</li> <li>· 봉평메밀 명품화 사업(강원 평창)</li> <li>· 생약초, 옥수수를 이용한 토속주 개발(강원 정선)</li> <li>· 내린천두부 클러스터 사업(강원 인제)</li> <li>· 한방약초를 활용한 친환경 순환 산업육성(충북 제천)</li> <li>·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충남 서천)</li> <li>· 굿뜨래밤 이용 가공상품 개발(충남 부여)</li> <li>· 뽕나무(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류 개발(전북 남원)</li> <li>· 수박 가공산업 육성(전북 김제)</li> <li>· 이서 관상어 수출단지 육성 및 명품화(전북 완주)</li> <li>· 오미자 육성사업(전북 장수)</li> <li>· 돌산갯 육성사업(전남 여수)</li> <li>· 백운산 고로쇠 상품화 개발(전남 광양)</li> <li>· 유자 부산물(유자씨, 파지) 이용한 상품 개발(전남 고흥)</li> <li>· 천혜 잡업생산기지 특구 조성(전남 화순)</li> <li>· 장흥표고버섯 균주은행 및 신제품 육성 브랜드화(전남 장흥)</li> <li>· 무화과 산업화 육성(전남 영암)</li> <li>· 감(연시)과육을 이용한 상품화(빙과류, 젤리 등) (전남 장성)</li> <li>· 약산 생약초(삼지구엽초, 황칠나무 등) 명품화 사업 (전남 완도)</li> <li>·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경북 김천)</li> <li>· 토종 약대추 가공 산업 육성(경북 청송)</li> <li>· 송이 간 고등어 개발 브랜드화(경북 봉화)</li> <li>· 대단지 웰빙 녹차 가공산업 육성(경남 사천)</li> <li>· 마늘 가공식품 개발(경남 남해)</li> <li>·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의 개발(경남 하동)</li> <li>· 지리산 꽃감 명품화 사업(경남 산청)</li> <li>· 산머루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경남 함양)</li> <li>· 산이슬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경남 거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쌀떡주 관광산업(경기 김포)</li> <li>· 춘천 닭갈비 명품화 사업(강원 춘천)</li> <li>· 홍천 잣 명품화 사업(강원 홍천)</li> <li>· 황토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충북 보은)</li> <li>· 신선편이사과 및 고부가가치 사과가공 상품 개발(충북 충주)</li> <li>· 고품질 안전인삼농식품 생산(충남 금산)</li> <li>· 강경 전통맛갈짓(충남 논산)</li> <li>·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전북 고창)</li> <li>· 남원추어탕 브랜드육성(전북 남원)</li> <li>· 천마육성(전북 무주)</li> <li>· 소양철쭉 군락단지조성 및 명품화사업(전북 완주)</li> <li>· 전통모주개발(전북 전주)</li> <li>· 웰빙 도자(陶器) 산업 육성(전남 강진)</li> <li>· 매실 명품화사업(전남 광양)</li> <li>· 쪽 전통기술 산업화(전남 나주)</li> <li>· 특산딸기의 웰빙 담양한과 명품화육성사업(전남 담양)</li> <li>· 순천만 갈대이용 가공기반산업육성 및 신상품 개발(전남 순천)</li> <li>·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전남 영광)</li> <li>· 울금(강황) 명품화 사업(전남 진도)</li> <li>· 「맛나베 대추 FUSION FOOD」 개발(경북 경산)</li> <li>· 천연염색, 안동전통한지 명품브랜드화(경북 안동)</li> <li>· 고추씨를 이용한 가공식품 육성(경북 영양)</li> <li>· 영주사과와 풍기인삼을 이용한 국민 「스타식품」 개발(경북 영주)</li> <li>· 전통염색 산업화(경북 영천)</li> <li>· 아카시아벌꿀·차조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경북 칠곡)</li> <li>· 맹종죽 관광 체험 상품화(경남 거제)</li> <li>· 얼음골사과 명품화 사업(경남 밀양)</li> <li>·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경남 사천)</li> <li>· 토종 오디브랜드화(경남 진주)</li> <li>· 흑돼지고기 명품화 육성(제주)</li> </ul>



표 3-12.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합 계	-	-	8,616	17,920	90,600
○ 향토산업육성					
- 국고보조	-	-	4,308	8,960	45,300
- 지방비			4,308	8,960	45,300

자료: 농림부(2007b)

-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이 해당되며 지원된 자금은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전통농업자원 및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를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하드웨어 분야: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 시제품개발을 위한 시설 구입
  - 소프트웨어 분야: 제품개발 관련 컨설팅비용, 위탁 연구비용, 향토자원 권리화·디자인·브랜드 개발비용, 네트워크 구축·운영비용 등
  - 단,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 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은 지원제외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추진
    - 이는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

- 2004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됨
-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가 포함되며, 농산물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업체로서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UPOV협약 등과 관련된 개발가능 특화품목, 그리고 이들 협약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나, 기호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이 지원 대상임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규모 결정하되, 단위사업 당 총사업비가 2천만 원(국고 1천만 원)이상인 경우 지원
  - 2009년부터는 총사업비 규모를 2천만 원(국고 1천만 원, 지방비·자부담 1천만 원)~10억 원(국고 5억 원, 지방비·자부담 5억 원) 이내로 한정
  - 현행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이지만 2009년부터는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변경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특화품목 육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쌀 생산을 대체하는 특화작목(연근, 순무 등),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되는 품목을 우선 지원

표 3-13.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	2007	2008	2009년 이후
합 계	1,131,327	175,880	216,446	293,902	1,469,510
○ 지역특화품목육성					
- 국고보조	617,948	87,940	108,223	146,951	734,755
- 지방비	513,379	87,940	108,223	146,951	734,755

자료: 농림부(2007b)

- 친환경농업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미생물 및 곤충 보급 등은 지원
-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는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타부처의 향토산업 관련 육성 사업

##### ○ 행정자치부의 향토지적재산활용 지역특화상품개발사업

- 행정자치부의 경우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주요 향토지적재산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향토지적재산활용 지역특화상품개발사업’을 시행.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 첫해인 2001년에는 18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고 8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상품생산 공장설치 및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집중 지원하였음. 2002년에는 강원도 원주시의 ‘옷칠’을 이용한 특화상품개발 등 28개의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상품생산 공장설치 및 생산라인 증설 등에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음
- 특히 향토지적재산 중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향후 사업 확대 시 산·학·연이 연계하여 세계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고용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총 226억 원(교부세 50, 지방비 176)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음. 2003년에는 모두 10개의 사업을 선정·추가하여 총 15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하였음

##### ○ 지식경제부의 향토산업 관련 사업

- 지식경제부는 2005년부터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프로젝트사업’과 ‘포럼활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연

산업이나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 개발, 전문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

- 이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지연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419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32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 기술혁신 선도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식경제부, 2007)<sup>12</sup>

#### ○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중소기업청은 지역전통산업을 그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특화품목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한 후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역사성·산지성·특산성·지역성을 가진 그 지역의 오랜 전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지역적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그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의미함
  - 1998년 6월 ‘지역특화중소기업 집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이후 1998년에 9개 품목을, 2001년도에 9개 품목을 선정하여 15개 시·도의 총 18개 지역 특화품목을 선정·육성, 2003년까지 총 40여 개의 지역특화품목을 발굴·육성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1998년 부산의 신발, 경기 도자기, 강원 석공예품, 전북 귀금속·보석, 전남 청자, 경북 인삼가공품, 경

<sup>12</sup>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중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 추천업체와 지역의 향토산업 또는 지연산업과 연계되는 사업체를 우대함(산업자원부, 2007.2)

남 견직, 제주 관광토산품 등 9개 품목을 지역특화상품으로 지정하였음. 그 후 2001년 서울의 인쇄(상업인쇄), 부산의 자동차산업, 인천 라이터(고급품), 대전 타올, 울산 옹기, 경기 금형, 충북 전통도자기, 충남 인삼약초가공품, 경남의 석재가공품 등 9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음

- 그 후 200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81개의 지역향토산업을 지정하여 ① 향토적 소재 제품화와 애로기술 해결 등 기술 개발과제 지원, ② 향토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용기·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③ 향토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과제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향토산업지원협의회 구성, 지방중소기업육성자료를 이용한 향토기업과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그리고 전국의 향토기업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sup>13</sup> 하지만 2004년 말 관련 사업을 행자부로 이전하고, 그 후 향토자원에 IT, B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향토산업 신기술융합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2.4. 기타 사업의 추진과 유사·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현황

##### □ 기타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

- 이제까지 살펴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은 주로 앞서 제기한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관련 사업들이었음
- 이들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중앙정부 부처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은 <표 3-14>와 같이 41개 단위사업들임
  - 시·군 단위 내에서 추진되는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들만을 선정함. 이중 농식품부의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은

<sup>13</sup> 중소기업청, 지역향토산업육성 기본계획, 2003.12

20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재정계획이 수반되고 있는 바 각각을 개별적인 단위사업으로 간주함

- 동 사업들은 농식품부 등 11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3-14. 소관 부처별 농어촌산업 지원 사업명

구분	농업생산기반 정비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향토 창업보육기능 강화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어촌산업단지 조성	농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농식품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신활력사업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농공단지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테마공원조성, 향토산업 육성, 지역특화품목 육성, 어촌어항관광개발, 신활력사업,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관광활성화사업	-	-
농진	특화작목육성촉진 사업, 향토지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	-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사업	-	-
산림	-	-	-	-	목재문화체험장,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	-
지경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농공단지 조성,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	-
중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시장경쟁력신 지원	산학협력력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	-	-	-
국토	-	지역기술혁신사업	-	농공단지 조성	-	-	-
문광	-	-	-	-	문화역사마을조성,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	-
환경	-	-	-	농공단지 조성	-	-	-
노동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	-	-	-	-
교과	-	지역인재육성활성화 지원, 산학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우수 직업인력양성전문대학 지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지역기반기술인력양성,	-	-	-	-	-

- 주1: 균특회계 사업과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사업 중 시·군 단위로 추진하는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을 정리함
- 주2: 사업명에서 밑줄은 소관부처 공동 추진 사업이며, 이탤릭체는 7대 전략 중 중복 분류된 사업을 뜻함

- 개별 단위사업들은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차원의 전략별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동 전략을 7가지로 구분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향토창업보육기능 강화,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산어촌 산업단지 조성,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 농식품부의 유사·관련사업 통합 추진 현황
  - 농어촌산업육성 관련 중앙정부 부처 추진의 사업들 중 최근 유사·관련 사업들 간의 통합적 추진이 시도되고 있음
    - 기존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은 지역 차별적인 내생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 취지나 접근방법이 유사하며 사업대상 역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20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
    - 이들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농어촌지역의 2·3차 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더해 이들 사업이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체계 구축, 지역의 기획역량 및 주민역량강화, 시·군 민관협력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사업추진의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이기원, 2008)
  
  - 그간 농외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추진되던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을 농어촌산업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 농촌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향토자원의 발굴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연계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농어촌산업 발전을 추구

○ 농촌활력증진사업의 기본 방향

-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 특히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승인은 중앙부처가 하되 경미한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사업신청, 사업승인, 평가 등 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
-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목표지향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즉, 시·군은 농촌활력증진계획에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재원, 인력 등 관련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목표 대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경쟁적 목표달성을 독려

○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수립

- 향토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2008년부터 관련 사업을 연계한 3년 단위의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수립은 신활력 지역인 시·군은 의무적 계획으로, 일반 시·군은 자율적 계획으로 수립(<표 3-15> 참조)

표 3-15.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및 수립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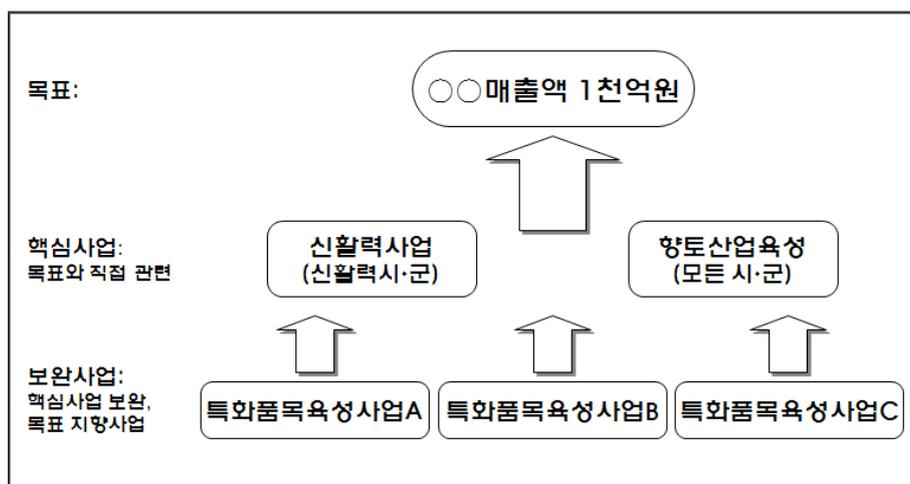
구 분		신활력 시·군			일반 시·군		
계획수립		의무적 계획수립			자율적 계획수립 ※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각 사업별 종전 지침을 적용		
계획 범위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활력사업	수립	수립	수립	<del>                    </del>	<del>                    </del>	<del>                    </del>
	향토산업육성	‘08예산반영	수립	수립	‘08예산반영	수립	수립
	특화품목육성	‘08예산반영	수립	수립	‘08예산반영	수립	수립
예산지원기준		균특한도+신활력지원			균특한도		

자료: 조상필(2007)



- 단,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일반 시·군은 각 사업별로 종전의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
  -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 경우는 이미 신청된 2008년 예산 내역을 동 계획에 반영하되 2009년과 2010년 계획은 신규로 작성하도록 함
-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보완사업으로 구성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에 따라 각 시·군은 농촌활력증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신활력사업(신활력 시·군) 및 향토산업 육성(모든 시·군) 등 핵심사업과 지역특화품목육성 등 보완사업을 망라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즉, <그림 3-4>와 같이 농촌활력증진사업은 구체적인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을 추진하고 이들 두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됨

그림 3-4. 농촌활력증진계획의 기본 개념



자료: 조상필(2007)

### 1.3. 농어촌산업 정책의 성과 및 추진 효과

#### 1.3.1.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산업 활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는 첫째, 향토자원의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키는 내생적 발전전략, 둘째,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셋째,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 강조, 그리고 넷째,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체계 구축과 생산체계의 국지적 집적 및 클러스터를 강조하는 농어촌산업 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됨
-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정책으로 제시한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음
  - 첫째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 기반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린 영역화된 산업체계(territorialized industrial system) 및 혁신체계(regional or loc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하였는가를 평가해야 함
  - 두 번째는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와 같은 경제적 지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야 함
- 지역의 내생적 발전토대와 지역산업체계 및 혁신체계의 구축
  -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과 같은 소프트 지역개발사업의 공통점은 영역기반적(territoy-based) 발전전략, 혁신지향적 지역발전, 자율과 협력의 사업추진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임(김선기·김현호, 2006; 이동필 외, 2007)
  - 영역기반적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관련 사업들과 같은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 정책들은 지역별 특성화에 따라 사업의 주제나 품목을 선정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차별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 노력을 증대시킴

- 이는 국가균형발전 산업정책 중 시·도별 4대 전략산업 선정과 같은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IT, BT 일색으로 추진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혁신지향적 지역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지역 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실제 이의 구축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혁신주체들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 간 네트워크에 의해 제품혁신, 공정혁신 등의 혁신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자문관(FD) 및 자문단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정보·지식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작동됨
  - 농어촌지역에 부존하는 향토자원 등을 개발하고 산업화함으로써 후방연쇄효과에 의해 지역 농특산물의 재배 및 농가소득이 증대하고 전방연쇄효과를 통해 유통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증평 인삼산업의 경우 인삼 가공업의 성장으로 지역 내 인삼 조달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수삼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유통센터 건립이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로부터 파생된 축제 및 도농교류 행사를 통해 3차 서비스산업 부문의 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즉,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은 전후방연쇄효과를 통해 해당 산업이 지역 내 뿌리내리는 지역산업체계의 구축을 촉진시키고 있음
  - 정리하면, 새로운 접근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에 의해 우리 농어촌지역에도 다양한 산업주체들의 공식적이고 경제적인 연계(linkage)에 의한 산업체계,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연계(network)에 의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경제적 성과

## ○ 신활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신활력사업의 경우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가공품 등을 복합 상품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매출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전북 순창의 장류산업은 종사자 수가 2004년 595명에서 2006년 675명으로 증가하고 동기간 매출액도 2,21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올렸음(<표 3-16> 참조)

표 3-16. 신활력지역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 사례

지 역	고용(명)		매출액(억 원)	
	2004	2006	2004	2006
양양 - 송이가공	83	96	46.4	62.6
- 송이판매	112	142	5.7	7.6
순창 - 장류산업	595	675	2,210	2,700
임실 - 치즈농협	47	53	104	123
- 숲골유가공	14	37	11	32
- 치즈피자	196	640	120	384
고흥 - 유자관련	3,992	4,934	185.6	265.6
무안 - 백련산업	10	120	3	42
문경 - 오미자가공	8	155	1	75
청도 - 청도반시	-	-	232.2	383.3
남해 - 화전한우	-	-	35	86

자료: 이기원(2008), 이동필 외(2007)

- 지리적 표시제나 상표등록, 특허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시장에서 보호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증대하는데 신활력사업 역시 <표 3-17>과 같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신활력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파생된 다양한 지역축제 및 농어촌 관광활동의 증가 역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는 경제적 성과라 할 수 있음
  - 양양군은 송이축제로 2006년 한 해 동안 77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횡성군 한우축제 역시 2006년 한 해에 52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였으며 118억원의 소득을 창출함
  - 이밖에 2006년 기준으로 함평군 나비대축제에는 161만 8천명, 화천군 산천어축제에는 103만명, 산청군은 약초와 관련하여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감

표 3-17. 신활력지역의 지적재산권 확보 실태

권역	시군	지적재산권 확보 내역
중부권	강화군	· 강화약쑥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8. 7), 특구지정('06. 6. 20), 상표등록 38건, 특허등록 5건, 실용신안 등록 1건
	양양군	·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산립청, '06. 3. 27)
	괴산군	· 특허등록 6건
	증평군	· 상표등록 1건
호남권	고창군	· 복분자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04)
	순창군	· 순창장류 지리적 표시제 등록(농림부 제8호) · 특허등록 3건 등 총 17건 지적재산권 확보
	고흥군	· 통합브랜드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06) ·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단체표장 등록('07)
	담양군	· 대나무 신산업 관련 : 특허 26건, 의장등록 3건, 상표등록 78건
	진도군	· 진도홍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07), 단체표장 등록('07)
영남권	봉화군	· 봉화송이 지리적표시제 등록('05.)
	상주시	· 상주곶감특구 지정('05. 9. 6)
	성주군	· 성주참외(참별미소) 상표 등록('06. 11. 14) · 성주참외 지리적 표시제 등록('05. 12. 1)
	울릉군	· 특산물(부지갱이, 미역취, 참고비, 삼나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12.15)
	의성군	·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등록 ('05. 7. 20) · 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 지정('06. 6.20) · 구워먹는 토종 의성마늘 특허청 상표 등록

자료: 이기원(2008), 이동필 외(2007)

##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제적 성과

- 향토산업육성에 의한 사업과 신활력사업의 경우 대상 품목이 동일하거나 관련이 깊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지만 조창완 외(2004)에 따르면 지역별 향토산업은 <표 3-18>과 같이 사업체 및 일자리 창출과 연간매출액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434개 품목별 향토산업이 1,572개의 사업체와 44,1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간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향토산업은 지역경제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접근에 의해 추진되는 무안의 백련산업, 서천의 김산업, 부안의 오디·뽕산업 등은 연간 수백만 달러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농어촌산업임

표 3-18. 지역별 향토산업 실태

구 분	품목수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연간매출액(억 원)
부 산	5	19	155	67
대 구	2	4	25	24
인 천	5	9	157	119
광 주	13	24	205	148
울 산	5	39	178	34
경 기	15	16	1,404	764
강 원	99	204	4,592	23,484
충 북	10	40	1,805	1,194
충 남	42	248	10,271	2,412
전 북	47	257	6,065	4,221
전 남	45	122	2,600	1,252
경 북	69	145	3,445	2,776
경 남	70	389	12,566	3,609
제 주	8	56	651	462
합 계	434	1,572	44,119	40,566

자료: 조창완 외(2004)

### 1.3.2.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 □ 정책 추진 효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와 지자체의 애로점, 향후 정책 수요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분석함
  - 2008년 12월에 약 1주일 동안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상주시 3개 지역의 농어촌산업 담당 공무원과 기획실 공무원 등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웹기반의 이메일 조사를 통해 피설문자의 응답이 자동 집계 되도록 하였으며, 총 119명의 공무원이 조사에 응하였음
  - 증평군 55명(46.2%), 고창군 20명(16.8%), 상주시 44명(37.0%)
- 조사지역은 도농통합시(상주시)와 군지역(증평군, 고창군)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군지역은 대도시 및 지방 중심도시 인근의 군(증평군)과 인근에 주요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자체생활권 군(고창군)을 1곳씩 선정하여 조사결과에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렇더라도 조사 응답자가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며, 설문조사 지역이 3개 지역에 국한되었기에 조사결과를 우리 농어촌지역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조사지역들이 농어촌의 지역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임

#### □ 주요 정책별 추진 효과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 기존의 농어촌산업 정책은 내용에 따라 ‘향토·신활력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 ‘도농교류 등 농촌관광 활성화

화 정책’, ‘농산물 가공 등 농외활동 촉진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어촌산업 정책은 그 효과를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측정할 수 있는 바, 전자의 경우 ‘고용증대’와 ‘주민소득 증대’ 효과로, 후자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로 제시할 수 있음
- 향토·신활력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효과
- 신활력사업이나 향토산업의 육성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내발적 산업육성 정책은 고용증대,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이라는 3가지 평가지표 모두에서 중간 점수(3.00점)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에 비해(3.41), 고용증대는 중간 점수(3.00)에 머물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들 정책은 비경제적 부문인 생활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의 추진 효과
- 농공단지 개발 등을 통한 외부기업 유치정책은 고용증대(3.74)와 주민소득 증대(3.65), 생활환경 개선(3.27) 모두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고용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농교류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정책의 추진 효과
- 농촌관광 활성화정책은 주민소득 증대(3.35)에는 도움을 주나 고용증대에는 중간 점수(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는 농어촌관광이 기업활동의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도농교류와 농가 및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 농어촌관광이 주로 농가원들 및 농어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기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는 중간 점수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3.11)
- 농산물 가공 등 농외활동 촉진정책의 추진 효과
- 상대적으로 주민소득 증대(3.52)와 고용증대(3.22)에 보다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활환경 개선(3.09)에 대한 효과는 중간 정도의 점수로 평가되고 있음
- 평가지표별 효과가 큰 정책
- 고용증대에는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주민소득 증대 역시 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생활환경 개선은 4가지 정책 모두에서 중간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토·신활력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표 3-19. 농어촌산업정책의 주요 내용별 평가

정책내용 평가지표	향토산업·신 활력사업 등 산업육성정책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	도농교류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정책	농산물 가공 등 농외활동 촉진정책
고용증대	3.00	<b>3.74</b>	2.97	3.22
주민소득 증대	<b>3.41</b>	<b>3.65</b>	<b>3.35</b>	<b>3.52</b>
생활환경 개선	3.36	3.27	3.11	3.09

주: 내용별 주요 정책의 효과를 각 평가지표별로 1~5점(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임

## □ 주요 지원 수단별 정책 효과

- 기존의 농어촌산업 정책은 지원 수단에 따라 ‘조세감면’, ‘시설·운영자금 지원’, ‘산업용지 개발’, ‘기술 및 경영컨설팅’, ‘교육훈련·인력지원’,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어촌산업 정책의 효과는 앞의 정책별 추진 효과에 대한 평가 부분과 동일하게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측정하여 전자의 경우 ‘고용증대’와 ‘주민소득 증대’ 효과로, 후자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로 제시
- 산업용지 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이 고용증대,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에 비교적 큰 정책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조세 감면은 중간 점수 이하의 평가 점수(2.86)를 받고 있으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중간 점수 이상(3.09)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른 지원 수단들에 비해서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0. 농어촌산업정책의 주요 지원수단별 평가

지원수단 \ 평가지표	고용증대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지원수단별 평균 점수
조세 감면	2.81	<b>2.95</b>	2.81	2.86
시설·운영자금 지원	3.05	<b>3.26</b>	3.15	3.15
산업용지 개발	<b>3.54</b>	3.40	3.15	<b>3.36</b>
기술 및 경영컨설팅	3.03	<b>3.25</b>	3.09	3.12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	3.19	<b>3.27</b>	3.15	3.20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b>3.30</b>	<b>3.61</b>	<b>3.18</b>	<b>3.36</b>
행정절차 간소화	3.04	<b>3.16</b>	3.05	3.09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3.14	<b>3.27</b>	3.08	3.16

주: 지원수단별 주요 정책의 효과를 각 평가지표별로 1~5점(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임

- 대부분의 지원 수단이 주민소득 증대에 가장 큰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용지 개발만이 고용증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득이나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평가지표별로 지원수단을 평가해보면, 고용증대 효과는 산업용지 개발을 통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은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에 의해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문제

### 2.1.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 간 유사사업의 분산 추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산업 관련 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지원 내용별 추진실태를 분석
  - 시·군 단위 내에서 추진되는 농어촌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3개의 사업분야만을 선정
  - 이를 각 소관부처별, 그리고 농어촌산업 발전 구성요소별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추진실태 분석(<표 3-21> 참조)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3개 중앙정부 소관 부처(청)가 41개 지원사업 중 59%를 차지
  - 농진청과 산림청을 포함한 농식품부의 경우 주로 농업생산기반과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육성 분야의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구축, 그리고 산업집적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어촌산업 지원은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분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의 지원은 각각 관광·문화·서비스산업 육성과 산업집적화에 한정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지식경제부의 농어촌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포괄하고 있음

표 3-2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전략별 사업 분류

단위: 개

부처	농업생산기반 정비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향토 창업보육 기능 강화	기업집적화위한 농산어촌 산업단지 조성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투자활성화위한 규제 완화	계
농식품부	4	1.5	-	0.25	8.5	-	-	14.25
농진부	2	-	-	-	3	-	-	5
산림부	-	-	-	-	5	-	-	5
지경부	1	1	-	0.75	-	-	-	2.75
중기부	3	1	1	-	-	-	-	5
국토부	-	1	-	0.25	-	-	-	1.25
문화부	-	-	-	-	2	-	-	2
환경부	-	-	-	0.25	-	-	-	0.25
노동부	-	1	-	-	-	-	-	1
교과부	-	4.5	-	-	-	-	-	4.5
계	10	10	1	1.5	18.5	-	-	41

- 주: 1) 균특회계 사업과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사업 중 시·군 단위로 추진하는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을 정리함
- 2)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농식품, 지경, 국토, 환경)은 0.25를,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교과, 지경)은 0.5를 부여하여 분류함
- 3)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은 산업인력양성과 R&D 기반 구축과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 해당,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과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0.5씩 부여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수의 부처가 유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관련 사업들 간 조정을 통한 상호 연계성 강화가 필요
  - 신활력사업의 경우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접근에 의해 추진되었

다고는 하나, 그간 추진되어 온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방치한 채 낙후지역의 활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활력사업은 사업의 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소도읍육성사업과 같은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품목이 지역별로 유사하고 독창성이 미흡하여 지역성과 문화적 전통성을 상업적으로 체화시켜 산업화하고자 하는 향토산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원천식, 2005)

표 3-22.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간 사업내용 비교

지 역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충북 금산군	인삼, 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특화사업	인삼·약초산업의 메카·인삼·약초타운 조성
전남 함평군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건설
경북 봉화군	파인토피아 봉화·춘양목 산림휴양 테마마크조성, 송이 명품화	천년의 향기 봉화 송이 특성화 청정문화관광 사업
경북 고령군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 만들기	고아 세라믹 전문단지 대가야 역사관광 순환도로 개설
경남 산청군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한방약전거리 등
경남 남해군	남해안 최대의 웰빙 휴양지 보물섬 구현을 위한 잠재력 발굴 추진	보물섬 예비뉴 조성 남해 실버랜드 조성 등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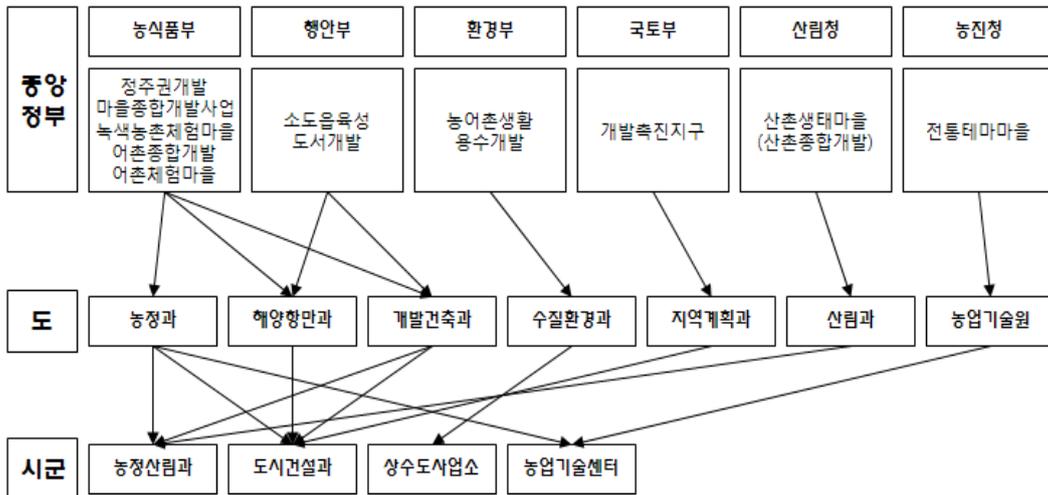
자료: 박주영·송미령(2007)

## 2.2. 사업추진 부처 간 연계 부족

- 일부 사업부문에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들이 중앙정부 소관 부처(청)별로 다수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간 수평적 연계 추진은 미흡한 실정임

- 농업생산기반 정비,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농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부 분야에 소관 부처(청)의 사업들이 각각 4~6개 이상씩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처(청) 간 수평적인 연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은 자치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림 3-5.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송미령·박주영(2004) 재구성

### 2.3. 농어촌산업 관련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집중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산업 관련 지원 사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1%의 사업이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이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분야에는 각각 전체 사업 중 24.4%가 집중되고 있음(<표 3-21> 참조)

- 정책적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의 발생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분야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분야는 정책지원이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 창업보육 부문, 그리고 산업집적화를 위한 지원도 거의 미미한 상태임

#### 2.4. 지역의 여건 및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농어촌산업정책 부족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주요 정책은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는 외부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유치기업의 후방연계에 의한 지역 파급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임
- 지방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본사를 주요 대도시에 두고 있는 분공장 형태가 많으며 업종 또한 해당 농어촌지역의 자원 투입과 관련이 거의 없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증평군의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개발이 미완료되어 입주가 계획된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 업종이 두 기업 모두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로서 증평군 내에서의 후방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역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표 3-23. 증평군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기업의 지역 후방연계

구 분	농공단지 (3개 기업)	일반산업단지 (2개 기업)	비고
증평군 내 원료 및 원부자재 연간 구입액(억원)	1.2	0	농공단지는 1개 기업 응답
전체구입액중비중(%)	30	0	-

주: 농공단지의 3개 입주기업의 업종은 전지가위 제조, 건강보조식품 제조, 빵류 제조이며, 일반산업단지 2개 입주기업은 모두 태양광전지 제조임

- 농공단지의 경우도 지금까지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농촌지역의 자원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음
  - 증평균의 도안농공단지를 예로 들면, 해당 농공단지에는 4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빵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1개 기업이 원료 및 원부자재의 30% 정도를 증평균 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은 지역 내 후방 연계가 거의 없는 상태임

## 2.5.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부족

- 농어촌산업을 포함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자치단체 자체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부족
  - 송미령 외(2008)의 연구에서 140개 농촌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 140개 시·군 중 32.1%(45개)만이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별도의 전문적인 평가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3분의 2 이상이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채로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증평균의 경우를 보면 농어촌사업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시 사업과정의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
  - 농어촌산업과 관련하여 증평균은 신활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군청과 중앙정부가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는 신활력사업 외 다른 모든 사업들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전무한 상황임
  - 사례지역으로 조사를 수행한 상주시 역시 증평균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과정의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임



## 2.6. 기타 문제점

- 사업추진 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지체와 행정력의 낭비
  - 일반적인 농림사업의 추진 프로세스는 지자체의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단계(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월이 소요되고 있음(농림부, 2007b)
  - 앞서 살펴본 새로운 접근의 농어촌산업 정책사업 중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도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로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총 15~18개월의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 추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정부 관련부처, 시·도자치단체 시·군자치단체,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장 수요에 대한 검토와 실태조사로부터 사업대상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 이르는 수많은 과정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사업의 계획과 추진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등의 산업발전 방안은 특정 지역 내에 영역화된 특정 산업과 관련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많은 행위주체들이 참여해야 형성 가능하며, 특히 동종의 또는 관련된 기업들의 수와 이들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일정 규모 이상 집적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들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강조할 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행위주체인 기업 또는 기업가의 육성과 증대 노력에는 소홀히 하여왔음
  - 생산성과 혁신 여부를 판명하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이 인정하는 혁신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시장 플레이어인 기업이지 대학이나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아님

- 농어촌산업 역시 산업체계의 구축이나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체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정 산업 부문의 시장 플레이어 즉 기업 수의 임계치(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야 함

### 3.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방향

#### 3.1. 농어촌산업정책의 기본방향

##### 3.1.1.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환경의 변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향후 지역발전정책 새로운 방향 설정에 따라 그간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던 200여개의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균특회계 사업들이 7개의 정책군, 21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단순화 될 예정임<sup>14</sup>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포괄보조금 사업은 ‘농림·수산분야’ 정책군에 포함되는 ‘농어촌산업육성·도농교류기반 조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농업기반 정비’, ‘수산·어항기반 조성’의 4개 포괄보조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미확정 잠정안)<sup>15</sup>
  - 이 외에 농촌진흥청 소관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산림청 소관의 ‘산림경영자원 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이 깊은 포괄보조사업이라 할 수 있음

<sup>14</sup>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자료”(2008.12.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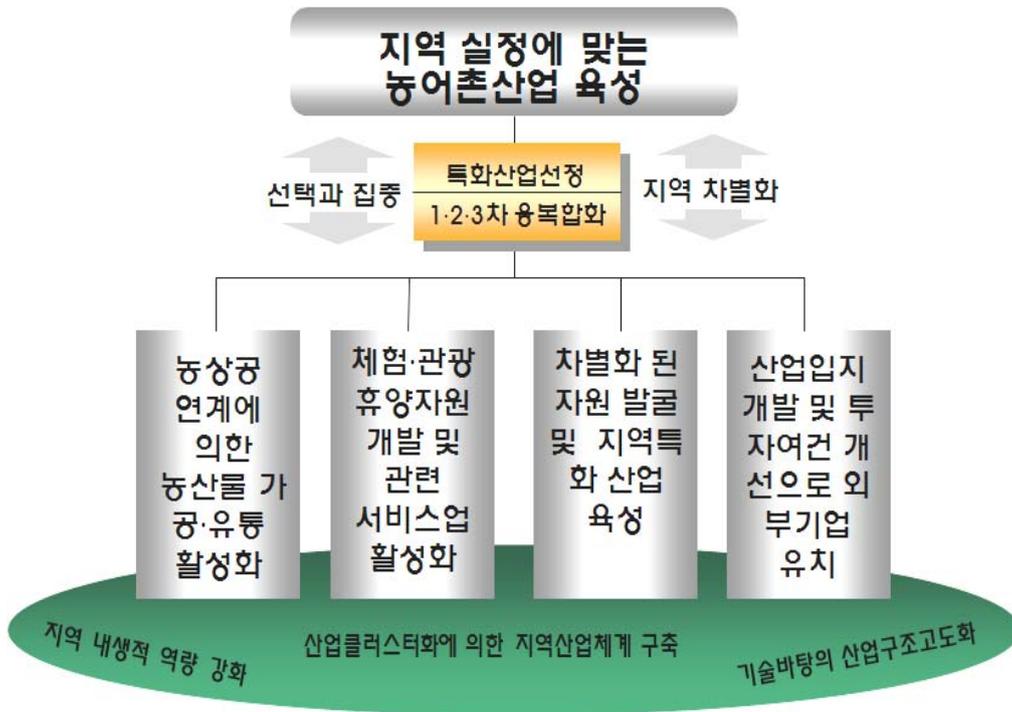
<sup>15</sup>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4장 참조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포괄보조사업에는 ‘농어촌 산업육성·도농교류기반 조성’과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이 포함될 예정임(미확정 잠정안)
  - 이밖에도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 정책군의 ‘신성장거점개발’ 사업과 타부처 소관의 일부 포괄보조사업 등이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추진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한정된 포괄예산 지원에 따른 선택과 집중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산업 관련 포괄보조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포괄보조로 지원되는 지역개발계정 예산이 약 3.2조 원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당 배정되는 포괄보조금은 평균 200억 원 미만으로 농어촌산업과 관련된 정책군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제한된 규모의 예산으로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차별적인 농어촌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타 지역과 차별적인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또는 지역 내생적인 자원의 산업화에 초점을 둔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산업 육성전략 추진
      - 농어촌지역은 산업구성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기업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적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산업 육성의 방향

- 앞서 농어촌산업 활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클러스터를 강조하는 산업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은 변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정책환경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재량을 가지고 추진하게 될 향후 농어촌산업 활성화의 기본방향이 지역 내 유·무형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

그림 3-6. 농어촌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농상공 연대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② 깨끗한 자연경관, 농수산물이나 사찰, 한옥 등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체험관광, 휴양자원개발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③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④ 특화산업지구의 지정이나 농공단지 리모델링 등 산업입지 개발 및 규제완화로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외부 기업의 유치 등을 향후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3.1.2. 농상공(農商工) 연대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

- 산업계 간 연대 및 농림어업과 관련 업계 간 연대
  - 농림어업 부문의 지역자원과 관련업계의 경영노하우, 마케팅 노하우 등을 결합한 상생의 결합체
  -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사회 호응 유도
  - 농림어업인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가공·유통 활성화와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 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 및 시장 개척

#### <일본의 농상공 연계 사업추진사례>

- 근거법: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인의 연계(連繫)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 배 경: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념: 농상공 연계란 지역의 기간(基幹)산업인 농림수산업과 상업, 공업 등의 산업간 연계
- 목 적: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인이 연계해서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실현하고 쌍방의 이익 창출

- 지원책: 중소기업경영 향상 및 농림어업경영 개선을 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중소기업인 및 농림어업인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을 추진할 경우 채무보증, 자금조성, 노하우에 대한 정책적 지원
- 농상공연계사업의 내용
  - ① 중소기업인(농림어업 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인에 한함)과 농림어업인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시한 사업
  - ② 중소기업인 및 농림어업인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사업
  - ③ 신상품 개발, 신상품 생산 혹은 신상품 수요 개척,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혹은 수요 개척을 위해 행하는 사업
- 농상공연계사업의 계획기간: 3~5년

○ 농상공 연대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간 정책 연대

- 농어촌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노동부 등 관련부처간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내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대 구축
- 농어촌산업 관련 시책에 대한 연대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 달성

<일본의 농상공 연계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 간의 연계>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상공 연계 촉진
  - (1) 지역산품에 관한 판매촉진·신상품 개발 지원
  - (2) 지역산업에서의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관련 시책 추진
  - (3) 지역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연계
  - (4) 농업 관련시책과 중소기업 관련시책의 연계 추진을 위한 시책
  - (5) 지역산품의 수출 촉진
2. ‘통째로 먹자 일본 브랜드!’ ‘일본 최고! 캠페인’의 공동 실시
3. 두 부처의 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상공 연계’를 위한 홍보

- (1) '일어서는 농어촌' 추진
- (2) '농상공 연계 88선' 작성
- (3) 아름다운 숲 만들기 추진 국민운동 전개
- (4) 해외에서의 top sales
- (5) '농어촌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촉진법'에 관한 PR
- (6) 도도부현 수준에서의 경제단체와 농업단체와의 의견교환 실시
- (7)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추진
- (8)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확대 추진

#### 4. 법제도 면 등에서의 검토

'농상공 연계', 바이오연료 생산 촉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기본적인 지원 틀에 대해서 계속 검토

### 3.1.3. 차별화된 자원 발굴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 ○ 향토자원의 발굴과 산업화 추진

- 우리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여건 낙후의 직접적 원인으로 그간 자원의 부족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었음
- 그러나 실제 문제는 자원의 부족보다는 자원개발의 부족에 있음
-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오늘날, 그간 무시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소비자 수요의 증가는 해당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의 개발과 산업화는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산업활동으로 육성되어야 함
- 이러한 자원에는 농어촌지역 고유의 풍토와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이 포함됨

#### ○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문화적 전통성을 지니는 자원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사회·경제적 현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표 3-24>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
- 향토산업은 이러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산업화 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산업을 의미하며, 그 경제적 타당성은 농림수산물, 가공품, 관광, 의료·교육, 농림수산물+가공품, 농림수산물+관광, 가공품+관광 등 다양한 산업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음
  - 협의의 향토산업은 주로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한정할 수 있으나, 광의의 향토산업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관광까지도 포함하는 1·2·3차 산업 간 복합화를 포함
  - 향토산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2·3차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복분자는 생과 판매시보다 복분자주 등 가공제품으로 판매할 시 약 5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서비스 및 관광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소득창출을 가능하게 함

표 3-24. 향토자원의 유형

유형	세부유형	예시
산업적 자원	공예자원	보석, 목기, 칠기, 화문석, 유기, 도자기 등
	향토주	홍주, 소곡주, 문배주, 법주 등
	향토식품	간고등어, 굴비, 고추장 등
	전통발표식품	김치, 된장 등
	민속음료	식혜, 수정과, 차 등
	장인, 명장	칠기, 유기 등
역사·문화 자원	문화유적	사찰, 유적지, 고인돌, 하회마을 등
	거처, 생가	허은, 추사, 이효석, 논개, 홍길동 등
	판소리, 영화, 연극	별신굿, 영화제, 연극제, 영상물 촬영지 등
	문화예술인사	박경리, 이육사, 이은상 등
생태·자연 자원	갯벌, 해양	머드, 갯벌 등
	동식물	반딧불이, 나비, 꽃 등
	원시자원	황토, 계단식 논 등

자료: 김현호·한표한(2004)



- 향토산업은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지역산업 단계에서 벗어나 제5장에서 사례지역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증평의 인삼산업이나 고창의 복분자산업처럼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해당 농어촌지역의 ‘지역특화산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 향토산업은 향토자원의 지역성과 문화적 전통성에 기반하기에 특정 지역에 집단화 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로 인해 해당 향토산업이 지역특화산업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면 지역 내 다수의 동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공동입지를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기반 산업으로서 지역특화산업의 면모를 보다 갖출 수 있음

### 3.1.3.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농어촌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체험과 감동의 상품화
  - 오늘날 경제는 이미 지식경제를 넘어 체험의 경제(economy of experience)로 변화하고 있음(Pine II & Gilmore, 1999)
  - 고객 및 소비자에게 새로운 체험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대접받는 것이 오늘의 시장 현실임
  - 농어촌지역이 지니는 다양한 생태·자연 환경, 어메니티 자원, 전통 문화 자원 등은 체험·관광·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이들 다양한 자원들을 프로그램화 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농어촌산업의 복합화 및 관광,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군 지역에서 특히 그러함
  - 140개 농어촌 시·군의 10년 간(1995~2005) 1·2·3차 산업의 일자리 증감량을 비교한 결과 <표 3-25>과 같이 나타남
  - 농어촌지역은 동 기간 전체 일자리가 147만개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자

리 증가의 96.5%가 도농통합시에서 발생함

- 도농통합시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대 만으로도 농림수산업(1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지만, 군 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등 2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이러한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존도가 도농통합시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군 지역에서도 도농통합시 수준으로 2차 산업을 유지 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산업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지역의 여건 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3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보다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음

표 3-25. 농어촌지역 일자리 증감에 대한 산업부문별 영향

단위: 명

구 분	농촌전체	도농통합시	군
1차 산업	-242,579	-46,693	-195,886
2차 산업	768,017	671,630	96,387
3차 산업	945,043	793,872	151,171
전 산업	1,470,481	1,418,809	51,672

- 다만 앞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기존의 도농교류 등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은 주민소득 증대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2차 산업의 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음
  - 따라서 향후 농어촌지역의 관광서비스 등 3차 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심화되어야 할 것임

### 3.1.4. 산업입지 개발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부기업 유치

- 농공단지의 지역화(local embeddedness)
  -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많은 경우 해당 지역산업에서 활동하는 지역 기업들과의 전후방 연계가 부족하였음
  - 이로 인해 그간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지역 산업체계의 구축에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함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과 전후방연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농공단지 입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투자지원 확대가 필요함
  
-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실제 예산지원을 융합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특화발전특구(지경부)의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과 실제 사업추진을 촉진하는 예산지원 사업의 결합 필요
  - 예로 일본의 지역재생제도는 규지완화와 예산지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농어촌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3.2.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

### 3.2.1. 내생적 역량에 의한 지역주도형·주민주도형 발전

- 자기기획·자기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정비(포괄보조금제도 등)
  
- 지역 스스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발전전략 수립·목표설정·비전공유 등을 수행
  
- 지역 스스로의 역량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강화에 따라 사업의

성취도가 향상되는 지역의 선순환적 발전시스템 구축

-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주민이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 정착
- 산업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이 스스로 기업육성을 할 수 있는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창출
- 개방과 투명성, 대응성, 자원의 공동관리,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 창출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민주도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창출

### 3.2.2. 특성화발전(지역특화산업) 및 연계발전(광역형발전, 산업간 연계, 부처간 연계)

- 모든 지역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향토자원의 특색, 지역의 발전역량, 지역자원의 조건 등에 따라 발전내용 및 발전전략을 달리 하는 특성화발전 추구
- 이를 위해 지역별로 시장가능성 및 경쟁력을 토대로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지정하여 특성화 발전 추구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순 산업이 아니라, 산업클러스터로의 발전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역량의 집중화 추구
- 지역특화산업이 인재-기술-기업의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발전전

## 략 수립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 추구

### □ 지역간 연계발전을 통해 국내 시장확대 및 해외 시장개척 추구

- 지역간 품목별·유형별 사업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지역간 연계발전을 통한 광역차원의 농어촌산업 경쟁력 확보
  - 지역은 경쟁력 있는 농촌산업의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며
  - 지역 간 동일·유사 농촌산업이 연계발전을 통해 비즈니스벨트를 형성하여
  - 광역경제권 단위를 중심으로 한 규모의 농촌산업 경제블록을 형성
- 광역단위 사업 확대로 전문인력 양성, 공동R&D센터조성, 농어촌산업 관련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어민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간 연계발전 예시 1> 대도시-농어촌 연계형: 광역 차(茶)산업 모델

- 현황
  - 국산차 시장규모 1조 2천억 원, 중국·일본차 수입대체시 국산차 시장확대 가능규모 4조 원대(차생산농가수입증대 및 수입대체효과)
  - 지자체간 녹차포럼 형성 운영 중
    - 보성, 하동, 정읍, 제주 등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참여
    - 광역화 발전모델을 찾고 있으며, 현재는 작목기술등의 교류수준에 머물러 있음
- 대도시연계형 광역화모델(안)
  - 국산차(茶)의 생산-가공-유통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도시에 국산차(茶) 유통 집적화단지 조성 ⇒ 차시장 조성
    - 관련 혹은 참여지자체 합동관리단 구성
  - 차시장 : 국산차 전문유통상가, 전통차문화체험센터, 명품차 경매센터, 차가공상품 전문판매점, 다기셋트 전문판매점 등
  - 참여가능 지자체
    - 녹차(보성, 하동, 정읍, 제주, 사천 등 다수)
    - 구기자(청양, 진도 등), 오미자(문경, 정선 등)
    - 땃잎차(담양 등), 연화차(무안 등)

### 한국산 와인공동 마케팅 모델

- 현황
  - 최근 와인소비량 증가 등으로 주류 생산 지자체들이 와인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 와인생산은 농가소득증대 및 명품과일증가, 2차 가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3차 와인너리 등으로 관광객 증가 등 전후방파급효과가 큼
  - 국내와인소비량은 '03년 20,022kl에서 '07년 37,655kl로 성장한 반면, 국산와인 시장점유율은 지속하락하여 '07년 현재 약18%에 그침
- 와인생산지자체 현황
  - 영동·봉화·영천(포도), 고창·함평(복분자), 부안(오디), 청도(감), 봉화·파주·함양(산머루), 예산(사과), 남원(허브), 무안(백련), 진천(흑미)
- 대도시에 지자체 연합출자 형식의 와인바 및 와인판매장 형성
  - 국내산 와인만으로 운영되며, 안주도 국내산 안주(임실 치즈, 서천 김, 홍성 토굴햄, 상주 꽃감 등)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국산차시장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지역간 연계발전 예시 2> 인접 시·군 연계형: 지자체합동 축제 모델

- 공주·부여 합동 백제(현재 진행)
  - 격년으로 각각 개최해 오던 백제문제화를 2008년부터 지자체 합동문화제로 전환하여 개최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공주·부여 합동으로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민간추진
  - 관주도에서 민관주도로 전환하여 민간부문 중심의 지역통합 출발

### 지자체합동 관광산업육성 모델(민·관합동 추진모델)

- 함평·영광 불갑산권역 산촌관광 활성화
  - 함평군·영광군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 공동포럼, 공동상품개발, 대표상품개발 등

### 품목별연계 모델

- 밤가공산업 합동사업단(공주·부여)
  - 공주: 친환경 공주알밤명품화 사업지원(신활력사업 일부)
  - 부여: 굿뜨래밤 명품화·산업화 육성사업(향토산업)
  -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밤가공산업 특화단지

공동운영 모색 가능

- 양파생산-가공 합동사업단(무안·함평·영암·해남·신안)
  - 무안에서 추진하고자 함
  - 양파파동의 재현을 방지, 양파 공동유통체계 구축, 양파 가공산업육성
- 총채보리 합동사업단(정읍·김제·고창)
  - 3개 지자체가 총채보리의 재배-활용-소비가 동일함
  - 총채보리 경관산업지원→총채보리축제지원→총채보리 한우사료화
  -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통합
  - 공동재배-공동축제-공동수확-공동관리(한우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확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전북 합동사업단
  - 참여지자체: 완도, 해남, 진도
  - 필요성
  - 전북생산량 증가 및 수출증가세 저하로 가격하락 지속
  - 고품질화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다변화 필요

<지역간 연계발전 예시 3> 광역연계형: 권역내 농공단지 공동관리 및 조성

- 현황: 경북 지역혁신협의회에서 '06년 경북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 그린테크노밸리추진사업계획(안) 중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등
  - 경북 북부권내 9개 시·군 25개 농공단지를 공동관리하고, 신규단지 조성시 시·군 합동으로 특화단지 조성방향 제시
  - 안동시(3), 영주시(5), 상주시(5), 문경시(4), 의성군(3), 예천군(1), 봉화군(2), 울진군(1), 영덕군(1)
    - 총면적(4,131km<sup>2</sup>), 입주업체수(335개), 종업원수(6천명), 생산액(20,336억 원), 수출액(245,479천불): '03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공동노력, 지역자원에 대한 지식자산화, 인력양성사업, R&D활성화사업 등 3개 분야 8개 사업
  - 지역기업창업보육사업, 그린텍사업, 지식밸리사업, 농경제경영인양성사업, 마을리더양성사업, 자원봉사활동관리사업, 농수산물 명품화사업, R&D 싱크탱크사업
- 추진체계
  - 지자체 공동출자 관리재단형

<지역간 연계발전 예시 4> 네트워크형: 한방약초 시·군협력모델(협의회구성)

- 현황: 13개 한방·약초 관련 지자체가 ‘한방약초도시협의회’ 구성(‘08년)
  - 협의회는 제천시가 유치한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천시가 주도하여 형성
  - 제천시, 장흥군, 화순군, 진안군, 산청군, 함양군, 문경시, 영천시, 대구시 중구, 안동시, 금산군, 평창군, 동대문구
- 공동사업 가능영역
  - 지역별 한방약초 특화품목 재배(국내산 한방약초 재배종수 확대)
  - 공동R&D센터 및 권역별 탕제원 네트워크 사업
  - 권역별 특화분야 인력양성체계 구축
  - 한방약초 가공산업(기능성음료, 화장품 등) 지역별 특화단지(농공단지) 리모델링 및 조성
- 공동사업단 구성(민·관합동)

### 3.2.3. 첨단기술과 접목된 농촌산업의 구조고도화

- 향토자원 중 발전비중이 높은 지역특화산업분야를 선정 연구소 설립·장비 도입·운영 등 지원
- 전후방연관효과 및 자원의 집약도, 기술중심의 발전전망, 국제경쟁력 등이 높은 향토자원을 ‘농어촌산업 30대 신성장동력’으로 관리
  - 예: 오미자, 복분자, 뽕·오디, 녹차, 발효(된장·고추장·치즈)분야, 백련, 약초 등
- 15개 지역 선정 연구-기술사업화-경영컨설팅-마케팅·수출지원 체계를 갖춘 종합연구소 설립·리모델링·운영·공동활용장비 지원
  - 순창장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고창복분자연구소 등 지경부 지원 기 구축된 연구소에 대해 S/W 중심의 리모델링 지원
  - 부안오디연구소, 무안백련연구소 등과 같은 신규 연구소설립 등 지원(지경부와 협력)



- 광역자치단체에 농어촌 기업의 R&D 관리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업TP’ 설립·지원
  - 권역별 지자체의 다양한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R&D 및 사업화 관리 지원 전담기구 설립
    - 농어촌기업은 규모나 발전단계 등으로 인해 기존 테크노파크 등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충남농업TP와 같이 농업적 마인드를 갖추고 ‘농업벤처’ 육성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기구 필요
  - 직접적인 R&D수행 기관이 아니라, 지역특화산업·광역지역산업분야의 발전된 첨단기술을 지자체의 농어촌산업과 접맥시키기 위한 네트워크형 R&D 조직으로 운영
    - 대덕R&D특구지원본부, 권역별 테크노파크, 산업클러스터추진단 등 벤치마킹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R&D를 연구-성과관리-사업화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R&D FD”(Family Doctor : R&D 전담 전문위원) 제도 운영
  -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산업기술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담 자문제도 도입(지자체연구소 미 설립지역)
  - 지역특화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국책연구소, 대학, 대기업연구소 등의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기술포럼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R&D 지원체계 구축
  -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R&D 네트워크를 구축해, R&D연결, R&D 결과 관리, 기술사업화를 종합 관리

- 대학-권역별 농업TP-권역별 TP-광역지역특화산업추진단-산업클러스터 추진단-대덕R&D특구지원본부-국책연구소-기업연구소 등과 R&D 네트워크
- 대학-권역별 농업TP-권역별 TP-광역지역특화산업추진단-산업클러스터 추진단-대덕R&D특구지원본부-국책연구소-기업연구소 등과 R&D 네트워크

## 제 4 장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전략

#### 1. 정책 환경 변화와 기초생활권 개발 구상

##### 1.1. 기초생활권 정책방향

- 신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틀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전환
- 4개 초광역개발권: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 7개 광역경제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 중심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농식품부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63개 시·군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
  - 도시형: 대도시와 연계하여 통합 개발이 가능하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임.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에 중점을 둠
  - 도농연계형: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임.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통합적 개발을 중점개발 방향으로 함
  - 농산어촌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 지역을 말함. 인접 군 지역간 통합적 연계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시·군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문화·관광, 환경 등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규모·범위의 경제화 추구
  - 지역축제 연계, 농산어촌간 공동 마케팅 강화, 비선택시설 공동이용 촉진
  
- 시·군간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 분권 강화와 지역의 창의적 자율성에 기초한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제공, 정주여건 확보, 교육·복지·문화 등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삶의 질 향상 강화
  - H/W 개발(도로, 건물, 시설)과 병행하여 S/W 개발(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대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
  - 선진형 지방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기반 확대, 생태환경 자원 활용, 향토산업 육성

## ○ 정주·주거 기반 확충

-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주거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
- 농산어촌의 경우 마을단위 기초생활 인프라를 완비하는 한편, 중심 읍·면 활성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중소도시는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재생 등을 종합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성

## □ 자율적 지역사회주도형 발전모델 채택과 포괄보조금화

## ○ 지방자치단체 자율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 시장·군수 또는 2 이상의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매뉴얼 등 컨설팅 제공
-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및 군특회계 보조사업을 산업, 문화, 교육, 정주인프라, 복지 등 기초생활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

## ○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접 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함
- 현행 200여개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여 재정 자율성 확대(2008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권적 지역개발 유도
  - 중앙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원한도(실링)와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등 7개 정책군, 21개 사업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기획·추진, 중앙은 컨설팅 지원 및 사후 평가·인센티브 강화
-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향형 목표관리방식 및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도입

그림 4-1. 사업추진 체계 개편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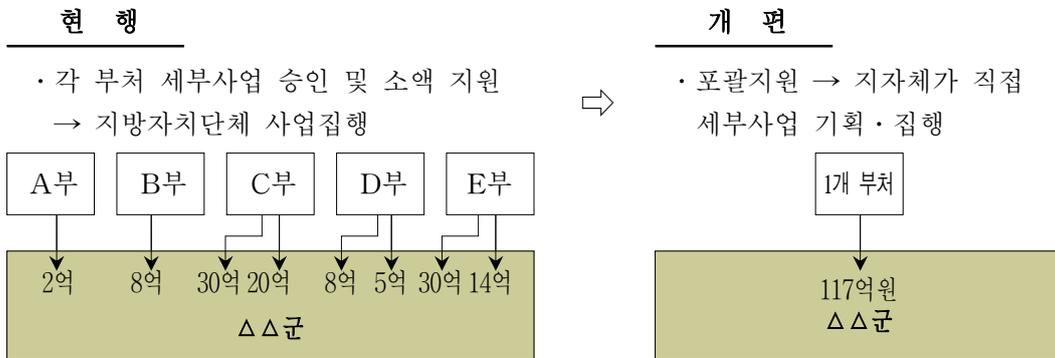


표 4-1. 지역개발방식의 비교

구분	기존 지역개발방식	새로운 지역개발방식
비전과 목표	균형에 치중 사업별 단편적 목표	분권과 발전을 보완하는 균형 종합적 삶의 질 향상
접근방법	도농 이분법적 관점 국토공간에 대한 인식 미흡 중앙주도의 틀에 안주	도농통합적 관점 공간구조에 따른 정주권 접근 지역사회주도형 발전
발전단위	마을 등 소규모 단위에 치중	기초생활권 단위로 규모화 (복수 시·군간 협력 촉진)
지원체계	포괄보조 지향, 실천은 미흡 단년도 예산 지원체계 고수 소액 분산투자(뿔돈의 뿔돈화)	포괄보조 전면 도입 다년도 예산 지원방식 가미 사업 규모화(뿔돈의 뿔돈화)
계획체계	부문별(중앙) 계획의 우위	지역 주도의 계획(상향식)
사업관리	예산 배분 등 사전적 통제 지방의 능력 부족 방치  투입지향적 프로세스 관리 중앙주도 공모제 시행	평가,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 전략컨설팅 등 성공을 위한 중앙-지방 파트너십 구축 성과지향적 목표 관리 지방자치단체 주도 자체 공모제
낙후지역지원	별도사업방식 → 사업중복 무기한 지원, 정체 고착	보조율 상향 등 실효적 지원 한시 지원, 자생력 발휘 촉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내부자료

□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 성장촉진지역 제도 도입: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차등지원체계 강화
  -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시·군(50개 내외)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기반시설 확충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혜택 부여
  -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강구

## 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제도 개편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예정임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구성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변경
  - 지역개발계정: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하여 유사 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
  - 광역발전계정: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선도산업 육성, 지역 인재 양성 및 광역SOC 등으로 편성함. 편성권한을 각 부처에 부여하여 분야별 투자계획, 광역발전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로 지원하도록 함
- 2010년부터 현행 210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21개 사업별로 포괄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지방 자율로 결정

- 지역별 사업인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의 4개 사업군으로 통합
  -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신성장거점개발사업(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사업(중심도시 육성), 특수지역(접경)개발사업으로 통합·재편
  
- 기타 지역개발계정사업은 기능별로 6개 정책군(문화·관광·체육 분야, 농림·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수자원·교통 분야) 17개 사업으로 재편됨.
  - 문화관광체육분야  
(문화부 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기초관광자원육성사업,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 농림·수산분야  
(농식품부 4): 농어촌산업육성·도농교류기반조성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수산·어항기반조성사업  
(농촌청 1):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사업  
(산림청 2):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 산업·중소기업분야  
(지경부 1): 지역향토산업육성사업  
(중기청 1):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문화부 1):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 보건·복지분야  
(복지부 1): 청소년시설확충사업
  - 환경분야  
(환경부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 수자원·교통분야  
(국토부 2):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 대중교통지원사업
  -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



(국토부 2):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농식품부 1): 신성장거점개발사업

(행안부 1): 특수지역(접경)개발사업

□ 균특회계 개편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사업의 재편

- 지역개발계정 사업 중 농림·수산 정책군은 총 7개 사업으로 재편
  - 농식품부 소관의 ①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②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③ 농업기반 정비, ④ 수산·어항기반 조성, ⑤ 농진청 소관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산림청 소관의 ⑥ 산림경영자원 육성, ⑦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
- 농어촌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①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 ②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③ 기초생활권종합개발사업
  - 농어촌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식품부 소관의 2008년 사업명
    - 농어촌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 조성, 향토산업 육성, 지역특화품목 육성, 어촌어항관광개발
    - 농수산물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김치 HACCP 가공공장 건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기초생활권 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표 4-2.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 포괄보조 사업

단위: 억 원

소관 부처(청)	사업군	사업군 예산	2008년 사업명	2008 예산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 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2,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li> <li>• 농어촌테마공원 조성</li> <li>• 농공단지 조성</li> <li>• 향토산업 육성</li> <li>• 지역특화품목 육성</li> <li>• 어촌어항관광개발</li> </ul>	89 56 428 85 1,395 118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완전미 생산기반 확충</li> <li>• 한우명품화</li> <li>•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li> <li>• 김치 HACCP 가공공장 건립</li> <li>• 농산물 유통 개선</li> <li>•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li> <li>• 안면도 꽃 박람회 개최</li> <li>•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li> <li>•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li> <li>•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li> <li>• 웰빙표고넉치 브랜드 개발 지원</li> <li>• 안전수산물공급체계 구축</li> </ul>	- - - - 165 57 - 232 159 99 - -
	농업기반 정비	3,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기반 정비</li> <li>•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li> <li>• 대구획경지정리</li> <li>•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li> <li>• 지표수보강개발</li> <li>• 소규모 용수 개발</li> <li>• 농업사관학교 건립</li> <li>•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li> <li>•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li> <li>•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li> </ul>	600 1,055 785 32 588 121 - - - 14
	수산·어항 기반 조성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어선인양기 설치</li> <li>• 지방어항 건설</li> <li>•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li> <li>•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li> <li>• 양식어장관리사업</li> <li>• 인공어초사업</li> <li>• 수산종묘관리사업</li> <li>• 내수면어업생산시설</li> </ul>	21 440 - 27 54 318 163 -
농촌 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 업 활성화 지원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li> <li>•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li> <li>• 농촌지도기반 조성</li> <li>•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li> <li>•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li> </ul>	32 - 181 37 80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5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산림투자</li> <li>• 목재이용가공 지원</li> <li>• 임도시설</li> </ul>	1 34 537
	산림휴양·녹색 공간 조성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li> <li>• 지자체 도시숲 조성</li> <li>•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li> <li>• 지역생태숲 조성</li> </ul>	219 608 187 97

- 간접적으로는 ③ 농업기반 정비, ④ 수산·어항기반 조성, ⑤ 농진청 소관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산림청 소관의 ⑥ 산림경영자원 육성, ⑦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도 관련되며 신활력사업이 통합된 기초생활권종합개발사업도 관련됨
- 특히 기초생활권종합개발사업에 있는 신활력사업은 현재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바 농어촌 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사업과 통합될 필요가 있음

표 4-3.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

7개 분야 관련 사업군(지역개발계정)							중앙정부 부처 사업 / 지자체 사업
농어촌산업	농수산물가공	농업기반정비	수산어항기반	농촌지도사업	산림경영지원	산림휴양녹색공간	기초생활권종합개발, 농식품부, 관련 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등

표 4-4.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지원 분야	해당 지원 사업
농산물 등의 가공(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농식품부)
자원개발(3)	향토음식자원화사업(농진청), 해양관광자원개발(농식품부), 향토자원 조사발굴 DB(농진청)
관광·체험(11)	역사마을조성(문화부), 어촌체험마을조성(농식품부), 어촌관광활성화(농식품부), 농어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농촌체험교육농장시범사업(농진청), 향토문화관광축제육성(문화부), 관광농원(농식품부), 농어촌민박(농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농식품부), 목재문화체험장(산림청), 낙농체험관광사업(농식품부)
산업기반구축(1)	테크노파크조성(지경부)
혁신체계·네트워크·R&D기반 구축(3)	과학연구단지육성(교과부), 지방기술혁신(지경부), 지역혁신센터(지경부)
유통·마케팅(1)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지경부)
복합산업(1)	지역발전특화특구(기경부)
고용 및 창업(2)	농어업인의 고용촉진·훈련(노동부),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농식품부)

□ 포괄보조 사업군과 연계 가능한 개별사업

- 균특회계의 농어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은 23개 사업에 이르고 있음
  - 이중 관광·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인 11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분야에 3개 사업, 그리고 혁신체계·네트워크·R&D기반 구축 분야에 3개 사업이 포함되고 있음

### 1.3. 예산편성체계 개선

□ 예산배분 방식이 세부사업별 시·군 단위 지원에서 통합 사업별 시·도 단위 포괄배분 방식으로 변경

- 중앙부처별 분산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부처별로 통합사업 설계 및 세부지침을 제시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시행하게 됨
  - 시·도, 시·군이 사업군별 투자 가능범위 내에서 세부 프로젝트의 중요도 및 투자 우선순위 자율 결정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예산 배분 후에도 회계년도 중 정책군 간 일정 비율 이내 재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검토 중임
  -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도내 계획 변경 권한 등 추가적 융통성 부여방안 검토

- 중앙정부로부터 시·도로 포괄 배분된 예산을 시·군단위로 다시 배분할 경우 포괄배분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따른 분산배분하게 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포괄보조의 명분을 살리면서 시·군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1.4. 정책관리체계 개선

##### □ 중앙의 정책 기획, 평가 및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 중앙정부는 개별사업의 사전심사·승인 방식에서 개발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 실현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과 사후성과평가 위주로 관리

##### □ 예산편성, 계획심사 등 사전적 통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상의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향형 목표관리 체계로 전환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의 상한(ceiling) 증감 또는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
- 계획수립 절차보다는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도출 유도

## 2.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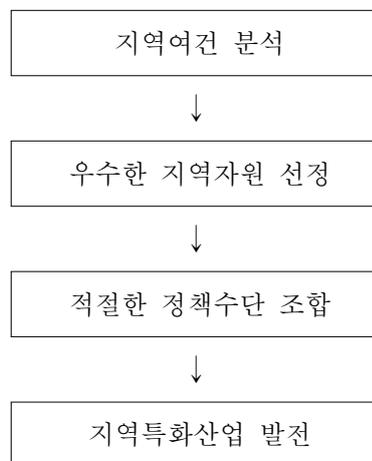
### □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체계의 수용

- 시·군단위의 농어촌산업정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정책의 부문 정책임. 따라서 시·군은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 체계인 포괄보조, 계획제도, 성과평가 등의 기본골격을 농어촌산업정책에서 수용하여야 할 것임

### □ 정책 방향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향

- 철저한 지역의 부존자원과 여건 분석
  - 지역적 특화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여건 분석
- 지역특화자원 선정
  - 지역자원을 발굴한 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산업화할 자원 선정

그림 4-2. 지역자원의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승화를 위한 절차



- 적절한 정책수단 조합
  -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였다면 이것을 산업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성장 가능한 자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조합이 중요
- 농어촌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임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야로는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 개발’로 나타났음
  - 이는 산업활동의 주요 행위 주체인 기업에 대해 시장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 저리융자 등과 같은 지원이야 말로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는 핵심내용이 되어야 함을 의미

표 4-5.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할일

단위: 개, %

구 분	증 평		고 창		상 주		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농어촌산업 육성 계획 수립	2	3.6	2	10.0	0	0.0	4	3.4
농어촌산업 육성 전담조직 설립	13	23.6	3	15.0	6	13.6	22	<b>18.5</b>
농어촌산업 육성 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3	5.5	1	5.0	4	9.1	8	6.7
지자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도입 및 강화	4	7.3	2	10.0	7	15.9	13	10.9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 개발	32	<b>58.2</b>	12	<b>60.0</b>	27	<b>61.4</b>	71	<b>59.7</b>
기타	1	1.8	0	0.0	0	0.0	1	0.8
계	55	100.0	20	100.0	44	100.0	119	100.0

주: 다중응답처리

- 이밖에 ‘농어촌산업 육성 전담 조직의 설립’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적인 산업육성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3. 농어촌 지역특화산업의 필요성

#### 3.1. 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 연관효과 증대

-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2007년까지 농산물가공업체를 1,114개소 2,967억원 지원
    - 2003년까지 1,101개소 2,911억원 지원, 2004년 이후 H/W지원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기술개발과 시설현대화 등에 중점 지원
    - 2003년도 업체평균매출액 13억1천만원, 시설가동률 66.8%,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 2억4백만 원, 일평균 고용 14.8명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농촌의 유희인력과 자원활용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그러나, 산지가공은 가공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가공상품을 만들어내는 단계로의 진입을 본격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농어촌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2·3차 산업부문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육성
  - 농특산물 등 농촌자원의 가공을 통해 제품화하여, 농업생산물의 고품질화



및 원료 농산물의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 2·3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령화현상의 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특히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 3.2.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선심성 사업선정의 폐해 예방

- 농업(1차)과 서비스업(3차)이 80~9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산업구조로 2차 산업육성계획 수립시 산발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 사업선정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자기기획·자기책임성 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선심성 사업선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부문의 육성 필요

- 농산물 단순처리나, 농업과 연관이 없는 단순 제조업 등에 집중하는 비전략

적 투자는 농어촌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적음

-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산업, 생명산업, 혹은 광역권의 지역전략산업을 추종하는 단순 투자식 산업육성은 지양해야 함
  -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육성과 이와 관련된 3차 서비스 산업·관광 산업·문화산업의 연계를 고려한 발전전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향토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 필요
- 농어촌산업은 국가적으로 특정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방향성을 갖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집약적 발전이 불가능함
  - 반면, 지역별로 소규모 투자에 의한 아이디어 상품의 개발을 통한 산업화는 지속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력·마케팅·경영능력 등이 부족하여 발전의 한계에 달하고 있음
  - 지역내에서 역량을 분산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토자원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특화산업의 지정을 통한 발전계획은 농어촌산업부문 성과지표가 집약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음
- 농촌활력증진사업의 3개년 계획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지역은 농촌산업 관련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

부안(오디·뽕) '07→'10	양구(산채)	문경(오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소득증대 109→380억 원</li> <li>- 기업투자유치 11→18개</li> <li>- 고용창출 165→255명</li> <li>- 기능성음식업소 12→50개</li> <li>- 관광객유치 7→100만명</li> <li>- 수출액 200→800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채생산소득 44→144억 원</li> <li>- 산채가공매출 174→350억 원</li> <li>- 가공기업고용창출 140→3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조수입 90→142억 원</li> <li>- 가공업체수 31→41개</li> <li>- 고용창출 1,204→1,562명</li> <li>- 관내2차가공율 35→60%</li> <li>- 가공산업매출액 255→676억 원</li> </ul>

### 3.3. 지역특화산업분야 선정의 강점

-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가능
  - 투입대비 성과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사업으로 관리하기 용이함(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통)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체계를 갖추기 용이하며, 선택한 지역특화산업분야 관련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수월함
- 집적기반, 네트워크 및 연계체계 구축 가능
  - 주력기업, 인력양성, R&D투자 및 기관 등의 집적화 가능
  -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전략 수립 용이
  - 인접 시·군의 유사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및 광역경제권 차원의 지역선도 산업에서 발굴된 첨단기술의 활용 등 연계발전 전략 수립 용이
- 창업지원, 생산성 향상, 기업투자 유치 조건 형성에 기여

- H/W적인 창업지원이 아닌, S/W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기업 육성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음
  - 인재와 기술, 그리고 기업의 집적화 및 연계발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특화산업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공간적·제도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기에 수월함
-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발전전략 수립 가능
- 농촌지역 부존자원은 경관 및 역사·전통·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어, 1·2·3차 융복합화를 통한 다차원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용이함
  - 지역특화산업분야의 집적단지 조성시 일터·삶터·쉼터 등 생활과 일, 관광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용이함
    - 상당수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 4.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구상(예시)<sup>16</sup>

- 설문조사결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기업집적화

<sup>16</sup>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음.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7가지 전략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전략 중 일부를 예시한 것임

를 위한 농어촌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지방 공무원들은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이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역시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어촌산업단지 조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밖에도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과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이 높은 응답비중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3개 사례지역 별로 응답 비중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증평군과 고창군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을, 상주시는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어촌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음
- 이는 지역마다 현재 갖추고 있는 산업기반 또는 산업환경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이해됨

표 4-6.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급한 과제

단위: 개, %

구 분	증평군		고창군		상주시		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농업생산기반 정비	5	9.1	0	0.0	4	8.7	9	7.4
산업인력양성 및 R&D기반 구축	11	20.0	4	20.0	9	19.6	24	<b>19.8</b>
향토창업보육기능 강화	2	3.6	0	0.0	1	2.2	3	2.5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산어촌산업단지 조성	10	18.2	6	30.0	15	<b>32.6</b>	31	<b>25.6</b>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8	14.5	1	5.0	1	2.2	10	8.3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12	<b>21.8</b>	7	<b>35.0</b>	9	19.6	28	<b>23.1</b>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5	9.1	2	10.0	6	13.0	13	10.7
기타	2	3.6	0	0.0	1	2.2	3	2.5
계	55	100	20	100	46	100	121	100

주: 다중응답처리

- 반면 ‘향토기업 창업보육기능 강화’ 항목의 응답비중이 가장 낮아 향토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주체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함

## 4.1.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4.1.1. 현황 및 필요성

- 지역특화산업이 농특산물의 가공에 초점을 맞출 경우이거나,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추구하는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전략
- 농어촌산업의 원료인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4.1.2. 주요 내용

- 생산기반 정비
  - 농업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매개적 수단으로서의 생산기반 정비를 의미
- 농업시설 정비
  -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별로 농업생산 기술체계와 생산조직을 전제로 한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종합적 시설 정비

### 4.1.3. 기대효과

- 지역에서 생산되는 10~20%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생산정비를 통해 전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기업이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원료의 가격변동폭을 조절하는 기능 확보

## 4.2.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 4.2.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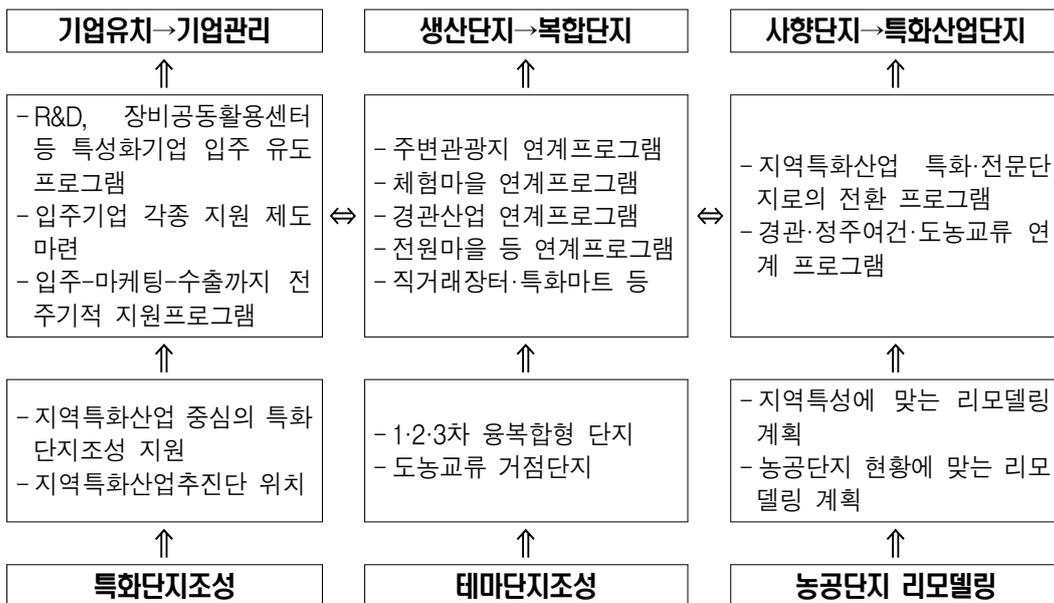
- 현재의 농공단지는 국가의 풀뿌리경쟁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359개 단지 지정, 5,231개사 입주계약 체결(단지당 평균 14.5개 기업입주)
  - 2007년 기준 생산 29조 원, 수출 67억 불
  - 2007년 기준 고용 116,191명, 이중 농가 15,052명(13%), 비농가 57,593명(49.6%), 외지인 43,546명(37.4%)
- 규모의 영세성은 차치하더라도,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특성이 상이하여 집적화의 상승효과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영세기업들이 집적화의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4.2.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체계도

### 가. 내용 구성요소

기본 내용	활용 가능한 내용
① 특화단지 조성·운영계획 ②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①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 계획 (1·2·3차 융복합형 특화단지) ② 기존단지의 리모델링(특화·전문단지) ③ 금리지원, 세제감면, 수의계약 구매지원 제도 도입 계획

### 나. 구성요소간 체계도



### 4.2.3. 주요내용

-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단지(특화단지)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른 산업입지 조성 계획 수립
- 특화단지 내 R&D기능(장비공동활용센터 등), 교육프로그램운영기능, 창업



보육기능 등을 포괄한 집적화(클러스터화) 계획

-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입주 및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제시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제도,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포럼 운영계획, 입주기업인들의 일상적 소통을 위한 테크노카페 운영 등
  - 기술진단, 경영진단 등 컨설팅 프로그램
  - 특화단지 내 기업제품 수의계약 구매확대 지원
  - 해외시장개척 지원, 인력지원, 정보화지원 등
- 단순한 기업입지가 아닌, 테마파크화 하여 농촌산업제품의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계획
  - 일터-삶터-쉼터가 결합된 1·2·3차 융복합형 특화단지 조성
- 농공단지의 리모델링으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개성있는 특화산업단지 조성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공급체인(supply chain) 재편성, 기업통합(enterprise integration),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으로 지역산업클러스터형성
- 농공단지의 확대 조성 및 재정지원 확대
  - 시·군별 지정면적 상한 및 업종제한 완화

- 용지조성비 및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현실화
- 고령자 고용에 대비한 안전시설 지원
- 창고업 및 유통업체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

#### 4.2.4. 기대효과

- 기업 및 R&D 등의 기능 집적화로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음
- 지역발전의 거점형성과 동시에 풀뿌리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인재-기술-기업의 선순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구조적 거점역할 수행

### 4.3.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4.3.1. 현황 및 필요성

- 농어촌은 자연경관과 농특산물 등 특성화된 지역자원을 토대로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의 보고
- 지역의 자연자원과 소규모 민자 박물관을 유치하여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음(영월, 양구 등)
- 체험마을을 통해 주민소득 증가와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천 부래미, 양평 신론리, 화천 토고미, 홍성 문당리, 고령 개실마을, 진안 능길마을 등)

-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로 예술인마을로 특성화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화천 이외수마을, 인제 만해마을, 무안 월선리예술인촌 등)
- 특성화된 축제를 통해 2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함평 나비축제는 곤충산업 및 곤충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의 발전비전을 확보하고 있음
- 화천 산천어축제, 봉화와 영덕의 은어축제는 멸종위기의 어족자원 양식을 통해 산천어·은어의 가공산업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음
- 최근 대규모 축제보다는 농가형·농장형 축제를 통해 매니아층을 확보하여 관광산업을 통해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농가형 와이너리를 통한 매니아층 확대(예산 사과와인, 영동 포도와인, 청도 감와인 등)
- 농장형 축제를 통한 직거래 네트워크 확산(나주 배, 보은·장수 사과)
- 경관산업을 통한 1·2·3차 융복합형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김제·정읍 청보리축제(청보리경관산업-청보리축제-축산사료화)
- 무안 회산백련지의 경관을 활용해 백련축제에서 백련산업을 파생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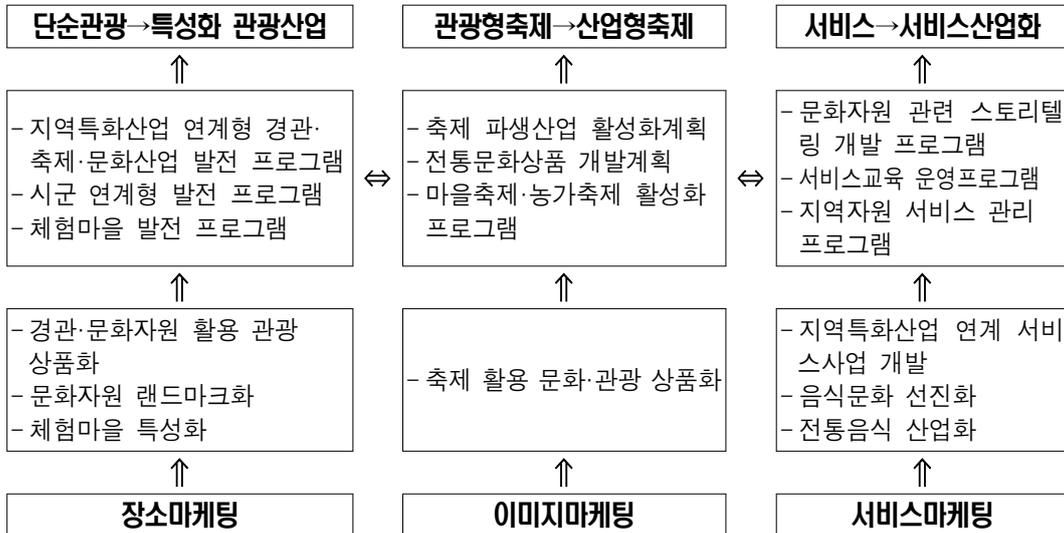
최근 백련축제를 연산업축제로 바꾸어 본격적인 산업화의 경로를 개척하고 있음

### 4.3.2. 내용 및 체계도

#### 가. 내용 구성요소

기본내용	활용가능 내용
① 축제연계 계획 ② 도농교류 연계계획	① 경관산업의 관광상품화계획 ②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③ 시군연합 축제공동개최 ④ 시군연합 관광벨트조성 계획

#### 나. 구성요소간 체계도



### 4.3.3. 주요내용

- 농촌지역의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오랜 역사와 문화 등을 활용하여 노인 요양원이나 아토피 등 환경관련 질병 치료업, 승마 등 체육시설, 농가 맛

집 및 향토음식점, 특수교육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관광, 문화 서비스산업 육성

- 면단위 농어촌지역의 소상공인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여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시설비 등 융자 지원과 같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 확대
- 농어촌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3차 산업 활성화 계획 혹은 축제 등을 통한 2차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계획
  - 지역특화산업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마을(아토피치료마을), 특화마을(개실마을, 부래미마을), 농장형 축제, 농가형 와이너리 등 2차 산업 활성화의 파생효과로서 3차 산업 연계발전계획 수립
  - 축제의 주제를 활용한 2차 산업 활성화, 축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2차 산업 활성화(함평 나비축제와 곤충산업, 화천 산천어축제 및 봉화·영덕 은어축제를 통한 어족자원 산업화, 무안 회산백련지를 활용한 연산업 축제)
- 테마별 특성화마을 육성을 위한 도농교류 및 전원마을 활용계획
  - 전문가집단을 타겟으로 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의 운용과 이를 통한 전문가마을 조성계획(화천 박수근마을, 만해마을, 이외수마을, 월선리예술인촌 등)
  - 다양한 테마 중에서 선정 추진하고, 이를 위한 테마 인프라 설비 및 공간 설치 구축
  - 농촌체험관광 및 문화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관광루트 개발

- 생태교실이나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 숲속의 통나무집,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 호수가 오두막집 등 다양한 농촌형 전원주택 개발을 통한 도시 은퇴자 유치
  - 중산층이 부담 없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저렴한 택지공급
  - 1가구 2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 확대(현실적으로 대지 660m<sup>2</sup>, 건평 150m<sup>2</sup>, 취득가격 7천만 원 미만 농가주택에 한해서 양도세감면)
- 경관산업을 통한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계획
  - 농업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남해 다랭이마을, 함양 도마리, 신안 태평염전, 담양 메타세쿼이아·죽녹원·관방제림 등)
  - 경관작물 활용 축제·2차산업화 계획(보성 녹차밭, 김제·고창·정읍 청보리, 평창 메밀꽃, 산청 생약초시험포)
- 지역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산업화된 특산물 판매와 지역 관광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수행
  - 지역특화된 산업체 시찰과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수행-지역벤치마킹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지원강화 (영국에는 5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고용의 5%, GDP의 1% 담당)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여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

한 목욕이나 세탁 등 생활보조와 농번기 급식과 농촌 영유아보호 도우미, 농로나 하천정비, 폐비닐 및 쓰레기 수집 등 농어촌환경 정비 등 일자리 창출

- 농어촌서비스산업을 위한 사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창업보육컨설팅 제공
  - 농업기술센터 등에 농촌형 소규모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 인접 시·군 연합 축제 합동개최 계획
  - 연합축제 시기에 적절한 농촌체험, 체류 연계 관광 상품 개발
  - 관광·기획 전문 업체와 공동 개발 사업 진행(위탁)
- 인접 시·군 연합 관광벨트조성 계획
  - 정형화(계절별, 프로그램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관광·기획 전문 업체와 공동 개발 사업 진행(위탁)
- 농촌 마을의 특성화를 체험형, 체류형으로 개발
  - 농사 및 문화 체험 및 특산물 판매를 추가
  - 체험형은 음식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프로그램 수행
  - 체류형은 휴향을 포함하면서 숙박, 음식, 체험을 망라하는 종합 체험프로그램을 수행

- 마을 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프로그램 확대 개발
-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산업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 예를 들어 승마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3000㎡이상의 면적과, 0.8m이상 목책시설, ② 10마리 이상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③ 마사를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가형 승마장이나 농촌래저형 승마산업의 발전을 저해(독일의 경우 2006년 현재 승마용 말이 100만두나 되며 산업규모가 20조원에 이르고 있음)
  -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주정의 제조는 500kl이상의 발효조를, 과실주 제조를 위해서는 6㎡이상의 원료처리실과 20㎡이상의 담금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적기준을 설정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저해

#### 4.3.4. 기대효과

- 3차 산업육성의 방향과 목적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축제가 축제로 끝나지 않고, 산업이 산업에 머물지 않는 내생적 연계형 발전체계 구축 가능
- 3차 산업은 대부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H/W적인 대형투자에 집착하지 않고, B/W형·S/W형 관광·문화·체험·축제산업을 정착시키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특성화발전, 나아가 지역이미지마케팅 등 다양한 연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체험마을육성 등은 마을의 정주여건개선 및 특성있는 마을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4.4.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 4.4.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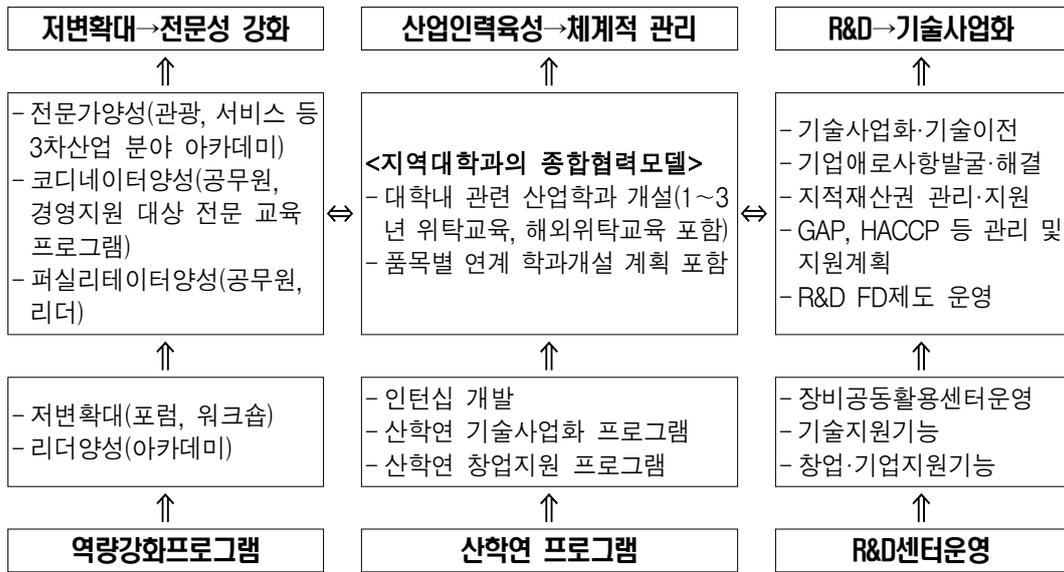
- 인재-기술-기업의 선순환시스템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
- 농어촌의 산업은 인재가 없어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기술력이 없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태되는 악순환 반복
- 그러나, 농어촌의 생활여건, 재정여건이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임과 동시에, 인재와 기술이 형성되어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묶여 두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 옴
-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형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첨단산업을 농산어업에 응용하여 농어촌의 2·3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함

### 4.4.2. 내용 및 체계도

#### 가. 내용 구성요소

기본내용	활용가능 내용
① 역량강화프로그램 - 문제해결형 스터디그룹 등 ② 산·학·연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아카데미 등	① R&D센터운영계획(장비공동활용센터 등) ② 지역특화산업연구클러스터, 기업연합연구소 설립·운영계획 ③ 대덕R&D특구, 권역별TP와의 기술교류 및 기술사업화 계획 ④ GAP, HACCP 등 도입계획 ⑤ 지역특화산업인력뱅크 운영계획 ⑥ 인턴십 및 고용장려금 도입·활용 계획

나. 구성요소간 체계도



4.4.3. 주요내용

- 지역내 인재를 지역특화산업의 핵심역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지역특화산업 아카데미 과정 등 이론과 실제와 벤치마킹 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역내 대학 및 인근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학과 개설 협력
  -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교육에서 2·3차 산업으로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농산업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인재양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지원체계 구축으로 신규사업 영역개발을 통한 창업지원 및 기술의 고도

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교과과정개발, 실습현장제공, 인턴제 도입 등
-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농촌산업 협력사업(누리사업모델) 추진
- 지역내 지역특화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기술인력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그룹’(미니클러스터)을 형성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로 운영
- 기업인·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기술애로사항·경영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적 포럼 등을 개최(지역특화산업추진단 역할 모델 정립)
- 전국의 지역특화산업 관련 인재와 기술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Network- Hub형 연구소 혹은 기업연합·장비공동활용연구센터 등 운영
- Network-Hub형 연구소: 최소운영비용으로 연구소 운영. 핵심분야 연구자를 고용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재와 R&D 네트워크 형성
- 기업연합연구소: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력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재정립 부문 포함 검토
- 장비공동활용센터: 지역특화산업분야에서 시제품생산, 신제품개발 등과 관련된 고가의 장비를 민관이 합동으로 구매하여 공동활용하는 센터 설립
- 대덕R&D특구 및 권역별 TP 등과 산학연관 기술교류포럼 정례화
- 수요자(지역기업인)의 기술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특화산업분야 참여 기

술자 및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함

- 특구지원단 및 TP 등에서 조사한 지역특화산업분야 특허 등 유망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매·지원하여 기술의 사업화 추진
- 지역특화산업별 지적재산권 확보계획 및 관리체계 제시
  - 특허, 실용신안 및 기술의 사업화 실적 제시
  - GAP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운영·관리체계 제시
-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학과의 교육과정 개편
  - 농산업 가공 관련 학과, 농산업 마케팅·디자인·홍보 관련 학과로의 재편 및 신규 개설
  - 농산업 전문 경영학과 개설 혹은 전문경영 교육프로그램 개설
  - 농산업 정보화 관련 학과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 농산업 전문 무역학과 개설 및 전문 교육과정 개설

#### 4.4.4. 기대효과

- 지역특화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수급체계 확보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가능

- 지역 내외의 기술력을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을 토대로 한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로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 가능
- 농어촌 산업의 추진 주체로서 기업인 양성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 R&D 지원 확대를 통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체계 구축

## 4.5. 농어촌기업 창업보육 지원

### 4.5.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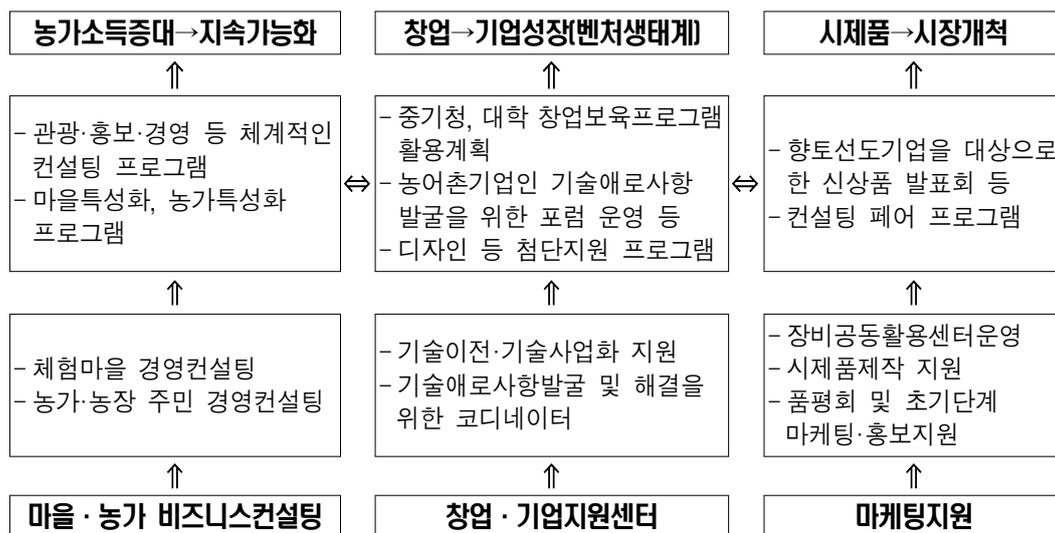
- 지경부, 노동부, 중기청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많으나 농어촌산업부문에까지 수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자체적인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나, 저가의 사무실 임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술·경영·마케팅 등 필수적인 컨설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임
- 향토자원은 풍부한데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을 통한 벤처형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 4.5.2. 내용 및 체계도

### 가. 내용 구성요소

기본내용	활용가능 내용
①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② 농촌체험마을, 농가레스토랑 등 비즈니스형 컨설팅 계획	① 네트워크-허브형 컨설팅 활용계획 ② 창업보육센터설치 ③ 품평회 운영계획(본격마케팅 전단계)

### 나. 구성요소간 체계도



### 4.5.3. 주요내용

- 창업보육 입지공간 운영계획 제시
- 특화된 농공단지 및 관련시설이 인접해 있는 위치에 창업보육을 위한 입지공간 운영계획 수립
- 농어촌산업육성추진단, 지역특화산업 R&D센터,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문적인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

- 초기에는 외부 컨설팅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 입주기업수가 늘어나면, 실적에 따라 단계별 컨설팅 기능을 자체 보유할 수 있도록 진행
- 창업단계별 정보제공시스템 제시
  - 예, 계획단계(시장정보제공·창업절차·자금조달·인력확보)
  - 창업단계(전문인력확보·조직구성·판매망 구축)
  - 성장단계(홍보·마케팅·시설 및 운영자금·신기술·신시장)
- 인근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공동참여 할수 있는 방안 마련
  - 인근 대학과 창업보육센터 공동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
  - 대학의 창업 보육센터내의 기업 설치시 군의 추천으로 설치될 경우 지원 대책 마련
  - 대학의 창업 보육센터가 지역의 농산업지역특화산업 중으로의 전환 시 지원금 지원
  - 지역의 지역협력단과 공동으로 대학 내 창업 보육센터의 보육 및 기술 전문가 지원
-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 기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약 수행
  -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의 창업 기업 지원 기능 혜택을 위해

### 자문 실시

- 기술혁신 등 일반 기업 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들도 혜택 입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 후 지원
- 중앙부처 혹은 광역 및 인근지방자치단체 연합 컨설팅팀 운영계획 수립
- 기술·경영·마케팅·투자유치·기술의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재무, 법률, 투자계획, 세제정보, 토지이용규제, 도시자본 투자관심 대상 분류 등 종합 컨설팅 계획 수립
-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제품 품평회를 통해 품질향상 및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
- 바이어품평회, 디자이너품평회, 기술품평회, 기자단품평회, 주부평가단품평회 등
- 창업초기단계에 이르는 시기, 즉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기 이전 시기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필요

### 4.5.4. 기대효과

-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배가할 수 있음
- 청년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의 토대가 강화됨
- 지역의 농촌산업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에서 안주하지 않고, 경쟁적 관계를 통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 창출



-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스템 구축

## 4.6.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 4.6.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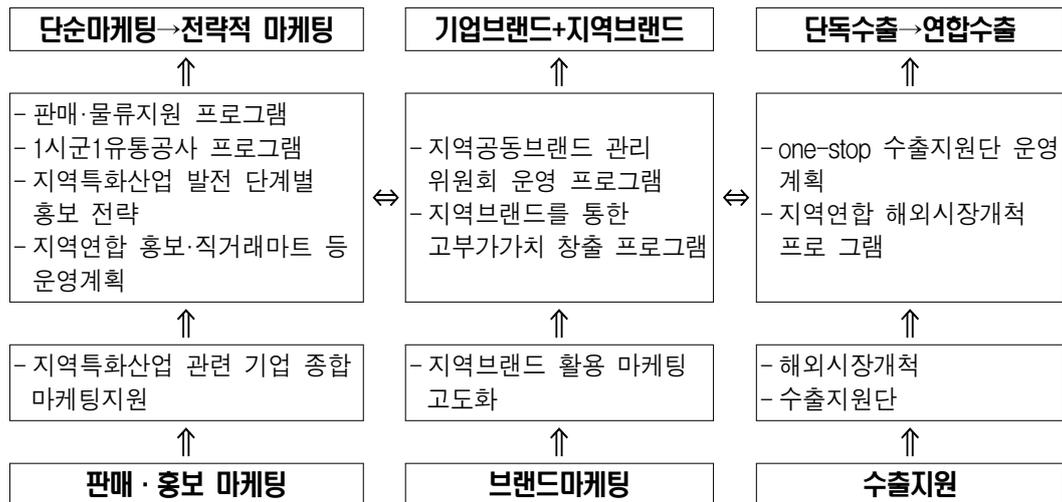
- 농어촌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은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대규모 유통투자가 어렵고, 대부분 시·군단위의 행정구역을 통해 보호·육성되고 있어 자생적인 통합 마케팅 단계로 접어들기 어려운 조건임
- 시장성이 확인된 일부 제품에 한해 대형 유통망을 형성한 대기업 제조기능이 지역에 투자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임(고창 국순당, 순창 청정원 등)
- 특히 수출부문은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내생적 역량에 비해 수출증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무안(백련): 2008년 연산업축제를 통해 521만불 수출계약 체결
  - 부여(종합): 2007년 250억원 수출, 2010년 500억원 목표
  - 서천(김): 2007년 100만불 수출, 2010년 280만불 목표
  - 부안(오디·뽕): 2007년 200억원 수출, 2010년 800억원 목표
  - 하동(녹차): 2007년 12억원 수출, 2010년 32억원 목표

## 4.6.2. 내용 및 체계도

### 가. 내용 구성요소

기본내용	활용가능 내용
① 종합마케팅 계획 ② 지역공동브랜드 활용·운영계획	① one-stop 수출지원단 운영계획 ② 해외시장개척 활동계획 ③ 지역연합홍보 및 직거래마트운영계획 ④ 지역연합 해외시장개척 계획

### 나. 구성요소간 체계도



## 4.6.3. 주요내용

### □ 지역종합마케팅 모델 제시

- 시·군 유통회사를 통한 종합 마케팅 추진전략
- 지역내 농특산물, 가공상품, 지역관광상품 등을 총망라한 종합마케팅 전략 모델 제시(무안 황토랑유통공사 등)

- 1시·군 1유통회사 유형의 제도적 접근방안 제시
- 지역연합 홍보 및 직거래마트 개설 계획
- 인접지역과 연합하여 농어촌산업 생산제품 공동홍보계획 수립
- 품목별 직거래마트 개설 및 참여 계획 수립
  - 국산차 전문생산지역(보성, 하동, 제주, 산청, 함양, 문경, 담양, 청양, 무안 등) 간 연합하여 ‘국산차시장’을 전문마트 형태로 개설
  - 국산 와인생산지역(영동, 청도, 순창, 부안, 함양, 함평, 봉화, 파주, 영천 등) 간 연합하여 ‘국산와인바’를 전문마트 형태로 개설
- 농어촌산업 생산제품의 품질 등을 보증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공동브랜드 운영 계획
- 기업의 고유상표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역공동브랜드 관리 위원회 등을 통해 생산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모델 제시
- 품목별로 광역 시·도의 지역공동브랜드 활용계획 포함 가능
- 품목별로 품목별 국가브랜드 활용계획 포함 가능
- 수출지원시스템 운영 모델 제시
- One Stop 수출지원단 운영 모델 제시
  - 지역협력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출지원단 혹은 수출자문단 운영모델 제시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활동 모델 제시
  - 1시·군 1명의 해외바이어 관리차원에서 국제적 대형마트의 아시아권 물

#### 품구매담당자 관리 체계

- 해외연수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국제박람회 지역기업의 물품을 출시하고, 해외에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전략적 진출을 염두에 둔 해외현지시장개척센터 공동운영계획 제시
  - 일본, 중국 등 전략적 지역에 동일품목별 시·군이 공동홍보 및 현지시장개척센터 운영계획

#### 4.6.4. 기대효과

- 물류 관련 마케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신규시장개척 및 시장확대를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반 확보
- 다양한 품목을 기초로 국내시장의 확대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거양
- 국내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4.7.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4.7.1. 현황 및 필요성

- 자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입지와 인력수급 여건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에 향토자원 관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형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을 통한 농어촌산업 발전은 정착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며, 인재와

기술이 부족한 지역의 여건상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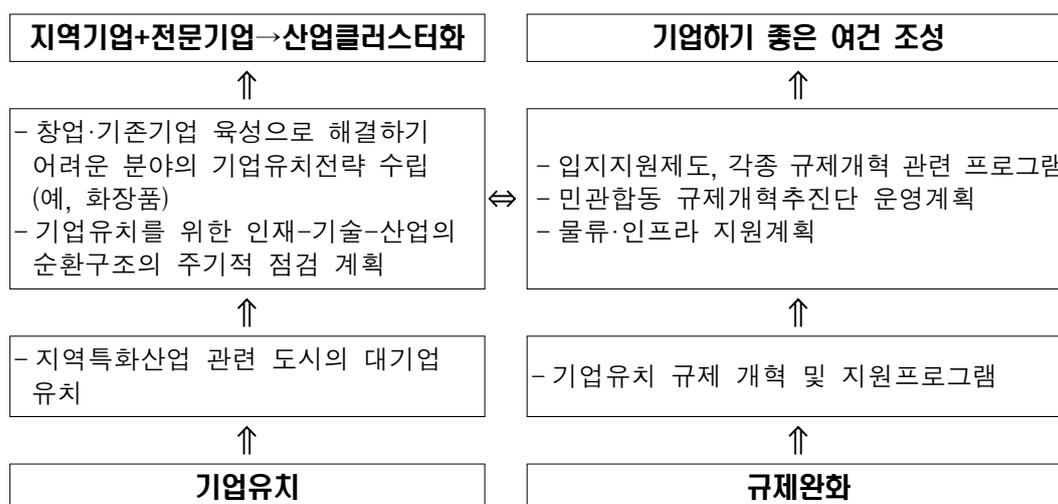
- 향토기업육성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투자유치는 농어촌산업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안임
- 기업설립조건, 입지여건 조성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세제혜택 및 고용지원 확대, R&D 지원체계 등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투자를 통한 농어촌산업 발전을 달성해야 함

#### 4.7.2. 내용 및 체계도

##### 가. 내용 구성요소

기본내용	활용가능 내용
① 기업유치 여건조성 계획 ②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계획	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계획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운영계획)

##### 나. 구성요소간 체계도



### 4.7.3. 주요내용

- 지역특화산업 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H/W 및 S/W 기반조성 계획
  - 2~3년 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Action Plan 제시 (특화단지 조성, R&D체계 구축, 인력양성 계획 등)
-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점검 및 대폭적인 완화계획
  - 기업설립조건, 입지조성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 계획
-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정비계획
  - 입지조성시 인센티브, 세제혜택, 고용지원, R&D 지원 등의 계획
-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지역기업인 및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위원회 혹은 민관합동 추진단 운영 계획
  - 일률적인 규제완화와 사례별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규제운동을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추진단 운영
  - 규제완화 관련된 활동 이외에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추진단 운영

### 4.7.4. 기대효과

- 막연한 기업투자유치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기업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조성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H/W적 조건에만 치중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적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타겟형 기업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함
  
- 규제개혁 등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동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됨

## 제 5 장

### 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 1. 농어촌산업 사례분석 개요

##### 1.1. 사례지역의 선정과 주요내용

###### 1.1.1. 사례지역의 선정

-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례
  - 외부 기업의 단순한 지역 내 유치보다는 농특산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발생시키고 산업체계를 구축한 사례 선정
  - 지역 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 선정
  
-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
  - 공식적 거래관계의 관점에서 본 전후방연계의 산업체계가 지역 내 구축되고 있는 사례 선정
  - 비공식적이고 비교역적인 관계(untraded relation)까지도 포함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 선정



- 해당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의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례
  -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중 특히 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관련 사업체의 증가,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해당 산업의 GRDP 비중 증가, 주민의 소득 증대 등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되어야 함
  - 이러한 평가 지표 중 통계자료의 제약을 고려하여 사업체 수,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증대의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 선정
  
- 지역의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있어 2·3차 산업 부문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보다 시급한 군지역, 그리고 자체생활권 지역의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 지역유형별 농어촌의 산업실태분석에서 볼 수 있었듯이 농어촌지역 시·군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도노통합시 중 대도시 연계권 지역과 지방거점도시 및 중소도시 연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농촌지역 시·군의 일자리가 지난 10년 간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농업 종사자의 감소를 고려할 시 지역의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곳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고용 감소지역들 중 농특산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통해 이른 바 지역특화산업 부문에서는 고용증가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3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추진체계를 분석
  - 충청북도 증평군 인삼산업
  - 전라북도 고창군 복분자산업
  - 경상북도 상주시 꽃감산업

### 1.1.2. 주요 분석 내용

- 사례지역의 산업구조 실태
  - 사례지역의 농어촌산업 발전 잠재력과 관련한 지역 특성 분석
  - 산업 부문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을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와 특성 분석
  - 농어촌지역 입지 지향적 산업의 발전 추세 분석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체계
  -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례지역의 정책사업 추진 현황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특성 분석
  
- 지역특화산업의 구조와 특성
  - 농특산물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의 가치체인을 통해 본 산업구조 분석
  - 직접적인 생산과정의 전후방 연계 외에도 자치단체의 정책투입, 대학, 연구소, 창업보육기관 등간의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본 산업클러스터 특성 분석
  - 지역특화산업의 구조 및 산업클러스터 특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지역특화산업의 산업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수요 도출
  
-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현황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특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애로점과 정책 수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파급 효과
  - 지역 내 기업활동 및 고용 창출 효과
  - 지역 내 전후방 연계 효과
  - 기타 지역특화산업 관련 파급 효과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방안과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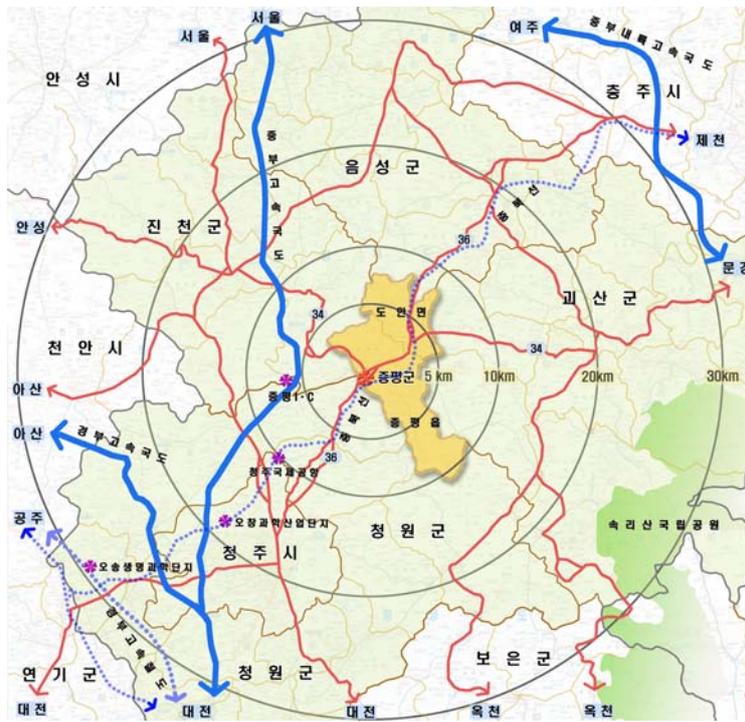
## 2. 중소도시 연계형 군지역의 농어촌산업: 증평군 인삼산업

### 2.1. 증평군의 지역특성 및 산업구조 실태

#### 2.1.1. 증평의 지역 특성

- 섬인 울릉군을 제외하고 면적이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내 인삼재배 기반이 미약. 그러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은 높음
  - 농어촌지역의 140개 시군 평균 면적의 1/8 수준인 매우 작은 자치단체로 농경지의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음
    - 농어촌지역 140개 시군의 평균 면적이 665.9km<sup>2</sup>인 반면, 1개 읍과 1개 면으로 구성된 증평군의 면적은 81.8km<sup>2</sup>에 불과함
  - 증평군의 인삼재배 면적은 200ha, 생산량은 전국의 1.7%인 372톤에 불과함(2006년 기준)
  - 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8년 5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의 인구가 31,714명(12,250세대)이며 실제 상주인구는 5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됨
- 지리적 이점으로 충청북도 지역 인삼의 집하 및 가공, 유통의 적지
  - 충청북도는 국내 인삼 생산량의 약 25%를 생산하고 있으며, 증평군은 도의 중심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인삼의 집하 및 가공과 유통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소비지와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시장 접근성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청주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으로 향후 인삼의 국제교역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음

그림 5-1. 증평군의 지리적 위치



### 2.1.2. 증평군의 산업구조 실태

-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25.4%), 도소매업(14.9%), 숙박 및 음식점업 (11.0%), 그 외 3차 산업(41.7%) 등이 주요 산업부문을 구성.<sup>17</sup> 그러나 그 외 3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주요 산업의 비중 및 종사자 수가 감소
  - 증평군의 제조업 비중은 140개 농촌지역 시·군 평균 비중(32.1%)이나 군 지역 평균 비중(25.9%)보다 낮음
  - 1995~2005년 간 종사자 수 증가율도 140개 농촌지역 시·군은 평균

<sup>17</sup> 그 외 3차 산업이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 102.0%, 군 지역은 평균 25.9% 증가하고 있는 반면, 증평균은 -7.0%로 감소하고 있음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도 140개 농촌지역 시·군과 군 지역은 평균적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하여 왔지만(1995-2005년 기준), 증평균은 이두 부문 역시 각각 -4.9%와 -11.2% 만큼 감소하고 있음
- 그 외 3차 산업 중 건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 주도
- 주요 산업들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외 3차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1,017명 증가)가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음
    - 10년(1995~2005년) 간 건설업에서 322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308명, 교육서비스업에서 371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121명의 고용증가를 보임
  - 건설업에서의 고용 증가는 현재 증평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3,800세대 규모)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고용 증가는 증평균이 2003년 8월 출장소에서 군으로 승격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는 청주과학대(충주대 분교)의 2003년 개교로 인해 해당 고용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농업종사자의 감소를 고려하고 일시적 고용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증평균의 인구는 감소하였을 것임
- 1995~2005년 간 증평균의 고용은 사업체 종사자 기준으로 454명 증가하였으나 농업종사자의 감소(-299명)를 고려하면 실제 증가는 155명에 그침(<표 5-2> 참조)
  - 여기에 건설업에서의 일시적 고용 증가(322명)를 제외하면 실제 증평균의 10년간 고용은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5-1. 증평균 산업구조

구 분	사업체(개)			종사자(명)		
	1995년	2005년	증감율	1995년	2005년	증감율
농림어업	4 (0.2)	4 (0.2)	0 (0.0)	27 (0.3)	66 (0.7)	39 (144.4)
·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b>3</b> <b>(0.2)</b>	<b>1</b> <b>(0.0)</b>	<b>-2</b> <b>(-66.7)</b>	<b>15</b> <b>(0.2)</b>	<b>4</b> <b>(0.0)</b>	<b>-11</b> <b>(-73.3)</b>
광업	1 (0.1)	2 (0.1)	1 (100.0)	7 (0.1)	25 (0.3)	18 (257.1)
제조업	157 (8.1)	189 (8.8)	32 (20.4)	2,429 (28.8)	2,259 (25.4)	-170 (-7.0)
○ 음식료품제조업	57 (2.9)	85 (4.0)	28 (49.1)	422 (5.0)	651 (7.3)	229 (54.3)
· 농림수산물가공	<b>46</b> <b>(2.4)</b>	<b>57</b> <b>(2.7)</b>	<b>11</b> <b>(23.9)</b>	<b>399</b> <b>(4.7)</b>	<b>590</b> <b>(6.6)</b>	<b>191</b> <b>(47.9)</b>
도소매업	710 (36.5)	598 (27.9)	-112 (-15.8)	1,391 (16.5)	1,323 (14.9)	-68 (-4.9)
· 가공농축산물유통	<b>27</b> <b>(1.4)</b>	<b>27</b> <b>(1.3)</b>	<b>0</b> <b>(0.0)</b>	<b>67</b> <b>(0.8)</b>	<b>82</b> <b>(0.9)</b>	<b>15</b> <b>(22.4)</b>
숙박 및 음식점업	377 (19.4)	444 (20.7)	67 (17.8)	1,098 (13.0)	975 (11.0)	-123 (-11.2)
· 관광관련(음식·숙박)	<b>218</b> <b>(11.2)</b>	<b>259</b> <b>(12.1)</b>	<b>41</b> <b>(18.8)</b>	<b>541</b> <b>(6.4)</b>	<b>568</b> <b>(6.4)</b>	<b>27</b> <b>(5.0)</b>
운수업	155 (8.0)	220 (10.3)	65 (41.9)	651 (7.7)	344 (3.9)	-307 (-47.2)
· 여행 및 관련서비스업	<b>4</b> <b>(0.2)</b>	<b>1</b> <b>(0.0)</b>	<b>-3</b> <b>(-75.0)</b>	<b>9</b> <b>(0.1)</b>	<b>1</b> <b>(0.0)</b>	<b>-8</b> <b>(-88.9)</b>
사업서비스업	21 (1.1)	30 (1.4)	9 (42.9)	137 (1.6)	185 (2.1)	48 (35.0)
· 연구개발기반분야	<b>3</b> <b>(0.2)</b>	<b>2</b> <b>(0.1)</b>	<b>-1</b> <b>(-33.3)</b>	<b>88</b> <b>(1.0)</b>	<b>18</b> <b>(0.2)</b>	<b>-70</b> <b>(-79.5)</b>
·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b>5</b> <b>(0.3)</b>	<b>5</b> <b>(0.2)</b>	<b>0</b> <b>(0.0)</b>	<b>26</b> <b>(0.3)</b>	<b>19</b> <b>(0.2)</b>	<b>-7</b> <b>(-26.9)</b>
그 외 3차 산업	522 (26.8)	654 (30.5)	132 (25.3)	2,693 (31.9)	3,710 (41.7)	2,027 <b>(37.8)</b>
전산업	1,947 (100.0)	2,141 (100.0)	194 (10.0)	8,433 (100.0)	8,887 (100.0)	454 (5.4)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표 5-2. 증평균 농업종사자 수

단위: 명, %

구 분	1995년	2005년	증감양	증감율
증평균 농업종사자 수	3,394	3,095	-299	-8.8

- 주요 산업부문의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농특산물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가공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140개 농촌지역 시·군 및 군 지역 평균 비중보다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증평균의 경우 농림수산물가공 부문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군 지역 평균 4.7%)이며 10년 간 종사자 수도 47.9%(군 지역 평균 12.1%), 즉 191명 증가함
  - 이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농림수산물가공 부문의 고용 증가는 인삼가공부문의 고용 증가에 기반하고 있음

## 2.2. 증평균의 농어촌산업 육성 추진 체계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부서 및 예산 실태
  - 증평균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은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조성,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임
  - 이들 사업은 모두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으로 사업비 총 예산액(총 사업기간 해당 분)은 527.3억원임
    - 이중 국비가 63%, 도비 4%, 군비18%, 자부담 및 민자유치가 15%를 차지하고 있음
  - 증평균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자치단체인데다 추진해온 농어촌산업 관련 5개 사업 모두 지방비 분담이나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투입의 매칭 조건으로 인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우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
    - 증평균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으로 12.2%로 140개 농촌지역 시·군 중 112번째의 재정자립 취약 자치단체임
    -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증평균의 경우 1기 신활력사업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2기 신활력사업에 투입하는 등 가용 재원을 적절히 활용

하여 산업육성에 활용하고 있음

-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의 주무부서가 경제과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4개 사업의 주무부서는 모두 농정과임
-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통합된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무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5-3. 증평균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예산과 부서 간 협력 실태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사업비 비중(%)				주무 부서	협력 부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및 민자유치		
신활력사업 (농식품부)	2005-10	240.0	65	0	15	20	농정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기획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농식품부)	2006	2.0	60	25	15	0	농정과	-
지역특화품목 육성(농식품부)	2008-10	30.7	45	10	15	30	농정과	경제과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산림청)	2007-08	43.4	55	12	33	0	농정과	-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중기청)	2002-07	67.6	70	10	20	0	경제과	-
예산 총계	-	527.3	63	4	18	15	-	-

#### ○ 계획수립 및 평가 추진 체계 실태

- 계획수립은 사업신청단계의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인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의 실제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각 계획의 실제 작성주체로는 주로 해당 마을이나 사업자, 군청이 해당
- 반면 신활력사업이나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은 외부 전문가 집단이나 조직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있음
- 사업의 추진 주체는 모두 주무부서로,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TF팀이나 전담부서의 운영 또는 외부 전문인력의 채용 등 전문인력이나 조직의 활용이 전무한 상황임



- 사업 추진의 점검(모니터링)과 평가는 군청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과 평가가 부족한 실정임

표 5-4. 증평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사업 추진체계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예비계획 작성주체	사업계획 작성주체	시행계획 작성주체	사업추진 주체(조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신활력사업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조직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조직	군청	주무부서	군청, 중앙정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식품부)	해당 마을	해당 마을	해당 마을	주무부서	없음
지역특화품목 육성(농식품부)	해당 사업자	해당 사업자	해당 사업자	주무부서	군청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산림청)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조직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조직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조직	주무부서	군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중기청)	군청	군청	해당 사업자	주무부서	군청

## 2.3. 증평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실태: 인삼산업

### 2.3.1. 증평군 인삼산업의 구조

#### ○ 증평군 인삼산업의 가치체인 단계별 구조

- 증평군의 인삼 생산량은 연간 372톤(2006년 기준)으로 전국 생산량의 1.7% 수준임
  - 재배농가는 294호로 이들은 인삼재배의 특성 상 군 관내에서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충북외 지역에서도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배 면적은 200ha 정도임
- 인삼제품 제조업(가공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10여 년간 20배 이상 증가
  - 1995년 기준으로 증평군(당시 증평출장소)에는 인삼제품 가공업체가

한 곳밖에 없었지만 최근 군의 인삼산업 육성과 함께 가공업체가 5곳으로 증가함

- (주)농협고려인삼 가공공장,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그리고 창업보육 단계의 소기업 3곳 등이 이에 해당
- 인삼제품 가공업체 종사자 수 또한 2005년 4명에서 20배 이상 증가한 100~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밖에 풀무원건강생활(주), 민속한식품 등이 인삼차나 음료와 같은 일부 관련 제품을 일부 생산하고 있음
- 인삼 가공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체는 없는 실정임. 단, 수삼은 재래시장 내 2개 점포와 인삼바이오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인삼바이오센터에서는 인삼 가공제품도 상설 전시·판매하고 있음

표 5-5. 증평군의 인삼재배 현황: 2006년

구분 읍면	계		관내경작자		타 시·군경작자		타 시·도경작자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294	200	222	148(74%)	51	34.8(17.4%)	21	17.2(8.6%)
증평읍	211	138.8	157	102.8	38	24.3	16	11.7
도안면	83	61.2	65	45.2	13	10.5	5	5.5

자료: 증평군 통계연보

표 5-6. 증평군 인삼가공업체 및 종업원 현황

구 분	사업체		종사자	
	1995년	2008년	1995년	2008년
현황	1	5	4	1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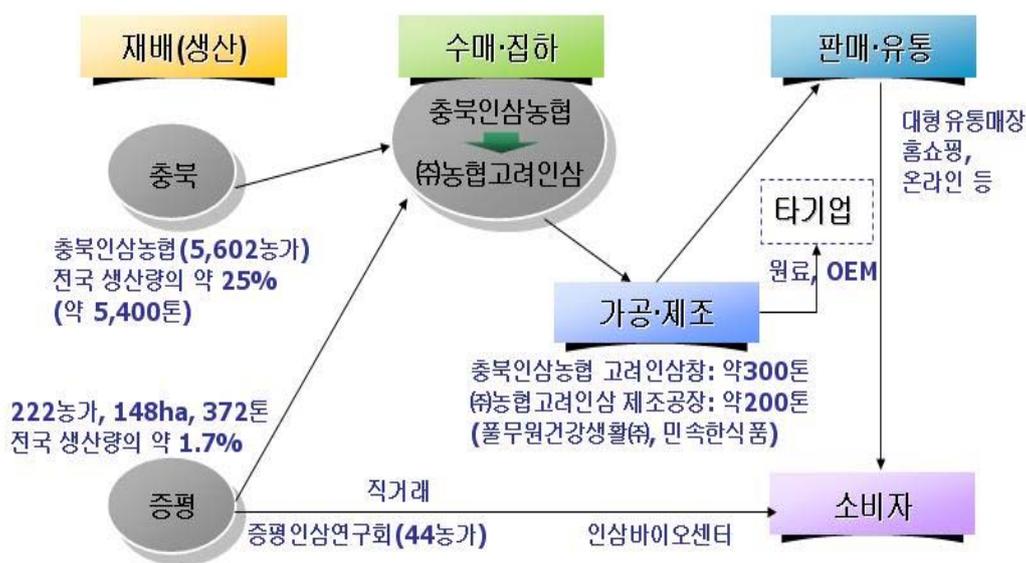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자료 및 인터뷰 내용 취합

○ 증평 인삼산업의 전후방 연계 구조

- 고려인삼창이 증평군을 포함한 충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중 매년 300톤 가량을 구매하여 홍삼 및 관련 제품들을 가공·생산하고 있음

- (주)농협고려인삼 역시 200톤 가량의 홍삼 및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음
- 풀무원건강생활(주)과 민속한식품은 인삼음료 및 인삼한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밖에 3개의 신생 인삼가공업체가 증평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지
- 고려인삼창과 (주)농협고려인삼 제조공장에서 가공·생산되는 인삼제품은 대도시의 대형유통매장이나 홈쇼핑,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수삼 및 홍삼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에 중간재로 판매되거나 OEM을 통해 납품되고 있음
- 증평군 내 인삼작목반들이 통합된 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소속 일부 농가들의 경우 증평군 재래시장에 설치된 2개의 직판장과 인삼바이오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삼을 판매하고, 서울 아파트 단지와의 인삼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5-2. 증평군 인삼산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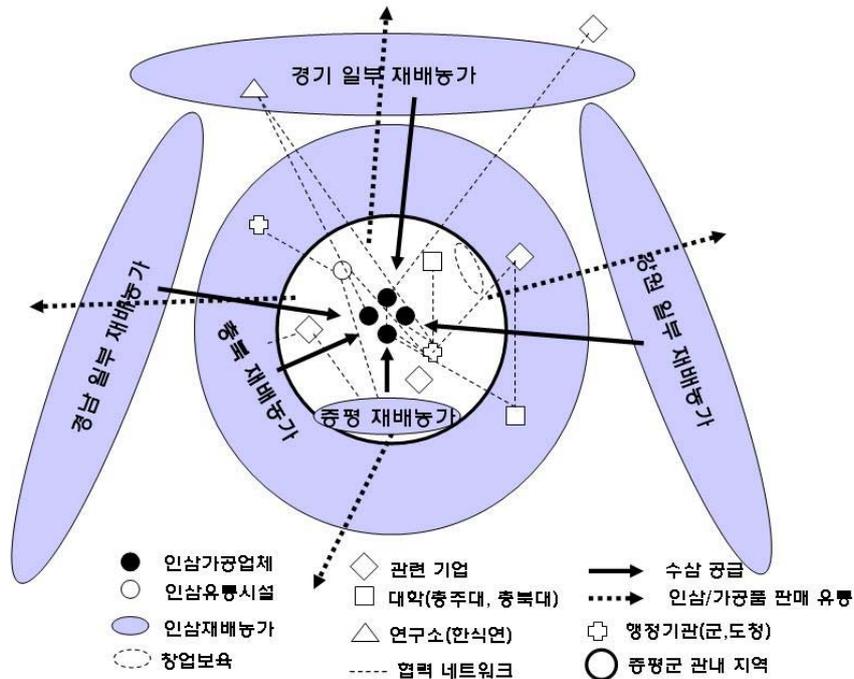


주: 관련기업은 충남인삼농협 본사, (주)농협고려인삼 서울 본사, (주)오비티(홍삼포크개발), 증평양돈협회 등을 의미

○ 지속가능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 최근 국내에서 추진된 다양한 클러스터 지원 정책은 최신의 산업집적 이론을 과거의 단순집적으로 되보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단순 집적지의 정책적 조성은 정책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산업 클러스터가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반해 증평의 인삼산업은 교통망의 확충,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근거리 등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가공 및 제조, 유통 기능이 지역 내 자발적으로 입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 초기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됨
- 증평군은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주체들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지원을 투입하고 있음
- 물론 증평은 인삼산업 클러스터의 성장 초기 단계라 인삼재배기반, 상품 유통기반, 연구개발기반 등이 약하지만 증평군의 지원으로 이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그림 5-3. 증평 인삼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위치: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증평 인삼바이오센터 내
- 규모: 연면적 584.3㎡
- 사업비: 12.2억원(신활력사업비)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주요 시설	면적	비고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기계실</li> <li>• 창고</li> </ul>	110.2㎡	소방펌프 및 제어기 입주업체 물품보관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실</li> </ul>	92.7㎡	기계 조작실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1</li> <li>• 사무실 2</li> <li>• 사무실 3</li> <li>• 제조실</li> </ul>	25.0㎡ 25.0㎡ 30.4㎡ 301.0㎡	이윤구 늘자연유통영농조합법인 증평바이오고려인삼 입주업체 제조실

- 추출기, 농축기, 껌용 농축기, 교반기 등 생산설비 지원
-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스캐너, 책상, 의자, 진열장, 캐비닛 등 사무용품 지원

- 입주 계약 기간: 3년
- 입주업체 현황

입주 업체	창업분야	개발제품
증평바이오고려인삼	인삼, 홍삼을 가공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제조	프리미엄홍삼액상 쌍뜨레홍삼봉봉초콜릿 (특허 출원 중) 고려홍삼절편
늘자연유통영농조합법인	인삼, 홍삼을 가공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제조	홍삼액상, 홍삼농축액
개인 사업체	인삼을 가공한 식품 개발 및 제조	홍삼엑기스

- 또한 증평의 인삼산업 클러스터는 군 관할지역을 벗어나 충청북도는 물론 인근 도까지 포함하는 인삼산업의 광역연계형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청주과학대(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충북대학교-한국식품연구원(MOU 체결)-인삼가공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인삼사업단의 전문가 그룹 등의 관내 혁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대학,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아우르는 광역화된 지역혁신체계의 수립도 가능
- 이밖에 증평군 내에 인삼제품 가공업체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져 시장 참여자들을 집중 육성하여 협력과 함께 공정한 시장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증평군에서는 현재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증평군 인삼산업 지원현황

- 신활력사업을 통해 인삼산업 본격 지원
  - 증평군의 인삼산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지역 특산물 개발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인삼연구소(현재 (주)농협고려인삼 신축공장 부지)가 설립된 것이 계기였음
  - 이후 1990년대 초 인심축제,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인삼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인삼에 대한 군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증대하였음
- 증평군의 인삼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증평군은 신활력사업 1기에 이어 2기에도 인삼산업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1기 신활력사업을 통해 인삼유통시스템 구축 및 인삼바이오센터 건립, 인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지원, 증평인삼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함

- 2기 신활력사업(人과 蓼이 함께하는 5都2村 증평) 기간에는 인삼사업단의 구성, 인삼을 활용한 바이오 가공품 개발(인삼주 및 기타 인삼가공품), 인삼바이오센터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증평인삼 친환경 명품화, 포장재 개발 지원, 홍삼포크 등 인삼 파생상품의 유통활성화 지원, 인삼을 매개로 한 그리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인삼계열화기반사업, 그레놀 홍삼·인삼 건강식품 가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도 지원사업(도지사 공약)으로 인삼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

표 5-7. 증평군의 인삼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구 분	1기 신활력	농촌활력증진사업	
		2기 신활력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 기간	2005~2007	2008~2010	2008~2010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을 통한 유통시스템 구축</li> <li>○ 인삼생산농가의 가공식품 개발지원</li> <li>○ 홍보·마케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사업단 구성·운영</li> <li>○ 인삼주 및 인삼가공제품 생산기반 조성</li> <li>○ 인삼바이오센터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li> <li>○ 증평인삼 친환경 명품화</li> <li>○ 바이오공동브랜드(늘자연) 유통활성화</li> <li>○ 그린투어리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계열화사업 기반조성</li> <li>○ 그레놀 홍삼인삼 건강식품 가공시설</li> </ul>

### 2.3.2. 증평군 인삼산업 육성 추진 체계

- 지역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인삼산업 선정 배경
  - 충청북도가 전국 인삼 생산량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매하는 충북인삼조합이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고, 증평군 역시 충청북도 내에서와 수도권을 비롯한 인근 도시권의 교통 결절지에 입지하고 있어 인삼산업을 위한 입지여건이 좋음

- 1970년대 농촌진흥청이 인삼시험장 부지 물색을 위해 인삼재배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증평이 가장 적지로 선정되었음
  - (주)농협고려인삼 가공공장,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등 비교적 대규모 인삼제품 가공업체가 입지하고 있어 인삼산업 발달의 기초가 구축됨
  - 이러한 지역 조건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삼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되었음
- 인삼산업 육성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사업추진 목적)
- 전후방 연계산업의 육성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
  - 두 번째로는 관련 사업체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 인삼산업을 육성 중임
-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체계
- 인삼산업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이전 예비계획의 수립은 농촌활력증진계획(신활력)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였으며, 기본계획은 외부 전문가의 용역(‘증평인삼이 비교우위 평가 용역’)을 바탕으로 수립함. 또 사업의 시행계획은 해당 분야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였음
  - 인삼산업 육성사업은 기존의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군 자체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해오고 있는 만큼 농정과가 주무부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실, 경제과,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증평군의 사업추진은 2006년부터 2012년(6년간) 기간 동안 2년씩 3단계로 추진되며, 총 사업기간 동안 약 200억원(1단계 50억, 2단계 100억, 3단계 50억)이 투입될 계획임
    - 사업비 조달은 신활력사업비에서 6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에서 20%, 그리고 군 자체사업비로 20%를 충당할 계획임
    -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 도시 10%, 군비 20%, 그리고 자부담 및 민자유치가 20%를 차지하고 있음
  - 인삼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및 전담조직은 전혀 운용되



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점검(모니터링)이나 평가는 군 행정조직이 하고 있으며, 그 외 전문가 조직의 활용이나 상위 기관의 점검 및 평가 활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삼산업 육성의 애로점

- 인삼산업 관련 공무원과의 면접조사 결과 중평균의 인삼산업은 생산 측면에서는 아직 생산자 조직들(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충북인삼농협 등) 간의 합리적 협력관계 구축이 취약한 실정임
- 유통 측면에서는 향후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을 계기로 충북 12개 시·군의 인삼생산자 조직이 해당 센터에 입주할 예정인데, 아직 ‘중평균에서는 증평 인삼만 유통시켜야 한다’는 생산자들의 편협한 사고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앞서 인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과 대표브랜드화가 필요
- 인삼유통의 거점을 단일화(금산) 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거점화 해야 함
- 중평균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삼의 단순 재배, 가공, 유통 이외에도 인삼산업을 관광자원화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정책 지원 필요
  - 인삼가공업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비교적 대규모 업체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를 통한 원료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 창업지원센터의 소기업의 경우는 개발·생산한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역 공동 마케팅 및 수출체계 확립’을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지적하고 있음

## 2.4. 증평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파급 효과: 인삼산업

-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인삼재배 및 유통기반의 구축, 가공·제조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고려인삼창 40여명, (주)농협고려인삼 제조공장 40여명 등)
  - (주)농협고려인삼의 본사가 증평으로 이전되고 제조공장이 신축되면 지역 내 인삼가공 능력이 증대함은 물론 약 500여 명의 주민에게 신규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입주 기업들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기업 당 평균 34.3명(상시 고용 23.7명), 일반산업단지 기업은 기업 당 평균 62.0명(상시 고용 48.5명)의 증평군 주민을 고용하고 있음(<표 5-8> 참조)
  - 그러나 지역 주민 고용 비중은 ‘지역특화산업 소기업 > 지역특화산업 중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내 자원의 투입을 통한 후방연계 도모
  - 소수의 사례만을 참고하였지만, 증평군 내에서 원료 및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비중은 농공단지 기업과 지역특화산업 소기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5-8> 참조)
    -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1개 기업만이 해당 질문에 응답하였는데, 응답 기업의 업종이 제빵 분야라 지역 내 원료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역시 면접조사 결과 향후 증평군의 인삼사업 계열화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군 관내 인삼재배농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삼을 조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5-8. 증평군 유형별 기업의 지역 파급효과

구 분	농공 단지 (3개 기업)	일반 산업단지 (2개 기업)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증평인삼 바이오 고려인삼	비고
연간 총 종사자 수(명)	247	277	50	5	모든 형태의 종사자 포함
연간 종사자 중 증평군 주민 수(명)	103	124	40	5	-
· 증평군 주민 비중(%)(명)	<b>41.7</b>	<b>44.8</b>	<b>80.0</b>	<b>100.0</b>	-
증평외 충북도민(명)	114	74	10	0	-
충북 이외(명)	30	79	0	0	-
농가인력(명)	33	0	30	0	일반산업단지는 1개 기업 응답
비농가인력(명)	214	186	20	5	
상시고용(명)	114	239	20	2	농공단지는 2개 기업 응답
임시고용·파트타임 등(명)	8	38	30	3	
상시고용 중 증평주민(명)	71	97	10	2	
· 상시고용 중 증평주민 비중(%)	<b>62.3</b>	<b>40.6</b>	<b>50.0</b>	<b>100.0</b>	
증평군 내 원료 및 원부자재 연간 구입액(억원)	1.2	0	무응답	0.3	농공단지는 1개 기업 응답
전체구입액중비중(%)	30	0	무응답	30	-

## ○ 증평인삼 인지도 증대와 주민 소득 증대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증평인삼이 북한의 인삼으로 오인되던 상황이었지만, 증평인삼 홍보지원을 통해 이제는 증평이 금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인삼산업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음(군 자체 평가)
- 인삼바이오센터를 2007년 10월부터 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위탁 운영하면서 동 센터에서의 월평균 판매액이 세 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2009년 인삼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내 인삼 유통기반이 보다 확충되어 인삼 및 관련제품의 판매액 보다 증가할 것임

## ○ R&amp;D 및 기술이전 기반 및 창업보육 기반 확충

- 한국식품연구원과의 R&D MOU 체결로 지역 내 인삼관련 기술개발 및 이전 기반이 구축됨

-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삼가공업체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을 육성
  - 그러나 관련 기업들의 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경쟁과 협력의 조화라는 건전한 클러스터의 미덕을 발휘하여 증평의 인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

## 2.5. 증평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과 구상: 인삼산업

### □ 목표(사업추진의 방향)

- 인삼 특화작목 육성 및 기능성 식품개발을 통한 바이오농산업 건강도시 증평 건설

### □ 인삼산업 육성 추진 계획: 농촌활력증진계획(2008~2010)

#### ○ 신활력사업

- 인삼사업단 구성 운영
  -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및 협력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
  - 증평 인삼 및 특화작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인삼 등 특화품목 육성
  - 인삼주 등 인삼가공제품 개발과 생산기반 구축
- 인삼 및 특화상품 홍보 마케팅
  - 증평 인삼 및 특화작목, 인삼가공식품 홍보 지원. 생산자단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 인삼바이오센터 활성화 지원
- 증평인삼 명품화 사업, 바이오 공동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 등

- 그린투어리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중평인삼축제 개최 및 홍보, 도농교류 지역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율리 좌구산 인삼씨뿌리기 사업 등
- 특화품목육성사업
  - 인삼계열화기반사업
  - 친환경유통시설지원사업
  - 그레놀 홍삼·인삼 건강식품 가공시설 지원

### 3. 군지역의 선택과 집중전략: 고창 복분자 산업

#### 3.1. 고창군의 지역특성 및 산업구조 실태

##### 3.1.1. 고창군의 지역특성

###### 가. 위치 및 면적

-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동북은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군, 동남은 전라남도 장성군, 영광군에 인접하고 서북부 일대는 서해와 접함
- 고창군의 면적은 606.83km<sup>2</sup>로, 전라북도 전체 면적(8,047.54km<sup>2</sup>)의 7.5%를 차지함
- 고창군의 행정구역은 1개 읍 13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흥덕면, 부안면,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등 5개 지역이 해안과 접하고 있음

## 나. 인구 및 가구

- 고창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26,199세대에 62,427명이 거주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율은 증가하고 있음.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인구감소율이 10.3%이었으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15.9%로 나타나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급선무임
- 가구수는 2001년까지 조금 증가하다가 2006년에 와서는 다시 0.9% 감소하였음
- 세대당 인구는 1996년 3.1명에서 2001년 2.8명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2.4명으로 줄어들었음

표 5-9. 고창군의 인구 및 가구

구 분	가구(호)		인구(명)	
	가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1996	26,408		82,722	
2001	26,450	0.2%	74,232	-10.3%
2006	26,199	-0.9%	62,427	-15.9%

자료: 고창군통계연보, 각년도

### 3.1.2. 고창군의 산업구조 실태

□ 총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동반 감소 추세

- 사업체 수는 2000년에 4,255개이던 것이 2005년에는 4,059개로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던 사업체 수가 2003년에 크게 증가하고, 2004년에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음
- 종사자 수는 2000년 13,744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13,702명으로 0.3% 감소하였음
  - 2004년에는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 계속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3년에는 9.8%의 커다란 증가세를 보였고, 2004년에도 1.9%의 소폭 상승을 이어갔으나 2005년에 와서 다시 1.1%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5-10. 고창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연 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0	4,255	-0.9	13,744	3.5
2001	4,145	-2.6	12,725	-7.4
2002	3,999	-3.5	12,389	-2.6
2003	4,201	5.1	13,597	9.8
2004	4,235	0.8	13,855	1.9
2005	4,059	-4.3	13,702	-1.1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 운수업, 그 외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의 경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숙박 및 음식점, 운수업, 그 외 3차 산업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2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비중이 작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인 군지역들이 43.7%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표 5-11. 고창군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세

단위: %

구 분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1995	2005	1995	2005
농림어업	0.6	0.5	4.3	2.5
광업	0.3	0.4	0.8	0.4
제조업	9.5	8.7	11.1	11.0
도매 및 소매업	37.7	30.9	20.2	17.1
숙박 및 음식점업	15.6	18.8	11.8	13.2
운수업	6.7	7.1	1.5	4.9
사업서비스업	1.2	1.3	1.5	1.2
그 외 3차 산업	28.6	32.2	45.3	49.7

□ 세세분류: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와 농림수산물가공분야 종사자 수 증가

- 농림수산물가공분야는 지난 10년간 사업체수는 31.1% 감소하였으나 종사자수는 32.5% 증가하였음
  - 자체생활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군의 경우 2.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고창군의 농림수산물가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발효주 생산업체가 1995년 13개에 42명이 종사하였는데 2005년에 와서는 업체는 10개로 3개가 줄어들었으나 종사자는 73명으로 늘어났음. 이는 복분자산업의 집중 육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복분자가공업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현재는 33개에 달하고 있음
-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업체수는 줄어들었으나 종사자수가 3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수산물 가공분야와 함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12. 고창군의 세세분류별 산업 비중

단위: 개, 명, %

대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5	2005	증감 (05-95)	1995	2005	증감 (05-95)
농림어업	22	22	0.0	537	344	-35.9
-농림어업관련서비스	11	6	-45.5	51	222	335.3
광업	10	17	70.0	103	54	-47.6
제조업	375	355	-5.3	1,382	1,505	8.9
음식료품제조업	246	223	-9.3	672	838	24.7
-농림수산물가공	238	164	-31.1	542	718	32.5
도매 및 소매업	1,492	1,253	-16.0	2,514	2,343	-6.8
-가공농축산물유통	24	42	75.0	801	134	-83.3
숙박 및 음식점업	616	764	24.0	1,467	1,808	23.2
-관광관련(음식·숙박)	389	498	28.0	989	1,238	25.2
운수업	263	287	9.1	608	674	10.9
-여행및관련서비스업	6	7	16.7	285	45	-84.2
사업서비스업	46	53	15.2	190	169	-11.1
-연구개발기반분야	1	6	500.0	101	56	-44.6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2	7	250.0	27	35	29.6
그외 3차산업	1,130	1,308	15.8	5,643	6,805	20.6
<b>총합계</b>	<b>3,954</b>	<b>4,059</b>	<b>2.7</b>	<b>12,444</b>	<b>13,702</b>	<b>10.1</b>

### 3.2. 고창군의 농어촌산업 육성 추진 체계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부서 및 예산 실태

○ 3개 부처 2개 청 소관의 21개 사업 시행

- 고창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은 신활력사업을 비롯한 농림수산물식품부 12개 사업, 농촌진흥청 1개 사업, 산림청 2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개 사업, 지식경제부 4개 사업,

중소기업청 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지역특화품목,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조성, 고품질완전미생산기반확충, FTA과수산업지원사업, 농산물 유통 개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임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사업임
  - 산림청의 사업은 산촌생태마을조성,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토문화관광축제육성사업임
  - 지식경제부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방자치단체연구소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이 수행되었음
  - 중소기업청의 사업은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수행되었음
- 복분자관련사업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으로 일원화, 다른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담당
-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수행하는 7개 사업(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지역특화품목육성, FTA과수산업지원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방자치단체연구소육성사업)들은 모두 복분자클러스터를 위해 수행되고 있음
  - 다른 기타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부서로 이임되어 관리되고 있음
- 사업비 중 군비의 비중과 자부담 및 민자유치 비중이 높은 편임
- 이들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사업비는 총 예산액은 약 1,390억원임. 도비와 군비를 비롯한 지방에서 조달하는 예산이 50% 이상
  - 이중 국비가 46.5%, 도비 7.7%, 군비 28.4%, 자부담 및 민자유치가 17.3%를 차지하고 있음

표 5-13. 고창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예산과 부서간 협력 실태

소관 부처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중(%)					주무 부서	협력 부서
		기간 (년)	시작~ 종료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민자		
농림 수산 식품 부	신활력사업	6	05-10	22,400	62		4	34	지역특화지원 사업팀	살고싶은 만들기팀, 농업기술센터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4	04-07	600	56.7	8.3	35		살기좋은고창 만들기팀	
	농어촌테마 공원조성	2	07-08	200	55		45		농업기술 센터	
	농공단지 조성	5	04-09	16,367	41	3	56	0	지역경제과	주민생활 지원과, 건설지도과
	향토산업육성	3	09-11	3,000	50	5	40	5	지역특화지원 사업팀	
	지역특화품목 육성	3	08-10	28,392	40	0	20	40	지역특화 지원사업팀	농업진흥과,산 림축산과,해양 수산과
	어촌종합개발	3	07-09	5,000	80	7.5	12.5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4	03-06	500	50	22.5	22.5	5	해양수산과	
	고품질완전미 생산기반확충	5	04-08	8,187	24.9	1.7	24.1	49.3	농업진흥과	
	FTA과수산업 지원사업	5	05-09	15,400	36.4	5.8	18.2	39.6	농업진흥과	지역특화 지원사업팀
농촌 진흥 청	농산물 유통 개선		매년	234	50			50	고창마케팅팀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	2	04-05	9,652	8.7	10.4	47.1	33.8	고창마케팅팀	
	농촌체험교육 농장 시범사업	1	8	125	40		40	20	농업기술센터	
산림 청	산촌생태마을 조성	7	98-04	4,163	50	10	10	30	산림축산과	
	지역생태숲 조성	5	03-07	5,000	54	23	23		산림축산과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향토문화관 광축제 육성		74-08	340	9	18	64	9	살기좋은고창 만들기팀	

표 5-13. 고창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예산과 부서간 협력 실태(계속)

소관 부처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중(%)					주무 부서	협력 부서
		기간 (년)	시작 -종료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민자		
지식 경제 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RIS)								지역특화 지원사업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3	07-09	3,800	78.9	15.8	5.3		지역특화 지원사업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6	08-13	16,000	37.5	15.6	36.2	13.1	지역특화 지원사업팀	
	지역특화발전 특구		04-						지역특화 지원사업팀	
중소 기업 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3	07-09	21	60		40		지역경제	
	예산총계			139,381	46.5	7.7	28.4	17.3		

#### □ 계획수립 및 평가 추진 체계 실태

##### ○ 계획수립 주체는 대부분 군청 내부조직

- 계획수립은 대체로 시군단위 공무사업의 경우 군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마을단위 공모일 경우는 해당마을이 중심이 되며, 문화부 사업의 경우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사업 추진주체는 군청 공무원조직

- 사업의 추진 주체는 모두 군청의 주무부서로 공무원조직임. 고창의 경우 복분자산업은 전담부서인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복분자산업에 관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음.
- 사업추진시 외부 전문인력의 채용이나 네트워크 활용 측면은 조금 부족한 편임
- 사업 추진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각 사업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복분자 관련 사업들은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도평가, 중앙정부평가 등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른 사업들의 경우 군청 자체평가 이외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점검과 평가가 부족한 실정임

표 5-14. 고창군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사업 추진체계

소관부처 (청)	농어촌산업 관련사업명	예비사업계획 작성주체	사업계획 작성주체	사업시행계획 작성주체	사업추진주 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농림수산 식품부	신활력사업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외부 전문가집단, 중앙정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해당마을	군청	해당마을	주무부서	군청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해당마을, 해당 사업자		해당마을	주무부서	군청
	농공단지 조성	군청	외부전문가집단 및조직	군청	주무부서	군청
	향토산업 육성	군청	작성하지 않음	군청	주무부서	외부 전문가집단, 도, 중앙정부
	지역특화품목 육성	군청	군청		주무부서	외부 전문가집단, 도, 중앙정부
	어촌종합개발	군청	외부전문가집단 및조직	군청	주무부서	
	어촌체험마을조성	해당마을	군청	어촌계	어촌계	군청, 중앙정부
	고품질완전미 생산기반 확충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FTA과수산업지원 사업				주무부서	
	농산물 유통 개선				주무부서	
	농산물 종합유통 센터 건립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도, 중앙정부
농촌 진흥청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사업	군청	체험농장	체험농장	주무부서	군청, 도, 중앙정부
	산촌생태마을조성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군청, 도, 중앙정부
산림청	지역생태숲 조성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외부전문가집단, 도, 중앙정부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외부전문가집단 및 조직	외부전문가집단 및 조직	외부전문가집단 및 조직	주무부서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RIS)				주무부서	
지식 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 사업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도, 중앙정부
	지자체연구소육성 사업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도, 중앙정부
중소 기업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군청	군청	군청	주무부서	군청

### 3.3. 고창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실태: 복분자 산업

#### 3.3.1.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구조

##### 가. 농가 및 농가인구

- 고창군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년 현재 11,262 가구, 26,94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농가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3% 감소하였고, 농가인구 또한 연평균 3.8% 감소하였음

표 5-15. 고창군 농가 및 농가인구

구 분	농가수 (가구)	농가인구(명)		
		계	남	여
1997	14,145	41,124		
1998	13,353	40,599		
1999	12,884	37,954		
2000	13,169	33,226		
2002	13,126	33,051		
2003	11,946	27,835	12,434	15,401
2004	11,586	26,455	11,630	14,825
2005	11,882	28,106	13,292	14,814
2006	11,262	26,941	12,732	14,209
연평균증감율 (1997/2006)	-2.3%	-3.8%		

자료: 고창군, 통계연보, 2007

##### 나. 복분자 생산농가 및 생산량

- 전라북도에 위치한 고창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복분자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재배농가수와 면적 또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복분자는 고창군의

### 주요 재배 작목

- 2007년 현재 복분자 생산농가는 4,795농가로 전체농가의 40%에 해당. 재배 면적은 1,333ha이며 생산량은 4,8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45%에 달함
- 1990년 54농가가 5ha 면적에서 19톤을 생산하던 복분자산업이 17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표 5-16. 복분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톤

연 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면 적	5	17	35	70	150	302	484	913	1,270	1,333
생산량	19	54	110	140	320	600	1,510	2,733	4,500	4,800
농가수	54	130	210	410	740	1,344	2,154	3,749	4,628	4,795

자료: 고창군, 2008, 내부자료

- 가공업체 수는 복분자주 9개 업체를 비롯하여 음료 15개소, 한과 3개소, 장류 3개소 분말, 김 등 33개소에 이르며 현재 신규업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연간 매출액은 1,300억원에 이르며 2010년에는 3,000억원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음

표 5-17. 고창군 복분자 산업현황(2007년 기준)

구 분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과생산량	가공업체	산업생산
전 국	10,305호	3,182ha	12,388톤	70개	3,000억원
전 북	7,375호	2,404ha	9,473톤	48개	2,292억원
고창군	4,795호	1,333ha	4,800톤	33개	1,306억원
비율(%)	46.5	42	38.7	47	44

자료: 고창군, 2008, 내부자료

### 다. 복분자산업 클러스터 구조

- 복분자의 생산, 생과의 수매·공급, 가공, 유통의 일원화 즉 수직계열화 성공
  - 2007년 복분자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내의 농협-재배농가(단체)-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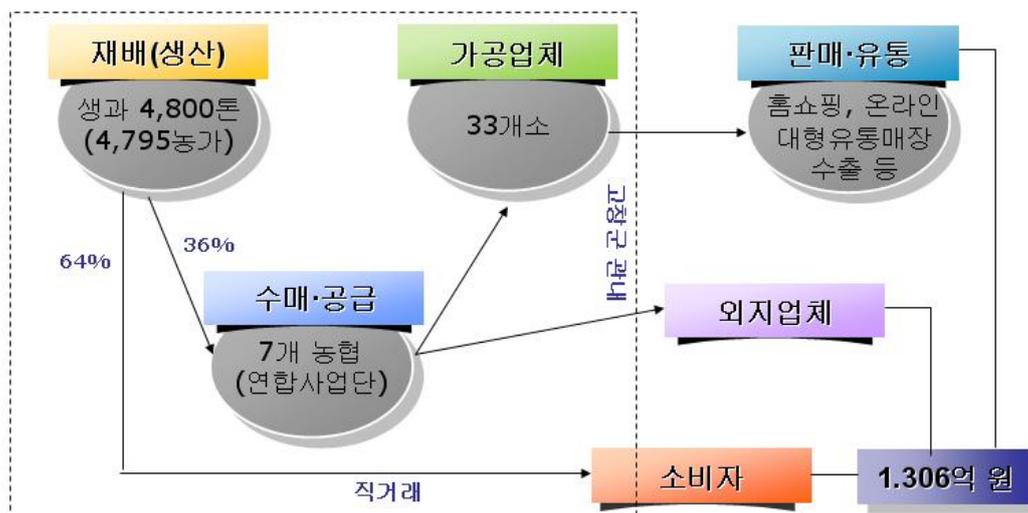
업체들 간의 생과 수매 및 공급 통로를 일원화 하고, 가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생과 공급량을 미리 파악하고, 동 물량을 관내 7개 농협을 통해 재배농가들과 수매 계약하는 수직계열화 시스템 구축

-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산-수매-공급의 일원화로 관내 복분자 가공업체들은 생과원료를 100% 고창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록을 계기로 품질이 높아진 고창 복분자를 100% 이용함으로써 가공품 역시 고품질화의 효과를 봄
  - 관내 복분자의 전체 생산량(2007년 12,388톤) 중 36% 정도를 위와 같은 일원화 방식에 의해 7개 농협이 수매하며, 64% 정도는 생산 농가들이 소비자에게 직판(수매가 보다 1,500원 정도 비쌈)
  - 농협을 통해 수매한 생과는 고창 관외 지역에 있는 롯데 칠성에 공급(약 200톤 MOU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량 관내 가공업체들에게 공급
- 생과의 수매 및 공급시 가공업체와 수매단체(7개 농협) 지원
-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생산-수매-공급의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2007~2009년의 3년 간 생과 수매가격을 고정시켜 동 체계의 안정화를 도모
  - 생과 및 가공품의 고품질화를 유지하는 한편, 타 지역 생과보다 가격이 kg 당 500원 이상 비싼 고창 복분자의 재배 및 공급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창군에서는 타 지역과 비슷한 가격으로 고정된 가격(2007~2009)을 보충해주기 위해 가공업체(주류 9, 식품 21개 업체)에게 공급량에 대해 kg 당 400원씩, 수매단체인 농협에는 수매량에 대해 kg 당 40원씩(수매인건비 및 차량비)을 보조하고 있음(수매장려금, 6억원)
  - 이러한 수매장려금 지급 등을 매개로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복분자의 수매 및 공급 물량 결정시 행정과 협의 진행
- 농협마트 등 전국의 대형 마트와 홈쇼핑,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 복분자 생산에 의한 고창군 복분자 농가수익은 2007년 384억 원으로 농가 당 8백만 원임
- 총 매출액 1,306억 원 중 복분자주 판매가 33%(430억 원), 생과 30%(384억 원), 복분자음료 4%(57억 원), 기타 가공제품 3%(45억 원), 생즙 등 농가 간이 가공판매가 30%(390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 관내 6개 업체가 복분자주 및 음료 900만 불 해외 수출(일본, 중국 등)

그림 5-4.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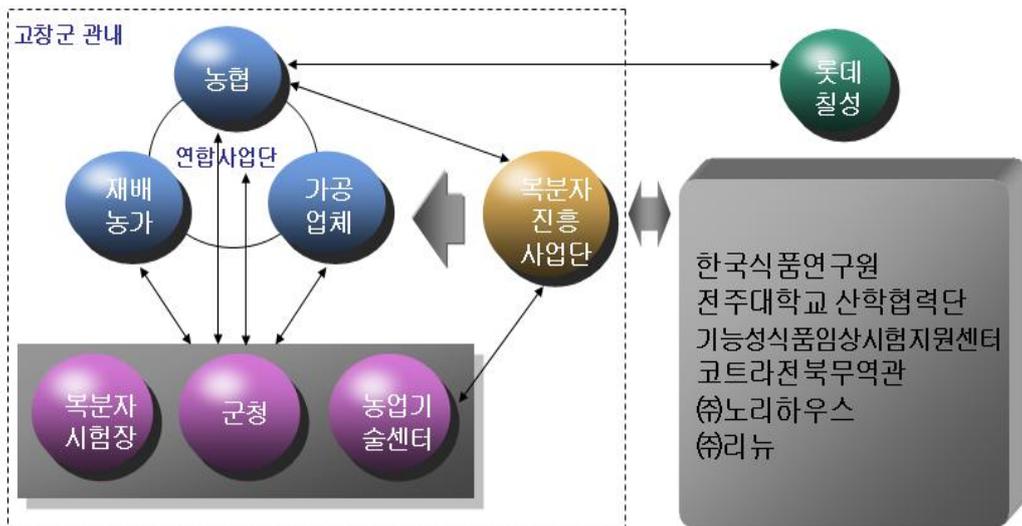
#### ○ 고창 복분자 산업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

- 유통·판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산과정과 참여 주체들이 군 관내에 지역화되어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생산-공급-가공-행정지원-기술지원 단계의 상호 조정기능이 지역에 배태될 수 있는 산업생산의 지역내 자발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 2006년 복분자 생과파동이 이러한 지역내 산업생산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중간 상인들을 고창 복분자 산업체계 내에서 몰아냈으며, 대신 서로 간 합의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과의 고정된

가격에 구매 및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 및 가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아울러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었음

- 생산농가-농협-가공업체-행정 간 협력체계는 향후 복분자 시장에서의 고창의 포지셔닝을 계획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또한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음
- 고창군은 2015~2020년 사이 국내 복분자 시장의 규모를 1조원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창 복분자 산업이 전체적인 시장을 조절하면서 지역의 적절한 산업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을 전국 시장의 30% 규모로 예측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꾀하고 있음
- 고창 복분자 산업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으로 건전한 산업클러스터의 속성인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임
- 그러나 고창 복분자 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체 또는 기능들이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착(lock-in)의 위협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외부 지역의 선도적인 주체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림 5-5. 고창 복분자 산업클러스터의 구조



- 이와 관련, 2007년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2008~2010년 동안 군비 포함 총 36억원)의 추진을 계기로 복분자 진흥사업단이 구성되어 복분자 생산·가공상품 육성 지원이 추가되어 추진되면서 지역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코트라 전북무역관, (주)노리하우스, (주)리뉴 등)이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체들로 편입되거나 기존의 기능이 강화됨

### 3.3.2.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추진 체계

#### □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복분자산업 선정 배경

- 최초의 복분자 생산지
  - 3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야생 복분자로 가용주를 담아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것이 고창 복분자 산업의 발단
  - 1987년에는 심원면의 농촌지도사인 박병옥 상담소장이 복분자의 식재에 성공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에 복분자를 심어 관찰한 결과 생육을 위한 적응력이 좋아 산업화를 추진하기에 이룸
- 많은 농가 참여
  - 농가가구의 30%에 해당하는 다수 농가(4,664호)가 복분자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 전국 생산량의 38.7%를 차지하는 특화된 산업 여건을 지니고 있어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 산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인식
- 복분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 지방자치단체 장의 강력한 의지와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브랜드 가치에 군민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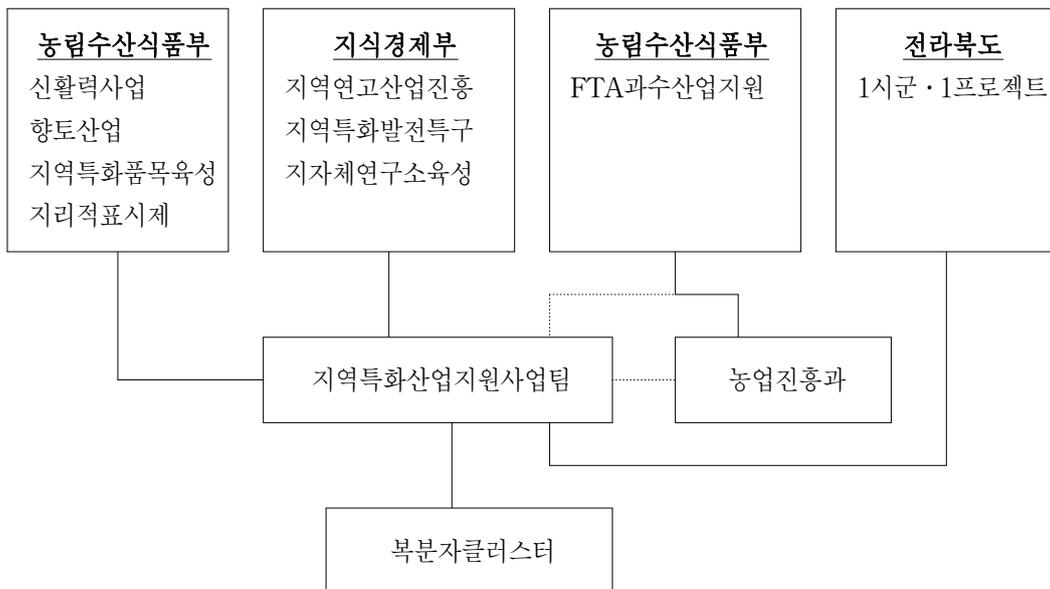
□ 복분자산업 육성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사업추진 목적)

-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
- 두 번째로는 전후방연관효과에 초점을 두어 복분자산업을 육성 중임

□ 복분자산업 추진 행정조직의 일원화(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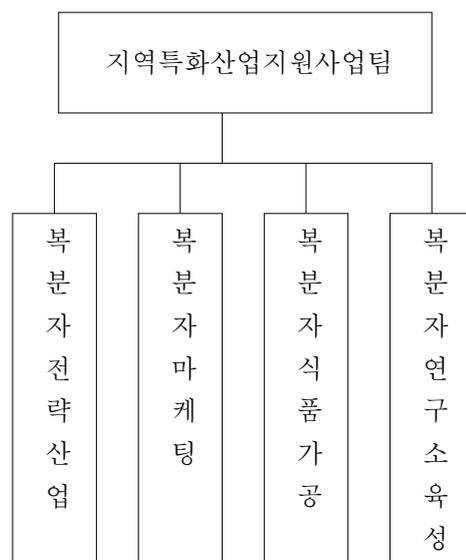
- 복분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17명으로 구성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복분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전략수립, 마케팅, 홍보, R&D 지원 등을 총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 복분자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으로 수렴되어 복분자산업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림 5-6. 고창군 복분자산업관련 중앙정부사업 활용 흐름도



- 복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총괄
  - 복분자생산이력제, 농촌활력증진계획, 복분자관광빌리지조성사업, 복분자 품질관리 등 생산 관리지원
- 복분자 마케팅 전담
  - 복분자 마케팅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 선연웰빙플라자 운영, 지역이미지화사업, 가공업체 마케팅 지원사업
  - 각종매체 홍보사업, 공동브랜드 관리, 지리적표시제 관리

그림 5-7. 고창군 지역특산업지원팀 업무 구성도



- 복분자 식품가공 행정 총괄
  - 복분자가공업체지원(시설),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특화품목 가공 시설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 복분자연구소 육성에 관한 지원 활동 총괄

□ 복분자산업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복분자클러스터

- 약 9개 정부사업을 복분자산업을 위해 집중 투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5개 사업, 지식경제부 3개 사업, 전라북도 1개 사업
- 농림수산물식품부 5개 사업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지리적표시제, FTA과수산업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음
  - 농촌활력증진사업중 신활력사업이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가장 중추적인 사업임.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1기 신활력사업을 시작하여 2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9년까지 5년 동안 224억원(국비 158, 군비 28, 기타 38)을 투자할 계획임. 복분자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복분자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며, 복분자 가공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복분자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복분자 육종 및 식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복분자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중 일부분을 2009년부터 20억원(국비 15, 군비 15)을 투자하여 복분자클러스터내에 설치될 황토웰빙 및 복분자체험센터 지원, 황토자원개발 및 상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복분자체험과 복분자와 황토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는 복분자가공제품 육성, 복분자 판매유통시설지원, 고품질복분자생산단지조성을 주축으로 하는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한 성과는 2004년 고창복분자주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제3호, 2007년에는 고창복분자생과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제35호를 등록하였음
  - FTA과수산업지원사업은 2005년에 시작하여 국비 154억원(국비 56, 도

비 9, 군비 26, 기타 61)을 지원하여 복분자생산농가에게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 관정 개발 등에 지원하였음

○ 지식경제부 3개 사업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8억원(국비 30, 군비 6, 기타 2)이 투자되며, 전북대 고창복분자진흥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복분자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

표 5-18. 고창 복분자산업에 투입된 정부사업과 추진체계

부 처	사업명	역할	전담부서	협력부서
농림부	신활력사업	복분자 클러스터 지향 복분자클러스터사업단 운영 가공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복분자 육종, 식품개발 등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살기좋은지역 만들기팀 농업기술센터
	향토산업	복분자 클러스터내 향토웰빙 및 복분자체험센터 향토자원개발 및 상품개발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	복분자관광발리지사업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지리적표시제	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생과 지리적표시 등록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
	FTA 과수산업	비가림하우스 지원 관수시설, 관정 개발 등	농업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농업기술센터
지경부	지역연고산업진흥 사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혁신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전북대 고창복분자진 흥사업단
	지역특화발전특구	복분자산업특구 지정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
	지자체연구소육성 사업	복분자 클러스터내 복분자연구소 건립 장비구입, 연구개발 등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	-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하여 2004년에 복분자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서는 2008년 6월에 고창 복분자연구소육성사업이 확정되어 2013년까지 164억원(국비 60, 도비 25, 군 58, 기타 21)을 투자함. 복분자클러스터내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장비구입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음
- 전라북도 1개 사업
  - 전라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는 복분자클러스터내 복분자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클러스터공간이 산업활동, 연구활동과 더불어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으로 활용

### 3.4. 고창군 지역특화산업의 파급 효과: 복분자 산업

- 신활력사업 전과 후(1기 종료 직후) 복분자 재배농가 및 가공업체 증가
  - 재배농가는 2.2배 증가하였고, 가공업체 수는 2004년 18개소에서 2007년 말 33개로 증가
  - 농가 조수익 증대(농가 당 8백만원) 및 산업규모 증대
  - 직원 등 장기고용 기준으로 200명 일자리 증가, 수확기 일시 고용만도 연인원 5만명에 이룸(후자의 경우 1일 고용=1인 고용으로 간주). 인건비만도 35억원
  - 기타 연계 관광산업 증가, 지역 이미지 고양 등
- 연간 매출액 증가
  - 2004년 연간 매출액이 20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306억원을 증가하였음
  - 복분자 산업 수익이 2007년 1,306억원인데 복분자주 판매액이 430억원으로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그 다음이 농가가 간이로 가공하여 생



즙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390억원으로 30%, 생과판매로 29%인 384억원, 복분자 음료 57억원으로 4%, 기타 가공제품이 45억원으로 3%를 차지함

○ 농가수익

- 생과를 수매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제외하고 농가가 간이로 가공하여 판매하여 올리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농가당 약 8,133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됨

### 3.5. 고창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과 구상: 복분자 산업

□ 복분자 산업 VISION 2010

- 재배시작 초기단계, 생산 확대 및 2차산업화 하는 발전단계, 생산·가공·관광을 접목하는 복합 산업화한 정착단계를 거쳐
- 2010년에는 자립형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여 정부지원 졸업 및 세계적인 복분자 산업의 메카로 육성

□ 전략 및 목표

- 단순 재배위주의 1차 산업구조를 탈피,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접목한 다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고소득 기반을 조성

□ 추진현황

- 생산자·농협·복분자 R&D, 행정의 참여하는 혁신 네트워크인 민간 자립형 공동체 구축

- 지리적표시제 등록, 복분자 산업특구지정, 기능성 효능연구 및 제품개발, 복분자 축제등 산업인프라 구축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신활력사업, 지역연고산업지원사업 등 S/W와 H/W 분야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위기의 기회전환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지역산업⇔국내외 대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생전략 추진

#### 4. 도농복합시 지역의 농어촌산업: 상주 곶감산업

##### 4.1. 상주의 지역특성 및 산업구조 실태

###### 4.1.1. 상주의 지역특성

- 상주는 경상북도 서북쪽의 내륙에 위치한 도농복합형 도시로, 쌀·누에고치·곶감으로 유명한 삼백(三白)의 고장임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넓은 지역이나 총면적 중 임야 약 67%이상, 논 15%, 밭 7%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작목의 생산 비중이 높은 편임
  - 상주시의 총면적은 1,254.86km<sup>2</sup>로 남한면적(99,274km<sup>2</sup>)의 1.3%를 차지하고 경상북도 면적(19,022km<sup>2</sup>)의 6.4%(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면적 중 3위)를 차지함.
  - 1995년 도농복합시로 통합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은 1읍 17면 6동으로 구성됨
  - 인구는 1996년 132,454명에서 2001년 122,277명, 2006년 108,83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상주시 통계연보, 2007)

- 상주의 주요 농산물이자, 전국 1위 생산하는 꾀감의 원료인 감 재배면적은 692ha를 차지하고, 그 외 경북도에서 생산량 상위에 있는 사과 재배면적은 1,171ha로 감소 추세에 있고, 배 재배면적은 1,299.8ha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표 5-19. 상주시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 도	감		사과		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370.0	3,004.0	2,038.0	31,019.0	971.0	15,157.0
2001	375.0	3,372.0	1,887.0	9,189.0	970.0	15,580.0
2002	399.0	3,451.0	1,461.0	21,795.0	970.0	15,544.0
2003	480.0	4,320.0	1,235.0	13,814.0	1,265.0	20,009.0
2004	526.0	12,595.0	1,235.0	18,434.2	1,304.1	19,947.0
2005	624.0	83,280.0	1,215.0	19,935.0	1,345.0	22,345.0
2006	692.2	7,642.8	1,171.0	18,550.4	1,299.8	22,542.8

자료 : 상주시 통계연보, 2006

- 최근 열악한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됨.
  -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나 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솟아 있고 철도 및 도로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발전 저해 요인이 되었음.
  -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상주~청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결절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4.1.2. 상주의 산업구조

- 상주시 산업구조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14.4%, 도소매업이 16.1%,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8%, 그 외 3차 산업이 49.6% 차지하고 있음 (2005년도 기준). 산업 전체에서 보면, 1995년에서 2005년 동안 종사자 수는

## 1.8% 감소하였음

- 1995년에서 2005년 간 종사자수 증감율을 보면, 농림어업과 광업에서 각각 -50.0%, -84.9%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더 이상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주시 인구 감소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짐
  - 도소매업 종사자 수도 17.4% 감소하고 있으나, 가공농축산물유통의 경우 9.9% 증가하고 있음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 추세임
-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4.1%에 불과하나, 제조업을 구성하는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147.2%로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림수산물가공 부문이 124.3% 고용 증가를 나타냄. 이는 생산량 비중이 높은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특히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꾀감 생산이 여기에 해당하여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임. 연간 약 2개월 동안 꾀감 생산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연간 약 15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은 10.8%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광관련(음식·숙박)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가 23.2%를 차지하고 있음. 인근에 문장대, 속리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서비스업에서도 59.7%의 고용 증가를 나타내며, 이 중 연구개발기반 분야에서의 고용이 523.1%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문사회와 관련된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의 고용이 -17.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5년에서 2005년 간 사업체 종사자로 분류된 농림어업 종사자 수가 149명 줄어들었으며, 농가로 분류된 농업종사자 수 역시 7,76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어업 관련 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이 감소하고 있음

**<상주시 농공단지 현황>**

- 입주: 5개단지 68개 업체 (2008. 12월 기준)
- 가동: 60개 업체 (가동율: 88.2%)
- 단지별 농공단지 현황
  
- 상주시에는 5개의 일반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음. 1988년 외담농공지구조성을 시작으로 1995년 화서농공단지까지 약 201,430평 규모에 달함. 입주업체 수는 68개이고 그 중 가동업체는 60개로 가동율은 88.2%에 달함.
  
- 종업원 수는 853명 중 현지인이 530명 고용됨으로써 현지인 고용비율이 62.1%에 달함. 그러나 농가구원고용 비중은 전체의 7.0%에 불과한 60명에 불과함

**<상주시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외담	공성	합창	화서	화동	합계
조성연도	1988	1991	1994	1995	1991	
면적(평)	74,250	33,577	36,000	30,993	26,620	201,430
입주업체수(개)	30	10	17	5	6	68
가동업체수(개)	26	9	16	5	4	60
가동율(%)	86.7	90.0	94.1	100.0	66.7	88.2
종업원수(명)	325	128	241	95	64	853
농가원(명)	20	2	13	22	3	60
비농가(명)	207	71	130	35	27	470
외지인(명)	62	41	98	26	9	236
외국인(명)	36	14	0	12	25	87
남(명)	232	80	167	71	52	602
여(명)	93	48	74	24	12	251
생산액 (백만원/연)	81,660	28,300	58,740	15,200	14,000	197,900
일인당 생산액 (백만원/연)	251.3	221.1	243.7	160	218.8	232.0
휴업(개)	1	1	-	-	2	4
준비중(개)	3	-	1	-	-	5

표 5-20. 상주시 산업구조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1995년	2005년	증감율	1995년	2005년	증감율
농림어업	18 (0.2)	15 (0.2)	-3 (-16.7)	298 (1.3)	149 (0.6)	-149 (-50.0)
·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15 (0.2)	10 (0.1)	-5 (-33.3)	217 (0.9)	111 (0.5)	-106 (-48.8)
광업	12 (0.2)	4 (0.1)	-8 (-66.7)	325 (1.4)	49 (0.2)	-276 (-84.9)
제조업	741 (10.3)	677 (9.8)	-64 (-8.6)	3226 (13.6)	3,359 (14.4)	133 (4.1)
○ 음식료품제조업	311 (4.3)	373 (5.4)	62 (19.9)	691 (2.9)	1,708 (7.3)	1,017 (147.2)
· 농림수산물가공	301 (4.2)	297 (4.3)	-4 (-1.3)	671 (2.8)	1,505 (6.5)	834 (124.3)
도소매업	2484 (34.4)	1864 (26.9)	-620 (-25.0)	4,521 (19.1)	3,734 (16.1)	-787 (-17.4)
· 가공농축산물유통	45 (0.6)	58 (0.8)	13 (28.9)	151 (0.6)	166 (0.7)	15 (9.9)
숙박 및 음식점업	1,318 (18.2)	1,446 (20.8)	128 (9.7)	2,679 (11.3)	2,968 (12.8)	289 (10.8)
· 관광관련(음식·숙박)	763 (10.6)	893 (12.9)	130 (17.0)	1,533 (6.5)	1,888 (8.1)	355 (23.2)
운수업	404 (5.6)	577 (8.3)	173 (42.8)	1,045 (4.4)	1,093 (4.7)	48 (4.6)
· 여행 및 관련서비스업	5 (0.1)	12 (0.2)	7 (140.0)	22 (0.1)	18 (0.1)	-4 (-18.2)
사업서비스업	84 (1.2)	106 (1.5)	22 (26.2)	231 (1.0)	369 (1.6)	138 (59.7)
· 연구개발기반분야	2 (0.0)	5 (0.1)	3 (150.0)	13 (0.1)	81 (0.3)	68 (523.1)
·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11 (0.2)	14 (0.2)	3 (27.3)	73 (0.3)	60 (0.3)	-13 (-17.8)
그 외 3차 산업	2,163 (29.9)	2,248 (32.4)	85 (3.9)	11,368 (48.0)	11,542 (49.6)	174 (1.5)
전산업	7,224 (100.0)	6,937 (100.0)	-287 (-4.0)	23,693 (100.0)	23,263 (100.0)	-430 (-1.8)

표 5-21. 상주시 농업종사자 수

단위: 명, %

구분	1995년	2005년	증감량	증감율
상주시 농업종사자 수	39,546	31,777	-7,769	-19.6

## 4.2. 상주의 농어촌산업 육성 추진 체계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부서
  - 상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은 신활력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신청상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공단지조성사업,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이 있음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농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유통 분야는 한우특작팀에서 담당하고 수출 마케팅 분야는 전략개발추진팀의 시장개척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경우 건설팀으로 이관되었으며, 산림청 소관 사업들은 산림공원팀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기업유치지원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음
  - 신활력사업의 경우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신활력담당 계를 조직하여 총괄 관리하되, 콧감과 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림공원팀과 한우특작팀과 함께, 그리고 지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상주시는 품목별·부문별로 부서 및 담당 조직이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는 도농복합시이자 농업의 경우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품목 수가 다양하여 조직이 세분화되어 추진되었다고도 판단되나, 부서 간 협력이 어려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음
  
- 계획수립 및 평가 추진 체계 실태
  - 계획수립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작성하나, 신활력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 조직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하고 있었음.
  - 사업의 추진 주체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주무부서에서 담당
  - 사업추진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자체 평가를 받는 것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점검과 평가가 부족한 실정임

표 5-22. 상주시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실태

중앙부처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	지자체 주무부서	협력부서
농식품부	신활력사업	전략개발추진팀	산림공원팀 한우특작팀 총무팀
	지역특화품목 육성	친환경농정팀	농업기술센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친환경농정팀	-
	고품질완전미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정팀	-
	농어촌테마공원조성	건설팀	(농정팀에서 이관)
	특산단지조성	한우특작팀	-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업유치지원팀	-
산림청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산림공원팀	-
	지역생태숲 조성	산림공원팀	-

### 4.3. 상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실태: 꽃감산업

#### 4.3.1. 상주시 꽃감산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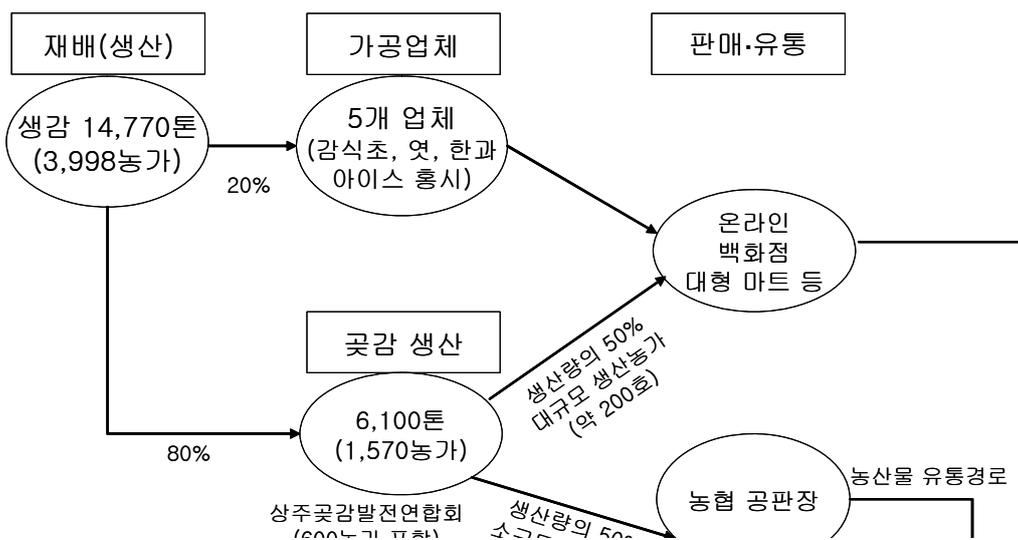
- 상주 꽃감산업은 단순 가공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
  - 꽃감 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감 생산 및 감깎기(박피)와 건조하여 완성되는 꽃감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은 상당하나, 단순 가공 형태로 가공 및 유통 기반이 미약하였음. 최근 정책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품질 향상 및 가공·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있어 꽃감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상주 꽃감산업의 전후방 연계 구조
  - 2007년 기준 감 재배농가 3,988호, 생산량 14,770톤으로 236억 원 소득액 (25kg당 40,000원 기준)을 올리고 있으며, 꽃감 생산농가는 1,570호, 생



산량 6,097톤으로 871억 원 소득액(접당 50,000원 기준)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포장 판매할 경우 2,000억 원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꽃감 생산 농가 중 약 200 농가는 대규모로 생산하여 직접 포장하여 인터넷 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음. 그 외 대부분의 소규모 꽃감 생산 농가들은 대부분 상주농협 공판장, 상주원예농협 공판장, 상주남문청과(주)로 납품하여 농산물과 같은 유통경로로 판매되고 있음
- 꽃감 선도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상주꽃감발전연합회를 구성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을 등록하여 품질 향상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있음. 약 600농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생산-재배-유통-가공’의 일원화를 위해 유통센터와 공동선별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감 또는 꽃감을 가공한 업체는 약 5개 업체 정도로, 감식초, 감한과, 아이스홍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가공제품의 종류와 가공업체 수와 규모 역시 빈약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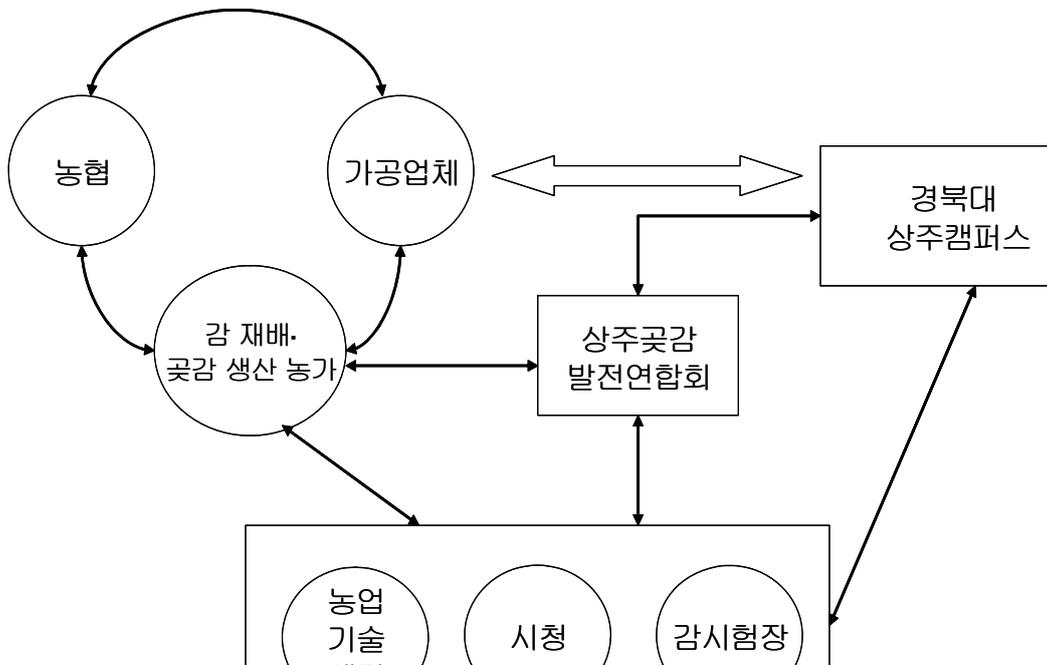
그림 5-8. 상주 꽃감산업의 구조



○ 상주 꽃감 산업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

- 상주의 꽃감산업은 농가에서 감을 깎아서 건조시켜 판매하는 단순가공 생산 위주로 제품가공과 유통망에 대해 부족했으나, 정부 정책 사업이 투입되면서 생산 기반과 함께 품질 관리와 브랜드화, 제품 개발, 관광과의 연계 및 유통기반 조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
- 아직 산업클러스터의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주꽃감발전연합회를 구성하여 상주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신활력사업비 중 15억 원을 지원받고 부지매입비 10억 원, 건물비 20억 원 등을 자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생산이력추적제 농가를 관리하고 향후 상주꽃감발전연합회에서 수매하여 상품을 표준화하여 유통까지 담당하고자 하며, 꽃감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연합회에서 공모하고 있음

그림 5-9. 상주 꽃감 산업클러스터의 구조



- 공성면에 있는 감시험장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감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자문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내의 연구개발 네트워크는 긴밀하다고 보여지나 타지역과의 네트워크는 미약한 실정임. 최근 상주시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역을 벗어나 광역화된 형태의 클러스터로 성장 가능성이 있음

#### 4.3.2. 상주시 꽃감산업 육성 추진 체계

##### ○ 상주 꽃감 육성 배경 및 과정

- 상주 꽃감이 인지도와 명성이 우수하지만 체계적인 유통이 미흡한 상황 속에 중국산 꽃감 유입이 증가하면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 두는 신활력사업 선정시 꽃감, 한우, 배, 사과 등 전국 대비 생산량이 상당하여 거론되었으나 경북대 상주캠퍼스 교수진 및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함. 이때 관련 산업의 혁신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꽃감이 1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것임

#####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투입 현황

- 그동안 꽃감은 농산물로 분류되다가, 1998년 12월 31일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뚝은감이 포함되면서 1999년 9월에 농축산과에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꽃감 단일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 2001년부터 5년간 농림사업(산림청 예산)으로 매년 20억원을 배정받아 꽃감 건조장,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박피기, 포장개선비 등을 개별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게 됨
- 1기 신활력사업으로 꽃감산업을 선정하면서 꽃감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

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 브랜드 개발, 품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는 2기 신활력사업에서는 유통 및 가공 부문의 연계와 육성을 위해 공동 선별장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려 함

- 또한 1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 기준을 관리하여 인정받도록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20호로 등록을,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했으며, 남장동, 외남면 소은리, 혼평리 일대를 곳감특구로도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특례 등을 적용받았음
- 한편, 상주는 곳감 외에도 한우, 육계, 사과, 배 등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하여 2기 신활력사업으로 유통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구축에만 투자하고, 한우도 함께 육성하도록 사업비를 할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곳감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보다는 품목별 분산 투자로 지원사업을 투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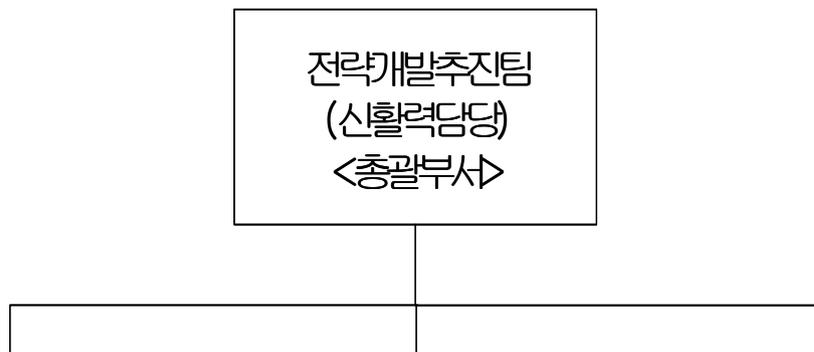
표 5-23. 상주 곳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기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주관 부서	협력 부서	사업비
2001~	농림사업(산림청)	- 곳감 건조장 - 저온저장고 - 건조시설 - 박피기 - 포장개선비 등	산림 공원팀	-	연간 20억 원
2004 ~2007	1기 신활력사업	- 곳감산업화 - 생산 및 소득 기반 구축 - 농촌관광산업 육성 - 홍보 및 마케팅	산림 공원팀 →지역혁신 기획단	산림 공원팀	64억 원
	지역특화발전특구	곳감특구지정('05)	산림 공원팀	-	-
	지리적표시제	산림청 20호('07)	산림 공원팀	-	-
2008 ~2011	2기 신활력사업	-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	전략개발추 진팀	산림 공원팀	24억 원 (57억 원: 자부담 포함)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청('08)	산림 공원팀	-	-

○ 곶감산업 육성 추진체계

- 곶감이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곶감 관련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되면서 담당하였고, 1기 신활력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던 첫해에는 신활력 T/F를 두고 산림과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를 해왔음
- 현재 전략개발추진팀 신활력담당 부서가 총괄부서로서 농촌활력증진계획 하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기획 및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산림공원팀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로 생산·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주고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감재배기술 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략개발추진팀 시장개척단을 별도로 두어 산림공원팀에서 담당하던 곶감 수출 업무를 시장개척단으로 이관함
- 업무 분담이 파편화되어 있어 부문별 육성은 유리할 것이나 비전 속에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전략개발추진팀이 총괄 부서로서 역할 수행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칸막이 속 행정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임

그림 5-10. 상주 곶감산업 육성 추진 체계



#### 4.4. 상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파급효과: 곶감산업

○ 고용창출의 효과

- 뽕은감 생산농가의 경우 2004년 3,076호에서 2007년 3,988호로 증가하였

으며, 꽃감생산농가 역시 2004년에는 1,100농가에서 2007년 1,570호로 증가하였음

-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감 수확이 완료되면, 박피과정을 거쳐서 건조하면(꽃감 60일, 반건시 45일 이상 건조), 꽃감이 생산되어 12월부터 2월까지 판매됨. 감깎기와 말리기, 꽃감선별과 포장작업이 2~3개월 정도 이루어져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요구되며, 주로 50대 주부, 노년층들이 동원되어 연간 15만 명 노동력 창출 효과가 있음
- 다만, 감을 활용한 가공업체가 소규모인데다가 5업체에 불과하여 제품 개발을 통한 가공업체 증대 등 꽃감 연계 산업의 육성이 요구됨

#### ○ 소득 증대

- 2004년 짧은감 생산농가가 3,076호로 12,595톤 생산하여 202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2007년에는 생산농가가 3,988호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량 14,770톤, 236억 원(25kg당 40,000원 기준)의 소득을 올렸음
- 꽃감 생산농가의 경우 2004년에는 1,100농가가 4,550톤 생산하여 520억 원 소득액을 올렸으나 2007년에는 생산농가가 1,570호로, 생산량 6,097톤, 871억 원 소득액(접당 50,000원 기준)을 올렸음. 이 과정은 감을 깎아서 말리는 단순 가공 형태로, 이를 포장 판매할 경우 2,000억 원 소득을 올리게 됨
- 뿐만 아니라 대규모 꽃감 생산 농가의 경우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약 200호나 되므로 농가 측면에서는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는 것임

## 4.5. 상주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방안과 구상: 꽃감산업

### □ 전략 목표

- 부자농가 육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건설

□ 추진내용

-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보완사업으로 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신활력사업: 교육 및 혁신역량강화,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
- 특화품목육성사업: 친환경 균생산 배지센터(배양실) 건립, 기능성 나무순채 (토종식물) 소득화 단지조성, 잔나비버섯 균사체 생산기반조성
- 향토산업육성사업: 오디(계획서 제출한 상태)
- 지역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여 사업효과 창출 기반을 마련
- 사업비의 품목별배분방식을 지양하고, 초기 자본의 투자가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의 씨드머니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하도록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과 교육 등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
- 신활력사업을 상주시의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5도 2촌 성공사례 도약의 발판 마련
- 기 건설 중인 ‘한방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신활력사업의 운영하여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체험·유통 등의 현대화 추진하며, 다양한 한방원재료 생산단지 조성

## 5.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의 시사점

### □ 지역 유형별 상이한 산업구조를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

- 사례로 본 증평의 인삼산업과 고창의 복분자 산업, 그리고 상주의 꽃감산업은 모두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산업화한 경우임
- 고창군의 경우 지역 내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생산-가공 연계의 산업체계를 구축한 반면, 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인 증평군은 군 관내의 생산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원료(수삼)의 조달 유통망을 기반으로 원료유통-가공 연계의 산업체계를 구축함. 도농복합시인 상주시의 꽃감산업은 2차 산업이기 보다는 1.5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 자원을 활용한 산업체계 구축을 도모
- 이는 지역 유형별로 농어촌산업의 구조와 체계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 부문과 지원내용이 달라야 함을 시사

###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필요

- 농어촌지역 평균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농촌지역은 고창군과 상주시처럼 전 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미약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현실 속에서 3개의 사례지역은 모두 지역 내 특정 자원을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통해 산업화 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또 이들 사례지역의 지역특화산업들은 전후방연계의 지역적 착근(embedded-



ness)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생산체계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중요

- 고창 복분자 산업과 증평 인삼산업 모두 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음
  - 고창군의 경우 7개의 관내 농협이 재배 농가들과 가공업체들을 아우르면서 복분자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수매-공급을 관내에서 일원화하는 효율적인 산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원료 생산과 공급 및 가격의 자율적 조절,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복분자 주 등 가공품의 생산량 자율적 조절 등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충격을 내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이는 2006년 복분자 가격 파동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고창의 복분자 산업체계임
  - 증평군의 경우에는 인삼산업 R&D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갖춘 것이 눈여겨볼 만한 사례임
    -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소를 설치하는 타 지역의 경우(예: 순창 장류연구소)와는 달리 외부의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혁신 및 신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
    - 이러한 이유로 국고 지원이 중단될 경우 R&D 기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타 지역 사례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평 인삼산업의 R&D 기반은 상당히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농산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육성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창 복분자산업과 증평 인삼산업 모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고창 복분자산업의 경우 장기 고용자만도 지역 내에서 200명 이상이며, 증평 인삼산업의 경우 근간 500~6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들 농어촌지역의 농산물 자원을 산업화한 농어촌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외부기업 유치에 못지않게 나타나고 있음
  - 고창군의 경우 2개 농공단지에 24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각 기업 평균 7.4명의 고창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음(비농가 고용 인력 기준)
  - 고창 복분자 산업의 경우는 가공 기업 당 평균 6~7명을 고용하고 있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장기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임
  - 임시고용까지 고려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내생적인 산업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이 적극 육성될 필요가 있음
  - 물론 농공단지와 같은 외부 기업의 유치 전략 또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 농어촌지역에 인력이 부족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체계가 미비함을 감안하면, 이들 조건이 일정정도 갖추어지기 전까지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의지가 중요함
- 사례지역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과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정도 등이 서로 다르고 추진체계 역시 다르지만 해

당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강했고, 이에 의해 다양한 정책사업 지원예산을 끌어다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고창 복분자 산업과 같은 경우 군청 내 복분자 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고창군은 이 조직을 통해 생산자, 가공업체, 농협 등 수매·유통 조직 등과 단일한 행정 창구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제 6 장

---

### 농어촌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법

#### 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 1.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체계 프로세스

###### 1.1.1. 지역개발계정 사업의 계획체계 이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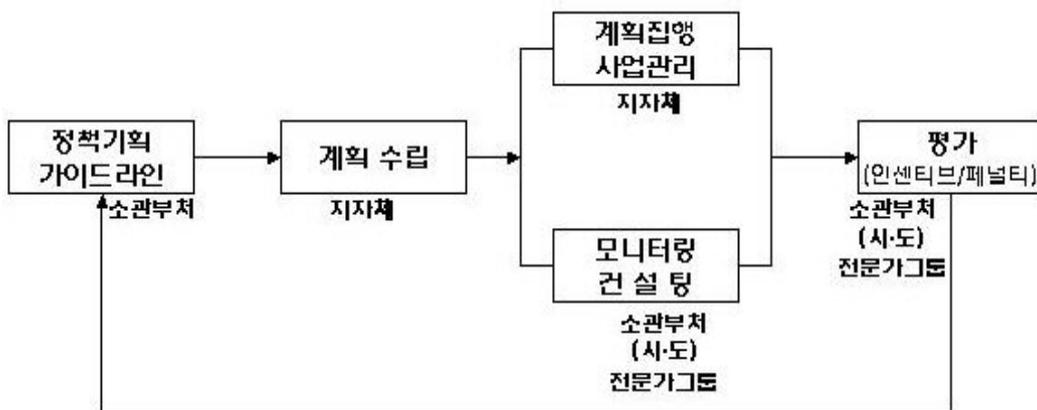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정책기획 및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계획권 보장
- 단, 포괄보조금 운용을 위한 ‘사업별 계획’과 종합적 성격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이원적 계획체계 구축

###### 1.1.2. 표준 프로세스

- 계획수립
  - 시장·군수 또는 복수의 시장·군수가 수립
  -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 가능

- 계획수립의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공모제 시행 가능. 단, 중앙부처형의 공모형 사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
  - 계획수립의 세부절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계획의 범위는 포괄보조금 사업 범위 내에 한정
    - 단, 직접 연계 사업은 계획범위에 포함 가능
  - 계획의 심사·승인
    - 시·도지사
    -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
  - 성과 목표
    - 성과 지향적 목표의 설정
    - 투입목표 설정 지양, 검증 가능한 계량목표 권장

그림 6-1. 지역개발계정사업의 추진 프로세스



## 1.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체계 프로세스

### 1.2.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접근

- 지원대상
  - 농어촌주민, 기업, 법인 경영체, 공동체 등
- 정책초점
  -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농어촌산업 육성
  - 이를 위해 1·2·3차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
  -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신성장 향토녹색산업 발굴
- 재정
  - 유사사업 통폐합에 따른 포괄보조
  - 예산규모의 확대
- 법적근거
  - 가칭 「지역특화산업육성법」 마련
  - 국회 계류중인 「농어촌정비법」 통과시 농어촌산업육성 부분 활용
- 사업관리
  - 중앙정부는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위주
  -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모제는 가능하며, 자체적인 계획 수립 가능
  - 평가는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 간의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소통

표 6-1.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방향

구분	기존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
목표	농어가 농의소득 증대 위주	농어촌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농어촌산업 활성화
지원주체	농어민, 농어가, 마을 중심	농어촌 주민, 기업, 법인 경영체, 공동체
정책초점	제한적 2·3차 산업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농어촌형 산업, 1·2·3차 융복합 산업, 신성장 향토녹색산업
재정	사업별 단년도 예산 지원	포괄 보조, 예산의 규모화
계획	임의계획 (상향식 계획: 농촌활력증진계획)	임의계획 혹은 법정계획 (상향식 계획: 가칭 지역특화산업육성계획)
근거법	없음	입법예고 중인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 부문 활용 혹은 지역특화산업육성법 제정
사업관리	지자체 자율성 일부 제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제 평가와 인센티브제 일부 도입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유도 미흡	지자체 자율성 대폭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공모제 평가(성과중심)와 인센티브 등 사후 관리 강화 지역혁신주체 형성과 능력 제고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 간의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쉽 구축

### 1.2.2. 농어촌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프로세스

- 기초생활권 추진 표준 프로세스는 위 내용과 같이 표준화될 수 있으나,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계획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기초생활권 계획의 농어촌산업진흥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거나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독립된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 가능

#### 가. 지역특화산업 분야 선정

-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산업 자원 발굴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협의를 통한 선정
-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에 적용

**나. 계획**

계획 수립

- 지역특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

○ 중앙정부

- 계획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방자치단체

- 시장·군수 또는 복수의 시장·군수가 계획 수립
-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 가능
- 계획수립의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공모제 시행 가능하며, 자율성 침해 소지가 큰 중앙부처의 공모형 사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
- 계획수립의 세부절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문가

-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 협조

계획범위

-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군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동시에 이와 직접적인 연계되는 사업들과 연계프로그램 제시

계획심사·승인



- 시·도지사 또는 중앙부처가 계획심사·승인
-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

□ 성과목표 제시

- 투입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검증 가능한 계량 목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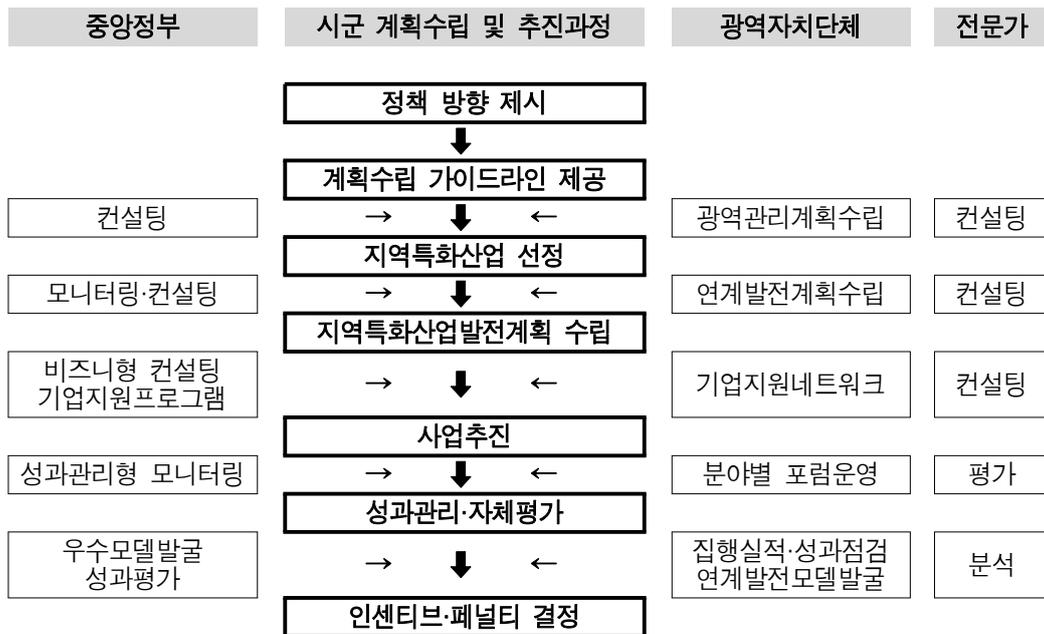
**나. 모니터링/컨설팅**

- 기간
  - 매년 실시
  -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중앙정부
  - 사업집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 비즈니스형 컨설팅 및 기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집행 및 운영
  - 운영상 애로점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문가 그룹에게 컨설팅 요청
  - 민간그룹의 지원조직의 네트워크화 추진
- 전문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그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다. 평가

- 기간
  - 5년 후 성과평가 실시
  
- 중앙정부
  -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운영
  - 성과평가결과의 피드백
  - 성과물의 DB화
  
- 지방자치단체
  - 성과평가결과 반영
  - 개선사항 반영
  - 성과물의 실용화 추진

그림 6-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프로세스



- 전문가
  - 성과평가 참여
  -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요인 분석
  - 제도적 결함이나 보완사항 분석

### 1.2.3.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 가. 중앙정부

- 성과관리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시·군 간 연계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우수모델 발굴: 기업육성 및 산업발전 관련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성과확산에 주력
- 특성화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체계 구축: 지역 유형별로 특색 있는 시·군 발전계획 및 선도향토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 비즈니스형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관 운영(창업-기술지원-경영-인력컨설팅-마케팅-자금지원컨설팅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인센티브·페널티제도 운영: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성과가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컨설팅과 함께 사업비 삭감 등의 페널티 제도 도입

**나. 광역자치단체**

-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대학·연구소 등을 기초로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특성화발전을 위한 사업관리, 시군간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

**다. 기초자치단체**

- 기업-전문가-지역리더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가칭)’ 구성·운영
- 단계별 선도 향토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표 6-2.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구분	계획단계(Plan)	실행단계(Do)	점검단계(See)
중앙정부 (지원조직)	정책방향제시 (지역특화·클러스터화 등)	- 성과관리형 모니터링 실시(계획심의)	- 우수모델발굴 및 성과평가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비즈니스형 컨설팅 실시 (계획수립·기업육성컨설팅)	
	기업지원기능정비	- R&D, 기업지원센터 등	
광역 자치단체	광역관리계획수립	- 기업지원네트워크 구축	- 집행실적·성과점검
	연계발전계획수립	- 분야별 포럼운영	- 연계발전 모델 발굴
기초 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 구성	- 기업-전문가-지역리더 사업추진	- 추진단 강화
	지역특화산업선정	- 지역특화산업분야 관리	- 단계별SWOT분석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 세부사업 추진	- 성과창출
	자체성과관리·평가계획 수립	-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자체점검·평가

### 1.3. 지역특화산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1.3.1.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선정절차

##### □ 지역특화산업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

- 향토자원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경쟁력 점검
  - 지역의 향토자원별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
  - SWOT분석을 토대로 지역자원으로서의 가치, 시기적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농촌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여부를 판단함
- ASP모델에 따른 실행전략 점검
  - 사업의 주체를 자원량, 기업수, 인재현황 등을 분석하여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향후 전략적 지원분야로까지 발전시킴
  - 기업-기술인력-대학 등 연계 및 네트워크가 가능한 인재-기관을 분석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이끌 지역시스템을 구축
  - 주체와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 1·2·3차 융·복합화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분석
  - 1차 산업인 농업의 후방 연관효과를 분석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분석
  - 3차 산업인 서비스, 관광산업과의 연계 가능한 내용을 분석하고, 전방연관효과의 가치를 분석

##### □ 선정 후 중장기 지역특화산업분야의 관리 방안

-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을 통해서 관리

- 3~5년 정도 지원 육성 후 지역특화산업분야 중점지원 대상에서 졸업(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 마련한 경우)을 선언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신규 지정분야에 대한) 검토
- 지역특화산업분야별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
  - 시·군 지역특화산업(시·군당 1~3개 산업 개발시 162개 시·군에서 최대 486개, 최소 162개)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지속개발
    - 기업수(기업별 현황), 분야별 매출액, 분야별 수출액, 분야별 고용현황, 분야별 신규고용(완전고용), 고용효과, 공장가동률, 1차 산업연관효과, 3차 산업연관효과 등
- 지역특화산업 선정절차
  - 지역특화산업추진단(가칭)을 산·학·연·관 협력체계로 구성
  - 관련 분야 기업인 및 잠재적 기업인을 ‘지역특화산업그룹’으로 형성
  - 추진단과 관련 산업그룹의 협의를 거쳐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잠정 확정
  - 공청회나 ‘주민보고회’를 통해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복성·과대성·과소성 등을 판단하여 조정절차 진행
  -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1.3.2. 조정절차의 필요성

- 과거 지역산업 개발과정에서 중복지원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새정부 출범 이후 통·폐합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6개 시·도별로 4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한 결과, 자동차 5개, 정보통신 4개, 바이오·생물 11개, 전자·정보 관련 12개 등 중복현상이 발생함

- 인접 시·군이 동일품목을 산업화하고자 할 경우, 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정을 통해 지역간 연계발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160여개 시·군의 지역특화산업분야 선정은 필연적으로 중복된 품목의 선정이 이루어질 것임
  - 인접지역 간 중복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공동추진단의 형성을 유도하여 조절함으로써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바이오·전자·정보 등 시·군에서 경쟁력 토대가 없는 분야 선정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 대기기업의 지방 이전 등에 초점을 맞추는 사례가 많지만, 이 경우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업추진 등이 미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1.3.3. 지역특화산업 선정 매뉴얼 주요내용(예시)<sup>18</sup>

#### 가. 향토자원조사표

#### 나. 시장 분석에 의한 향토자원 지도그리기

- 시장가능성은 낮고 경쟁력은 높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 시장가능성도 높고 경쟁력도 높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 다. 지역현황분석

- 전체 산업구조와 그 특징
- GRDP에서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추이

<sup>18</sup> 자세한 매뉴얼은 <부록 1> 참조

- 산업별 고용 및 취업자 비중 추이
- 농공단지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농림축산물 수출액
- 농어업·농어촌·농어촌산업 관련 지역예산 증가 추이

#### 라. 지역특화산업 분석

- 자원일반현황
  - 자원현황
  - 지역대학 및 인력양성체계
  - 관련 기업현황
  - 기술현황(특허), 연구소 및 기술인력 현황(농업기술센터 포함, 대학 및 기업의 관련 연구소)
- SWOT분석
  - 강점분석
  - 약점분석
  - 기회요소 분석
  - 위협요소 분석
  - SO 전략(시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 ST 전략(시장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 WO 전략(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WT 전략(시장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 분석결과
- 내적 경쟁력분석



□ 1·2·3차 융복합화분석

□ 지역특화산업 분석표

#### 1.4.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 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기존에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 중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일부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포괄보조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됨
- 이에 따라 갑작스런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의도와 통폐합된 정책군의 정책적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공지함으로써 통폐합의 순기능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나. 원칙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중 포괄보조로 지원되는 ‘농어촌산업육성·도농교류기반 조성’ 정책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계획수립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연합 가능(운영주체와 협의체 반드시 포함)
- 계량화된 성과지표 제시 필요(성과평가를 위한 통계체계 구축)
- 포괄보조금 대상 사업과 농어촌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과 연계

## 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sup>19</sup>

- 계획수립 개요
  -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계획수립의 목적
  - 계획수립의 범위
  - 계획수립의 방법
  
- 지역의 현황과 여건분석
  - 지역 현황: 행정구역, 인구, 경제활동인구, 농어촌산업 현황
  - 여건분석: 대내외 여건, 지역자원에 대한 SWOT 분석
  
-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 지역특화산업 분석표
  - 지역특화산업 선정
  
- 지역특화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 비전
  - 목표
  
- 지역특화산업 발전계획
  
-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 체계 구축
  - 추진조직
  - 추진 역량 강화 방안

---

<sup>19</sup>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표 6-3. 계획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 분	주요 내용						
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계획수립의 목적, 계획수립의 범위, 계획수립의 방법						
지역 현황과 여건분석	- 지역 현황: 행정구역, 인구, 경제활동인구, 농어촌산업 현황 - 여건분석: 대내외 여건, 지역자원에 대한 SWOT 분석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 지역특화산업 분석표, 지역특화산업 선정						
지역특화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 비전과 목표						
지역특화산업 발전계획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 추진조직, 추진 역량 강화 방안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일정 - 당해연도 사업투자계획						
지역특화산업 발전 방안(예시)	- 농어업생산기반 정비 -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 농어촌기업 창업보육기능 강화 -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지원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성과지표	기준 시점		중간 목표		최종 목표		성과
	인구	→		→		→	
	고용	→		→		→	
	사업체수	→		→		→	
	매출액	→		→		→	
	수출액	→		→		→	
	방문객	→		→		→	
	가동율	→		→		→	
교육횟수	→		→		→		

-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일정
  - 당해연도 사업투자계획
  
- 성과지표
  - 기준시점: 사업비 집행실적, 인구, 고용, 사업체수, 매출액, 수출액, 방문객, 가동율, 교육횟수
  - 중간목표: 상동
  - 최종목표: 상동
  - 기준시점 대비 최종시점 성과: 상동
  
- 기본전략별 지역특화산업 발전 세부사업(예시)
  - 농어업생산기반 정비
  -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 농어촌기업 창업보육기능 강화
  -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지원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라.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별 주요 내용

- 7대 전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 가능한 기본 콘테츠 제공<sup>20</sup>

<sup>20</sup>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표 6-4. 발전전략별 주요 내용(안)

전략	기본내용	활용가능 내용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① 품종개량 등 농업R&D	① 농산업 원료수급 조절 계획
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① 역량강화프로그램 - 문제해결형 스터디그룹 등 ② 산·학·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아카데미 등	① R&D센터운영계획(장비공동활용센터 등) ② 지역특화산업연구클러스터, 기업연합연구소 설립·운영계획 ③ 대덕R&D특구, 권역별TP와의 기술교류 및 기술사업화 계획 ④ GAP, HACCP 등 도입계획 ⑤ 지역특화산업인력뱅크 운영계획 ⑥ 인턴십 및 고용장려금 도입·활용 계획
농어촌기업 창업보육기능 강화	①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② 농촌체험마을, 농가레스토랑 등 비즈니스형 컨설팅 계획	① 네트워크-허브형 컨설팅 활용계획 ② 창업보육센터 설치 ③ 품평회 운영계획(본격마케팅 전단계)
농산어촌형 관광·문화· 서비스산업 육성	① 축제연계 계획 ② 도농교류 연계계획	① 경관산업의 관광상품화계획 ②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③ 시·군 연합 축제공동개최 ④ 시·군 연합 관광벨트 조성계획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지원	① 종합마케팅 계획 ② 지역공동브랜드 활용· 운영계획	① one-stop 수출지원단 운영계획 ② 해외시장개척 활동계획 ③ 지역연합홍보 및 직거래마트 운영계획 ④ 지역연합 해외시장개척 계획
농어촌형 산업 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① 특화단지 조성·운영계획 ②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①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계획 (1·2·3차 융복합형 특화단지) ② 금리지원, 세제감면, 수의계약 구매지원 제도 도입 계획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① 기업유치 여건조성 계획 ②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계획	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계획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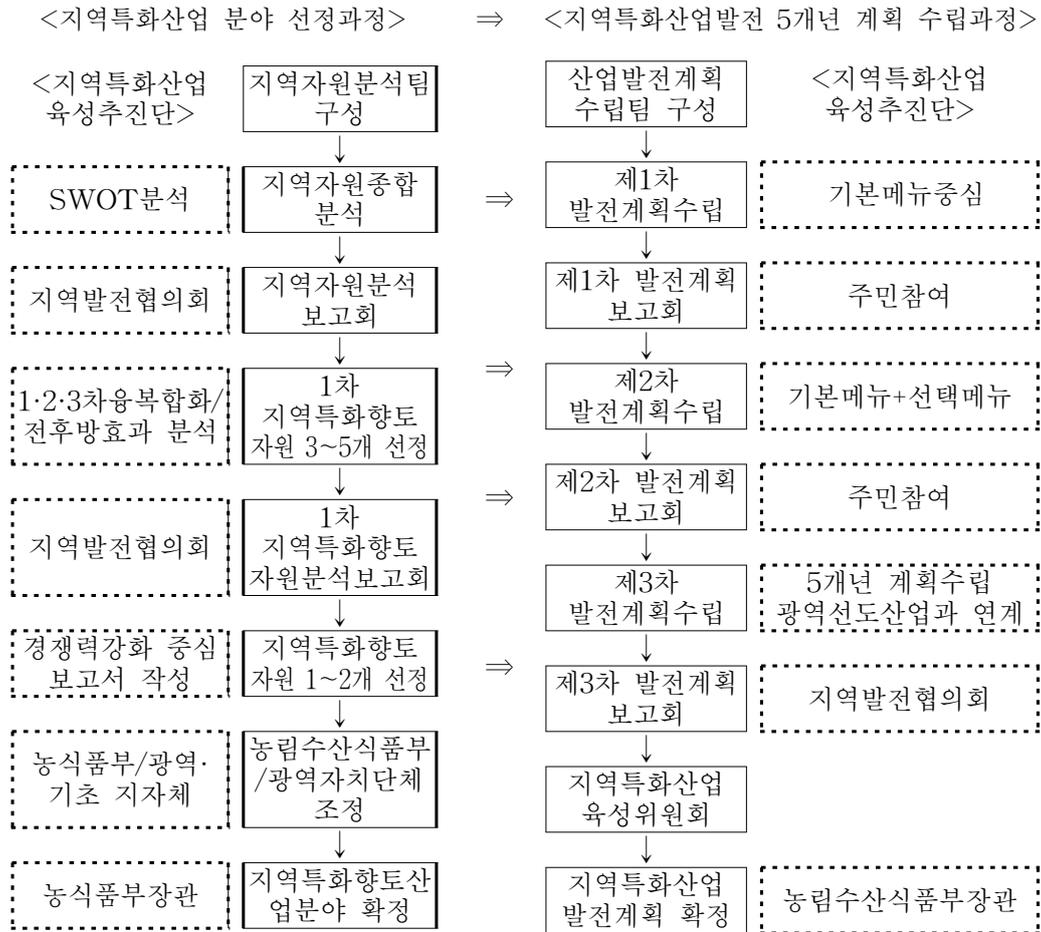
주: 각 내용별 지역여건 및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세부 활용 가능 매뉴얼 제공

#### 마.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체계

##### ○ 계획

- 지역특화산업분야 선정 및 지역특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지역주도형 계획수립
-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종합컨설팅 실시

그림 6-3.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체계



○ 단계별 계획 수립

-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 구성
- 기본메뉴를 중심으로 1차 발전계획 수립
-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을 반영한 2차 발전계획 수립
- 2차 발전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
- 각종 의견을 수렴한 최종 발전계획 수립
-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제출

## 바. 지역특화산업 시·군 추진체계

### □ 전담조직: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

- 계획수립, 사업발굴, 사업조정, 성과관리 전담조직
- 지역 내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자문단을 통한 전문성 배양
- 인력양성, 인재뱅크, 소규모 창업지원,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 브랜드 관리 위원회 등 특수사업 관리를 위한 민간 조직 참여 기제 확보
  - ※ 농촌활력증진계획 추진 시·군의 사업추진 주체는 공무원 및 의회종사자가 51.9%를 차지하며, 연구자, 시민단체, 농민, 기업인 등이 48.1%를 차지함

### □ 연계발전 추진단

- 인접 시·군 간 연계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 ※ 부여·공주 백제문화제 공동추진을 위한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구성 등
- 품목별 연계발전을 위한 민관포럼 및 기구 운영
  - ※ 녹차포럼: 보성, 하동, 제주, 서천, 담양 등
  - 한방약초도시발전협의회: 제천, 영천, 산청, 금산, 문경, 장흥 등

### □ 다층적 자문체계 구축

-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는 자문단을 중층

적으로 조직하여 시·군 농어촌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특성화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운영

- 정책목표달성형 자문조직: 전문지원조직을 설치하고, 비즈니스형 컨설팅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며, 농어촌산업 관련 연구자·활동가 및 과학기술자·산업디자이너·마케팅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자문단 운영
- 연계발전추구형 자문조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간 연계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주요 품목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권역내 테크노파크·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군 산업발전을 지원
- 특성화발전추구형 자문조직
  - 시·군별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 내에 지역협력형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특별 관리 사업영역에 한해 특별자문단(Family Doctor)제도 운영
  - R&D 특별자문단제도 도입
    -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R&D 관리
    - 지방자치단체 R&D용역 및 R&D결과의 사업화 관리
    - 지역기업의 기술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포럼 운영
    - 권역내 기술사업화 지원조직, 국책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구축

## 1.5. 평가 및 컨설팅,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 1.5.1. 성과 및 사업집행평가와 특성화 평가

#### 평가의 기본방향

- 계량 평가와 특성화 평가를 구분하고, 특성화 평가는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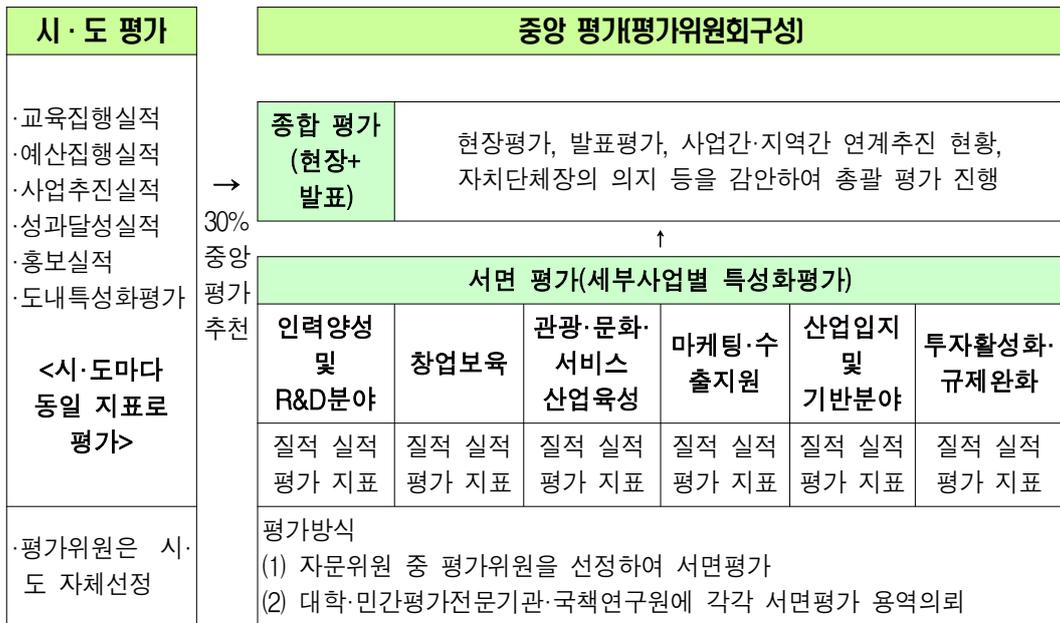
을 통해 평가 실시

- 중앙 평가와 자체 평가를 포함한 시·도 평가의 평가 분야를 구분
  - 시·도 평가: 계량 평가
  - 중앙 평가: 특성화 평가
- 시·도 평가 점수 + 중앙 평가 중 분야별 평가 + 종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도출함
  - ※ 우수모델
    - 사업모델분야: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분야별 인센티브 지원)
    - 주민참여모델: 지역의 NGO가 응모(1천만 원 미만의 사업비 지원)

□ 기대효과

- 시·도 평가를 기능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중앙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시·도 평가 결과가 중앙 평가에도 반영되므로 시·도 역할이 강화됨
- 특성화 평가를 통해 지역별·유형별로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 낼 수 있고,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수월
- 전문분야별 분절화된 평가와 종합 평가의 연계를 통해 평가내용의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용이함
- 점수분산 및 다수 평가위원의 다차원적으로 개입으로 객관적이며 전문성이 높은 평가방식

□ 기본체계(안)



□ 시·도 평가

- 통계 목록 및 작성내역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의 내용을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에서는 각각의 실적 통계자료를 점수화하여 평가
- 질적 평가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5~10 쪽 분량으로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전체 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점수화(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합산함
- 총점을 산출하여 상위 50% 이내의 시·군을 중앙 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며, 제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

인 평가점수 및 합계 점수를 함께 제출함

- 시·도 평가결과는 10점 내외의 범위에서 중앙평가에 반영함
  - ※ 시·도 및 중앙에서 통계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도 평가 및 중앙 평가에서 제외함
  - ※ 평가서는 기본통계 평가, 자체 평가, 중앙 평가 관련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

#### □ 중앙평가

- 전문분야별 평가
  - 자문위원 중 해당분과를 중심으로 5인 이내의 심사위원 구성
  - 서면심사 혹은 부분적으로 발표심사 가능(예, 특성화분야 심사위원은 발표평가를 통해 심사 가능)
  - 권역별 평가가 아닌, 특성화 평가로 중앙평가 대상 48~50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종합평가
  - 기획·특성화발전분과위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혹은 유형별 평가 실시
  - 전문분야별 서면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권역별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 및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우수모델 추진실적에 대한 감점사항을 정리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관한 점수를 합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경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함
    - 우수모델은 최하 10점 가점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최대 10점 가점 가능함
  - 현장평가 후 전문분야별 평가서 내용을 숙지한 후, 발표평가 실시
    - 권역별로 실시할 경우, 중부권-호남권-영남권으로 구분
    - 유형별로 실시할 경우, 향토자원 1 서부권 / 향토자원 2 동부권 / 문화·

관광·교육유형으로 구분함

※ 특성화 분야에서 유형별 점수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권역별 평가

### 1.5.2.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

-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우수 시·군은 인센티브 부여
  - 전체 사업 참여 시·군 중 매년 20%를 선정하여 등급별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부진 시·군에 대한 페널티 제도 도입
  - 전체 사업 참여 시·군 중 매년 10%를 선정하여 등급별로 페널티 부과
  - 익년도 사업비의 10%를 삭감하며, 5년 연속 페널티를 부과받는 시·군은 최대 50%의 예산이 삭감됨
- 우수모델 공모제를 통해 성과확산 추구
  - 부문별 우수한 모델을 공모제를 통해 선정하여 타 시·군이 계획수립 및 추진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 주민주도형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의 자발적 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에 주력

### 1.5.3. 성과목표협약제 도입

-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본격 실시 3년 후부터 시범사업으로 5~10개의 시·

군을 대상으로 성과목표협약제 도입

- 140~160여개 시·군 참여로 관리대상 시·군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에 우수 성과모델 창출 등을 위해 도입
- 인센티브·페널티의 일률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중점적인 성과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성과목표협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연차별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의를 통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 적용
- 해당 시장·군수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성과목표가 달성되면 인센티브를, 성과목표에 미달되면 페널티를 부여
-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면, 약정 인센티브를 지급
- 성과목표를 150% 달성하면, 약정 인센티브의 25% 추가 지급하되, 상한제를 도입
- 성과목표를 100% 이하로 달성하면, 약정 페널티 부과

#### 1.5.4. 첨단기법에 기초한 비즈니스형 경영컨설팅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및 권역별 TP에서 작동하는 창업보육 및 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등을 농어촌기업에 적용 통로 구축

-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국책연구소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을 토대로 한 창업지원
  - 국책연구소 내 농어업 관련 연구성과 중점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업 추진
- 첨단창업경영지원 및 벤처생태계 조성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농어촌 기업에 적용
  - **High-up** 프로그램(기업의 성장단계별 문제상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프로그램)
- 매킨지, 앤더슨컨설팅 등과 같은 첨단기법에 기초한 기업컨설팅 기법을 시·군 및 농어촌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성 배가
- 전문기관 내 컨설팅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농어촌기업 컨설팅의 첨단화 추구
- 지방자치단체·농어촌기업 및 향토지역특화산업 관련 농림수산물 등을 포괄하는 회계분석시스템 등을 토대로 한 경영컨설팅 전문 기반구축
- 농어촌기업의 특수성(농림수산물 원료가 갖는 특수성 및 원료수급의 차별성 등)에 기초한 “농어촌기업지원센터” 운영
- 농어촌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농어촌기업 육성 전략 모델 개발 및 지원전략 구축

#### 1.5.5.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체계 구축

- 시·군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성과관리 모듈을 선정하여 월별, 분기별 성과를 입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시·군 성과관리시스템과 중앙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코드를 공유하여 시·군에서 성과를 입력하여 중앙으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시·군 및 중앙의 시스템에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군은 중앙에서 제시하는 성과관리 코드 중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시스템을 통한 성과관리 추진
-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컨설팅, 홍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컨설팅 내용을 도출
-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의 입력 및 우수모델, 자체평가서 등과 같은 제출문서를 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하여 시·군의 업무 간소화 및 사업 내용 관리의 편의성·효율성 증대

## 2.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2.1. 농업·농촌 관련 법률 중 농어촌산업 관련 내용 분석

#### 2.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어촌산업정책

- 이 법률은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육성 및 농림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51조)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전통식품

산업·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과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함

- 법률에 포함된 농어촌 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수단에 관한 사항
  - 첫째, 조세의 감면(제63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둘째, 농업정책자금의 지원·관리(제64조)와 관련하여 정부에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

## 2.1.2.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농어촌산업정책

- 향토산업의 진흥
  -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 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할 의무를 부과(제31조)
- 법률에 포함된 농어촌 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수단에 관한 사항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권한을 부여



- 지원권한은 ① 특산품 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② 특산품 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③ 특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④ 특산품 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⑤ 특산품 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⑥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포괄함. 그러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수단에 대한 언급은 자금지원에 국한

### 2.1.3.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의 농어촌산업정책

#### ○ 법률에 포함된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산지의 가공업자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이 경우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과 그 보호·육성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또는 전통식품명인이 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6조).
-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외식산업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권한과 전통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통외식의 개발·보급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7조).
- 넷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 실시와 연구·개발한 농산물 가공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농산물 가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한 농산물가공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권한을 부여함(제10조)

-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산지가공업자가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산지가공업자가 수입개방등 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하는 가공품의 품목전환 등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12조)
- 여섯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특산물과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특산물 등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13조).
- 일곱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18조)
- 여덟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가공업자, 유통업종사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19조)
- 아홉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한 가공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함

#### 2.1.4. 「식품산업육성법」의 농어촌산업정책

○ 법률에 포함된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이 법은 ‘식품’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에, ‘식품산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식품산업에,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국한함. 따라서 농산물, 축산물과 임산물은 식품에 포함되지만 수산물은 식품산업진흥대상인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균형을 빚고 있음

- 산지가공산업의 육성(제16조)을 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2.1.5. 「인삼산업법」의 농어촌산업정책

#### ○ 법률에 포함된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이 법률은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생산자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3조)
-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알선할 수 있는 권한과, 계약경작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10조)

## 2.2. 다른 분야의 관련 법률 중 농어촌산업 관련 내용 분석

- 산업분야에 있어 아래의 검토 대상이 되는 법률은 일반적인 산업, 특히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지만, 농어촌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률임

### 2.2.1. 「산업발전법」의 목적과 기본 체계

#### 가. 기본 체계

-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이 법률은 산업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총괄 기능을 하는 기본법에 해당
- 이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① 산업의 경쟁력강화, ② 구조조정의 촉진, ③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④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⑤ 산업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인 관리, ⑥ 산업기반의 확충, ⑦ 국제간 산업협력의 증진, ⑧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의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선정하여 이를 고시하며,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신산업의 창출촉진을 위한 시책, 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의 사업 전문화유도를 위한 시책,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나.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원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기업간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①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②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③ 기업간 협력에 의하여 기술·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기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업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희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① 유희설비의 매각·담보해제 등 유희설비의 처리를 위한 사업, ② 재취업훈련·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 사업, ③ 기술이전·고용승계 등 유희경영자원의 활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2.2.2. 산업단지 관련 법률

- 산업단지 관련 법률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개발과 공급 및 이에 따른 공장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함. 이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들 수 있음
-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셋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 2.2.3. 산업기술 관련 법률

- 산업기술 관련 법률이라 함은 산업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적인 진흥의 수단과 관련된 법률을 말함. 이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다음의 법률을 들 수 있음
- 첫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함
- 둘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 혁신을 가져오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셋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

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넷째,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을 그 목적으로 함

#### 2.2.4. 중소기업 관련 법률

- 중소기업 관련 법률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함
-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부의 책무를 제시하며,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선언함
- 둘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규정하며,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상담회사 등의 설치의 근거를 둠
- 셋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넷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다섯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농어촌산업정책

- 이 법률은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설정함
  -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특화사업자를 지정함(제6조)
  - 특구계획에 특화사업을 위한 규제의 특례와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시킴(제7조)
  - 특화사업자가 특구의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의 의제(제39조), 각종 인허가의 의제(제40조) 등의 편익을 보장함

그림 6-4. 산업 관련 법률 체계도





## 2.3. 「지역특화산업육성법(가칭)」 도입

### 2.3.1. 「지역특화산업육성법」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

-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
- 지역특화산업의 핵심은 차별화된 상품에 있는 만큼 특화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부재료는 물론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유명상품의 지리적 명칭도 제멋대로 남용되고 있어서 권리보호는 고사하고 소비자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춘천닭갈비 384개, 남원추어탕 324개, 보성 녹차 86개, 안동간고등어 22개, 이천도자기 14개, 남원목기 13개 등 다수의 지리적명칭을 포함한 유사상표가 난립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특화산업 관련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필요

### 2.3.2. 「지역특화산업육성법」 도입의 필요성

#### 가. 기존 법률체계의 한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

- 포괄적 법률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촌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기본법”이라는 제한적 특성상 “선언적” 규정을 나열하고 있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 실효적 사항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도시와 생활의 격차가 벌어진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을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여건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산업의 육성법으로서 기능은 매우 제한적임
- 이 법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무와 권한만을 설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는 아니함
- 이 법률이 정부의 의무와 권한으로 설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예컨대 “특산품 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① “특산품”이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② 조사·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③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④ 지원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정책의 수행은 불가능함

□ 「농어촌정비법」의 한계

- 현재 개정 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낙후된 농어촌을 정비한다는 시각에서 농어촌산업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산업을 좀 더 강화하였음. 본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산업 육성·지원,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산업육성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국회 계류중인 개정법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농어촌산업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한계

-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이 분리되어 있어 지리적 표시의 등록만으로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지리적 표시는 우수농산품 및 그 가공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농산품 내지는 그 가공품이 아닌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한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낙후된 지역의 혁신 시각에서 농어촌을 봄
- 이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사업”이 해당됨
  -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이 법률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이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주민의 소득창출 기반 확충 및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이 법률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에서 언급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면 이를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근거가 필수적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한계

- 이 법률은 ‘특구의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의 ‘특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지역개발’이 불필요하고,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이 법률에 따른 ‘특화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산업 관련 법률

- 산업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시각에서 부문별로 분리하여 농어촌산업의 육성방안을 규정함. 각 분야로 나뉘어 있어 부문별로 제한적으로 농어촌산업의 육성방안이 추구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기 힘들

□ 지역·복지·조직 관련 법률

- 지역·복지·조직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농어촌산업을 ‘산업’의 본질과는 다른 시각에서 본다는 점에서 농어촌산업의 본질적 육성과 많은 거리가 있음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법」의 필요성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법률들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시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종래 농어촌산업은 낙후산업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농어촌 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른 인구감소와 농어촌지역 인구의 고령화 심화, 우수인재 유치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현상은 가속화되어 왔음

- 그러나 농어촌산업을 본질적으로 직시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고도 폭넓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농어촌산업을 가지는 고부가가치를 직시하고 중장기의 비전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2.3.3. 「지역특화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

#### 가. 「지역특화산업육성법」 제정의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향토산업·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과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 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설정함

#### 나. 법률 적용 대상의 명확화

-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특화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종래 법률상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식품’, ‘신품종’, ‘신

기술' 등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체계 설정**

-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계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종합계획과 단기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 공공단체의 역할의 구체적 설정이 있어야 함

#### **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 분담체계의 명확화**

-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려면 대상의 설정, 각종 규제와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행정권한의 행사가 필요하며, 권한에는 재정 지원 등의 의무가 따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능 분담의 체계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공공단체의 기능도 필요한 경우 법률상 그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권한과 관련된 개별적 사항 구체화**

##### 특산품 등의 조사와 발굴을 위한 체계의 수립

- 지역특화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산품 등을 조사·발굴하고, 이를 지원 대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특산품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체계의 수립

- 지역특화산업으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함
    - ① 특산품 등의 조사와 발굴체계에 따른 특산품의 지정
    - ② 지정된 특산품의 등록 및 상표법상의 상표제도와 연결된 지적재산권의 부여
    - ③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등에 따라 구체화

□ 특산품 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체계의 수립

- 특산품 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
  - 특산품 등의 상품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신기술의 인증, 기술의 이전, 사업화, 기술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기술개발촉진법, 각종 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특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 특산품 등의 상품화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상표와 포장의 개발에 있어 특히 지리적 표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공동브랜드화’가 필요하며, 이 경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
  - ‘지역공동브랜드’에 입각한 홍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특산품 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지원

○ 특산품 등의 생산자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특산품 등의 생산을 위한 창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금융지원, 조세감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규정이 필요함
- 특히 ‘향토전문기업’의 지정 등을 통하여 특정한 생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산품 등의 판매자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금융지원, 조세감면,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 ‘향토전문기업’이 지정된 경우 ‘향토전문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산품 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특산품 등의 생산기술의 전수와 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수단의 설정이 필요함

- 이 경우 ‘향토명인’의 지정과 그 육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 인력채용연계사업의 실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청년실업자의 채용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급,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인력지원 방안의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바. 지역특산품의 품질관리와 보호를 위한 규제수단의 명확화** 지역특산품 품질관리를 위한 규제수단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지역특산품의 품질이 보장되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수단의 도입이 필요함

 지역특산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수단

- 지역특산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등에 규정된 제재 및 규제수단의 적절한 도입이 필요함

## 부 록 1

### 지역특화산업 선정 매뉴얼(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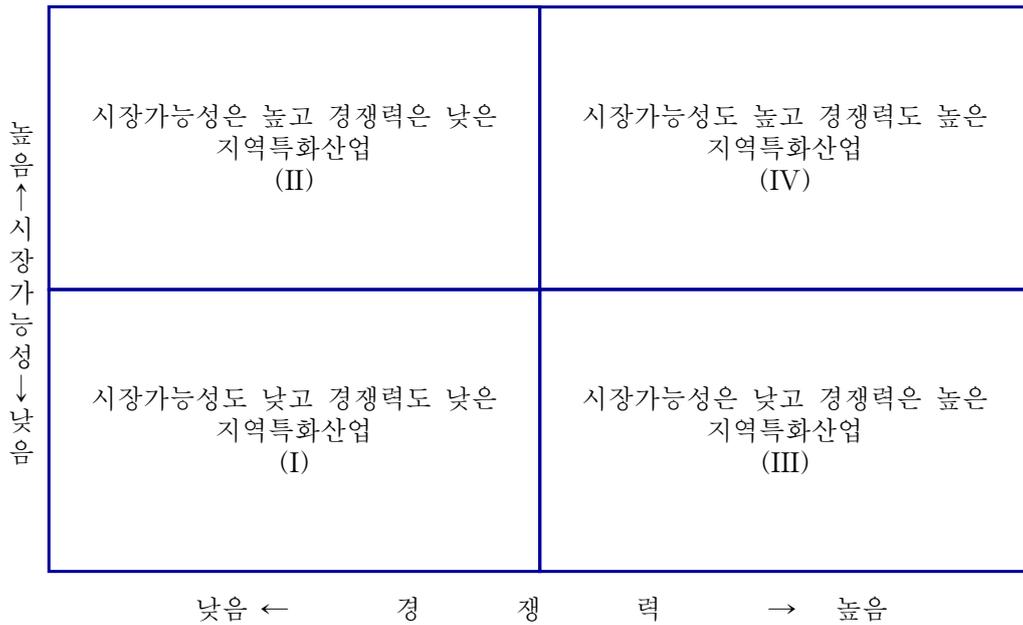
#### 가. 향토자원조사표

대분류			향토 자원명	평가표							평가 결과	
				시장가능성			경쟁력					
				경제성	시장 확장성	R&D 비중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지역 역량	브랜드 가치		사업 중복성
선도 산업 가능 영역	농특 산물	1차 농어업										
		2차 산업화										
	관광자원											
	지역 전통문화 자원											
선도 산업 불가 영역	지역브랜드											
	교육											
기타												

\* 일반적 평가를 통해 집중분석대상 향토자원 3~5개 선정

나. 시장 분석에 의한 향토자원 지도그리기

○ PPM(Product Portfolio Management)



○ 분석결과

시장가능성은 낮고 경쟁력은 높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 
- 

시장 가능성도 높고, 경쟁력도 높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 
- 
-

## 다. 지역현황분석

### □ 전체 산업구조와 그 특징

#### ○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인구	인			
경제활동인구	인			
경제활동인구 비중	%			

#### ○ 1·2·3차 산업의 비중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 □ GRDP에서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추이

#### ○ 1인당 GRDP와 재정자립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GRDP(천원)			
	전국 대비 비율(%)			
재정자립도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순계규모) × 100

## ○ 1인당 GRDP에서 산업별 비중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당 GRDP에서 농림어업의 비중(%)			
1인당 GRDP에서 제조업의 비중(%)			
1인당 GR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 □ 산업별 고용 및 취업자 비중 추이

## ○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 비중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경제활동인구(A)	인			
취업자(B)	인			
농림어업	인			
제조업	인			
서비스업	인			
실업자(C)	인			
취업률(B/A)	%			
실업률(C/A)	%			

## ○ 산업별 취업인구 비중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 농공단지가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농공단지 현황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지명	총면적		입주업체현황			고용인원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불)
	(㎡)	분양	입주 업체수	가동 업체수	가동율			
계								

○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현황

- ○○○농공단지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계	음식물	섬유의복	석유화학	비금속	조립금속	임대	기타
입 주 업 체	계								
	가 동								
	휴폐업								
	건설 등								
고용인원									

□ 농림축산물 수출액

○ 연도별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세

단위: 천불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수 출						
수 입						

## ○ 품목별 수출액

단위: 천불

구 분	계	농산물	축산물	기타	비고
수출액					

## □ 농업·농촌·농촌산업 관련 지역예산 증가 추이

## ○ 지역예산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발계정				
		혁신계정				
	기 타					
	소 계					
지방비						
민 자						
합 계						

## 라. 지역특화산업 분석

## □ 자원일반현황

## ○ 자원현황

		품목명	비고
농특산물	1차 명품화		
	2차 산업화		
관광자원			
지역전통문화자원			





연구소형태 (대학내·외, 기업, 기술센터 등)	연구소명	연구원 수(박사, 석사 수), 주요연구분야	비고

□ SWOT분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강점 (Strength)	(분석예시)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강점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분석예시)일반적으로는 위협요소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약점 (Weakness)	(분석예시)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분석예시)위협요인과 약점이 함께 도래했을 때, 최악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강점분석

○

- 약점분석

○

- 기회요소 분석

○

- 위협요소 분석

- - SO 전략(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 - ST 전략(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
- - WO 전략(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
- - WT 전략(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
- - 분석결과
- 

내적 경쟁력분석

<경쟁력분석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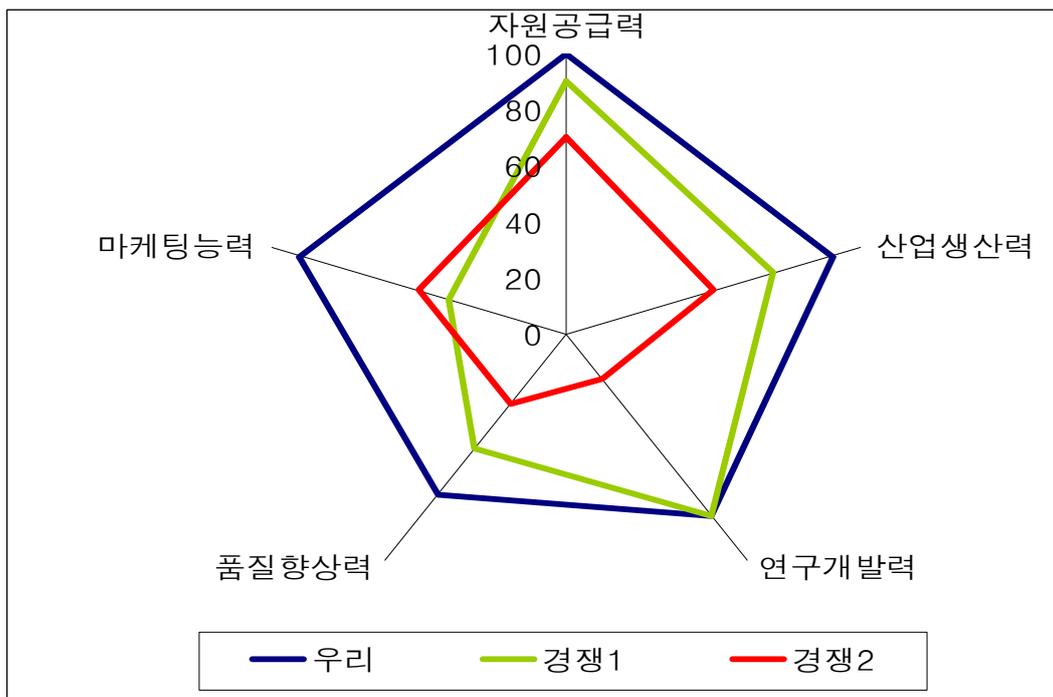
	우리 자자체	경쟁 지자체(1)	경쟁 지자체(2)
자원공급능력 -농산물의 경우 전국 점유율 등	100	90	70
산업생산력 -기업수, 시장점유율 등	90	70	50
연구개발력 -연구소, 기술인력 등	80	80	20
품질향상력 -품질 및 디자인 등	70	50	30
영업·마케팅력 -유통망 등	90	40	50

\* 구체적 지표개발 필요

<경쟁력분석표 차트화>

- 자원의 독자성, 차별적 우위성은 무엇인가?
-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인가?
- 시장을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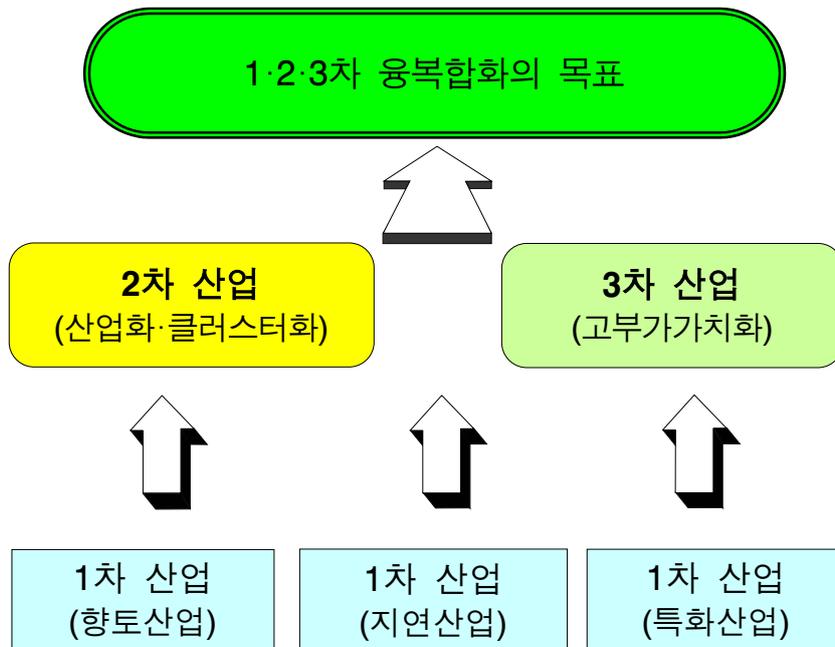
□ (예시) 상주꽃감의 차별성은 전국적인 상주꽃감에 대한 인지도와 고품질, 고급화를 지향하는 점임. 또한 매출이 '07년 700억 원으로 전국최대의 꽃감판매량을 자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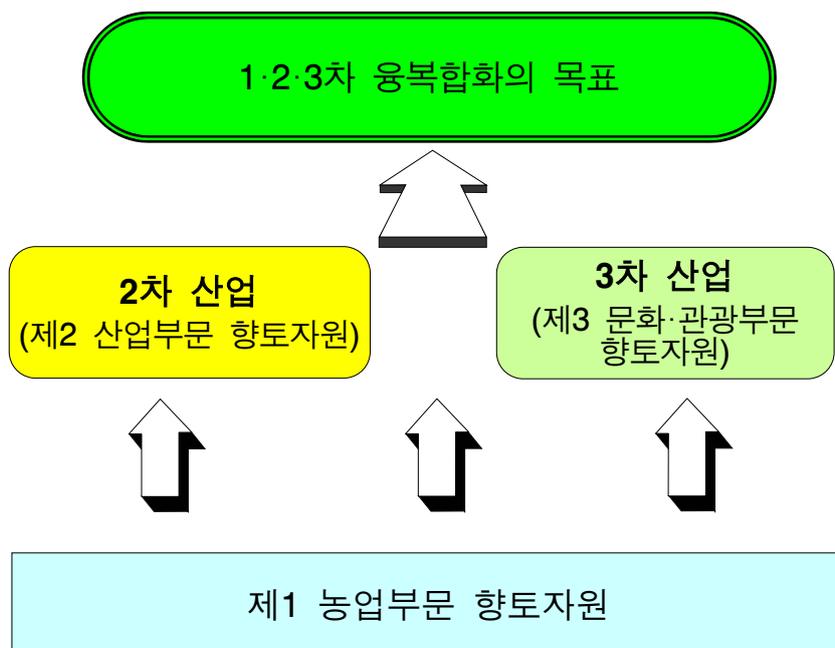
□ 1·2·3차 융복합화분석

- 전방(1차)연관효과 분석
- 후방(3차)연관효과 분석
- 3차 산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 및 도구(브랜드, 문화 등)
- 1·2·3차 융복합화 실현 체계도

<전형적인 1·2·3차 융복합화의 체계도>



<향토산업 자체로 구성된 1·2·3차 융복합화의 체계도>



대분류	향토자원 명	평가표					지역역량
		시장성 분석결과	SWOT 분석결과	경쟁력 분석결과	1·2·3차 융복합 분석결과		
농 특 산 물	1차 농산물						
	2차 가공품						
관광 자원							
지역전통문 화자원							
지역 브랜드							

지역특화산업 분석표

- 최종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도표

## 부 록 2

---

###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매뉴얼(예시)

#### 1.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개요

-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계획수립의 목적
- 계획수립의 범위
- 계획수립의 방법

#### 2. 농어촌산업 여건 및 현황

- 대내외 여건 분석
  -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의 여건
  - 농정의 방향 전환과 새로운 가치 대두
- (해당 지자체) 농어촌산업 현황
  - 일반 현황(인문·지리적 현황 등)
  - 산업 현황
  - 향토특산자원 현황
  - 관광 및 문화역사자원 현황

####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배경

-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중요성)

#### 4. 지역특화산업 선정

지역특화산업 분석표

○

대분류	향토 자원명	평가 지표					평가 결과	특화산업 가능여부
		시장성 분석결과	SWOT 분석결과	경쟁력 분석결과	1·2·3차 융복합 분석결과	지역 역량		
농 특산물	명품화 자원							가능
	산업화 자원							
관광·문화 자원								
지역 브랜드								
교육								불가능

지역특화산업 선정

○

#### 5. 농어촌산업육성 추진 방향

비전과 목표

○ <도식화>

추진전략

○ <도식화>

특성화(지역특화산업)

○ <도식화>





## 8.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요약)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A. 지역특화향토산업 관련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뮬레이션)	
세부사업	사업별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별	
A-1. 품종개량 등 농업R&D 지원 ☆	A-1-1. 품종개량					
	A-1-2. 신품종 개발	√			A-1-2. 신품종 개발	
	A-1-3. 종자관리지원					
	A-1-4. 기타 시군 특성화 사업					
A-2. 농산업 원료수급조절계획 ★	A-2-1. 참여농가영농지원계획					
	A-2-2. 참여농가시설지원계획	√			A-2-2. 참여농가시설지원계획	
	A-2-3. ....					
	A-2-4. 기타 시·군 특성화 사업	√			A-2-4. 기타 시군 특성화 사업	
A-3. 농산업 원료고급화 계획 ☆	A-3-1. 작목반 교육 등 운영계획	√			A-3-1. 작목반 교육 등 운영계획	
	A-3-2. 작목반 품질 평가계획					
	A-3-3. ....					
	A-3-4. ....					
	A-3-5. 기타 시군 특성화사업					

★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 농어촌생산기반 정비 지원부분은 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타사업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대체하고, 이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른 전략부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이드할 수 있음

※ 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5~8% 범위로 한정함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B. 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세부사업	사업별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B-1. 역량강화프로그램 ★	B-1-1. 문제해결형 스터디그룹			
	B-1-2. 선도향토산업 CEO 과정			
	B-1-3.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B-1-4.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B-1-5. 선도향토산업 포럼			
	B-1-6. 선도향토산업 연구회 운영계획	✓		
	B-1-7. 기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B-2.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대학·전문대학·폴리텍대학 등과의 협력적 프로그램) ☆	B-2-1. 지역대학내 관련 학과 개설 공동운영	✓		
	B-2-2. 관·산·학 인턴십 모델 개발			
	B-2-3. 최고지도자과정 운영계획			
	B-2-4. 기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B-3. R&D 운영계획 ★	B-3-1. R&D 센터 설립 계획			
	B-3-2. R&D 네트워크 구축계획			
	B-3-3. R&D FD제도 운영계획	✓		
	B-3-4. R&D 사업화 프로그램	✓		
	B-3-5. 기타 지역특화 R&D 프로그램			
B-4. 연구소 설립·운영계획 ☆	B-4-1. 연구 설립·운영계획			
	B-4-2. 기업연합연구소 설립·운영계획	✓		
	B-4-3. 장비공동활용센터 설립·운영계획	✓		
	B-4-4. 관련 기업인 기술포럼 운영계획			
	B-4-5. 기타 지역특화 연구소 운영계획			
B-5. 기술교류·기술사업화 계획 ☆	B-5-1. 대덕특구활용계획			
	B-5-2. 국책연구원 활용계획			
	B-5-3. 권역내 TP 활용계획	✓		
	B-5-4.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업화 계획			
	B-5-5. 기타 특화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계획			
B-6. 인력뱅크운영계획 ☆	B-6-1. 선도산업 인력DB 구축계획	✓		
	B-6-2. 인력DB 활용계획			
	B-6-3. 산업인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B-6-4. 인력네트워크 활용계획			
	B-6-5. 지역기업 고용장려금 도입계획			
	B-6-6. 기타 지역특화 인력뱅크 운영계획	✓		
B-7. GAP, HACCP 도입계획 ☆	B-7-1. 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운영계획	✓		
	B-7-2. HACCP 지원계획			
	B-7-3.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관리계획			
	B-7-4. 기타 지역특화 인증제 도입계획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뮬레이션) 사업별
B-1-6. 지역특화향토산업 연구회 운영계획
B-2-1. 지역대학내 관련 학과 개설 공동운영
B-3-3. R&D FD제도 운영계획
B-3-4. R&D 사업화 프로그램
B-4-2. 기업연합연구소 설립·운영계획
B-4-3. 장비공동활용센터 설립·운영계획
B-5-3. 권역내 TP 활용계획
B-6-1. 선도산업 인력DB 구축계획
B-6-6. 기타 지역특화 인력뱅크 운영계획
B-7-1. 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운영계획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C. 향토창업보육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세부사업	사업별 예시			
C-1. 창업보육센터 운영 ★	C-1-1. 농업기술센터내 창업보육 기능			
	C-1-2. 역내 공공기관 활용 창업보육 기능			
	C-1-3. 권역내 창업보육센터 활용계획	√		
	C-1-4.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C-1-5. 기타 지역특화 창업보육 계획			
C-2. 마을·농가 비즈니스 컨설팅 ★	C-2-1. 체험마을 비즈니스형 컨설팅계획	√		
	C-2-2. 농가레스토랑 경영 컨설팅계획			
	C-2-3. 마을축제 경영컨설팅 계획			
	C-2-4. 농장축제 경영컨설팅 계획			
	C-2-5. 기타 지역특화 경영컨설팅 계획			
C-3. 기업경영 컨설팅 운영계획 ☆	C-3-1. 타부처 공공기업컨설팅 활용계획			
	C-3-2. 권역내 공공기업컨설팅 활용계획	√		
	C-3-3. 전문컨설팅기업 활용계획			
	C-3-4. 기타 지역특화 기업컨설팅 운영계획			
C-4. 시제품제작 및 품평회 운영계획 ☆	C-4-1.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계획	√		
	C-4-2. 창업기업 제품품평회·홍보지원계획			
	C-4-3. 기업 신제품 시제품 제작지원			
	C-4-4. 기업 신제품 품평회·홍보지원계획			
	C-4-5. 기타 시제품·신제품 지원계획			
C-5. 기타 기업컨설팅 계획 ☆	C-5-1. 마케팅 컨설팅 계획	√		
	C-5-2. 기술컨설팅 계획	√		
	C-5-3. 디자인컨설팅 계획	√		
	C-5-4. 인력운영컨설팅 계획			
	C-5-5. 장비운영컨설팅 계획			
	C-5-6. 제품홍보 컨설팅 계획			
	C-5-7. 기타 기업컨설팅 계획			
C-6. 기업투자자를 위한 금융펀드 활용 및 조성계획 ☆	C-6-1. 기업투자펀드 종합안내책자 발간계획	√		
	C-6-2. 기업투자펀드 활용지원방안			
	C-6-3. 선도산업 기업투자펀드 조성계획			
	C-6-4. 기타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물레이션)
사업별
C-1-3. 권역내 창업보육센터 활용계획
C-2-1. 체험마을 비즈니스형 컨설팅계획
C-3-2. 권역내 공공기업컨설팅 활용계획
C-4-1.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계획
C-5-1. 마케팅 컨설팅 계획
C-5-2. 기술컨설팅 계획
C-5-3. 디자인컨설팅 계획
C-6-1. 기업투자펀드 종합안내책자 발간계획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D. 관광·문화·서비스 산업육성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뮬레이션)		
세부사업	사업별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D-1. 도농교류프로그램 ★	D-1-1. 선도산업 관련 특성화마을 지원계획	√		
	D-1-2. 선도산업 관련 농촌체험마을조성계획	√		
	D-1-3. 선도산업 관련 지역축제운영계획			
	D-1-4. 선도산업 관련 마을축제운영계획			
	D-1-5. 선도산업 관련 농장형축제운영계획			
	D-1-6. 농촌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		
	D-1-7. 도농교류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계획			
	D-1-8.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		
	D-1-9.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			
D-2. 테마문화상품개발계획 ★	D-2-1. 선도산업 관련 문화상품개발 계획			
	D-2-2.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 계획	√		
	D-2-3. 지역특화 스토리텔링개발 계획			
	D-2-4. 기타 테마문화상품 개발 계획	√		
D-3. 경관의 관광상품화 계획 ☆	D-3-1. 농업경관 활용 관광 활성화 계획	√		
	D-3-2. 농업경관 활용 축제 계획			
	D-3-3. 경관작물 활용 2차 산업화 계획			
	D-3-4. 기타 경관 활용 사업화 계획			
D-4. 선도산업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계획 ☆	D-4-1. 선도산업 특산품화 관광연계			
	D-4-2. 지역산업체 시찰·관광 연계 계획	√		
	D-4-3. 선도산업-경관 연계 관광 운영계획			
	D-4-4. 특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 계획			
	D-4-5. 기타 산업연계 관광 개발 계획			
D-5. 농어촌체험마을·농어촌 마을해설가 양성계획 ☆	D-5-1. 농어촌체험마을지도사 양성계획	√		
	D-5-2. 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계획	√		
	D-5-3. 지역특화 관광해설사 양성계획			
	D-5-4. 기타 지역특화 관광인력 양성계획			
D-6. 시군연합 관광개발 운영계획 ☆	D-6-1. 인접시군 연합 축제공동개최계획			
	D-6-2. 인접시군 연합 관광벨트 개발계획	√		
	D-6-3. 인접시군 문화콘텐츠 공동개발계획			
	D-6-4. 기타 인접시군 연계 프로그램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E. 마케팅·수출지원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세부사업	사업별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E-1. 종합마케팅계획 ★	E-1-1. 1시군1유통회사 설립·운영계획	√		
	E-1-2. 선도산업 농산물 명품화 마케팅계획			
	E-1-3. 선도산업 제품 마케팅 지원 계획			
	E-1-4. 기타 마케팅 지원계획			
E-2. 지역공동브랜드 운영계획 ★	E-2-1. 선도산업 농산물 지역브랜드 운영	√		
	E-2-2. 지역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운영	√		
	E-2-3. 지역공동브랜드 지원계획			
	E-2-4. 광역차원 품목별 공동브랜드 활용계획			
	E-2-5. 기타 지역공동브랜드 활용계획			
E-3. 수출지원단·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	E-3-1. one-stop 수출지원단 운영	√		
	E-3-2. 수출자문단·수출FD 운영			
	E-3-3.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계획	√		
	E-3-4. 세계한상 네트워크 활용계획			
	E-3-5.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여지원	√		
	E-3-6. 해외바이어초청 운영계획			
	E-3-7.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계획			
	E-3-8. 기타 수출·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E-4. 지역연합 홍보·직거래마트 운영계획 ☆	E-4-1. 동일품목 지역연합 홍보계획			
	E-4-2. 지역연합 공동다큐 제작 계획			
	E-4-3. 지역연합 공동 TV프로그램 제작계획			
	E-4-4. 지역연합 직거래마트 운영계획	√		
	E-4-5. 지역연합 제품홍보전 운영계획			
	E-4-6. 지역연합 국제홍보활동 운영계획	√		
	E-4-7. 기타 지역연합 홍보계획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뮬레이션)
사업별
E-1-1. 1시군1유통회사 설립·운영계획
E-2-1. 선도산업 농산물 지역브랜드 운영
E-2-2. 지역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운영
E-3-1. One-stop 수출지원단 운영
E-3-3.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계획
E-3-5.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여지원
E-4-4. 지역연합 직거래마트 운영계획
E-4-6. 지역연합 국제홍보활동 운영계획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F. 산업입지지원

세부사업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사업별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F-1. 특화단지 조성 ★	F-1-1.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		
	F-1-2. 특화단지 전문성 강화계획			
	F-1-3. 특화단지 입지조성 규제완화 계획			
	F-1-4.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계획	√		
	F-1-5. 기타 특화단지 조성 관련 계획			
F-2.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 계획 ☆	F-2-1. 기존 테마파크의 복합단지화	√		
	F-2-2. 1·2·3차 융복합형 테마파크조성	√		
	F-2-3. 기타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 계획			
F-3.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	F-3-1.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F-3-2.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단지화 계획	√		
	F-3-3. 기존 농공단지 운영계획			
	F-3-4. 기타 기존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F-4.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제도 도입계획 ☆	F-4-1. 금리지원 제도	√		
	F-4-2. 세제감면 제도	√		
	F-4-3. 인력지원 제도	√		
	F-4-4. 수익계약 구매지원제도	√		
	F-4-5. 기타 입주업체 지원제도	√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뮬레이션)	
사업별	비고
F-1-1.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F-1-4.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계획	
F-2-1. 기존 테마파크의 복합단지화	
F-2-2. 1·2·3차 융복합형 테마파크조성	
F-3-2.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단지화 계획	
F-4-1. 금리지원 제도	
F-4-2. 세제감면 제도	
F-4-3. 인력지원 제도	
F-4-4. 수익계약 구매지원제도	
F-4-5. 기타 입주업체 지원제도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기본전략별 세부사업 계획> G. 투자활성화·규제완화

세부사업	중앙부처 세부 가이드 예시			
	사업별 예시	1년차	2년차	3년차
G-1. 기업유치 여건조성 계획 ★	G-1-1. 선도산업 관련 대도시 기업유치 계획			
	G-1-2. 기업유치단 운영계획	√		
	G-1-3. 기타 지역특화 기업유치 계획	√		
G-2.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계획 ☆	G-2-1.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도입계획	√		
	G-2-2. 기업유치 세제혜택 정비계획	√		
	G-2-3. 기업유치 공용지원제도 정비계획	√		
	G-2-4. 기업유치 R&D지원제도 정비계획	√		
	G-2-5. 기타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계획			
G-3.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계획 ☆	G-3-1. 기업·공장 이전·설립조건 완화 계획	√		
	G-3-2. 기업·공장 이전·설립 입지완화계획	√		
	G-3-3.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운영계획	√		
	G-3-4. 기타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계획			

A지자체 1년차 선택 현황(시뮬레이션)	
사업별	비고
G-1-2. 기업유치단 운영계획	
G-1-3. 기타 지역특화 기업유치 계획	
G-2-1.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도입계획	
G-2-2. 기업유치 세제혜택 정비계획	
G-2-3. 기업유치 공용지원제도 정비계획	
G-2-4. 기업유치 R&D지원제도 정비계획	
G-3-1. 기업·공장 이전·설립조건 완화 계획	
G-3-2. 기업·공장 이전·설립 입지완화계획	
G-3-3.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운영계획	

★필수항목(사업별 예시 중 하나는 꼭 포함)

☆선택항목(사업별 예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 &lt;시·군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별 안내자료 표&gt;

사업명	G-1. 기업유치 여건조성 계획 G-1-1. 선도산업 관련 대도시 기업유치 계획
개요	○ ○ ○
활용가능한 전략포인트	○ ○ ○ ○ ○ ○ ○ ○
구체적 활용방법	○ ○ ○ ○
주요 채택요건	○ ○ ○ ○ ○
사업실시주체	
예산편성시 주의사항	
문의처	
기타	

## (1) 지역특화 향토산업 관련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

## ① (선택) 품종개량 등 농업R&amp;D 지원

 개념

- 선도향토자원의 생산증대를 위한 농업 R&D 지원 계획

 예시

- 품종개량
- 신품종 개발
- 종자관리지원
- 기타 시군 특성화 사업

## ② (필수) 농산업 원료수급 조절 계획

 개념

- 선도향토자원의 원활한 원료수급체계 마련 계획

 예시

- 참여농가영농지원계획
- 참여농가시설지원계획

## ③ (선택) 농산업 원료 고급화 계획

 개념

- 해당 품목별로 작목반·영농조합 등을 구성해서 원료의 고급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예시

- 작목반 교육 등 운영계획
- 작목반 품질 평가계획



## (2) 인력양성 및 R&amp;D

## ① (필수) 역량강화프로그램

## □ 개념

- 지역내 인재를 선도산업의 핵심역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 예시

- 문제해결형 스터디그룹
- 선도향토산업 CEO 과정
-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 선도향토산업 포럼
- 선도향토산업 연구회 운영계획
- 기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 ② (선택) 산·학·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 개념

- 이론과 실제와 벤치마킹 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전문대학·폴리텍대학 등과의 협력적 프로그램
- 지역 내 및 인근 대학 학생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현장적응능력 및 실습능력 강화를 위한 인턴십 활성화
-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

## □ 예시

- 지역대학내 관련 학과 개설 공동운영
- 관·산·학 인턴십 모델 개발

- 최고지도자과정 운영계획
-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 ③ (필수) R&D 운영 계획

#### □ 개념

- 지역특화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R&D센터 설립·운영
- 지역특화산업분야에서 시제품생산, 신제품개발 등 고가의 장비를 민관이 합동으로 구매하여 공동활용하는 센터 설립·운영

#### □ 예시

- R&D 센터 설립 계획
- R&D 네트워크 구축계획
- R&D FD제도 운영계획
- R&D 사업화 프로그램
- 기타 지역특화 R&D 프로그램

### ④ (선택) 연구소 설립·운영계획

#### □ 개념

- 지역내 지역특화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기술인력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그룹(미니클러스터)’을 형성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로 운영
- 민관이 합동으로 선도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 전국의 선도산업 관련 인재와 기술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 □ 예시

- 연구 설립·운영계획
- 기업연합연구소 설립·운영계획

- 장비공동활용센터 설립·운영계획
- 관련 기업인 기술포럼 운영계획
- 기타 지역특화 연구소 운영계획

⑤ (선택) 기술교류 및 기술사업화 계획

개념

- 지역기업인의 기술애로사항을 지역특화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대덕R&D특구나 TP 등에서 개발한 지역특화산업 분야 특허 등을 소개하고 유망기술을 지역기업이 구매하여 사업화 추진

예시

- 대덕특구활용계획
- 국책연구원 활용계획
- 권역내 TP 활용계획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업화 계획
- 기타 특화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계획

⑥ (선택) 지역특화산업인력뱅크 운영 계획

개념

- 지역특화산업별 국내외 전문인력(중급, 고급 등) 풀(Pool) 운영 및 활용 계획

예시

- 지역특화산업 인력DB 구축계획
- 인력DB 활용계획
- 산업인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인력네트워크 활용계획

- 지역기업 고용장려금 도입계획
- 기타 지역특화 인력뱅크 운영계획

⑦ (선택) GAP, HACCP 등 도입 계획

개념

- 지역특화산업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체계와 사업화 실적 제시
- 지역특화산업 국내외 인증시스템 도입 및 관리방안 제시

예시

- 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운영계획
- HACCP 지원계획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관리계획

(3) 향토 창업 보육

① (필수) 창업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요

- 지역특화산업의 산업화를 위해 해당 시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창업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시

- 농업기술센터내 창업보육 기능
- 역내 공공기관 활용 창업보육 기능
- 권역내 창업보육센터 활용계획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 기타 지역특화 창업보육 계획

② (필수) 농촌체험마을, 농가레스토랑 등 비즈니스형 컨설팅

개요

- 농가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마을이나 식당 등에 대해 수익 확대를 위한 컨설팅

예시

- 체험마을 비즈니스형 컨설팅계획
- 농가레스토랑 경영 컨설팅계획
- 마을축제 경영컨설팅 계획
- 농장축제 경영컨설팅 계획
- 타 지역특화 경영컨설팅 계획

③ (선택) 네트워크-허브형 컨설팅 활용계획

개요

- 기업 창업과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간, 인근 지자체간 다양한 부문의 컨설팅 조직 운영 지원

예시

- 타부처 공공기업컨설팅 활용계획
- 권역내 공공기업컨설팅 활용계획
- 전문컨설팅기업 활용계획
- 기타 지역특화 기업컨설팅 운영계획

④ (선택) 시제품 제작 및 품평회 운영계획

개요

-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제품 품평회를 통해 품질향상 및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

예시

-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계획
- 창업기업 제품품평회·홍보지원계획
- 기업 신제품 시제품 제작지원
- 기업 신제품 품평회·홍보지원계획
- 기타 시제품·신제품 지원계획

#### ⑤ (선택) 기타 기업컨설팅 지원

##### 개요

- 기술·경영·마케팅·투자유치·디자인·기술의 사업화·재무·법률·투자계획·세제정보·토지이용규제·도시자본 투자관심 대상 분류 등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계획 및 지원

##### 예시

- 마케팅 컨설팅 계획
- 기술컨설팅 계획
- 디자인컨설팅 계획
- 인력운영컨설팅 계획
- 장비운영컨설팅 계획
- 제품홍보 컨설팅 계획
- 기타 기업컨설팅 계획

#### ⑥ (선택) 기업투자를 위한 금융 펀드 조성

##### 개요

-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공기업이나 사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을 수행하고 실제 투자를 위해 금융펀드 조성

##### 예시

- 기업투자펀드 종합안내책자 발간계획

- 기업투자펀드 활용지원방안
- 지역특화산업 기업투자펀드 조성계획
- 기타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 (4) 관광·문화·서비스 산업육성

##### ① (필수) 도농교류 연계계획 및 운영

###### □ 개요

- 도농교류와 관련 사업들과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연계 계획 및 운영

###### □ 예시

- 지역특화산업 관련 특성화마을 지원계획
- 지역특화산업 관련 농촌체험마을조성계획
- 지역특화산업 관련 지역축제운영계획
- 지역특화산업 관련 마을축제운영계획
- 지역특화산업 관련 농장형축제운영계획
- 농촌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 도농교류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계획
-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 도농교류 프로그램

##### ② (필수) 테마문화상품개발계획 및 운영

###### □ 개요

- 특성화된 지역 전통 자원 등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홍보 및 수익 상품으로 개발

###### □ 예시

-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 계획

- 지역특화 스토리텔링개발 계획
- 기타 테마문화상품 개발 계획

③ (필수) 농촌 마을의 체험형이나 체류형으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추진

개요

- 농촌마을의 특성화를 체험형이나 체류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 증대

예시

- 농촌 마을의 체험형이나 체류형으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
- 농촌 마을의 체험형이나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체험형이나 체류형에 특산물 판매 프로그램을 추가
-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마을 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④ (필수) 경관산업의 관광상품화계획 및 운영

개요

- 농업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관작물 활용
- 축제·2차산업화 계획 운영

예시

- 농업경관 활용 관광 활성화 계획
- 농업경관 활용 축제 계획
- 경관작물 활용 2차 산업화 계획
- 기타 경관 활용 사업화 계획

⑤ (선택)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운영

개요

- 농어촌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3차 산업 활성화 계획 혹은 축제 등



을 통한 2·3차 후발산업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된 산업체 시찰과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수행

□ 예시

- 지역특화산업 특산품화 관광연계
- 지역산업체 시찰·관광 연계 계획
- 지역특화산업-경관 연계 관광 운영계획
- 특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 계획
- 기타 산업연계 관광 개발 계획

⑥ (선택)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계획 및 운영

□ 개요

- 농어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농어촌 관련 홍보맨을 양성

□ 예시

- 농어촌체험마을지도사 양성계획
- 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계획
- 지역특화 관광해설사 양성계획
- 기타 지역특화 관광인력 양성계획

⑦ (선택) 시·군 연합의 축제공동개최 혹은 관광벨트 조성 계획 및 운영

□ 개요

- 인접된 시·군들과 함께 축제 개최를 하거나 관광벨트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
- 축제를 문화 혹은 관광 컨텐츠, 농촌 체험, 농촌 체류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동반 운영

- 예시
  - 인접 시·군 연합 축제공동개최계획
  - 인접 시·군 연합 관광벨트 개발계획
  - 인접 시·군 문화콘텐츠 공동개발계획
  - 기타 인접 시·군 연계 프로그램

#### (5) 마케팅·수출지원

##### ① (필수) 종합마케팅 계획

- 개념
  - 지역내 농특산물, 가공상품, 지역관광상품 등을 총망라한 종합마케팅 전략 제시

- 예시
  -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운영계획
  - 지역특화산업 농산물 명품화 마케팅계획
  - 지역특화산업 제품 마케팅 지원 계획
  - 기타 마케팅 지원계획

##### ② (필수) 지역공동브랜드 활용·운영계획

- 개념
  - 지역특화산업 생산제품의 품질 등을 보증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공동브랜드 운영

- 예시
  - 지역특화산업 농산물 지역브랜드 운영
  - 지역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운영
  - 지역공동브랜드 지원계획

- 광역차원 품목별 공동브랜드 활용계획
- 기타 지역공동브랜드 활용계획

③ (선택) 수출지원단 운영, 해외시장개척 활동 계획

개념

- 지역특화산업분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및 활성화 계획

예시

- one-stop 수출지원단 운영
- 수출자문단·수출FD 운영
-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계획
- 세계한상 네트워크 활용계획
-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여지원
- 해외바이어초청 운영계획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계획
- 기타 수출·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④ (선택) 지역연합 홍보 및 직거래마트 운영 계획

개념

- 인접지역과 연합하여 지역특화산업 생산제품 공동 홍보 및 판매 계획

예시

- 동일품목 지역연합 홍보계획
- 지역연합 공동다큐 제작 계획
- 지역연합 공동 TV프로그램 제작계획
- 지역연합 직거래마트 운영계획

- 지역연합 제품홍보전 운영계획
- 지역연합 국제홍보활동 운영계획
- 기타 지역연합 홍보계획

## (6) 산업입지 지원

### ① (필수) 특화단지 조성·운영 계획

#### □ 개념

-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적화단지(농어촌산업단지) 조성·운영 계획 제시

#### □ 예시

-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 특화단지 전문성 강화계획
- 특화단지 입지조성 규제완화 계획
-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계획
- 기타 특화단지 조성 관련 계획

### ② (선택)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 계획

#### □ 개념

-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들의 단순한 입지가 아닌 일터-삶터-놀터가 결합된 테마파크화 계획

#### □ 예시

- 기존 테마파크의 복합단지화
- 1·2·3차 융복합형 테마파크조성
- 기타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 계획

## ③ (선택) 노후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개념

- 기존 노후 농공단지를 특화단지로 활용 계획

 예시

-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단지화 계획
- 기존 농공단지 운영계획
- 기타 기존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 ④ (선택)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념

- 지역특화산업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계획

 예시

- 금리지원 제도
- 세제감면 제도
- 인력지원 제도
- 수의계약 구매지원제도
- 기타 입주업체 지원제도

## (7) 투자 활성화·규제 완화

## ① (필수) 기업유치 여건조성 계획

 개념

- 지역특화산업 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H/W 및 S/W 기반조성 계획 수립

예시

- 지역특화산업 관련 대도시 기업유치 계획
- 기업유치단 운영계획
- 기타 지역특화 기업유치 계획

② (선택)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 계획

개념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정비 계획

예시

-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도입계획
- 기업유치 세제혜택 정비계획
- 기업유치 공용지원제도 정비계획
- 기업유치 R&D지원제도 정비계획
- 기타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계획

③ (선택)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계획

개념

- 기업유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점검 및 완화 계획 수립

예시

- 기업·공장 이전·설립조건 완화 계획
- 기업·공장 이전·설립 입지완화계획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운영계획
- 기타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계획

### 부 록 3

---

#### 농어촌산업 지원정책사업 인벤토리

- 균특회계 사업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사업 중 시·군 단위로 추진하는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 정리
  -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균특회계 사업 제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 단, 비예산사업 제외

### I -1. 지역개발계정 - 농어촌 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군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전략)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기반 구축</li> <li>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활성·복원</li> </ul>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 또는 둘 이상 마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li> </ul>	1~2년	마을당 2억원	국고50%, 지방비 50%	728억원 ('08년까지), 18억원 ('08년 기준)	364개소 ('08년까지), 91개소 ('08년 기준, 1개 계속 사업)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마을협정 체결 및 사업계획수립(마을)→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대상지 선정(시도)→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사업시행계획 수립(마을)→사업시행 승인(마을→시군→시도)→사업시행(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li> <li>삶의질특별법 제35조제1항,</li> <li>도시외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li> </ul>	-	50억원	국비50%, 지방비50%	14,388백만원 ('07-08년까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질특별법 제35조,</li> <li>농어촌정비법 제24조</li> <li>도시외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기업을 유치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취업 인원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자립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ul>	시군, 민간실수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개발자(시장·군수가 개발),</li> <li>민간개발자(민간실수요자가 개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조성비지원(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도로, 공동이용건축물, 전력, 통신, 용수, 기타시설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별로 조성면적의 3.3㎡당 단지조성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성면적의 3.3㎡당 단지조성비지원(국비보조,국비용자,지방비보조)</li> <li>국비용자조건(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년리 5.0%,5년거치10년균분상환</li> </ul>	1,464,586백만원('08년까지), 133,715백만원 ('08년 기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li> <li>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li> <li>농어촌정비법제87조,제88조,</li> <li>농공단지의개발및 운영에 관한통합지침 제13조</li> </ul>	기업집적화위한 농산어촌 산업단지 조성



I-1. 지역개발계정 - 농어촌 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사업군<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 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 (전략)
향토 산업 육성	농식품부	•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시군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H/W분야: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구입·설치비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 구입 • S/W분야: 제품개발 관련 컨설팅비용, 위탁연구비용, 향토자원권리화·디자인·브랜드개발비용, 네트워킹·유연비용 등	1~3년	총사업비 30억원 (국고 15억원)	국고50%, 지방비·자부담 50%	26,536백만원 ('07-08)	-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삶의질특별법제31조, • 균특법 제16조	농산 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농식품부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시군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가공식품의 주원료 80%이상 지역내 조달업체)	• 지역의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계고하기 위한 사업(생산·유통·가공등) 지원 • 개별농가 위주 지원 사업	-	예산범위 내 지자체 자율적으로 사업규모 결정,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20백만원 (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09년부터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변경)	-	-	사업신청(보조사업자→시·군) → 특화 품목 지정 및 지역 특화품목육성계획 작성(시군 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시·군→시·도) → 기획예산처의 한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신청 → 검토 의견 첨부 예산신청 → 예산확정통지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삶의질특별법 제31조, • 균특법 제16조	농산 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어촌 어항 관광 개발	농식품부	• 어촌지역의 어촌관광 기반시설확충 및 정주 환경시설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어업 외 소득증대를 도모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 제공	-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개발, 고래해체장복원	-	-	국고 50%, 지방비 50%	23,552백만원 ('08년기준)	21개소 ('08년기준)	-	• 어촌어항법 제9조, 제23조, 제49조 • 균특법 제34조제2항 • 삶의질특별법 제35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농산 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 I-2. 지역개발계정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 사업군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 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 (전략)
농산물 종합 유통 센터 건립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 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 폭을 확대</li> <li>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 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의 가격 안정 도모</li> </ul>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li> <li>권소사업: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의 공동출자로 건설 및 운영하는 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 및 상류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대도시 소비지 유통권 중심으로 건설 및 개장지역 운영 활성화</li> </ul>	'95년-'08년 (총14년)	-	국비 50%, 지방비 50%	15,671백만원 ('07년도)	16개소 ('0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li> </ul>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li> <li>굴박신장을 현대화하여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li> <li>젓갈의 저장·가공시설, 체험, 젓갈거리조성으로 젓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 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일반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가공시설</li> <li>수산물처리·저장시설</li> <li>굴박신장공정시설</li> <li>젓갈타운조성</li> <li>전북진주산업센터</li> <li>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li> </ul>	-	-	시설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차등 비율	71,558백만원 ('08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li> </ul>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감천항에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대량 신속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li> <li>공개 경쟁적인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공정거래 유도</li> </ul>	-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감천항에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전액 공공투자자로 건설하여 공익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li> </ul>	-	-	국비보조 70%, 지방비 30% (융자 20%, 시비 10%)	209,622백만원 ('08년까지)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특법 제34조제2항</li> <li>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3조</li> </ul>	제외
수산물 유통 시설 건립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 위판장 및 수산물 직매장</li> <li>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인자전장포옛명성회복, 친환경김물류기지조성, 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전통발효식품유통기현대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li> <li>수산물도매장 조성</li> </ul>	-	-	시설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차등 비율	23,472백만원 ('08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특법 제34조제2항</li> <li>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 제73조</li> <li>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li> <li>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li> </ul>	농업 생산 기반 정비

### I -3. 지역개발계정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군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 (전략)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조성	농촌진흥청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 농촌 공동체문화 함양	시군 농업기술센터	• 마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견학,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2년	마을당 연간 100백만원 (지역여건과 계획서에 따라 차등 및 추가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30,317백만원 ('08년까지)	-	• 농촌진흥법 제13조 제1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 • 삶의 질특별법 제35조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 I -4. 지역개발계정 -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군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계획수립	근거법령	비고 (전략)
목재 문화 체험장	산림청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 도모 • 체험기회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목재 이용활성화 도모 • 국산재를 우선 사용토록 유도	-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시·도)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설계비, 기반조성비 및 건축물시설비,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비 등) • 목공체험장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을 위한 목재전문가(코디네이터) 인건비	3년	• 조성비 (개소당 52억원), • 운영비 등(개소당 4억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24,766백만원 ('08년까지)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목재 집하장 시설 보완	산림청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 및 국산 고부가 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 목재집하장을 목재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국산목재 유통 중심지로 육성 •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 가치 목제품 생산지원 및 국산재 이용 촉진	시군	• 목재집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시·도)	• 노후화된 목재집하장 시설 및 장비를 보완	-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4,181백만원 ('08년까지)	-	-	• 산림기본법 제11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제37조	제외

I -5. 지역개발계정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군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청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산림휴양수요를 충족하는 물론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지자체	•시·도, 시·군(공유) 및 자연휴양림 운영자(사유)	•공유자연휴양림의 설계 및 조성사업(편의, 위생, 교육, 체육, 전기·통신시설, 임업체험시설 등) •사유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	-	•공유 조성: 개소당 30억원 •공유 보완: 개소당 4억원 •사유 용자: 12억원을 기준 설계금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 •사유 보조: 조정 지원 •산림육장 조성: 개소당 4억원 •산림육장 보완: 개소당 2억원	•공유휴양림 조성: 국비 70%, 지방비 30% •공유휴양림 보완: 국비 50% 지방비 50% •사유휴양림 용자: 10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 •사유휴양림 보조: 국비 50%, 자부담 50% •산림육장 조성 및 보완: 국비 50%, 지방비 50%	44,413백만원('08년도)	79개소('08년도) 200개소('17년까지)	•산림기본법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산림청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 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	-	-	•산림기본법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생태숲 조성	산림청	•자생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 문화공간으로 제공	시·도(시군구)	•지역별 상징숲 조성, 생태관찰원, 온실 등 연구 기반 시설	•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 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6년(1년 설계, 5년 시공)	개소당 기준단비 50억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107,148백만원('08년까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I -6. 지역개발계정 -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사업군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어촌종합개발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지역의 어촌관광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어업의 소득증대를 도모</li> <li>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제공</li> </ul>	-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후어촌의 생산기반 및 정주환경개선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등</li> </ul>	-	-	국고 80%, 지방비 20%	38789백만원 ('08년기준)	20편역 ('08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어항법 제9조, 제23조, 제49조</li> <li>균특법 제34조 제2항</li> <li>삶의질특별법 제35조</li> <li>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li> </ul>	제2기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 고시된 70개 시군	해당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 등</li> <li>SOC 투자, 부채압박, 시설물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li> </ul>	3년마다 재선정	시·군별 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지원	국고보조 100%	586,438백만원 ('08년까지), 188,219백만원 ('08년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특법 제1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인력 양성 및 R&amp;D 기반 구축</li> <li>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li> </ul>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고 산림경역의 거점지역으로 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마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역량강화</li> <li>주민생산소득, 주민체협소득</li> <li>생활환경개선(생활기반조성, 마을경관개선)</li> </ul>	2년	마을당 총사업비 10억~16억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259,293백만원 ('08년까지), 31,392백만원 ('08년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기본법 제8조, 제29조, 제30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I -7. 지역개발계정- 지경부 등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군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관광지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의 지속 확충</li> <li>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지개발·관광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등 공공기반시설비</li> <li>관광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li> <li>관광지 등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관광지도 개발 추진</li> <li>노후화된 관광지를 고급관광목적지로 회복시키기 위한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li> </ul>	'81 ~	매년 약 400억원 내의(약 50~60개소)	국비 50%	4,037억원 국고지원 ('05년까지)	224개소 (05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진흥법 제50조</li> </ul>	제외

I -7. 지역개발계정- 지경부 등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군<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관광레포츠자원에 대하여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	-	-	•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	'99~	-	-	1,245억원('04년까지)	268개 사업('04년까지)	• 관광기본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제46조, 제71조	제외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2002년 UN이 정한 "생태관광의 해"로 생태녹색관광이 새로운 형태의 관광유형으로 대두됨에 따라 "보는 관광"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관광행태에 대응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	-	• 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 자연환경의 관찰, 체험을 위한 보호·체험시설, 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조성	'03~	-	-	-	-	-	제외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	8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천, 춘천, 청주, 전주)	-	-	-	-	-	-	제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교육 서비스 기관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 추구	시도	지자체 및 영상관련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인프라 구축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 비용 • 카메라 등 영상제작·교육·후반작업 등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	'05~'09(총5년)	1개소당 20억	국비 50%, 지방비 50%	300억('05~'09)	15개소(서울 제외한 시도별1개소)	-	제외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지식경제부	• 지역별 국내의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 있는 지역발전역량 확충 •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로 수출저변을 확충하고, 지방소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도(16개)	지역소재 중소기업	• 지역산업 해외시장개척 사업 지원 • 지역산업 국내전시회 개최사업 지원 등	-	-	-	31,884백만원('07년도)	-	-	제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배송·판매를 통한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 효율화 유도 및 중소기업자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유통단계 2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물류구조 개선으로 물류비 30% 절감 예상	지자체	중소유통업자, 중소기업 단체	• 중소기업체가 공동구매·배송·판매하는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설지원, 시설확충 및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지원	'03년~	-	•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07년도) →국비 50%, 지방비 30%, 민자 20%('08년부터)	17,160백만원('07년도)	-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17조, 제26조, • 관특법 제17조	농업 생산 기반 정비

I -7. 지역개발계정- 지경부 등 농어촌산업 관련 사업군<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해양관광자원시설조성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증대된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li> <li>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국민의 기대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지자체(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li> <li>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li> </ul>	제외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래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권활성화 촉진</li> </ul>	시군구	재래시장특별법 제2조에 의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진입도로·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li> <li>비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기능개선 시설</li> <li>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li> <li>관광거리, 행사공간 및 조형물 설치 등</li> </ul>	'02 ~	시장당 소요비용의 60% 범위내 2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134,502백만('08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래시장및상점가옥성을위한특별법 제2조, 제65조 및 시행령 제5조,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li> <li>주한미군기지 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 등에관한특별법</li> <li>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지원특별법,</li> <li>중소기업협동조합법,</li> <li>민법</li> </ul>	농업생산기반정비

## II-1. 광역발전계정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li> <li>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li> </ul>	-	클러스터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li> <li>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브랜드 개발 육성, R&amp;D 지원, 홍보 및 공동 마케팅, 공동이용시설)</li> </ul>	3년	사업단별 평균 3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155,800백만원('08년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특법 제16조</li>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li> </ul>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포 인근 해안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혁신도모</li> <li>수산자원의 수집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SOC 확충 및 1, 2차산업이 잘 발달된 목포권내 수산식품산업 집적화를 위한 구심체적 역할의 지원센터 구축 필요</li> </ul>	전라남도목포시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신축 및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증·개축</li> </ul>	-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운영비는 지방비 100%	171억원(센터 103, 장비 40, 운영비 28) '08년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li> <li>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0조</li> </ul>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역연구기반조성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의거 지역농업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기반 조성</li> <li>지방자치체 이후 자치단체의 자체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통한 지역특화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li> <li>도농업기술원과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지방농업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제고</li> </ul>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농업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기반조성(노후화된 시설장비 대체), 공동연구 사업 연계</li> </ul>	'91~	-	국비 50%, 지방비 50%	14,396백만원('07년도)	-	-	제외



## II-1. 광역발전계정<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 (전략)
특화 작목 육성 촉진 사업	농촌 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화이후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비 차등지원</li> <li>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추진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li> </ul>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 대상 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농산물 수출확대, 친환경농업</li> <li>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농촌지도시설확충, 시험연구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 보강, 장지도활동 강화 등</li> </ul>	'00년 ~	-	국비 70%, 지방비 30%	9,900백만원 ('07년도)	-	-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역 인재 육성 활성화 지원	교과부	-	시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광역경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개 시도에 2억원씩 총 26억원을 지원하는 인재개발 관련 정책연구조사 사업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맞춤형 자율경쟁 공모사업</li> </ul>	-	-	-	-	-	-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산학 협력 체계 활성화 지원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기반의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통합체계 구축 등 초기 투자를 통한 산학연 협력제도 지원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현장적응력 있는 인력 양성</li> </ul>	-	대학의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건으로 10개 중심 전문대학에 대해 기술지도, 장비구축, 인력양성사업을 Package 형태</li> <li>학교기업육성</li> <li>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li> <li>커넥트 코리아</li> </ul>	04년 - 08년 (총 5년)	-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항목별 차등)	36,700백만원 ('07년도)	-	-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우수 직업 인력 양성 전문 대학 지원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 잘 하는 전문대학 육성</li> <li>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교육 만족도 및 전문대학 졸업생 채용 기업의 만족도 제고</li> </ul>	-	국·공·사립 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및 학생 장학금 지원</li> </ul>	-	-	-	500억원 ('08년기준)	-	-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 II-1. 광역발전계정<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 (전략)
지역 기반 기술 인력 양성	교과부	-	-	수도권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 위치한 2년 이상 법인으로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기술개발팀'	•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산학 공동기술개발 참여 활성화,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 육성,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	-	-	-	-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 및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	지자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 부산 도시권, 해양레저스포츠권, 종합휴양권, 역사·문화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00~'09 (총10년)	-	국비, 지방비	-	-	-	제외
유교 문화 관광 자원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자체	경북북부 4개시·7개군	•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숙박휴양 거점 조성 및 문화자원 정비	'00~'10 (총11년)	-	국비, 지방비	-	-	-	제외
서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서해안 지역의 관광잠재력의 체계적 개발로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 관광여가지대를 조성하여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모색	시군	서해안과 접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의 시·군 지역	• 집객력 있는 해양관광거점 조성과 연계관광지 개발, 권역별 관광개발	'08~'17 (총10년)	-	국비, 지방비, 민자	-	-	-	제외
지리산권 관광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지리산·섬진강 등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잠재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나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미흡하여 통합적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관광	시군,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지리산 주변3개도 (전남,전북,경북) 7개 시군	• 녹색테마관광지 조성, 워터, 역사휴양시설, 농·산촌체험 시설 등 개발	'08~'17 (총10년)	-	국비, 지방비, 민자	-	-	• 지방자치법 제153조제2항 (조합설립 근거)	제외

II-1. 광역발전계정<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지역 혁신 센터 조성	지경부	-	시도	지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 지역혁신주체 22개 기관과 MOU체결을 통해 RIC혁신네트워크 사업추진</li> <li>•On-Line서비스 : U-RIC네트워크 시스템 구축</li> <li>•성과활용사업 추진 : 정부 지원 종료된 센터의 인프라 활용촉진</li> </ul>	-	-	-	-	-	-	제외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지원	지경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선정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체제를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촉진</li> <li>• 지역내 지식·기술 원천인 대학을 활용하여 산업집적지의 애로기술 해결,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산업집적지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지원</li> </ul>	-	한국산업기술재단(사업관리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대학 교육 및 산·학협력체제를 산업단지의 R&amp;D, 인력양성센터로 개편</li> </ul>	-	-	-	-	-	-	산업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 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기존)	지경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무국 및 추진단 운영, 클러스터기반구축(산업클러스터통합정보망구축·운영, 해외교류 및 협력,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등), 혁신역량 강화(산학연협의체운영, 산학연협력지원, 연구개발인프라구축 등), 기타 혁신환경기반조성사업 등</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인력양성 및 R&amp;D 기반 구축</li> <li>•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산어촌산업단지 조성</li> </ul>

## II-1. 광역발전계정<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전략)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기존)	지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li>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으로 혁신주체가 집적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li> </ul>	시도 및 민간법인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의 4개 지역의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 기업지원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지역 전략산업에 대상으로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li> <li>인프라: 센터 건립, 연구시설, 시험·시제품생산용 장비구축</li> <li>기술개발: 지역특화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의 전략적 기술과제</li> <li>기업지원: 인력양성, 해외 마케팅, 기업애로기술지원 등</li> </ul>	'04~'08년(4개 지역), '02~'07년(9개 지역)	-	국비, 지방비, 자부담	707,090백만원('07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특법 제2조, 산업발전법 제8조</li> <li>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li> </ul>	제외
해양생물연구센터 설립	국도 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수산업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특성화대학으로 육성 발전시켜 온천수산업 중심체 역할 수행 도모</li> <li>수산업 연구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환경에 적합한 수산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li> </ul>	지자체	대학(강릉대('03~'07년), 조선대('04~'07), 군산대('05~'08), 경상대('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업 연구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센터 본관, 기숙사 건축)</li> </ul>	'03년 - '08년(총 6년)	-	국비, 지방비, 자부담	5,600백만원('08년도)	-	-	제외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국도 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한 연구인력과 첨단 연구개발 장비의 결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li> <li>단순가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전남의 수산물 가공 산업을 고차가공 Up-Grade 지원으로 신기술의 해양산업화 촉진</li> </ul>	전남(시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생물 관련 업체 창업보육 및 시험생산 기술지원</li> <li>Pilot Plant 첨단기술 장비제공 및 경영마케팅 지원</li> </ul>	'07년 - '10년(총 4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2,000백만원('08년도)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특법 제35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5조</li> </ul>	제외
해양자원연구센터 설립	국도 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양생태 자원에 대한 특성화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li> <li>해양수산물, 해양유용자원 등 통째로 울릉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li> </ul>	경북	울릉군 한국해양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릉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li> <li>해양자원연구센터 운영규칙 제정</li> </ul>	08년, 10년(총 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매입: 지방비 100%</li> <li>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 50%, 지방비 50%</li> </ul>	2,000백만원('08년도)	1개소	-	제외

## II-1. 광역발전계정<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 (전략)
지역 기술 혁신 사업	국토 해양부	-	-	-	-	-	-	-	-	-	-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	국토 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도시가 실질적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련 기관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li> <li>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인근 구시가지의 공동화, 외곽 농촌지역의 낙후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연계발전방안의 모색 등 대비 필요</li> </ul>	시도	혁신도시 소재 광역지자체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도시 지자체, 지역대학, 연구원,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혁신도시가 정착될 때까지 그 활동을 지원</li> </ul>	'07 -	매년 5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10,000백만원 ('08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특법 제2조, 제35조, 39조,</li> <li>국토기본법 제3조</li> </ul>	제외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산학연 공공기술 개발지원 사업 (기존)	중소 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R&amp;D자금 등을 집중하여 현장에로기술 해소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잠재적 혁신형기업을 혁신형 기업으로 유도</li> <li>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li> <li>지방중소기업과 지방대학의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 구축</li> </ul>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현장에로과제, 기술혁신형과제로 구분하여 지원기간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컨소시엄을 전문화·특성화하여 실시</li> <li>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연차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을 축소하여 사업 추진</li> <li>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2년간 4억원 한도 내 지원</li> </ul>	국비(균특), 지방비, 자부담	130,630백만원 ('07년기준)	-	-	산업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 II-1. 광역발전계정<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근거법령	비고 (전략)
창업 보육 센터 건립 지원	중소 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센터 재정자립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li> <li>• 창업보육센터를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Base Camp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li> </ul>	중소 기업청	전국 267개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구소· 지자체·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확장사업비 지원</li> <li>•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li> </ul>	'98년~ (1년)	-	국비 100%	15,300백만원 (*07년도)	-	-	향토 창업보육 기능 강화
창업 기업 투자 보조금	중소 기업청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한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중소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의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창업에 투자한 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급</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li> </ul>	제외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	중소 기업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li> </ul>	-	-	-	-	-	-	농업생산 기반 정비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중소 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매출 또는 고객 증대를 도모하고 상권활성화를 촉진</li> </ul>	시도, 시군, 상인회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선 공동사업, 시장활성화 연구 지원, 공동상품권 발행 지원, 시범시장 육성, 이벤트·홍보 지원, 공동쿠폰제 발행 지원, 대형시장 지원, 상인 교육·연수 지원, 시장자문 및 점포지도</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li> <li>•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li> </ul>	농업생산 기반 정비

### Ⅲ. 삶의 질 시행계획상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균특회계 중복 사업 제외)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전략)
향토 자원의 조사, 발굴 및 DB구축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li> <li>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 전통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자원을 선별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li> </ul>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관련 연구과제 추진 연구부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 연구사업	-	1억원	국비 100%	-	3개 시군 지역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예산편성→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결과활용심의회(연구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제52조</li> <li>삶의 질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li> <li>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li> </ul>	농업 생산 기반 정비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음식 조리전문기술 보전 및 전수를 통한 소득자원화</li> <li>향토음식을 통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li> <li>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li> </ul>	시군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향토음식 솜씨 보유농가 또는 공동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교육, 솜씨보유자 발굴, 조리법 채록, 홍보, 지정</li> <li>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공동사업장 및 농가: 향토음식의 체험상품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반조성</li> </ul>	-	개소당 70백만원	국비(농특) 50%, 지방비 50%	-	10개소	사업신청(마을)→대상 마을 선정(시군 농업기술센터)→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예산지원(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사업시행(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자,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기본법 제8조</li> <li>농촌진흥법 제22항, 제13조1항</li> <li>삶의 질특별법 제31조</li> </ul>	농산 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농어민 지역실업자훈련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농대상 농어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 등 지원, 농어민 소득향상 등 가계안정에 기여</li> </ul>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제외)	농어업인 5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피해 농어민에 대한 특화 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업계획 공모</li> <li>현행 일괄배분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FTA특화 훈련실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어민 훈련계획)을 공모·평가 후 예산차등배분</li> <li>지자체가 훈련과정을 심사·승인하고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등 사업시행 전반을 관장도록 자율성, 책임성 부여</li> </ul>	2008.4.1 ~ 12.31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원	국비(농특, 균특) 100%	1,322백만원 ('08년도)	-	지자체에 사업계획 공모(노동부)→노동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배정(노동부)→훈련과정 승인 확정및 노동부에 통보(지자체)→훈련실시 훈련기관과 훈련생 선발(지자체) 및 훈련 실시(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제16조</li> </ul>	산업 인력 양성 및 R&D 기반 구축

Ⅲ. 삶의 질 시행계획상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균특회계 중복 사업 제외)<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전략)
문화역사마을조성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기쁨</li> <li>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등 경주 만족도 제고</li> </ul>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지역추진위원회)	문화역사적 소재를 보유하고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농어촌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li> <li>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li> <li>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li> </ul>	3년	각 도별 30억원(기금 20억원·지방비 10억원) 지원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67%, 지방비 33%	240억원(관광기금 155억원/지방비 85억원)	13개('08년까지)	사업신청(마을)→마을추천(시·군·도)→연합회→대상마을 선정(연합회)→사업시행준비(마을, 시·군, 문화원)→예산지원(문화부)→연합회→문화원/시·군·문화원)→사업시행 및 문화역사마을 운영(문화원 및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li> <li>삶의 질 특별법 제35조</li> <li>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어촌체험마을조성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li> <li>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li> </ul>	시도, 시군구	어촌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체험을 중심으로 문화,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S/W사업 등에 포괄적 지원</li> </ul>	-	마을당 5억원내외	국비(균특) 50%, 지방비 45%, 자담 5%	112개('13년까지), 8개마을('08년도)	사업신청(마을)→마을추천(시·군·구)→대상마을선정(시·도)→사업시행준비(마을, 시·군·구)→예산지원(농식품부)→시·도(시·군·구)→사업시행(시·도, 시·군·구, 마을)→운영(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li> <li>삶의 질 특별법 제35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어촌관광활성화사업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지역의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어업의 소득증대 도모</li> <li>어촌지역의 체험관광시설 도입과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li> <li>국토균형개발과 대국민 해양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li> </ul>	시도,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청소년어영장, 생태체험장, 낚시터(잔교식), 해수욕장, 경관전망대, 생태공원, 해안산책로, 주차장, 조형물 등</li> </ul>	'04년 - '09년(총 6년)	50억규모 5개소, 60억규모 7개소	국고 50%, 지방비 50%	1,043억원(국고 533억원, 지방비 510억원)	12개소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기본설계(농식품부)→실시 설계(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 확정→예산지원→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어항법 제23조 및 제49조</li> <li>균특법 제34조 제2항</li> <li>삶의 질 특별법 제29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 Ⅲ. 삶의 질 시행계획상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균특회계 중복 사업 제외)<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전략)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 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분 조성 및 농촌 주민의 소득창출 기회로 활용</li> </ul>	-	한국농촌공사(도농교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 도농교류페스티벌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li> <li>·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사무국 설치·운영</li> </ul>	'05년 - '13년 (총9년) ※ 격년 개최	회당 10억	국비(농특) 100%	-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등)→농식품부)→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한국농촌공사 등)→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등)→농식품부)→사업비검정(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특별법 제35조</li> <li>·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li> </ul>	제외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및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자원 등 제자원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체험 활동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운영할 농가를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기 위한 것</li> <li>·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li> </ul>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학습 운영능력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을 소유한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 체험 교육농장 활동을 농가 또는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 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li> <li>·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 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li> <li>·S/W 관련사업: 전문 컨설팅, 보험, 홍보 등</li> </ul>	'06년 - '13년 (총 8년)	개소당 25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15억원 ('08년도)	60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li> <li>·농어촌정비법 제66조</li> <li>·삶의 질특별법 제35조</li> <li>·초중등교육법 제48조 5항</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li>·친환경, 향토 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시도, 시군구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98년 - 계속	-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56개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추진 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사업계획수립(축제추진주체)→사업신청(시·군·구)→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사업평가(문화부 등)→평가결과 다음해 선정 시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li> <li>·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li> <li>·'99년 관광진흥 5개년계획 사업</li> <li>·삶의 질특별법 제35조</li> </ul>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Ⅲ. 삶의 질 시행계획상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균특회계 중복 사업 제외)<계속>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전략)
경관보전 직불제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li> <li>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 시책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증진을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li> </ul>	시장·군수, 농업인	읍·면지역 및 준자치구의 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0.5ha 이상 집단화(연접)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li> </ul>	'05년~'13년(총 9년)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1ha	국비(농특) 70%, 지방비 30%	3,709백만원('08년도)	3,252ha	수요조사(시·군→시·도→농림수산식품부)→시·도 예산배정(농림수산식품부)→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대상지역 선정(시·도→시·군, 농림수산식품부)→경관보전협약 체결(시·군과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특별법 제30조</li> </ul>	제외
농촌경관 조성 및 어머니터 자원 관리기반 기술 구축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 유형별 관련기술 및 체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li> <li>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li> </ul>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경관조성 및 어머니터자원 기술개발 연구 추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경관지표 활용 매뉴얼 작성과 현장 적용 및 보완</li> <li>농촌경관지구의 정의 및 설정방법 연구</li> <li>농촌경관계획수립 체계 및 방법 개발</li> </ul>	'07년-'10년(총 4년)	-	국비 100%	50백만('08년도)	농촌경관 조성 및 어머니터 자원 관리기반 기술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과제계획 심의(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연구과제 계획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농촌환경지원과)→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결과활용심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기본법 제 37조 및 제 42조</li> <li>삶의 질 특별법 제30조</li> <li>경관법 제3조 및 제4조</li> <li>농어촌정비법 제5조 및 제32조</li> </ul>	제외
농촌 어머니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 농촌어머니터 수요에 대응한 수용여건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기반기술의 개발 및 현장보급</li> <li>농촌지역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마을중합개발사업 등 농산어촌지역 총합개발 및 어머니터 지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자원화·소득화 기술 지원</li> </ul>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권역별 어머니터 계획모델 개발</li> <li>지식기반의 농촌어머니터자원 정보활용방안 개발</li> <li>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료의 시각화 기법 개발</li> </ul>	'06년-'09년	-	국비 100%	1.2억('08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과제계획 심의(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연구과제 계획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농촌환경지원과)→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결과활용심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및 제8조</li> <li>삶의 질 특별법 제30조</li> </ul>	제외

### Ⅲ. 삶의 질 시행계획상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균특회계 중복 사업 제외)<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 (전략)
농산 어촌형 주택경관 발굴. 보급	농식품부	• 농산어촌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 함으로써 농산어촌 경관 의 유지·개선에 기여하 고 농산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를 도모	농림수산 식 품부(총괄), 한국농촌공 사(집행)	-	• 농어촌연구원내 전원 마을 주택전시관의 지 속적인 전시를 통한 농 산어촌 경관주택의 홍 보·보급 추진 • 농촌경관주택표준도 개발과 보급 추진	'06년 ~ '16년	-	국비(농특), 한국농촌공사 자체부담	550백만원 ('08년도)	-	-	• 삶의질특별법 제3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2조	제외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 제도	농식품부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통해 지역 활 성화 도모 •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하여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조건불리지역의 입지 조건에 맞고 특색있는 농 촌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기여	시군	• 법정리 내 대 상농지(밭· 과수원) 및 초지에서 농 업을 경영하 는 농업인으 로서 해당 농 지소재 읍· 면 거주하고, 농지관리의 무 및 마을공 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 화 실천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	-	'04년 -	• 밭·과수원 400천원/ha, • 초지 200천원/ha	국비(농특) 70%, 지방비 30%	432억원 ('08년도)	20,000ha	-	• 세계무역기구 협정의이행에 관련특별법 제 11조, 농업농 촌기본법 제39 조5호, 삶의질 특별법 제40조, 농산물의생산 자율의한직접 지불제도시행 규정, WTO 농 업협정문 부속 서 2의13	제외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전원 마을 조성)	농식품부	•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주 택을 가지고 노후·여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도록 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시군,농촌공 사	수도권 및 광역 시를 제외한 먼 지역(신활력사 업 대상 시·군의 경우 읍지역도 포함)	•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마을 내도로, 상하수도, 전 기·통신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 및 공공성이 있는 시설 설치 지원 ※ 단, 택지 매입 및 주택 건축은 입자자 부담	'05년 ~ 계속	마을 규모에 따라 10~30억원	국비(균특) 80%, 지방비 20%	12,840백만원 ('08년도)	300개소 ('13년 까지), 107지구 (계속 70, 신규 37) 추진 ('08년도)	사업제안(민간, 시·군, 한국농촌공사)→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신 청(시·군)→예산편성 (농림수산식품부·재정 부 협의)→마을정비구 역지정 승인(농림수산 식품부 : 국토부·환경 부 협의)→시행계획 수립(시·군)→주택건 축 인·허가(민간, 시· 군, 한국농촌공사)→사 업시행(시·군, 한국농 촌공사)→준공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제 39조, • 삶의질특별법 제35조	제외

### Ⅲ. 삶의 질 시행계획상 농어촌 산업 관련 사업(균특회계 중복 사업 제외)<계속>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목적	추진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사업내용(지원내용)	기간	지원금액	지원형태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추진절차	근거법령	비고 (전략)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 동참분위기 조성, 농촌주민의 역량 강화 및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등을 통해 도시민 및 도시자본 농촌 유치</li> <li>•도시·농촌주민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에 대한 참여 활성화 도모</li> </ul>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도시민, 농촌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촉진: 홍보, 여름휴가 캠페인,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지원</li> <li>•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체험, 농촌알리기, 농촌지킴이, 농촌 폐교 활용, 문화사업을 지원</li> <li>•인적 역량 강화: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등 지원</li> <li>•도농교류센터 운영: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센터 운영지원</li> </ul>	'02년 - 계속	-	국비 100%	8,357백만원('08년도)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촌공사→농림수산식품부)→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농림수산식품부)→사업비 검정(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기본법 제8조, 제38조,</li> <li>•농어촌정비법 제67조,</li> <li>•삶의질특별법 제35조, 제37조,</li> <li>•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li> </ul>	제외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농촌진흥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마을내 방치된 빈집, 마을공동시설물, 불량주택의 리모델링으로 도시민 전원생활, 귀농인 농촌 정착 및 마을주민 문화공간, 소득작업장으로 활용</li> </ul>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질특별법 제35조,</li> <li>•농촌진흥법 제13조</li> </ul>	제외

## 부 록 4

## 농어촌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농어촌산업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주 소: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락처: 김용렬 부연구위원 02-3299-4362, 팩스: 02-960-0163

※ 응답자 인적사항

① 근무처 : (                    )시/군, (                    )부서

② 담당업무 :

※ 문화상품권(1만원)을 받을 주소

받을 사람: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지원수단 평가지표	향토·신활력사업 등 산업육성 정책	농공단지 등 외 부기업 유치정책	도농교류 등 농촌관광 활성화정책	농산물 가공 등 농외활동 촉진정책
고용증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주민소득 증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생활환경 개선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농어촌산업 지원 수단들이 표에 제시된 평가지표들에 어느 정도효과를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평가지표를 1~5점(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해당 점수에 √표 해주십시오.

정책구분 평가지표	조세감면	시설·운영 자금지원	산업융지개발	기술 및 경영 컨설팅	교육훈련·인력지원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고용증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주민소득 증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생활환경 개선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농어촌지역 산업체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 ② 유능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      |
| ③ 기술 부족          | ④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
| ⑤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⑥ 홍보의 어려움(소비자 인지도 취약) |
| ⑦ 임금상승           | ⑧ 많은 규제               |
| ⑨ 정부의 행정지원 미흡    | ⑩ 기업규모의 영세성           |
| ⑪ 지역부존자원과 연계성 미흡 | ⑫ 기타 ( )              |

7.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
- ② 산업인력양성 및 R&D기반 구축
- ③ 향토창업보육기능 강화

- ④ 기업집적화를 위한 농산어촌산업단지 조성
- ⑤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⑥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 ⑦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⑧ 기타 ( )

**8. 지자체에서 농어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 ①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 ②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
- ③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 ④ 지자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도입 및 강화
- ⑤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 개발
- ⑥ 기타 ( )

**9. 향후 농어촌산업 정책은 다음 중 어떤 것에 주로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지역농축산물의 가공·유통 등 복합산업화
- ②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 ③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개발
- ④ 교육·의료·문화체험을 결합한 농어촌서비스산업 육성
- 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⑥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 ⑦ 상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등 연구개발 확대
- ⑧ 홍보 및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 지원
- ⑨ 창업보육기능 강화
- ⑩ 체험관광 상품의 다양화



- ⑪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 ⑫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 ⑬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10. 농어촌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추진체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점)	중요 하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중요 하다 (4점)	매우 중요 하다 (5점)
유사목적의 중앙정부 관련사업 통합					
지자체의 지역특화산업발전계획 수립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의 포괄적 지원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도입					
지자체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자체 공무원 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형 경영컨설팅					
성과목표협약제 도입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 경기도 농업기술원. 2007. “2004-2005 농촌특산단지 사업추진실적.”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향토지적재산본부. 2004. 「향토산업 육성 방안」. 전라남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지역균형발전과 신활력사업”.
- 권오복 · 강혜정 · 류상모 · 박상미. 2008. “2008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농업전망 2008: 한국농업 · 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3-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선기 · 김현호. 2006.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수 외. 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김현호 · 한표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농림부. 2007a.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부. 2007b.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정책리모델링 위원회. 2007. 「농촌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 농림부.
- 박 경 · 장재홍정준호 · 정옥주. 2008. 「주요국의 지역정책: EU · 영국 · 프랑스 · 일본」. 한국산업기술재단.
- 박석두 외. 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 김용렬 · 최경은. 2007. “농촌관광: 산업화를 위한 과제.” 『농업전망 2007: 한국 농업 · 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 265-2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외.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외. 2006.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주영 · 송미령. 2007. “신활력사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농촌경제』 30(1): 83-1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 외. 1986. 「농촌공업과 농공지구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김용렬 · 성주인 · 박주영 · 허윤진.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위한 정책재편 방안(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박주영. 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염대호 외. 2004.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 오명준 외, 2008, 「지역혁신계정사업 지원현황 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오영석·이진면. 2007. “국내총소득(GDI)으로 본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제347호. 산업연구원.
- 원천식. 2005. “향토산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2005년 4월호: 67-77. 산업연구원.
- 윤우진·김인철. 2007.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사점: Kennedy School 학파의 실용주의적 산업정책론.” 『산업경제정보(e-Kiet)』 제376호. 산업연구원.
- 이경태. 1990. 「90년대 산업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 이기원. 2008.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회고와 향후 과제: 신활력사업(농촌활력증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지역개발학회 『산업경제정보(e-Kiet)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정책토론회.
- 이동필. 1986. “농촌공업의 규모, 성격 및 성장분석”. 『농촌경제』 9(4): 137-1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3. “농외소득 저위의 요인”.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방안.” 『농어촌과 환경』 No.98: 46-56.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이동필 외.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상필. 2007.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리전인포』 통권 제112호. 전남발전연구원.
- 조창완 외. 2004. 「향토산업육성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최경환. 2001.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24(2): 119-1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김형모. 1980. “농촌공업의 개념과 농촌공업개발의 의미.” 『농촌경제』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 홍진기·김선배. 1999. “지역산업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황수철. 2005. “일본.” 박진도 엮음.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355-388. 한울아카데미.
- Adams, F.G. and L.R. Klein, 1984, Industrial Policie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 Economic Perspective, *The Economic Journal* 94(375): 685-686.

- Berberman, E.J. and E.J. Feser. 1999. *Industrial and Regional Clusters: Concepts and Comparative Applications*. Regional Research Institute(Web Book).
- Braczyk, H-J., P. Cooke and M. Heidenreich(eds.).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ole of the Governances in a Globalized World*. UCL Press.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6.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6*. Countryside Agency.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7.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7*. Countryside Agency.
- Cooke, P. 2002. *Knowledge Economie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
- EEAG(European Economic Advisory Group), 2008, *EEAG Report on the European Economy: Europe in a Globalised World*.
- ERS(USDA), 1998, "Rural Industry Issue", *Rural Conditions and Trends*, 8(3).
- ERS(USDA), 1999, "Rural Industry Issue", *Rural Conditions and Trends*, 9(3).
- EU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 *Rur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07*. European Union.
- Hassink, R. 1999. "Technopoles: A Policy Concept at the End of its Life Cycle?" 『과학기술 정책』 9(3/4): 45-6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Johnson, C., 1984,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Ics Press.
- Kotler, P., D.H. Haider & I. Rein.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Free Press.
- Kuhlman, J.M. 1953. "Notes: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5(3): 436-438.
- Lee, Dongphil. 2001. *Lessons and Experiences from Rural Transformation: Diversification and Employment Creation*. ADBI Seminar. Jaipur. India.
- Lundvall, B-Å. 1996. "The Social Dimension of the Learning Economy". *DRUID Working Paper* No.96-1.
- MacKinsey and Company. 1994. *Lead Local Compete Global: Unlocking the Growth Potential of Australia's Regions*, Final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Regional Development.
- OECD, 1983, *Positive Adjustment Policies: Managing Structural Change*.
- OECD, 2000, *The service Economy*.
- OECD. 2005. *OECD Regions at a Glance*.

- OECD. 2007. *OECD Regions at a Glance*.
- Pine II, B.J. & J.H. Gilmore,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and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Porter, M.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 Porter, M.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 Power, D. & A.J. Scott(eds.). 2004. *Cultural Industries and the Production of Culture*. LD & NY: Routledge.
- Queensland Government(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2005. "Rural Industry action Plan 2004-2007."
- Queensland Government(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2008. "Industry action Plan 2008-2010: Rural Industry."
- Research International Ltd. 2006. *England Leisure Visits: Report of the 2005 Survey*.
- Robock, S.H. 1952.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4(3): 346-360.
- Robyn, Shelley. 2006. Conversion of Building for Establishment of a Winery and Cellar Door.
- Scott, A.J.(eds.). 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A.J. 1988. *New Industrial Spaces: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ion Limited.
- Shapiro, H. 2007. "Industrial Policy and Growth." *DEAS Working Paper No.53*.